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Ⅰ)

» 미국 » 영국

201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C·o·n·t·e·n·t·s

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

미국 ····· 1

1.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C. 11) ····· 3

2. 정부가 아닌 출처로부터 보수를 보충 받는 행위 제한
(Summary of the Restriction on Supplementation of Salary) ····· 41

3.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5 U.S.C. app.) ····· 83

4. 연방 의회정보의 부정거래 금지법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 ····· 143

5. 연방 의회정보의 부정거래 금지법 해설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 ····· 187

6. 미국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 207

7. 미국 하원 윤리 매뉴얼(HOUSE ETHICS MANUAL) ····· 331

8. 행정명령 제11222호－공직자 윤리기준 (Executive Order 11222
–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341

9. 행정명령 제12674호 – 공직자 윤리 강령 (Executive Order 12674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 353

10. 행정명령 제13490호 – 공직자 윤리의무 (Executive Order 13490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 363

11.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COIB)
(Conflict of Interest Board of The City of New York) ····· 375

12.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규칙 (Rules of the Board Conflict of Interest) ····· 401

13. 미연방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449

영국 ····· 505

1.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507

2. 영국의 공무원 행동강령 (Civil Service Code) ····· 513

3. 영국의 장관 행동강령 (Ministerial Code) ····· 521

미 국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C. 11)

18 U.S.C. 제201조. 공직자 및 배심원의 뇌물수수 (Bribery of public officials and witnesses)

(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

(1) "공직자(public official)"란 연방 의회 의원(Member of Congress), 대의원(Washington, D.C 등 準州에서 선출되어 하원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 없음) 및 상주 대표(Puerto Rico의 대표, 하원에서 표결권 없음), 위의 의회 관계자는 취임 이후와 이전 모두 공직자에 포함.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를 포함한 미연방(United States)·부처(department)·기관(agency)·지국(branch)을 대리(act for)하거나 대신(on behalf of)하는 정부의 부처·기관·지국의 위임을 받아 직무상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종사자, 일반인과 배심원(juror)을 말한다.

(2) "공직후보자(person who has been selected to be a public official)"란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지명되거나 임명된 사람, 공식적으로 지명되거나 임명될 것이라고 알려진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상 행위(official act)"란 공직자의 지위(official capacity or place of trust or profit)에서, 진행 중에 있거나 법률에 따라 공직자에게 부여된 현안(question), 사안(matter), 소송(cause), 법적 절차(proceeding) 또는 민사상 분쟁(controversy)에서 어떠한 결정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b)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篇에 규정된 벌금과 수수한 뇌물의 금전적 가치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중 그 액수가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게 되며, 명예직·위임직·유급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anything of value)을 부당하게 증여, 제공 또는 약속한 자,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금품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entity)에 증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

(A) 어떤 공무상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B) 미연방을 상대로 공직자나 공직후보자로 하여금 사기를 치도록 하거나, 방조・공모・용인하도록 하거나 사기를 칠 기회를 제공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C) 공직자나 공직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도록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자신, 어떤 다른 사람, 단체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대가로, 부당하게 요구·요청·수취·수령하거나 수취·수령할 것을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

(A) 공무상 행위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B) 미연방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방조·공모·용인하거나 사기를 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

(C)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도록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

(3) 법원, 하원 또는 양원의 위원회, 청문이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미국의 법률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기관,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게 재판, 청문 또는 기타 소송절차의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무선서 증언(testimony under oath or affirmation)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곳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그 증인에게 부당하게 증여·제공·약속하거나, 그 증인이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도록 하게 한 자

(4) 재판, 청문 또는 기타 소송절차의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무선서 증언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출석의 대가로,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자신, 증인,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요구· 요청·수취·수령 또는 수취·수령할 것을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

(c) 다음의 자는 누구든지,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게 된다.

(1) 적절한 공무(official duty) 수행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A) 공직자・퇴직공직자・공직후보자가 수행했거나 수행하게 될 공무상의 행위를 이유로 공직자・퇴직공직자・공직후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증여・제공・약속한 자

(B) 적절한 공무 수행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공직자・퇴직공직자・공직후보자가 수행했거나 수행하게 될 공무상의 행위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 수취, 수령 또는 수취 또는 수령할 것에 동의한 공직자・퇴직공직자・공직후보자

(2) 법원, 하원 또는 양원의 위원회, 청문이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미국의 법률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기관,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게 재판, 청문 또는 기타 소송절차의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무선서 증언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곳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그 증인에게 부당하게 증여·제공·약속한 자.

(3) 재판, 청문 또는 기타 소송절차의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무선서 증언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출석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부당하게 요구, 추구, 수취, 수령 또는 수취 또는 수령할 것을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

(d) 제(b)항의 제(3)호와 제(4)호, 제(c)항의 제(2)호와 제(3)호는 법률에 규정된 증언 수수료에 대한 지불과 수령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증인을 요청한 당사자가 증인에게 증언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증인이 증언 수수료를 수령하는 행위, 재판, 청문 또는 기타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것 때문에 발생한 여행경비와 생계비, 그리고 손실된 시간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증인이 그것을 수령하는 행위, 전문가의 감정인 경우, 감정 의견을 준비하고, 법원에 출두하고 증언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 이 조항에 규정된 위법행위와 처벌규정은 이 편의 제1503조, 제1504조와 제150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취급된다.

18 U.S.C. 제202조. 정의(definitions)

(a) 이 편의 제203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와 제209조의 목적에 따라, "특수정부종사자(special Government employee)"는 행정부, 입법부, 독립행정기관, 컬럼비아구의 공무원과 종사자로 365일 중 13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한시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 지명, 임명 또는 채용된 사람들을 말한다. 이 범주에는 미연방의 임시판무관(a part-time United States commissioner, 국제기구·협약 등에서 미국 대표), 임시 치안판사,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제28편의 제40장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independent counsel)와 제28편의 제594조 제(c)호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한 사람도 포함된다. 바로 앞 문장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연방 의원의 지역구 또는 州에서 임시 지역 대리인(local representative)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도 "특수정부종사자"로 분류된다. 1956. 8.10의 법률(70A Stat. 632; 5 U.S.C. 30r(c)와 (d))의 제29조(c)호와 제(d)호에도 불구하고, 미연방의 다른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아닌 한, 미군 예비역 장교 또는 주방위군 장교들도 훈련을 위하여 현역으로 근무 중일 경우에는 "특수정부종사자"로 분류된다. 미군의 예비역 장교 또는 주방위군 장교들이 자발적으로 130일을 초과하여 연장 복무를 하는 경우, 제203조, 제205조부터 제209조까지 그리고 218조의 적용 범위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비자발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미군의 예비역 장교 또는 주방위군 장교들은 "특수정부종사자"로 분류된다. "공무원 또는 종사자" 그리고 "특수정부종사자"는 제203조, 제205조, 제207조부터 제209조까지 그리고 제218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미군의 사병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b) 이 편의 제205조와 제207조의 목적에 따라, "공식책임(official responsibility)"이란 중간 과정이든 최종적이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되든, 직접 또는 부하직원을 통해서든, 정부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지시하는 직접적인 관리 또는 운영 권한을 말한다.

(c) 위의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편의 제203조, 제205조, 제207조부터 제209조까지 그리고 제218조에서 쓰이는 "공무원(officer)"과 "종사자(employee)"란 대통령, 부통령, 양원 의원과 연방 판사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d) 제204조와 제207조의 "의원(Member of Congress)"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상원의 의원

(2) 하원의 의원, 대의원 또는 상주 대표

(e) 이 章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부(executive branch)"는 제5편에서 정의된 각 행정기관 행정부의 기타 단체(entity) 또는 부서(unit)를 포함한다.

(2) "사법부(judicial branch)"는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법원, 파산법원, 연방 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법원(미군항소법원, 연방청구법원, 세무법원 포함, 미연방 관할의 準州 또는 속령의 법원은 제외), 연방법률사무국과 사법부 내의 기타 기관, 사무국과 단체를 의미한다.

(3) "입법부(legislative branch)"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연방 의회

(B) 의회영선국(Office of Architect of the Capitol), 의회식물원,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정부인쇄소, 의회도서관, 기술평가국, 의회 예산국, 의회 경찰과 입법부 내에 설치된 기타 기관, 사무국과 위원회

18 U.S.C. 제203조. 의원, 공무원, 정부 사안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to Members of Congress, officers, and others in matters affecting the Government)

(a) 적절한 공무 수행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1) 부처, 기관, 법원, 군사법원, 공무원, 민간·군사·해군 위원회에서 소송절차·신청·판결이나 결정의 요청·계약·청구·민사상 분쟁·고발·고소·구속 그리고 미연방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타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의 자격으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제공했거나 제공할 대리업무(representational services)에 대한 보상을 요구·요청·수령·수락하거나 수령·수락에 동의한 사람. - 다른 사람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의원, 의원 당선자, 대의원, 대의원 당선자, 상주대표 및 상주대표 당선자

(B)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또는 그밖에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종사자 또는 연방판사

(2) 대리업무에 대한 보상을 의원, 의원 당선자, 대의원, 대의원 당선자, 상주대표, 상주대표 당선자, 연방판사, 공무원 또는 종사자이거나 이었던 자에게 고의적으로 증여, 약속 또는 제공하는 자

(b) 적절한 공무 수행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1) 부처, 기관, 법원, 사무국, 위원회에서 소송절차·신청·판결이나 결정의 요청·계약·청구·민사상 분쟁·고발·고소·구속 그리고 콜롬비아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타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의 자격으로 직접 또는 콜롬비아구의 공무원이거나 종사자인 사람을 통하여 제공했거나 제공할 대리업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요청·수령·수락하거나 수령·수락에 동의한 사람

(2) 대리업무에 대한 보상을 콜롬비아구의 공무원·종사자이거나 이었던 자에게 고의적으로 증여 · 약속 · 제공하는 자

(c) 특수정부종사자는 특정한 당사자와 관련된 다음의 특정사안에 관해서만 제(a)항과 제(b)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 항의 제2호는 특수정부종사자가 현시점을 기준으로 연 365일 중 60일 미만 관계 부처·청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특수정부종사자가 정부 종사자 또는 특수정부종사자의 자격으로 결정 · 승인 · 승인거부 · 권고 · 자문 제공 · 조사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

(2) 특수정부종사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 진행 중인 경우

(d) 이 조항의 어느 것도 특수정부종사자를 포함한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자신을 공직에 임명한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가 승인하는 경우,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자식을 대리하거나, 자신이 후견인, 유언집행자, 유산관리인, 수탁자나 기타 개인적인 수탁자의 자격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대해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1) 그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부 종사자나 특수정부종사자의 자격으로 결정 · 승인 · 승인거부 · 권고 · 조언 제공 · 조사 등을 통하여 참여해 온 사안

(2) 그의 공식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안

(e) 이 조항의 어느 것도, 특수정부종사자가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자격으로, 정부의 허가에 의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경우 허가나 계약에 관련되는 장관이나 기관장이문서로 그 활동이 국익에 필요함을 인증해야 하며, 그 인증서는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f) 이 조항의 어느 것도, 개인이 선서증언을 하거나 위증죄의 벌을 받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8 U.S.C. 제204조. 연방청구법원 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의원 활동 (Practice in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 or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by Members of Congress)

의원 또는 의원 당선자는 누구든지, 연방청구법원(미연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나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활동(practice, 개업)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18 U.S.C. 제205조. 정부와 관련되는 청구 및 기타 사안에 대한 공무원과 종사자의 활동(Activities of officer and employees in claims against and other matters affecting the Government)

(a)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기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종사자는 적절한 공무수행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1) 미연방을 상대로 하는 청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활동하거나, 그러한 청구 수행을 도와준 보답으로 사례금 또는 그 청구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지분을 받는 행위

(2) 미연방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법원, 군사법원, 사무국, 민간·군사·해군 위원회와 맞서는 사람을 위해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행위

(b) 컬럼비아구나 그의 미연방 검찰청의 공무원과 종사자는 적절한 공직 수행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篇의 제216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1) 컬럼비아구를 상대로 청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활동하거나, 그러한 청구 수행을 도와준 보답으로 사례금 또는 그 청구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지분을 받는 행위

(2) 컬럼비아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법원, 사무국이나 위원회와 맞서는 사람을 위해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행위

(c) 특수정부종사자는 특정한 당사자들이 관련된 다음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제(a)항과 제(b)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제2호는 특수정부종사자가 현시점을 기준으로 연 365일 중 60일 미만 관계 부처·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특수정부종사자가 정부 종사자 또는 특수정부종사자의 자격으로 결정 · 승인 · 승인거부 · 권고 · 자문제공 · 조사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

(2) 특수정부종사자가 담당하고 있는 특정사안이 진행 중인 경우

(d) (1) 제(a)항이나 제(b)항에서 어느 것도 공무원과 종사자는 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한, 보상을 받지 않고 다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활동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A) 징계, 충성 심사 또는 인사행정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사람

(B) 제(2)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 자원봉사단, 전문가 협회, 여가 동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 또는 단체, 그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미연방이나 컬럼비아구의 현직 직원, 종사자 또는 그들의 배우자나 부양자녀인 경우

(2) 제(1)호 제(B)목은 다음의 특정사안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제(a)항 제(1)호 또는 제(b)항 제(1)호에 따른 청구 사안

(B) 그 조직이나 단체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소송절차

(C) 그 조직이나 단체에 연방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허가, 계약 또는 기타 협약(그런 허가, 계약 또는 기타 협약의 요청)과 연관된 사안.

(e) 제(a)항이나 제(b)항의 어느 것도, 특수정부종사자를 포함한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자신을 공직에 임명한 책임있는 고위공직자가 승인하는 경우,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자식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자신이 후견인, 유언집행자, 유산관리인, 수탁자나 기타 개인적인 수탁자 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대해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1) 그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부 종사자나 특수정부종사자의 자격으로 결정 · 승인 · 승인 거부 · 권고 · 조언제공 · 조사 등을 통하여 참여해 온 사안

(2) 그의 공식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안

(f) 제(a)항이나 제(b)항의 어느 것도, 특수정부종사자가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자격으로 정부의 허가에 의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허가나 계약에 관련되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문서로 그 활동이 국익에 필요함을 인증해야 하며, 그 인증서는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g) 이 조항의 어느 것도, 개인이 선서증언을 하거나 위증죄 또는 법정모독죄의 벌을 받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h)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특정사안"이라 함은 어떠한 사법상 또는 기타 소송절차 · 신청 · 판결이나 결정의 요구 · 계약 · 청구 · 민사상 분쟁·조사 · 고발 · 기소 · 구속 및 기타 특별한 사안을 의미한다.

(i)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종사자가 다음에 따른 활동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1) 제5편의 제71장

(2) 제39편의 제1004조 또는 제12장

(3) 「테네시강유역 개발계획법, Tennessee Valley Authority Act of 1933(16 U.S.C. 831b)」의 제3조

(4) 「외무공무원법, Foreign Service Act of 1980(22 U.S.C. 4104 이하 참조)의 제1편 제10장

(5) 미연방이나 컬럼비아구의 기관이나 산하기관(instrumentality)과 그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의 노사관계를 정식으로 허가하는 미연방이나 컬럼비아구의 기타 법률 조문

18 U.S.C. 제206조. 퇴직장교의 면제 (Exemption of retired officers of the uniformed services)

이 편의 제203조와 제205조는 현역으로 복무하지 아니하고 미연방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로도 근무하지 아니하는 퇴직장교, 의회가 제정한 법령(Act of Congress)으로 특별히 제외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8 U.S.C. 제207. 퇴직한 공무원, 종사자 및 행정부 · 입법부의 선출직 공직자의 제한(Restrictions on former officers, employee and elected officials of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a) 행정부와 기타 기관의 모든 공무원과 종사자에 대한 제한

(1) 특정사안의 대리행위에 대한 영구제한. - 미연방의 행정부(미연방의 독립행정기관 포함)와 컬럼비아구의 공무원이나 종사자(특수정부종사자 포함)인 사람이 퇴직 후, 다음의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미연방 또는 컬럼비아구 제외)을 대리하여 미연방·컬럼비아구의 부처, 기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보교환(communication) 또는 방문(appearance)할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A) 미연방 · 컬럼비아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

(B) 퇴직공직자가 공무원이나 종사자로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사안

(C) 위의 참여시점에서 특정한 당사자나 특정한 당사자들과 관련된 사안

(2) 공식책임에 따른 특정사안에 대하여 2년 제한. - 제(1)호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 사람이 미연방 · 컬럼비아구에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음의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미연방 · 컬럼비아구 제외)을 대리하여, 미연방 · 컬럼비아구의 부처, 기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보교환 또는 방문할 경우, 이 篇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A) 미연방 · 컬럼비아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

(B) 퇴직공직자가 미연방·컬럼비아구에서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공무원이나 종사자로서 그의 공식책임 하에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안

(C) 특정사안이 진행 중인 시점에 특정 당사자 또는 특정 당사자들과 관련된 사안

(3) 제한의 명확화. -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미연방(독립행정기관 포함)의 행정부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해서, 미연방의 부처, 기관, 법원, 군사법원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와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한 경우, 그리고 미연방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인 경우

(B) 컬럼비아구의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다른 사람(컬럼비아구 제외)을 대리해서 컬럼비아구의 부처, 기관, 법정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와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한 경우, 그리고 컬럼비아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

(b) 지원과 자문에 관하여1년 제한

(1) 일반사항. - 제(a)항 제(1)호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 미연방(독립행정기관 포함)

행정부의 퇴직한 공무원이나 종사자, 입법부의 퇴직한 공무원이나 종사자 또는 퇴직 의원이 퇴직 전 1년 동안 미연방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무역·조약 교섭에 직접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무역·조약 교섭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정보는 제5편의 제552조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고, 그 정보에 대한 공개금지를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이 지정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무역·조약 교섭과 관련하여 퇴직 후 1년 동안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고의적으로 대리하거나, 도와주거나, 조언해서는 아니 된다. 이 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이 편의 제21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2) 용어 정의 -

(A) "무역교섭(trade negotiation)"이란 대통령이 「무역과 경쟁에 관한 총괄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제1102조에 따른 무역협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교섭을 말하며,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한 활동은 제외된다.

(B) "조약(treaty)"이란 대통령이 체결하는 국제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c) 행정부와 독립행정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1년 제한

(1) 제한. - 제(a)항과 제(b)항에 규정된 제한에 추가하여, 제(2)호에서 규정한 미연방 행정부(독립행정기관 포함)의 공무원이나 종사자(특수정부종사자 포함)인 사람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하여, 그가 근무했던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공식 조치(official action)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했던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2) 제한을 적용 받는 사람.

(A) 제(1)호는 다음의 조건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만 제(d)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제외

(i) 제5편 제53장의 제2절에 의해 규정되거나 확정된 보수체계에 따라 임용된 경우

(ii) (i)에 규정되지 않은 직위에 임용되고, 2004 회계연도의 「국방수권법률(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 국방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을 규정하는 법률로 매 회계연도에 제정)의 제정 후 2년 동안, 고위직보수표 Ⅱ의 기본 보수의 86.5%와 같거나 더 많이 받는 사람, 그 법률의 제정 하루 전에 (i)에 규정되지 않은 직위에 임명되고 기본 보수가 제5편의 제5304조 또는 제5304조제(a)항에 따른 지역기반 보수조정을 제외하고, 그 법률의 제정 하루 전에 고위공무원단의 5급이 받는 기본보수와 같거나 높은 사람

(iii) 제3편의 제105조(a)(2)(B)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제3편의 제106조(a)(1)(B)에 따라 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iv) 보수 등급(제37편의 제201조 규정)이 O-7이거나 더 높은 등급이나 계급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의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

(v) 제5편의 제37장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정부기관으로 파견된 경우

(B) 제(1)호는 특수정부종사자가 퇴직 전 1년 동안에 60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C) 부처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윤리국장(Office of Government Ethics)은 제(A)목의 (ii)나 (iv)에 규정한 직위, 직위의 범주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제(1)호에 규정된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i) 직위에 대한 제한으로 부처와 기관이 유능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ii) 제한을 면제하더라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d) 행정부와 독립행정기관의 최고위직에 대한 제한

(1) 제한. - 제(a)항과 제(b)항에 규정된 제한에 추가하여, 다음의 사람이 그 직위에서 퇴직한 이후 2년 이내에,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하여, 그가 미연방 행정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공식 조치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A) 미연방의 부통령

(B) 미연방의 행정부(독립행정기관 포함)에 임용되어 고위공직자보수표 I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거나, 대통령실에 임용되어 고위공직자보수표 II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

(C) 대통령이 제3편의 제105조(a)(2)(A)에 따라 임용하거나, 부통령이 제3편의 제106조(a)(1)(A)에 따라 임용한 사람

(2) 접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 - 제(1)호의 제(A)목, 제(B)목 또는 제(C)목에 규정된 직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정보교환이나 방문과 관련하여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미연방 정부에서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했던 부처나 청의 직원 또는 종사자

(B) 제5편의 제5312조, 제5313조, 제5314조, 제5315조 또는 제5316조에 열거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

(e) 의원, 입법부의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제한.

(1) 의원 및 선출 공무원.

(A) 상원의원. - 상원의원이 그 직을 떠난 후 2년 이내에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하여 그가 미의회의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미의회의 의원, 공무원, 종사자 또는 의회 법제사무국의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B) 하원의 의원과 공무원.

(i) 하원의원과 하원의 선출된 공무원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하여 그들이 미의회의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i)이나 (ii)에 규정된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ii) 하원의 퇴직 의원에 의한 정보교환이나 방문과 관련하여 (i)에 규정된 사람들은 의회의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와 의회 법제사무국의 종사자

(iii) 선출 공무원에 의한 정보교환이나 방문과 관련하여 (i)에 규정된 사람들은 하원의 의원, 공무원 또는 종사자

(2) 상원의 공무원 및 종사자. - 상원의 선출 공무원, 제(7)호 제(A)목이 적용되는 상원의 종사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하여 그들이 상원의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원의 의원, 공무원,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3) 비서관(personal staff). -

(A) 제(7)호 제(A)목이 적용되는 하원의원의 종사자가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하여 그가 미의회의 의원, 공무원, 종사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B)목에 규정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B) 퇴직 종사자에 의한 정보교환이나 방문과 관련하여 제(A)목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i) 퇴직 종사자를 고용했던 하원의원

(ii) 그 하원의원의 다른 종사자

(4) 위원회 직원(committee staff). - 제(7)호 제(A)목을 적용 받는 하원의 위원회의 종사자, 하원의 사무국(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로부터 보수를

받는 양원 합동위원회의 종사자는, 하원의 위원회나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하여 그가 양원의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퇴직하던 연도에 소속해 있던 하원의 위원회나 양원 합동위원회의 의원이나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5) 하원 지도부 직원(leadership staff) -

(A) (7)호 제(A)목을 적용 받는 하원 지도부의 종사자는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하여 그가 양원의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B)목에 규정된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B) 퇴직 종사자에 의한 정보교환이나 방문과 관련하여 제(A)목에 규정된 사람은 하원 지도부의 의원이고 하원 지도부의 다른 종사자이다.

(6) 기타 법제사무국.

(A) (7)호 제(B)목을 적용 받는 의회 법제사무국의 종사자는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대리하여 그가 법제사무국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B)목에 규정된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을 하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B) 그 퇴직 종사자에 의한 정보교환이나 방문과 관련하여 제(A)목에 규정된 사람은 의회 법제사무국의 공무원 및 종사자이다.

(7) 제한에 대한 한정(limitation on restrictions). -

(A)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제한은 퇴직 종사자가 퇴직 전 1년 동안의 총 근무기간이 최소한 60일 이상이고, 그에 대한 기본급은 의회의 의원이 받는 기본 보수의 75%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B) 제(6)호에 규정된 제한은 퇴직 종사자가 퇴직 전 1년 동안의 총 근무기간이 최소한 60일 이상이고, 제5편의 제5302조에 따른 지역기본 보수조정을

제외하고, 기본보수가 고위직보수표의 4등급 이상인 직위에 종사했던 퇴직 종사자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8) 예외(exception). - 이 항은 「로비활동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에 따른 로비활동 공개요건 준수와 관련하여 상원 사무국(Secretary of the Senate) 또는 하원 사무국의 공무원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용어 정의. - 이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의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standing), 합동위원회(joint), 특별위원회(select)를 포함한다.

(B) "의회의 종사자"는 상원이나 하원의 종사자를 말한다.

(C) "하원의 종사자"는 하원 의원의 종사자, 하원 위원회의 종사자, 하원 사무국이 보수를 지불하는 양원 합동위원회의 종사자, 하원 지도부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D) "상원의 종사자"는 상원의 종사자, 상원 위원회의 종사자, 상원사무국이 보수를 지불하는 합동위원회의 종사자, 상원 지도부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E) 사무국 임용예산(clerk hire allowance)에 따라 하원 의원의 종사자로 임명된 사람은 그 하원 의원의 종사자이다.

(F) 상원 의원 사무실의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그 상원 의원의 종사자가 된다.

(G) "의회 법제사무국의 종사자"는 의회영선국, 미연방 식물원, 감사원, 정부인쇄소, 의회 도서관, 기술평가 사무국, 의회 예산국, 의회 경찰 그리고 이 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다루지 않은 입법부 소속의 기타 기관, 단체 또는 사무국의 직원 또는 종사자를 의미한다.

(H) "하원 지도부의 종사자"란 제(L)목에서 규정한 하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의 사무실에 임용된 종사자와 하원의 선출된 소수집단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I) "상원 지도부의 종사자"란 제(M)목에서 규정한 상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의 사무실에 임용된 종사자를 의미한다.

(J) "의회 의원"은 상원 또는 하원의 의원을 의미한다.

(K) "하원 의원"은 의회의 하원 의원, 대의원, 상주 대표를 의미한다.

(L) “하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은 하원의 의장, 다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 다수당 원내총무, 소수당 원내총무, 다수당 원내부총무, 소수당 원내부총무, 민주당 운영위원회 의장, 민주당 간부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 공화당 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 공화당 연구 위원회의 의장과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의장을 의미한다.(「윤리개혁법, Ethics Reform Act of 1989」 제102조 제(a)항에 규정된 시행일 이후 도입된 유사한 직위 포함)

(M) “상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은 부통령, 상원 의장 대행, 부의장 대행, 다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 다수당 원내총무, 소수당 원내총무, 다수당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소수당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다수당 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의장, 소수당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일컫는다(「윤리개혁법」 제102조 제(a)항에 규정된 시행일 이후 도입된 유사한 직위 포함)

(f) 외국 기관(foreign entity)에 대한 제한.

(1) 제한. - 제(c)호, 제(d)호 또는 제(e)호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 사람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A) 미연방의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공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외국 기관을 대리하는 행위

(B) 미연방의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공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외국 기관을 돕거나 조언하는 행위

(2) 무역대표부에 대한 특별 규정. - 미연방 무역대표부의 대표 또는 부대표의 경우, 제(1)호에 규정된 제한은 무역대표부에서 퇴직 이후 기간에 상관없이 외국 기관을 대리, 지원 또는 조언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3) 용어 정의. - 이 항의 “외국 기관”은 「외국대리인등록법,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제1조 제(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외국의 정부 또는 제1조 제(f)항의 정의된 바와 같이 외국의 정당을 의미한다.

(g) 파견자에 대한 특별 규정. -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한 부처, 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다른 부처, 기관이나 기타 기관으로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동안 양 부처, 기관이나 기타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로 간주된다.

(h) 적용 제외 기관·局 지정(designations of separate statutory agency and bureaus)

(1) 지정. - 제(c)항과 다음의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는 취지에 따라,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국장이 행정부의 부처·기관의 일부 소속 기관·局의 기능이, 과거의 실태에 근거하여 볼 때, 과도한 영향력 행사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없어 그 부처·기관의 다른 기능과는 구별되고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윤리국장은 규정으로 그 기관·국을 별도의 부처·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윤리국장은 이 항에 따라 내린 지정과 결정을 매년 심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그 지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부처와 기관은 정부윤리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지정 제외. - 대통령실의 소속 기관·국은 제(1)호에 적용 제외 기관으로 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c)항제(2)호제(A)목(i)와 (ii)에 규정된 사람도 제(1)호에 따른 지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i) 용어 정의. - 이 조문에 적용 -

(1)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정보교환이나 방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언급하는 때의 "공무원 또는 종사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제(a)항, 제(c)항과 제(d)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포함

(B) 제(f)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과 의회 의원 포함

(2) "참여(participated)"는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결정·승인·승인거부·권고·자문제공·조사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사안(particular matter)"은 조사·신청·판결이나 결정의 요청·법률 제정·계약·민사상 분쟁·청구·고발·고소·구속 또는 사법절차나 기타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j) 예외(exceptions). -

(1) 정부 업무.

(A) 일반원칙. - 이 조항에 규정된 제한은 미연방과 컬럼비아구를 대리하여 공무를 수행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 또는 지방정부의 선출 공무원으로서 취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 부족 단체와 부족간 협회. - 이 조항에 규정된 제한은 「인디안 민족 자결권과 교육지원법률, Indian Self-Determination and Education Assistance Act(25 U.S.C. 450i(j))」의 제104(j)조에 의하여 허가된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주, 지방정부, 기관, 병원, 단체. - 제(c)항, 제(d)항과 제(e)항에 규정된 제한은 다음 기관의 종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주, 지방정부의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주와 지방정부를 대리하여 정보교환, 방문 및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그 기관

(B) 「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of 1965(20 U.S.C. 1001)」 제101조에 정의된 학위수여 공인 고등교육기관 또는 「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26 U.S.C. 501(c)(3)」의 제501(c)(3)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은 병원, 의료연구기관을 대리하여 정보교환, 방문 및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그 기관

(3) 국제기구. - 이 조항에 규정된 제한은 미연방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를 대리하여 정보교환, 방문, 자문, 지원 활동이 미연방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국무부 장관이 사전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특정 지식(special knowledge). - 제(c)항, 제(d)항과 제(e)항의 제한은 개인의 진술 대상이 전문분야의 특정 지식이고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진술행위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5) 과학 · 기술 정보에 대한 예외. - 정보교환 행위가 소관 부처 · 기관이 승인한 절차에 따른 것이거나,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부처 · 기관의 장이 정부윤리국장과 협의한 후 그 퇴직 직원이나 종사자가 과학, 기술 또는 기타 관련 분야에서 현저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이는 그 특정사안을 다루는데 필요한 자격이며, 퇴직한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참여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증하고 관보에 게재한 경우, 제(a)항, 제(c)항과 제(d)항에 규정하고 있는 제한은 오로지 과학 ·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호에 목적에 따라,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부통령을 포함한다.

(6) 증언의 예외. - 이 조항에서 어느 것도 개인이 선서 증언을 하거나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할 수 없다.

(A)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제(a)항 제(1)호에 규정되는 제한을 받는 미연방의 행정부(독립 기관 포함)의 퇴직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위하여 전문 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B)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제(a)항 제(1)호에 규정되는 제한을 받는 컬럼비아구의 퇴직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컬럼비아구 제외)을 위하여 전문 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7) 정당과 선거위원회(political parties and campaign committees).

(A) 제(B)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c)항, 제(d)항과 제(d)항에 규정된 제한은 후보자, 후보자가 "승인된 위원회", "전국 위원회", "전국연방위원회", "주위원회" 또는 정당의 지위에서 후보자를 대리하여 오로지 정보교환이나 방문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제(A)목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연방선거위원회의 퇴직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연방선거위원회와 정보교환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ii) 제(c)항, 제(d)항 또는 제(e)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정보교환이나

방문하는 시점에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에 고용되었을 경우

(I) 후보자, 승인된 위원회, 전국 위원회, 전국연방위원회, 주위원회 또는 정당

(II) (I)에 규정한 사람 또는 기관만을 대리, 지원, 조언하는 사람 또는 기관

(C) 이 "호"의 취지에 따라

(i) "후보자"는 미연방 또는 주의 공직에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당선되고자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미연방 또는 주의 공직에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당선될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위임한 사람을 의미한다.

(i) "승인된 위원회(authorized committee)"는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당선될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도록 서면으로 승인한 정치 위원회(political committee)를 의미하는데, 제(A)목의 취지에 따라, 한 명 이상의 후보자를 위해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는 정치위원회는 제외된다.

(iii) "전국 위원회(national committee)"는 정당의 정관에 따라, 전국적 차원에서 그 정당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조직을 말한다.

(iv) "전국연방위원회(national Federal campaign committee)"는 정당의 정관에 따라, 그 정당이 후보자로 지명한 의회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대의원, 상주 대표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설립된 조직을 의미한다.

(v) "주 위원회(State committee)"는 정당의 정관에 따라, 주 차원에서 그 정당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조직이다.

(vi) "정당(political party)"은 미연방 또는 주의 선출 직위에 후보자를 지명하는 결합체, 위원회 또는 조직을 말하며, 후보자의 이름은 그 결합체, 위원회 또는 조직의 후보로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vii) "주(State)"는 미연방의 주, 컬럼비아구, 푸에르토리코 자치령과 미연방의 準州(territory) 또는 屬領(possession)을 말한다.

(k) (1) (A) 대통령은 공무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가 공익에 부합하고, 그들의 활동이 연방정부의 이익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면으로 인증할 경우, 제(2)호에 규정한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이 조항에 의하여 부여된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연방정부가 고용한 자 중에서 이 호에 따라 제한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25명 이하이다.

(B) (i) 이 호에 의하여 어떤 사람에게 부여된 면제는 오로지 그 사람이 미연방정부에서 퇴직한 후에 종사하는 활동에 적용되고, 그 사람이 연방정부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이나 종사자로서 근무했던 정부 소유의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ii) (i)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의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직전에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Sandia National Laboratory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이었던 사람의 경우, 이 호에 따른 제한 면제는 그 사람이 연방정부에서 근무를 그만 둔 이후, 위의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제(1)호에 따른 면제는 대통령실(Executive of Office of the President)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를 제외한 행정부의 일반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인증은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며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증서의 사본을 정부윤리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 면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이름과 직위

(B) 면제 사유

(4) 대통령은 이 항에서 규정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5) (A) 이 항에 따라 면제를 받은 각 사람은, 제(B)목에 규정된 6개월 단위로 이 조항에서 금지한 활동에 종사한 여부를 제(B)목에 따라 진술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B) 제(A)목의 보고서는 연방정부에서 퇴직(이 항에 따른 면제가 부여된 것과 관련하여)한 날로부터 2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 보고서는 대통령과 정부윤리국장에게 보고대상 기간인 6개월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호에 따라 정부윤리국장에게 제출된 모든 보고서는 공람과 복사가 가능해야 한다.

(C) 제(A)목과 제(B)목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면제를 폐지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면제의 폐지를 통보해야 한다. 면제의 폐지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휘되고, 그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유효하다.

(D) 이 항에 따라 면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제(A)목과 제(B)목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 조직(civil service)에 임명될 수 없다.

(E) 이 항에서 사용된 "공무원 조직"은 제5편의 제2101조의 정의에 따른다.

(l) 전직 파견자에 의한 계약 조언(contract advice by former details). - 제5편의 제37장에 따른 기관에 파견된 민간부문 단체의 종사자는 누구든지 그 파견임무가 종료된 이후 1년 이내에, 그 파견기관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미연방 제외)을 고의적으로 대리, 지원, 조언할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8 U.S.C. 제208조. 개인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acts affecting a personal financial interest)

(a) 제(b)항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연방의 행정부와 독립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 미연방준비은행의 의장, 공무원이나 종사자, 특수정부 종사자를 포함한 컬럼비아구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누구든지 결정·승인·승인 거부·권고·조언 제공·조사 등을 통하여 사법절차나 기타 법적 절차·신청·판결이나 기타 결정의 요청·계약·청구·민사상 분쟁·고발·고소·구속 또는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부양자녀, 일반 社員, 그가 직원, 이사, 수탁자, 사원 또는

종사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 공직자의 향후 취업과 관련하여 협상 중에 있거나 합의를 한 사람이나 조직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타 특정 사안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b) 제(a)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그의 채용에 책임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사법절차나 기타 법적절차·신청·판결이나 기타 결정의 요청·계약·민사상 분쟁·고발·고소·구속 또는 기타 특정사안의 성격과 배경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하고, 재정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공개하고, 정부가 그 공무원이나 종사자로부터 기대하는 복무의 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그 이해관계가 너무 미미하다고 그 고위공직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2) 정부윤리국장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너무 희박하거나 사소하여 그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a)항의 요건으로부터 면제될 경우. 이 때 그 규정은 이 조에 따른 모든 또는 일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관보에 게재된다.

(3) 「연방자문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에서 정의한 자문위원회에 근무하는 특수정부종사자의 경우(그런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평가 중인 사람 포함), 그 종사자의 임명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이 「정부윤리법」에 따라 제출된 재산공개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종사자의 근무 필요성이 수반된 재정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서면으로 인증한 경우

(4) 수반된 특정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그 공무원이나 종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 부양자녀가 다음과 같이 타고난 권리 때문에 발생한 경우

(A) 인디언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미연방으로부터 받는 특별 프로그램이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알라스카 원주민 분쟁해결법, Alaskan Native Claims Settlement Act」에 따라 설립된 알라스카 원주민 마을 공사(Alaska Native village corporation)를 포함한 인디언 부족, 무리, 부족연합, 기타 조직된 그룹이나 공동체

(B) 미연방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디언 배당지역 또는 미연방의 승인 없이 양도가 불가능한 배당지역

(C) 미연방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인디언 청구기금

특정사안이 인디언 배당지역, 청구기금, 인디언 부족, 무리, 부족연합, 기타 조직된 그룹이나 공동체 또는 특정한 당사자로서 알라스카 마을공사와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

(c) (1) 제(b)항의 제(1)호의 취지에 따라, A와 B급의 연방준비은행 국장,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진(board of governors)은 채용에 대한 책임을 갖는 고위공직자로 간주된다.

(2) 제(b)항의 특정한 호에 따른 면제 가능성은 제(b)항의 다른 호에 따라 부여된 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d) (1) 제(b)항 제(1)호 또는 제(b)항 제(3)에 따른 면제 승인 결정의 사본은 신청하는 대로, 「정부윤리법」 제10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제를 승인하는 기관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 결정을 공개하는데 있어, 그 결정에 제5편의 제552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결정 기관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b)항 제(3)호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각 재정적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는 「정부윤리법」에 따라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재산공개보고서보다 광범위해서는 아니 된다.

(2) 정부윤리국장은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한 후, 제(b)항에 따른 적용 면제 증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통일된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A) 적용 면제 사항을 나열하고 설명

(B) 이해관계가 사소하여 해당 종사자의 청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해관계의 유형과 관련된 지침의 제공

18 U.S.C. 제209조. 미연방만이 지불하는 공무원과 종사자의 보수(salary of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payable only by United States)

(a) 미연방의 행정부, 독립행정기관, 컬럼비아구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로서 그의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보수, 기부금 또는 보수의 보충을 받는 자가 주, 카운티, 시청의 재무부로부터 기부 받는 것을 제외하고, 미연방 정부가 아닌 출처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미연방 정부가 아닌 출처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 이 항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개인, 사원, 협회,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그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보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수를 지불하거나 기부금을 주는 경우, 이 편의 제216조에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b) 여기에서 어느 것도 미연방의 행정부, 독립행정기관이나 컬럼비아구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전 사용자가 운용하는 선의의 연금, 퇴직연금, 단체건강 · 사고보험, 이익 배당(profit-sharing), 주식 상여(stock bonus), 기타 직원후생 · 급부제도(employee welfare or benefit plan)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을 금지되지 않는다.

(c) 이 조항은 특수정부종사자, 무보수로 근무하는 정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 또한 그들에게 보수를 지불하거나 기부금을 주거나 보수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d) 이 조항은 제5편의 제41장에 따른 기부금, 상금 또는 기타 경비의 제공 및 수령을 금지하지 않는다.

(e)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직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부수적인 실제 이주비용의 지불이나 수령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령, 직원교류 프로그램이 법령 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수립되고, 참가기간이 365일을 넘지 않으며, 90일 이상 연장이 불가하고, 해외 임무 수행 중인 참여자의 경우 365일 이상 연장이 불가한 경우이다.

(f) 이 편의 제351조 또는 제1751조에 규정된 범죄 발생 중에 부상을 당한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국세법」의 제501조(c)(3)에 규정된 조직으로부터, 그 법률의 제501조(A)에 따라 면세된 기부금 또는 금품을 지불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g) (1) 이 조항은 제5편의 제37장에 따라 파견된 민간부문 단체의 종사자가 그 장에 따라 그런 단체로부터 보수와 수당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이 항에서 "기관"은 기관(제5편의 제3701조의 규정에 따른)과 컬럼비아구의 최고기술공무원사무국(Office of the Chief Technology)을 의미한다.

18 U.S.C. 제210조. 임명직 획득을 위한 제공(offer to procure appointive public office)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미연방의 임명직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약속한 대가로, 그 사람, 기업 또는 법인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부과된다.

18 U.S.C. 제211조. 임명직 획득을 위한 수락 및 요청(acceptance or solicitation to obtain appointive public office)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미연방의 임명직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을 약속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정치 기부금, 개인적인 보수, 금품을 요청하거나 받는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부과된다.

누구든지 미연방 행정부의 부처나 기관에 특정인의 이름을 알려주어 미연방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자, 또는 특정인이 그런 취업을 이유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한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부과된다. 이 조항은 미연방의 행정부처와 기관의 서면 요청에 따른 직업소개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U.S.C. 제212조. 금융회사 조사관에게 대부금 또는 사례금 제공(offer of loan or gratuity to financial institution examiner)

(a) 총칙. - 제(b)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직원, 이사 또는 종사자가 은행, 지점, 대리점, 단체, 법인, 협회 또는 기관을 조사하거나 조사할 권한을 가진 조사관이나 조사보좌관에게 대부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한 경우, 누구든지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된다.

(1) 이 편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2) 대부 받은 금전이나 수수한 사례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b) 규제. - 연방 금융회사 규제기관(Federal financial institution regulatory agency)은 연방 금융회사 규제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이 조항에 따른 신용대출의 신청과 수령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신청과 수령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담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c) 정의. - 이 조항에서

(1) 조사관. - "조사관"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A) 연방 금융회사 규제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조사하는 주 법률(laws of any State)에 따라 임명된 사람

(B)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 법률에 따라 선출된 사람

(2) 연방 금융회사 규제기관. - "연방 금융회사 규제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통화감사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C) 저축금융회사 감독국(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D) 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E) 연방주택금융금고(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 농업신용국(the Farm Credit Administration)

(G) 농업신용보험공사(the Farm Credit System Insurance Corporation)

(H) 중소기업청(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3) 금융회사. - "금융회사"는 신용조합(credit union), 연방준비은행, 연방주택대부은행, 예금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4) 대부. - "대부금"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개방형 소비자 신용계획(open end consumer credit plan)에 따라 설치된 신용카드계좌 또는 조사관의 주거주지인 주택을 담보로 한 대부금을 제외한다.

(A) 일반적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계좌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부조건을 조사관도 똑같이 갖추고 있는 경우

(B) 위의 신용카드계좌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거래조건 또는 그런 신용카드계좌나 주택담보대출로 조사관에게 제공된 대부금액이 개방형 소비자 신용계획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대부카드소지자(borrowers card holders)에게 동일한 금융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신용카드계좌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조건보다 조사관에게 일반적으로 우대가 아닌 경우

(C)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대부금이 그 신청자의 주거주지에 관련된 경우

18 U.S.C. 제213조. 금융회사 조사관의 대부금 또는 사례금 수수(acceptance of loan or gratuity by financial institution examiner)

(a) 총칙. - 금융회사 조사관이나 조사보좌관이 그의 조사대상인 은행, 지점, 대리점, 단체, 법인, 협회, 기관 또는 그 규제대상과 관련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대부금이나 사례금을 받는 경우, 누구든지 다음의 처벌을 받는다.

(1) 이 편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는다.

(2) 대부 받은 금전이나 수수한 사례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3) 조사관의 직위를 박탈당한다.

(b) 정의. - 이 조항에서, "조사관", "연방금융회사규제기관"과 "대부금"은 제21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8 U.S.C. 제214조. 연방준비은행 대부의 획득과 기업어음 할인을 위한 제공 (offer for procurement of Federal Reserve bank loan and discount of commercial paper)

(a) 누구든지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또는 간접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하여, 선불금(advance), 대부금(loan), 신용의 기한연장(extension of credit), 채권의 할인·구매(discount or purchase of any obligation)와 앞에서 언급된 것에 관련된 위탁(commitment)을 획득하거나 획득을 시도하기 위하여, 수수료·커미션·사례금·금품을 약정·증여·수령하거나 증여·수령할 것을 합의하거나 동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런 수수료·커미션·사례금·금품과 협의(arrangement)나 묵계(understanding)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실이, 그런 선불금·대부금·신용의 기한연장·할인·구매·위탁의 신청이나 요청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공개되지 않는 한,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8 U.S.C. 제215조. 대부금 획득을 위한 수수료 또는 선물의 수수(receipt of commissions or gifts for procuring loans)

(a)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1백만 이하의 벌금과 수령 · 제공 · 약속 · 요청 · 요구 · 수락 또는 수락에 동의한 물건의 금전적 가치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중 그 액수가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 금융회사의 사업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어떤 사람에게 금품을 부당하게 증여,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임원, 이사, 종사자, 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례금을 주는 자

(2) 금융회사의 임원, 이사, 종사자,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그 회사의 사업과 거래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례금을 줄 의도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요청, 요구하거나 수락, 그 수락에 동의하는 자

(b) 이 조항은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선의의 봉급, 임금, 수수료 또는 기타 지불되는 보상, 지불되거나 변제된 비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c) 금융회사를 규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방기관들은 금융회사의 임원, 이사, 종사자,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이 조항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정해야 한다. 연방기관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야 한다.

18 U.S.C. 제216조. 처벌 및 금지 명령(penalties and injunctions)

(a) 이 편의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또는 제209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누구든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편에 규정된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는다.

(2) 위반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 편에 규정된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는다.

(b) 법무부 장관은 이 편의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또는 제209조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자를 미연방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증거우세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51% 이상)에 의하여 그런 위반행위를 입증한 경우, 그 위반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50,000 이하의 민사벌금과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거나 제공한 금액 중 그 액수가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항에 따른 민사벌금의 부과는 미연방이나 특정인에게 법률상 적용되는 다른 형사 또는 민사 법률, 보통법 또는 행정상 처리방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c)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이 편의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또는 제2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중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관련 미연방 지방법원에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그 행위가 위반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그 사람에게 그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미연방이나 다른 사람에 적용되는 다른 처리방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18 U.S.C. 제217조. 농가부채 조정 대가 수령(acceptance of consideration for adjustment of farm indebtedness)

미연방이나 기관을 대리하는 공무원, 종사자 또는 사람이 제12편의 제1150조, 제1150a조와 1150b조에 규정된 농가부채에 대한 절충(compromise), 조정(adjustment) 또는 무효화(cancellation)와 관련하여 수수료, 커미션, 선물 기타 대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 편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8 U.S.C. 제218조. 이 장을 위반한 업무처리의 무효화, 미연방의 권리회복 (voiding transaction in violation of chapter; recovery by the United States)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리방법(remedies)에 추가하여 대통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contract)·대부(loan)·장려(grant)·보조(subsidy)·면허(license)·소유권(right)·허가(permit)·특허(franchise)·사용권(use)·인가(authority)·특혜(privilege)·특전(benefit)·인증(certificate)·판결(ruling)·결정(decision)·평가(opinion), 지급·수여·지불·제공·공표된 세금·사용요금 요율표(rate schedule award, granted, paid, furnished, or published), 업무 수행, 물건의 이전·전달을 수행한 미연방의 기관, 공무원, 종사자 또는 위의 업무를 대리하는 일반인이 이 章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난 경우, 대통령·관련부처 장관·기관장은 그 업무처리를 무효화하고 철회하도록 선언할 수 있으며, 미연방은 법률·계약에 규정된 처벌에 추가하여 지출된 금액이나 이전·전달된 물건 또는 그것의 합리적인 가치를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18 U.S.C. 제219조. 외국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공무원과 종사자(officers and employees acting as agents of foreign principals)

(a) 누구든지 공직자이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기관, 「로비활동공개법,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제3(6)조에 정의된 외국 기관의 대리행위와 관련하여, 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로비스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행위를 하는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b) 특수정부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장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증한 경우, 그가 외국 기관의 대리인으로 채용되는 것에서는 이 조항의 어떠한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기관장은 이 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리인이 제출한 등록서와 기타 서류를 접수하고 「외국대리인 등록법」의 제6조에 따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공직자"는 의원의 취임요건을 갖추기 전후의 의원, 대의원이나 상주대표 또는 부처, 기관, 支局의 위임을 받아 미연방, 컬럼비아구, 부처, 기관, 支局을 대신하거나 대리하는 직원, 종사자 또는 일반 사람을 말한다.

18 U.S.C. 제220조.~제222조(제215조~제217조로 번호 이동)

18 U.S.C. 제223조.(폐지)

18 U.S.C. 제224조. 운동경기에서의 뇌물(bribery in sporting contests)

18 U.S.C. 제226조. 금융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기업(continuing financial crimes enterprise)

(a)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누구든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1천만, 단체인 경우에는 $2천만을 벌금으로 부과 받고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1) 금융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기업을 창설, 운영 또는 감독하는 자가

(2) 그런 기업으로부터 24개월 동안 총 수령금액이 $5백만 이상의 금액을 받은 경우

(b) (a)항의 목적에 따라, "금융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기업"은 이 편의 제215조, 제656조, 제657조,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14조, 제1032조, 제1344조 또는 금융기업과 관련되는 제1341조, 제13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를 연속적으로 최소한 4명이 공모하여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18 U.S.C. 제226조. 항구안전 관련 뇌물(bribery affecting port security)

18 U.S.C. 제227조. 민간단체의 고용결정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영향(wrongfully influencing a private entity's employment decisions by a Member of Congress)

미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상주대표, 종사자가 민간단체의 고용결정이나 고용관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오로지 당파적 정치관계에 근거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누구든지,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되며, 미연방의 명예직, 위임직이나 유급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

(1) 공무상 행위를 취하거나 거부하거나, 공무상의 행위를 취하거나 거부하도록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2) 다른 공무상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정부가 아닌 출처로부터 보수를 보충 받는 행위 제한

(Summary of the Restriction on Supplementation of Salary)

미연방법전 제18편 제209조(이해충돌방지법)

(18 U.S.C. §209)

미국 정부윤리청

(Office of Government Ethics)

목 차

Ⅰ. 금지사항(Prohibition)

A. 보수의 수령, 보수의 기부 또는 보충(Receipt of Salary, or Any Contribution to or Supplementation of Salary)

B. 대가・보상(Compensation)

C. 공직자의 직무수행(Services as Government Employee)

1. 직무수행의 본질(Nature of Services)

2. 수령자와 제공자의 의도(Intent of the Parties)

a. 의도 표시(Express Intent)

b. 영향력 행사 유무(Ability to Influence)

c. 거래의 반복 유무(Pattern of Dealings)

d. 공직자의 지위(Official Position)

e. 공직자 사이의 보수 지급(Employee Payor)

f.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한 보수 지급(Similar Payments to Others)

g. 동정심에 의한 제공(Payor motivated by Sympathy)

h. 신의・성실한 사회봉사상 수상(Bona Fide Public Service Awards)

3. 공직자의 범위(Employee)

D. 정부를 제외한 사람・법인(Any Person Other Than the Government)

Ⅱ. 특례・예외 사항(Exceptions)

A. 주정부・지방정부의 제공(Payment from State or Local Governments)

B. 공직자 연금 또는 복지제도(Employee Pension or Benefit Plans)

C. 특수정부종사자 및 무급 종사자(Special Government Employee and Uncompensated Employees)

D. 공직자교육훈련법률(Government Employee Training Act)

E. 직원 교류, 협력・유대 강화 프로그램(Executive Exchange or Fellowship Programs)

F. 특정한 범죄로 부상당한 사람(Persons Injured During the Commission of Certain Offenses)

Ⅲ. 행동강령 및 그 밖의 규칙과의 관계(Relationship to Standards of Conduct and Other Rules)

Ⅰ. 금지사항(Prohibition)

연방법전 제18편 제209조는 뇌물수수, 부정이득 획득 및 이해충돌을 다루는 형법 규정의 전반적인 개정의 일환으로서, 1962년 제정되었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간 출처(개인·법인 등)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 이외의 사람이나 조직·단체가 공직자의 보수에 기부를 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전 제18편 제1914조를 승계했다. 연방법전 제18편 제209조 제(a)항은 다음과 같은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Section 209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was enacted in 1962 as part of a general revision of the criminal statutes dealing with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It is the successor to 18 U.S.C. §1914, which prohibited Government employees from receiving any salary from a private source in connection with their Government service, and any non-Governmental person or organization from contributing to, or supplementing, an employee's salary. The prohibition, which is found at 18 U.S.C. §209 (a), states:)

> 연방의 행정부, 독립행정기관, 컬럼비아특별구의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그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보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출처로부터 보수, 보수에의 기부 또는 보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누구든지 제18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주정부, 카운티 또는 시정부의 재무부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Whoever receives any salary, or any contribution to or supplementation of salary, as compensation for his services as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f any independent agency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from any source other tha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except as may be contributed out of the treasury of any State, county, or municipality; or)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연방정부가 아닌 출처로부터 보수, 보수에의 기부 또는 보충을 받는 것이 이 항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그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보수에의 기부 또는 보충해 주는 개인, 동업자, 협회·단체, 기업 또는 그 밖의 조직은 그 누구든지 제18편의 제216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된다.

(Whoever, whether an individual, partnership, association, corporation, or other organization pays, or makes any contribution to, or in any way supplements the salary of, any such officer or employee under circumstances which would make its receipt a violation of this subsec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enalties set forth in section 216 of this title.)

제209조 제(a)항은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C)연방정부의 공직자로서 직무수행의 (B)대가·보상으로 (D)연방정부가 아닌 출처로부터 (A)보수, 보수에의 기부 또는 보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공자의 범죄는 수령자의 범죄를 참고하여 정의하게 되는데, 즉, 공직자가 제공자로부터 보수에의 기부 또는 보충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에의 기부 또는 보충을 해준 제공자의 행위는 필요적 공범관계를 형성한다.
(Section 209(a) has four elements. It prohibits: (1)receipt of salary or contribution to or supplementation of salary, (2)as compensation, (3)for services as 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4)from any source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The payor offense is defined by reference to the payee offense, that is, making a contribution to or supplementation of salary that would violate the payee offense if received by an employee.)

제209조의 목적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의 대가·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정부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 그 공직자가 처하게 되는 분열된 충성심(보수를 지급하는 연방정부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연방정부가 아닌 개인·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공평하게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수를 지급해준 개인·단체에게 편향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09조는 외견상 부정행위로 보이는 것도 방지하고, 미합중국에 실제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제20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보수가 지불된 경우만을 요구하고 있다.
(Section 209 is intended to prevent the divided loyalty of a Government employee who is paid an economic benefit by a non-Governmental source to compensate the employee for his official duties. It is designed to prevent

even the appearance of wrongdoing and may apply to conduct that has caused no actual injury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apply, the statute requires only that the payment compensate the employee for his services to the Government.)

제209조는 보수 제공자가 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어떠한 거래 또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보수 제공자가 그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부윤리청의 비공식적 자문서한(83x15, 1983.10.19.)을 참조하시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통해서 보수 제공자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에게 보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일한 서한에서, 제209조는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부패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보수 지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은 제209조의 제정을 이끌어낸 본래의 정책적 관심을 불러온다.(The statute applies even if the payor has no dealings or relations with the employee's agency and is not attempting to influence the employee. See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83 x 15dated October 19, 1983. It prohibits payments to even those employees who are unable to benefit their payors through their official duties. Id. It applies even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quid pro quo, and to payments which lack an identifiable potential for corruption. These situations give rise to the original policy concerns that led to the enactment of section 209:)

첫째, 외부의 보수 제공자는 공직자의 경제적 생명선 중 하나를 끊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갖게 된다. 둘째, 공직자는 외부 제공자가 특혜를 받도록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에도, 외부의 보수 제공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실제적인 위험 때문에, 외부의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는 동료 공직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과 비난을 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보이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

(First, the outside payor has a hold on the employee deriving from his ability to cut off one of the employee's economic lifelines. Second, the employee may tend to favor his outside payor even though no direct

pressure is put on him to do so. And, third, because of these real risks, the arrangement has a generally unwholesome appearance that breeds suspicion and bitterness among fellow employees and other observers.)

크랜던 대 미연방정부, 494 U.S. 152, 165(1990)(이해충돌 및 연방 직무 211(1960), 뉴욕시 변호사협회 인용)). 법무법인 143, 145(1984)의 8. Op.를 또한 참고하시오. Crandon v. United States, 494 U.S. 152, 165 (1990) (quoting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Conflict of Interest and Federal Service 211 (1960)). See also 8 Op. Off. Legal Counsel 143, 145 (1984).)

연방법전 제18편 제209조의 네 가지 요소를 각각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Each of the four elements of 18 U.S.C. §209 is analyzed below.)

A. 보수의 수령, 보수의 기부 또는 보충(Receipt of Salary, or Any Contribution to or Supplementation of Salary)

보수, 보수에의 기부 또는 보충은 공직자가 수령한 금전적 가치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공직자가 받는 현금과 현물 모두를 포함하며, 일괄적으로 지급된 보수 및 정기적으로 지급된 보수를 모두 포함한다.
(Salary, or any contribution to or supplementation of salary, can be any thing of monetary value received by an employee. This includes both cash and in-kind payments to employees, and includes both lump-sum payments and periodic payments. See U.S. v. Oberhardt, 887 F.2d 790 (7th Cir. 1989) (one-time payment of $200); U.S. v. Pezzello, 474 F. Supp. 462 (N.D. Tex. 1979) (one-time payment of $1,000); U.S. v. Gerdel, 103 F. Supp. 635, 638 (E.D. Mo.1952) (one-time payment of $25).

사례 1 : 고용평등위원회의 현장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상급자로부터 고용평등위원회의 현장 사무소가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가에 대하여 로펌에서 강연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해당 로펌은 그 공직자에게 500$를 지불했다. 공직자는 자신의 보수의 보충으로 받은 것

이다.(강연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807조(행동강령)에 따라 그 사례금 지급은 금지되어 있다.)

(**Example 1** : An employee in a field offic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is assigned by his supervisor to present a speech to a law firm about how an EEOC field office processes complaints. The law firm pays the employee $500 for his time. The employee has received a supplementation to his salary.(Payment of the honorarium would also be prohibited by 5 C.F.R. §2635.807 since the speech relates to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사례 2 : 어느 대학교수는 인사관리처에서 직위를 맡기로 수락하고, 대학으로부터 무급으로 휴직하였다. 기타의 혜택이 없다면, 무급의 휴직 상태는 그의 보수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휴직 상태는 확인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연방법전 제18편 제208조에 따라, 그 대학교수는 휴직 중인 대학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빤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사안으로부터 제척되어야 한다.)

(**Example 2 :** A professor at a university accepts a position with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and is granted an unpaid leave of absence from the university. Absent any other benefits, the unpaid leave status is not a supplementation to his salary because it does not have an ascertainable monetary value. (However, under 18 U.S.C. §208, he may have to be recused from any particular matter that would have a direct and predictable effect on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versity.)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보수 수령자가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크랜던 대 연방정부(494 U.S. 152, 159.) 판례를 참고하시오. 크랜던 판례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제공받은 퇴직금 지급은 제209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공직임용 상태는 제209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같은 판례에서, 그러한

보수 지급이 부적절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법원은 "금지되는 행위는 단지 보수의 보충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09조 제(a)항 위반여부는 보수가 지급된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1991년 1월 4일과 1991년 7월 2일에 발행된 정부윤리청의 비공식 자문 서한을 참고하시오.

(As noted above, there is no violation of section 209 if compensation is paid before the payee becomes a Government employee. See Crandon v. United States, supra, 494 U.S. 152, 159. In Crandon, the Court determined that a severance payment made before the petitioners entered Government service was outside the scope of section 209 because "employment status is an element of the offense[under section 209]." Id. While acknowledging that such payments give rise to a possible appearance of impropriety, the Court held that, "since the prohibited conduct is merely the receipt or the payment of the salary supplement, it follows that a violation of §209(a) either is, or is not, committed at the time the payment is made." Id. See also OGE Informal Advisory Letters 91 x 2 dated January 4, 1991, and 91 x 21 dated July 2, 1991.)

사례 3 : B회사가 해군성에서 근무하기로 한 소속 직원들 중의 한명에게 183,000$를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직원이 B회사를 퇴직하여 해군성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감액된 보수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만약 그 수령자가 해군성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그것은 제209조 제(a)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그러나, 그 보수 지급은 또한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파트에 있는 연방 행정부 공직자 윤리행위 기준(행동강령)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보수 지급은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502조에 따라 과도한 보수 지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Example 3 :** Company B makes a lump-sum payment of $183,000 to one of its employees who has accepted a position with the Department of the Navy. The payment is intended to compensate the Company B employee for the reduced pay he will receive by leaving

Company B to work for the Navy. If the compensation is paid before the recipient begins his employment with the Navy, it is not made in violation of section 209(a). (However, the payment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the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Standards of Conduct) in 5 C.F.R. part 2635. For example, it may be considered an extraordinary payment under 5 C.F.R. § 2635.503.)

B. 대가・보상(Compensation)

"～에 대한 대가・보상으로" 라는 말은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민간부문의 사용자로터 지급받은 보수와의 사이에 관계성을 요구한다. "공직(수행)과 민간부문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것"만으로는 제209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41 Op. 법무부 장관. 217, 220). 구체적으로는, 보수의 지급은 공직에 종사하거나 공직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보상이어야만 한다. 제209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지급받은 금품과 공직자가 수행한 직무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1981년 10월 2일 발행된 정부윤리청의 비공식 자문 서한을 참고하시오.

(The language "as compensation for" requires a connection between public employment and the private payment. There can be no violation of section 209 from the "mere coincidence of Government employment and receipt of compensation from a private employer. "41 Op. Att'y Gen. 217, 220 (1955). Specifically, the payment must be compensation for undertaking or performing Government service. To make out an offense under section 209, there must be a direct linkage between the thing of value paid to the employee and the official services rendered by the employee. See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81 x 31 dated October 2, 1981(quoting Manning, supra, at 163).

사례 4 : 국립과학재단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직무는 대학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들과 효율적인 연락체계를 개발하고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

다. 그 공직자는 한 대학에서 국립과학재단의 공식적인 대표로서 강연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해당 대학은 그 공직자에게 강연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2,000$를 제공했다. 대학으로부터의 사례금 지급과 공직자의 사례금 수령은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다.(사례금의 지급은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파트의 행동강령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강연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례금은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807조에 따라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Example 4** : The duties of an employee of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include developing and fostering effective liaison with researchers and administrators of universities. The employee is asked to speak as an official representative of NSF at a university. The university offers the employee a $2000 honorarium for his speech. The payment of the honorarium by the university, and the acceptance of the honorarium by the employee, would violate section 209.1(Payment of the honorarium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the Standards of Conduct in 5 C.F.R. part 2635. For example, if the speech relates to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the honorarium may be prohibited by 5 C.F.R. §2635.807.)

비록 공직자의 보수에의 기부가 민간단체에서 최초로 유래된 것일지라도, 연방정부가 공직자에게 지급한 대가・보상은 제20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공직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정부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실제로 그 기부금은 정부 자체에 남아 있으며, 정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Compensation paid to an employee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violate section 209, even if there is a contribution to the employee's salary that can be traced back to a private entity. As long as the payment to the employee comes from the Government, "in reality the contribution is to the Government itself, and is in furtherance, not in prejudice, of its interests." 33 Op. Att'y Gen. 273, 275 (1922).)

예를 들자면, 연방의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민간부문의 산업계에 이전해주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기술이전법률에 따라, 정부기관은 발명가인 공직자에게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그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최소 15%를 지급하고 있다. 연방법전 제15편 제3710c(a)(1)(A)(i)조를 참고하시오. "어느 공직자가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연방기관으로부터 연방기술이전법률 제7조에 따르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그 보수지급은 제209조 제(a)항의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For example, under the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6(FTTA), Pub. L. No. 99-502, as amended, which provides incentives for the transfer of new technologies developed in Federal laboratories to private industry, Government agencies are required to pay the employee-inventor at least 15% of the royalties the agency receives under any licensing agreement. See 15 U.S.C. § 3710c(a)(1)(A)(i). "Since an employee receives the [FTTA] section 7 payments from the federal agency holding the rights to the invention, the payments are not subject to section 209(a)'s prohibition." Letter from Walter Dellinger,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Office of Legal Counsel, to Stephen Potts, Director, Office of Government Ethics (Sept. 3, 1993)

사례 5 : 사기업체와 협력하여, 에너지성에 근무하는 어느 공직자는 에너지성의 연구소에서 사람들의 의류에서 폭탄 잔류물을 검색하는 기계를 개발하였다. 그 공직자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미연방정부에 양도하였다. 에너지성은 연방기술이전법률에 따라, 에너지성이 그 발명에 대한 특허로부터 받는 지적재산권 사용료의 일부를 공직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보상은 특허권의 피허가자로부터 에너지성에, 에너지성에서 그 공직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그 공직자가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공직자가 연방정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제209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mple 5 :** In cooperation with a private company,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of Energy(DOE) develops, in a DOE laboratory, a

machine that detects bomb residue on people's clothing. The employee assigns her rights in the invention to the United States. DOE pays the employee some of the royalties that DOE receives from licensing the invention, pursuant to the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6. Since the compensation is paid by the licensee to DOE and then from DOE to the employee, the employee's acceptance of the royalty payments would not violate section 209. A payment to an employee from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oes not violate section 209.)

C. 공직자의 직무수행(Services as Government Employee)

공직자에게 지급된 대가·보상은 "그 공직자가 정부에 제공한 서비스(직무)에 대한 것인 경우에만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제209조는 정부에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사람이나 조직·단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41 Op. 법무부장관 217, 220(1955)(현행 제209조 이전의 개정판 처리). 다시 말해서, 제209조를 위반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급받는 대가·보상이 "공직자가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때문이라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미연방대 문테인 판례(610 F.2d 964, 969-970(D.C. Cir 1979))를 참조하라.(문테인이 지급받은 출장비용은 문테인이 공직자로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책임과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209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Compensation paid to a Government employee violates section 209 only if it is "for the services [he] rendered to the Government.... [Section 209] does not, however, prohibit payment for services rendered exclusively to private persons or organizations and which have no connection with the services rendered to the Government." 41 Op. Att'y Gen. 217, 220 (1955)(dealing with prior version of the statute). In other words, a violation of section 209 requires that compensation be paid for "the services an employee provides, or is expected to provide, to the Government."

See generally, United States v. Muntain, 610 F.2d 964, 969-970 (D.C. Cir. 1979) (payment of Muntain's travel expenses did not violate section 209 because it was "for services having nothing to do with..... any responsibilities Muntain may have had to the Government as 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사례 6 : 환경보호청에 근무하는 어느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일환으로서, 소책자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 소책자를 집필하는 동안에 그 공직자는 퇴직한 이후에 그 소책자를 출판하기로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그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선지급 보너스 5,00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직자가 정부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5,000$를 수령하도록 체결된 계약사항은 대가·보상으로 보여진다.(이 계약은 또한 그 소책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 제2635.807조를 포함하여 연방시행령 제5편 2635파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
(**Example 6 :** An employee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begins to write a handbook as part of his official duties. While writing the handbook, the employee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publishing company to publish the handbook after he resigns from the EPA. The contract provides that the employee will receive a $5,000 signing bonus after leaving the EPA. The agreement to receive the $5,000, made while the employee is an employee of the Government, constitutes compensation. (This arrangement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the Standards of Conduct in 5 C.F.R. part 2635, including section 2635.807 since the handbook relates to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사례 7 : 국방부에 근무하는 어느 공직자는 미사일 유도시스템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컴퓨터의 결함을 발견했다. 그 결함으로 비난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그 미사일 유도시스템 제조사는 5개의 주요 신문사의 전면광고를 통해 그 결함을 찾아낸 그 공직자를 칭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그 광고는 공직자가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대가·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mple 7 :**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discovers a computer glitch that could have severely hampered a U.S. missile guidance system. The manufacturers of the system, who would have been blamed for the error, take out full page advertisements in five major newspapers praising the employee for finding the error. The advertisements are not compensation to the employee because the employee has not received any thing of monetary value.)

1. 직무수행의 본질(Nature of Services)

공직자의 직무는 공직자가 수행하도록 소속기관이 부여한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어느 공직자가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의 대가로 정부 이외의 출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이는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외부 소득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연방법전 제5편 부록 제501조 제(a)항, 행정명령 제12731호 제102조를 참조하시오.)

(Services as an employee may be thought of a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signed by competent authority for performance by the employee. If an employee is compensated by a non-Government source for services other than those he provides to the Government, there can be no violation of section 209.)

(However, such payments could violate the outside earned income limitations applicable to certain employee. see 5 U.S.C. app. 501(a); Executive Order No. 12731 § 102.)

제209조는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지급하는 보수·보상 등이 공직자가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흔히 관련된다. 41 Op. 법무부 장관의 41 Op. 217, 220(1955) 및 1986년 8월 7일 발행된 OGE 비공식 자문 서한을 참고하시오. 예를 들면, 제209조의 위반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의 일환으로 준비한 기고나 강연의 대가로 사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법무부 법무실의 2 Op. 361, 362(1977)를 참고하시오.

(Section 209 is often implicated when the payment is for services that are the same as or similar to those the employee provides to the Government. See 41 Op. Att'y Gen. 217, 220 (1955);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86 x 8 dated August 7, 1986. For example, a violation of section 209 would occur if an employee accepted fees for articles or speeches prepared as part of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See 2 Op. Off. Legal Counsel 361, 362(1977).)

반면에, 공직자가 보수의 제공자에게 정부에 제공한 것과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은 공직자가 정부에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83년 3월 25일에 발행된 OGE 비공식 자문 서한을 참고하시오("공직자가 받은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 및 책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이어트 책자를 제작하는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On the other hand, if an employee receives compensation for rendering a service to the payor different in kind from the one rendered to the Government, it is unlikely that the compensation is also for the employee's services to the Government. See, e.g., OGE Informal Advisory Opinion 83 x 4 issued March 25, 1983 (no section 209 violation where "any monies received by [the employee] would be explicitly in return for his efforts to produce a diet book having nothing to do with his 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사례 8 : 국가보건기구 소속 공직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중에 시장조사기업으로부터 국가보건기구의 의료장비 조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국가보건기구를 위한 그 공직자의 직무의 일환으로, 그는 일반국민과 국가보건기구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똑같은 조달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시장조사기업에 조달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그 공직자는 국가보건기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똑같은 기능을 그 시장조사기업에게 수행했다. 만약 그 공직자가 그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Example 8 :** An employee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is asked by a market research firm to provide information, during non-duty hours, about NIH procurement procedures related to medical instruments. As part of the employee's duties for NIH, he provides the same procurement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to companies doing business with NIH. By providing the procurement information to the market research firm, the employee would be performing the same function for the firm that he is required to perform for NIH. The employee would violate section 209 if he accepts compensation for providing the information to the firm.)

사례 9 : 법무부의 반독점국에 근무하는 검사는 시민법에 관하여 잡지에 기고문을 썼다. 잡지사는 그 기고문을 쓴 검사에게 1,000$를 지급했다. 만약 그 기고문을 쓴 것이 법무부를 위한 직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제209조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잡지사로부터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기고문에 대한 원고료는 연방시행령 제5편 2635파트의 행동강령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기고문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807조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
(**Example 9 :** A staff attorney in the Antitrus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writes a magazine article about civil rights law. The magazine pays authors of such articles $1,000. The employee could accept the compensation from the magazine without violating section 209 if writing the article is outside the scope of her duties for DOJ. (Payment for the article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the Standards of Conduct in5 C.F.R. part 2635. For example, if the article relates to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the payment may be prohibited by 5 C.F.R. § 2635.807.)

공직자가 자신의 전 사용자에게 제공한 과거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그 공직자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1987년 9월 9일에 발행된정부윤리청의 비공

식 자문 서한과 법무부 법무실의 5 Op. 150(1981)을 참고하시오. 법무부 법무실의 차관보인 레온 울만이 백악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국장인 브르스 하센캠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혜택·이익은 "반드시 공직자의 예상되는 장래의 지위 또는 활동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전 사용자에게 제공한 과거의 서비스의 대가로만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입법 연혁 또한 "공직 이전에 신중하게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상당한 퇴직금이 재직 기간 내에 분할 지급될 수도 있다는" 의회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공화당 린드세이 의원 발언, 107 Cong. Rec. 14780(1961))

(Where a payment is for an employee's past services to a previous employer and is made without regard to the employee's Government duties, section 209 is not violated. See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87 x 11 dated September 9, 1987; 5 Op. Off. Legal Counsel 150 (1981). The benefit must be "granted solely in consideration of past services to the private employer without taking account of the anticipated future status or activity of the employee." Letter from Leon Ulman,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Office of Legal Counsel, to Bruce Hasenkamp, Director, President's Commission on White House Fellowships 2(Dec. 17, 1976). The legislative history also indicates Congress' intent that, for "services carefully designated as past, substantial severance payments may be made with the payments themselves sometimes spread forward in installments over the period of the appointee's Government service." 107 Cong. Rec. 14780 (1961)(statement of Rep. Lindsay).

사례 10 : 어느 변호사는 교통부에 근무하기 위하여 로펌의 동업자의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그 변호사는 교통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로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수임료의 해결로 그 로펌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 만약 그 변호사가 로펌에 제공한 과거의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만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그 변호사는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그렇지만, 그 보수의 지급은 연방법전 제18편 제203조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

(**Example 10 :** An attorney resigns as a partner in a law firm to

accept a position with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After he begins working for DOT, the attorney receives payment from the law firm in settlement of fees for services he performed while employed by the firm. The attorney does not violate section 209 if he accepts compensation solely in recognition of his past services to the firm. (However, the payment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18 U.S.C. § 203.)

2. 수령자와 제공자의 의도(Intent of the Parties)

제209조의 이 요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그 보상이 실제로 정부에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인지의 여부이다. 어떤 상황들은 그러하다는 명백한 신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공직을 위해 민간부문을 떠난 사람에게 보수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나타낸다.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to resolve for this element of section 209 is whether the compensation is, in fact, for Government service. Certain situations present obvious signs itis. For example, the payment of the salary differential of a person who leaves private sector employment for a position in the Government would clearly indicate intent to provide extra compensation for Government service.)

그러나 여러 상황에서, 일방 또는 양방 모두가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지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41 Op. 217, 220-21(1955)를 참고하시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보상하는 의도”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증명력”이 있다. 1988년 7월 27일에 작성된 정부윤리청의 비공식 자문 서한을 참고하시오. "보수 제공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보수를 받는 공직자의 의도“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장관의 41 Op. 217, 220-21(1955).
(In many situat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either or both parties intended the compensation to pay for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See 41 Op. Att'y Gen. 217, 220-21(1955). "Intent to compensate for performance of Government duties is highly probative" in determining whether this element is met.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88 x 12 dated July 27, 1988. It is necessary to ascertain "not only the intent with which the payment is made but also the intent of the employee in receiving the payment." 41 Op. Att'y Gen. 217, 220-21 (1955).)

a. 의도 표시(Express Intent)

제공자의 의도 표시 역시, 만약 있다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법무부 법무실의 차관보인 리차드 시프린이 연방수사국의 법무 자문위원인 래리 파킨슨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제공자가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보상하고자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경우라면 의도표시 요건충족은 명백하다.
(The express intent of the payor, if any, is a factor that must be considered. See Letter from Richard Shiffrin,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Office of Legal Counsel, to Larry Parkinson, General Counsel,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3 (Oct. 28, 1997). Where the payor states that he intends to compensate the employee for his services to the Government, the requisite intent is obvious.)

사례 11 : 연방위기관리청에 근무하는 어느 공직자가 최근 남부 조지아의 토네이도 이후의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지역의 기업가가 그 공직자에게 500$의 수표를 주면서 "당신이 토네이도 피해를 정화하기 위하여 힘든 작업을 수행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매우 감사드린다. 당신은 정부가 당신에게 보수를 주는 것 이상으로 보수를 받을 만하다"라고 말하였다. 지역의 사업가의 언급으로 인해 해당 공직자는 제209조를 위반하여, 직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mple 11 :** An employee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has recently completed a clean-up after a tornado in southern Georgia. A local business owner gives the employee a check for $500

saying, “You really did a terrific job cleaning up the tornado damage, and this town is very grateful for your hard work. You deserve more than the Government pays you.” Because of the business owner’s statement, a person could reasonably conclude that the employee is being compensated for his Government services, in violation of section 209.)

b. 영향력 행사 유무(Ability to Influence)

보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또한 공직자가 제공자를 대리(대신)하여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41 Op. 217, 221 (1955), 1985년 12월 12일에 발행된 정부윤리청의 비공식 자문 서한을 참고하시오. 법무부 법무실의 차관보인 리차드 시프린이 연방수사국의 법무 자문위원인 래리 파킨슨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만약 그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통해서 제공자에게 혜택·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제공자 또는 공직자 또는 양측 모두가 직무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Intent to compensate may also be determined by examining whether the employee is in a position to influence the Government on behalf of the payor. See 41 Op. Att’y Gen. 217, 221 (1955);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85 x 19 dated December 12, 1985; Letter from Richard Shiffrin,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Office of Legal Counsel, to Larry Parkinson, General Counsel,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3 (Oct. 28, 1997). If the employee is able to benefit the payor through his work for the Government, it may appear that either the payor or the employee, or both, intends the payment to be compensation for services to the Government.)

사례 12 : 국립예술진흥기금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책임은 그 소속기관의 보조금 신청 승인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한 민간의 비영리 박물관은 그 공직자에게 보조금 지원 심사절차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

하면, 박물관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50%의 할인을 해주기로 제안하였다. 그 기관의 박물관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에 그 공직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기념품 가게 할인이 제209조를 위반하여 그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인지를 나타내준다.(할인권의 수령은 또한 연방시행령 제5편 H서브파트를 포함한 제2635파트에 있는 행동강령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

(**Example 12 :** The responsibilities of an employee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include developing standards for the NEA's approval of grant applications. A private nonprofit art museum, which applies for grants from the NEA, offers the employee a 50% discount in the museum's gift shop if the employee will come to the museum to answer questions about the grant review process. The employee's ability to influence the NEA's review of the museum's grant application may indicate that the gift shop discount is intended to compensate the employee for her services to the Government, in violation of section 209. (Acceptance of the discount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the Standards of Conduct in 5 C.F.R. part 2635, including Subpart H.))

c. 거래의 반복(Pattern of Dealings)

제공자를 대리하여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공자와 공직자의 소속기관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 또는 반복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정부윤리청의 비공식 자문 서한과 법무부 법무실의 차관보인 리차드 시프린이 연방수사국의 법무 자문위원인 래리 파킨슨에게 보낸 서한을 참고하시오.

(Even absent an ability to influence the Government on the payor's behalf, intent to compensate for Government services may exist if there is a substantial relationship or pattern of dealings between the employee's agency and the payor. See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85 x 19 (quoting Bayless Manning, Federal Conflict of Interest Laws

165 (1964)); Letter from Richard Shiffrin,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Office of Legal Counsel, to Larry Parkinson, General Counsel,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3(Oct. 28, 1997).)

사례 13 : 어느 라디오 방송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직자에게 선데이 모닝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국 허가절차에 대해 강연하는 것에 대해 지급하려고 한다. 그 라디오 방송국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라디오 방송국과 그 공직자가 제209조를 위반하여 그 공직자가 연방통신위원회에 제공하는 직무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연방시행령 제5편 H서브파트를 포함한 제2635파트에 있는 행동강령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

(**Example 13 :** A radio station offers to pay an employee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FCC) Office of Public Affairs to speak on a Sunday morning broadcast about the process of licensing radio stations. The fact that the radio station is regulated by the FCC could indicate that the radio station and the employee intend the payment to be compensation for the employee's services to the FCC, in violation of section 209. (Acceptance of the payment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the Standards of Conduct in 5 C.F.R. part 2635, including Subpart H.)

d. 공직자의 지위(Official Position)

제209조에 따라 보상을 해주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그 보상이 공직자의 공적 지위 때문에 주어진 것인지 여부이다. 공직자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보수지급의 숨은 동기가 되는 것이라면, 그 보수지급은 그 직무와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해당 공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 행동강령의 B서브파트에 따라 공직자의 직위 때문에 받는 금품과 같이, 정부 내에서의 직위에 근거하여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그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Another indicator of intent to compensate under section 209 is whether

the compensation is given to the employee because of his official position. If the motivation behind the payment is that the employee performs a particular job for the Government, the payment may be intended to compensate the employee for the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at job. Like gifts given because of an employee's official position under subpart B of the Standards of Conduct, payments to employees based on their positions with the Government are more likely to carry with them the possibility of undue influence.)

사례 14 : 어느 자선가는 유엔의 미국 대표에게 유엔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뉴욕시의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그 아파트가 오직 그 대표에게만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그 대표의 서비스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무료로 주거를 수령하는 것은 또한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파트에 있는 행동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Example 14 :** A philanthropist offers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an apartment in New York City at no cost to enable him to attend meetings of the United Nations. The fact that the apartment is offered to only the Representative may indicate an intent to compensate for the services of a Representative.(Acceptance of the free housing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the Standards of Conduct in 5 C.F.R. part 2635.)

e. 공직자 사이의 보수 지급(Employee Payor)

어느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그 보상금 지급이 공직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대신에 선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직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모두 제209조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1983년 10월 19일에 발행된 정부윤리청의 비공식 자문 서한을 참고하시오. 제209조에 따라 보상하는 의도를 검토하기 위한 이러한 요인은 고소득 공직자와 저소득

공직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연방법전 제5편 제73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사이에 수수하는 선물 금지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보상의도를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어떤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직자 사에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304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예외)에 따라 특별하게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은 제209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The fact that compensation is paid to an employee by another employee may indicate that the payment was not intended as compensation for Government services but was, instead, a gift. This is not to say, however, that every payment from an employee is outside the scope of section 209. See, e.g.,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83 x 15 dated Oct. 19, 1983. This factor for analyzing intent to compensate under section 209 differs from the prohibition on gifts between employees at 5 U.S.C. § 7351 in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higher-paid or lower-paid employees. Thus, an analysis of the intent to compensate should include an inquiry as to whether any employee paid the compensation to any other employee. If, however, the payment is specifically permissible under the exceptions at 5 C.F.R. § 2635.304, it should not violate section 209.)

사례 15 : "전문비서의 날"에 대한 보답으로 농무성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그의 상급자로부터 연극 공연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았다. 그 상급자는 그 공직자의 티켓 값을 지불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하급자의 공직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님을 나타낸다.

(**Example 15 :** In recognition of National Secretaries Day, a Department of Agriculture employee is invited by her supervisor to attend a theater performance. The supervisor pays for the employee's ticket. These circumstances would indicate that the payment was not intended to compensate the subordinate for her Government services.

사례 16 : 어느 로펌의 파트너가 연방정부 내에서 비경력 감독 직위에 임명되었다. 그 공직자는 로펌의 비서를 새로운 직위에서도 고용하기를 원한다. 연방정부가 그 공직자의 비서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로펌에서 지급하던 보수보다 낮기 때문에, 그 감독관은 자신의 돈으로 보수 차이를 보상해주고 싶어 한다. 비록 제안된 보수의 보충이 다른 공직자로부터 나온 것 이지만, 그것은 공직자로서 비서의 직무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제209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다.

(**Example 16 :** A partner in a law firm is appointed to a supervisory non-career position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She wishes to hire her law firm secretary to work for her in her new position. Because the Federal salary is lower than the secretary's law firm salary, the supervisor would like to make up the difference out of her own pocket. Even though the proposed supplementation would be from another employee, it is clearly intended to compensate the secretary for duties as an employee of the Government, and is prohibited by section 209.)

f.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한 보수 지급(Similar Payments to Others)

제공자가 다수의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29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법무부 법무실의 차관보인 랜돌프 모스가 정부윤리청의 실행이사인 개리 데이비스에게 보낸 서한을 참고하시오.

(Where the payor gives the same or similar compensation to a significant number of non-Government employees, it is less likely that the compensation is for Government service, and section 209 is therefore less likely to apply. See letter from Randolph Moss, Assistant Attorney General, Office of Legal Counsel, to Gary Davis, Acting Director, Office of Government Ethics 4 (Sept. 7, 2000).)

사례 17 : 어느 교회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교인들에게 교인의 자녀를 교회의 종파와 연계되어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보조금을 받는 교인들 중 한명은 국방부에 근무하는 일반직 보수표 6등급에 해당하는 사무원이다. 그 프로그램은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격이 있는 교인이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공직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이러한 혜택을 수령하는 것은 역시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파트의 B서브파트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Example 17** : A church provides grants to its congregants whose household income is below a certain amount in order to enable the congregants to send their children to colleges affiliated with the church's religious denomination. One of the congregants who receives a grant is a GS-6 clerk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Since the program is available to qualified congregants who work for any employer, it could reasonably be concluded that the grants are not intended to compensate for Government services.(Acceptance of these benefits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Subpart B of 5 C.F.R. part 2635.))

비록 공직자의 취업·근무 관계가 고려해야 할 요인이지만,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잠재적인 수급자 집단은 자신들과 특정한 정부기관과의 관계"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보상하려는 의도가 단순하게 추론될 수는 없다고, 법무부 법무실은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실의 차관보인 리차드 시프린이 연방수사국의 법무 자문위원인 래리 파킨슨에게 보낸 서한을 참고하시오.

(Although nexus to the employee's Federal employment is a factor to consider, it is not necessarily dispositive. OLC has stated that an intent to compensate cannot be inferred simply because "the class of potential recipients is defined in part by their nexus" to a particular Government agency. Letter from Richard Shiffrin,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Office of Legal Counsel, to Larry Parkinson, General Counsel,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3 (Oct. 28, 1997).)

g. 동정심에 의해 제공(Payor motivated by Sympathy)

제공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공직수행을 한 공직자를 보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정심과 존경 또는 치료 상태와 같은 소망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보상금은 직무수행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무부 법무실의 차관보인 리차드 시프린이 연방수사국의 법무 자문위원인 래리 파킨슨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에 근거한 이러한 의견은 연방수사국 직원의 불치병에 걸린 자녀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앞의 서한 5에서의 의견은, 혜택과 고용 사이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불치병은 정부에 제공하는 부모의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실에 따르면, "그 혜택은 공직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정심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고", 그러므로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앞의 서한 4에서 언급하고 있다.
(Compensation is unlikely to be for Government service if it can be shown that the payor is motivated by a desire other than to compensate the employee for his Government service, such as sympathy and respect or medical condition. Letter from Richard Shiffrin,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Office of Legal Counsel, to Larry Parkinson, General Counsel,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Oct. 28, 1997). This opinion, upon which the next example is based, concerned a program which fulfilled the wishes of terminally ill children of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employees. The opinion noted that, despite the nexus between the benefits and Federal employment, the children's terminal illnesses are in no way related to their parents' service to the Government. Id. at 5. According to OLC, "the benefits appear to be motivated by sympathy, rather than by a desire to compensate the employees for their government service" and, thus, do not violate section 209. Id. at 4.)

사례 18 : 연방수사국의 전직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불치병에 걸린 전·현직 연방수사국 직원 자녀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꿈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주관·주최하였다. 어느 연방수사국 직원은 그 프로그램이 자신의 아픈 자녀에 대한 동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공직수행에 대한 보상의 의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역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특례사항을 포함해서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파트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
(**Example 18** : A nonprofit organization comprised of former Special

Agents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sponsors the “Make a Dream Come True Program” to fulfill the wishes of the terminally ill children of former and current FBI employees. An FBI employee could conclude that the program is motivated by sympathy for his sick child and not intended to compensate him for his Government service. (Acceptance of these benefits would also require analysis under Subpart B of 5 C.F.R. part 2635, including any exceptions which may apply.))

h. 신의・성실한 사회봉사상(Bona Fide Public Service Awards)

1992년 2월 26일 발행된 정부윤리청의 비공식 자문 서한에서는 "사회봉사 또는 공적에 대한 신의・성실한 상“은 공직수행에 대한 보상 의도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와 유사하게, 법무부 법무실(8 Op. 143, 144(1984))은 ”현저한 사회봉사를 찬양하기 위하여 불편부당하고 사심 없는 소망에 의하여 비롯된“ 기념상에 대해서는 제209조에 따라 ”절대적인 특례사항“이라고 인정해 왔다.

(An intent to compensate for Government services cannot be inferred from a “bona fide award for public service or other meritorious achievement.” OGE Informal Advisory Letters 83 x 10 dated July 21, 1983, and 92 x 7 dated February 26, 1992. Likewise, OLC has recognized “implicit exceptions” under section 209 for commemorative awards “motivated by a disinterested desire to hon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8 Op. Off. Legal Counsel 143, 144(1984).)

사례 19 : 어느 비영리기구가 교정국의 한 공직자에게 “최우수 공직자"로 선정하여 5,000$의 상금과 메달을 수여하였다. 그 기구는 모든 수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년간의 서면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기구는 교정국과 아무 관계도 없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의의 수상이기 때문에, 그 공직자가 교정국에 제공하는 직무에 대하여 보상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Example 19** : A nonprofit organization presents its annual award consisting of $5,000 and a medallion for "Greatest Public Service Performed by an Elected or Appointed Official" to an employee of the Bureau of Prisons. The organization applied long-standing written criteria in judging all of the candidates. The organization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Bureau of Prisons. Because it is a bona fide award for public service, it is not intended to compensate the employee for his services to the Bureau of Prisons and would not violate section 209.)

3. 공직자의 범위(Employee)

제209조는 금지된 보수를 수령하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제209조의 문언에 따라, 제209조 제(a)항은 연방의 행정부 또는 연방의 독립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209 only applies if it is a Government employee who receives the prohibited payment. By its terms, section 209(a) applies to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independent agency of the United States.)

제209조의 문맥에 따라, 공직자라는 용어는 공기업의 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 모르스 판례(292 F. 273, 277)를 참고하시오. 제209조를 포함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모든 형법 규정에 적용되는 연방법전 제18편 제202조의 공직자에 대한 정의에는 대통령, 부대통령, 사병을 제외한다.

(In the context of section 209, the term employee has been interpreted to include employees of Government-owned corporations. See United States v. Morse, 292 F. 273, 277 (S.D. N.Y. 1922), aff'd on other grounds, 267 U.S. 80 (1925). The definition of employee in 18 U.S.C. § 202, which applies to all of the criminal conflict of interest statutes, including section 209, excludes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enlisted members of the Armed Forces.)

D. 정부를 제외한 사람・법인(Any Person Other Than the Government)

연방정부를 제외한 사람으로부터 지불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는 동업자단체(법무부장관의 40 Op. 265(1943))와 대학(법무부장관의 39 Op. 501(1940))이 포함된다. 대법원은 비정부 기업 역시 제209조의 취지에 따라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A payment will not violate section 209 unless it is paid by a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Person” also includes any kind of organization, whether profit or nonprofit. See H.R. Rep. No. 748 at 25 (1961). “Person” includes trade associations, 40 Op. Att’y Gen. 265 (1943), and colleges, 39 Op. Att’y Gen. 501 (1940).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non-Government corporations are also persons for purposes of section 209. See Int’l Ry. v. Davidson, 257 U.S. 506 (1922).)

Ⅱ. 특례・예외 사항(Exceptions)

공직자의 보수의 보충에 대한 기본적인 금지에 대해서 6가지 특례・예외 규정이 있다. 5가지 예외사항은 제209조 제(b)항부터 제(f)항까지 나열되어 있다. 비록 제209조의 특례규정 중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정부, 카운티 및 시정부로부터의 지불금은 제209조 제(a)항의 보수 보충 금지에서 면제되며, 특례규정과 비슷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논의한다.
(There are six statutory exceptions to the basic prohibition against the supplementation of a Government employee’s salary. Five of the exceptions are listed in section 209(b)-(f). Although not listed among the exceptions to section 209, payments from States, counties, and municipalities are exempted from the salary supplementation prohibition in section 209(a), and are discussed here as analogous to an exception.)

A. 주정부・지방정부의 제공(Payments from State or Local Governments)

제209조 제(a)항은 공직자가 "주정부,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무부로부터 기부 받는 보상금"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본래 농업 확대 프로그램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조항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보상금에 적용된다. 의회의 54. 4011(1917)를 참고하시오. 예를 들자면, 주립 대학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수의 보충은 주정부의 재무부로부터 받는 경우가 되어 특례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 1993년 10월 21일에 발행된 정부윤리청의 비공식 자문 서한을 참조하라.
(Section 209(a) permits employees to accept "compensation contributed out of the treasury of any State, county, or municipality." Although originally enacted to preserve agricultural extension programs, this exception is applicable to all payments from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ee 54 Cong. Rec.4011 (1917). Thus, for example, a salary supplementation may fall within this exception as being contributed from the treasury of a state if a state university is bearing the cost. See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93 x 29 dated October 21, 1993.)

B. 공직자의 연금・복지제도(Employee Pension or Benefit Plans)

제209조 제(b)항은 공직자가 전 사용자에 의해 유지되는 신의・성실한 연금, 퇴직금, 단체 생명보험, 건강 또는 사고보험, 이익 배당, 주식상여 또는 그 밖의 직원후생·복지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특례규정은 "연방 공직에 진입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한 장기 재정 계획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무부 법무실의 2 Op. 267, 269(1978)을 참고하시오. 그러므로 외부 출처로부터 보충적인 보수수령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사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관례적인 부가혜택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209조 제(b)항은 다른 것들 중에서 특히 연금, 보험 그리고 의료 및 치과 혜택의 지속을 허용한다. 1981년 5월 15일에 발행된 정부윤리청 비공식 자문 서한을 참조하라.

(Section 209(b) allows an employee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a bona fide pension, retirement, group life, health or accident insurance, profit-sharing, stock bonus, or other employee welfare or benefit plan maintained by a former employer. This exception was intended to "permit persons entering Federal service to continue established security arrangements that are often essential to long-range financial planning for the family." 2 Op. Off. Legal Counsel 267, 269 (1978). Thus, while supplemental compensation from an outside source is forbidden, the sacrifice of conventional fringe benefits (earned from services provided to a previous employer) is not required. Section 209(b) permits, among other things, the continuation of annuity credits, insurance plans, and medical and dental benefit programs. See OGE Informal Advisory Letter 81 x 17 dated May 15, 1981.)

그 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신의・성실하게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혜택이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규정의 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한 복지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09조 제(b)항은 공직자가 전 사용자의 복지제도에 참여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공직자는 공직에 들어오기 이전에 해당 복지제도에 참여하고 있었어야 한다.
(To qualify for the exception, the benefit plan must be bona fide. The ad hoc payment of benefits does not constitute a bonafide plan under the terms of the statute. Since section 209(b) permits an employee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his former employer's benefit plan, the employee must have been a participant in the plan before beginning Government service.)

사례 20 : B기업은 20년 이상 B기업에 근무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실 직원 퇴직금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 패키지는 B기업이 B기업을 퇴직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B기업에서 23년간 근무한 로얄 래리는 해양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B기업을 퇴직하고자 한다. B기업으로부터 지급된 로얄 래리의 이사비용은 B기업에 의해 유지되는 신의・성실한

직원 복지제도의 일환이며, 따라서 제209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전 사용자의 보수 지급은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503조에 있는 "과도한 지급" 금지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

(**Example 20 :** Company B has a "Loyal Employee Severance Package" for all of its employees who have worked for Company B for twenty or more years. The package provides that Company B will pay the moving expenses of qualified employees who retire from Company B and relocate to a different city. After having worked for Company B for twenty-three years, Loyal Larry is retiring to accept a position with the Maritime Administration. The payment of Loyal Larry's moving expenses by Company B is part of a bona fide employee benefit plan maintained by Company Band, therefore, does not violate section 209. (Payments from former employers may also require analysis under the "extraordinary payment" provision in 5 C.F.R. § 2635.503.))

C. 특수정부종사자 및 무급 종사자(Special Government Employees and Uncompensated Employees)

제209조 제(c)항은 제209조 제(a)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무급 종사자뿐만 아니라 특수정부종사자도 제외한다. "이러한 특례는 그 공직자들이 워싱턴에 있는 '동안'에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부에 기입해야만" 하는 임시 근무자의 부담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시 변호사협회, 연방의 이해충돌 관련 법률에 관한 특별위원회, 이해충돌과 연방 직무 174 (1960)에서 언급하고 있다. 앞의 문서 216에서, 의회 역시 무급의 공직자가 어떠한 수입도 없이 살아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제209조 제(c)항은 제209조 제(a)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이러한 유형의 공직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허용한다. 그 특례는 민간부문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추가적으로 정부를 위하여 일을 하는 임시적인 자문관 및 조언자에 의하여 사용된다.

(Section 209(c) exempts special Government employees as well as uncompensated employees from the purview of section 209(a). This

exception was seen as necessary to avoid the burden on intermittent workers who would have to "make bookkeeping entries showing that[they were] not paid 'for' the day [they were] in Washington." Association of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Special Committee on the Federal Conflict of Interest Laws, Conflict of Interest and Federal Service 174 (1960). Congress also determined that it would have been unfair to expect that uncompensated Government employees forego any remuneration whatsoever. Id. at 216. Section 209(c) permits compensation for both of these types of employees that would otherwise be prohibited by section 209(a). The exception is often used by intermittent consultants and advisers who work for the Government in addition to holding full-time positions in the private sector.)

사례 21 : 대통령은 내란 중에 있는 국가에 특사를 파견했다. 대통령이 선정한 개인은 향후 365일 중 130일 이상을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정부종사자로 지명되었다. 그 개인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그 은행은 그가 은행을 떠나있는 동안에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동의하였다. 그 특사는 특수정부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특사에게 지급되는 은행 보수는 제20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그러나, 연방법전 제18편 제208조에 따라, 그 특사는 은행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이고 빤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직접적으로 또는 실질적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Example 21 :** The President sends a Special Envoy to a country in turmoil. The individual selected by the President is designated an SGE because he is not expected to serve more than 130 of the next 365 days. The individual is employed by a bank which agrees to pay his bank salary during his absence from the bank. The payment of the individual's bank salary does not violate section 209 because he is an SGE. (However, under18 U.S.C. § 208, he may have to be recused from participating personally and substantially in any particular matter that would have a direct and predictable effect on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bank.)

D. 공직자교육훈련법률(Government Employees Training Act)

제209조 제(d)항은 "공직자교육훈련법률의 조건에 따른 기부금, 상금 또는 그 밖의 비용"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전 제5편 제4111조에 규정된 공직자교육훈련법률은 비정부·민간 시설에서의 훈련에 따르는 기부금 및 상금, 그리고 회의참석에 따르는 교통비, 일비 그리고 그 밖의 경비가 세금면제 조직·단체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 공직자가 이를 수령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특례규정은 공직자가 공직수행을 위한 훈련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금과 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Section 209(d) provides an exception for "contributions, awards, or other expense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Training Act" (GETA). The GETA, at 5 U.S.C. § 4111, permits employees to accept "contributions and awards incident to training in non-Government facilities, and payment of travel, subsistence, and other expenses incident to attendance at meetings..... if the contributions, awards, and payments are made by [a tax-exempt organization]." This exception enables an employee to accept grants and awards from private sources which advance the employee's training for Government service.)

E. 직원교류 또는 협력·유대 강화 프로그램 (Executive Exchange or Fellowship Programs)

제209조 제(e)항은 민간부문의 사용자가 이제는 종료된 직원교류 프로그램 또는 백악관 협력·유대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직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법무부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은 반드시 법령 또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수립되었어야 하며, 임명일이 365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국내 업무에 대해서는 90일, 국외업무에 대해서는 365일을 초과하여 연장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209(e) was intended to overturn an opinion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that prohibited private employers from paying the moving

expenses of employees chosen to participate in the now terminated Executive Exchange Program or the White House Fellows Program. For the exception to apply, the program must have been established by statute or Executive order of the President, offer appointments not to exceed three hundred and sixty-five days, not permit extensions in excess of ninety additional days for domestic assignments or three hundred and sixty-five additional days for overseas assignments.)

사례 22 : Q기업의 직원이 행정명령 11183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인 백악관 동료로서 1년 동안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였다. 협력·유대 강화 기간 동안에, 그녀는 워싱턴 DC에서 거주하며, 그녀의 남편은 뉴저지에 있는 거주지에 남아있다. Q기업은 그 직원의 실제적인 이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Q기업은 그 직원의 워싱턴 DC에 있는 임시 거주지에 대한 비용을 변제해주거나 뉴저지 왕복 여행비용을 변제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용은 개인적인 생활비용일뿐, 실제적인 재배치 비용은 아니기 때문이다.(부가적으로, 연방법전 제18편 제208조에 따라 그녀는 Q기업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이고 빤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사안에서 제척될 수 있다.)

(**Example 22** : An employee of Company Q takes a leave of absence to serve for one year as a White House Fellow, a program established by Executive Order 11183. During her fellowship, she lives in Washington, DC, while he rhusband remains in their residence in New Jersey. Company Q may pay the employee's actual moving expenses. However, Company Q may not reimburse the employee for the cost of her temporary residence in Washington, DC, or any trips she takes to New Jersey because they are personal living expenses, not actual relocation expenses. (In addition, under 18 U.S.C. § 208, the employee may have to be recused from any particular matter that would have a direct and predictable effect on the financial interests of Company Q.))

F. 특정한 범죄로 부상당한 사람(Persons Inured During the Commission of Certain Offenses)

제209조 제(f)항은 "연방법전 제18편 제351조 또는 제1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인하여 부상당한 공직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조직·단체로부터 기부금이나 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규정은 1981년 3월 30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인해 대통령 연설비서관인 제임스 브래디와 경호실 요원들이 부상당한 사건 이후에 제정되었다. 의회 자료(128 6322-23, 6381-82(1982))를 참고하시오. 제209조 제(f)항은 암살, 암살 미수, 납치, 납치 미수 또는 특정 공직자에 대한 폭행 범죄로 인하여 부상당한 공직자에게 세금면제 조직·단체로부터 그러한 지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연방법전 제18편 제1751조와 제35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209(f) provides that an "employee injured during the commission of an offense described in 18 U.S.C. 351 or 1751" may accept "contributions or payments from an organization which is [exempt from taxation]." This exception was enacted following the March 30, 1981, assassination attempt on President Ronald Reagan in which the President's Press Secretary, James Brady, and a Secret Service Agent were injured. See 128 Cong. Rec. 6322-23, 6381-82(1982). Section 209(f) was enacted to permit acceptance of such payments from tax-exempt organizations to employees injured during the commission of an assassination, attempted assassination, kidnaping, attempted kidnaping, or assault on certain specified officials. See 18 U.S.C. § 1751; 18 U.S.C. § 351.)

사례 23 :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는 어느 공직자가 공무상 출장에서 중앙정보부의 국장을 수행했다. 그 공직자는 CIA 국장에 대한 불발에 그친 납치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연방법전 제26편 제501(c)(3)조에 규정된 세금면제 단체이고 연방법전 제26편 제501(a)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영웅 기금"은 부상을 당한 공직자에게 그가 이미 지출한 의료비용을 돌려주기 위하여 금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공직자는 연방법전 제18편 제351(c)조에 규정된 범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그 공직자가

"영웅 기금"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제20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Example 23** : An employee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accompanies the Director of the CIA on official travel. The employee is injured during an attempted kidnaping of the Director of the CIA. The Heroes Fund, a tax-exempt organization described in 26 U.S.C. § 501(c)(3) and exempt from taxation under 26 U.S.C. § 501(a), would like to give the injured employee money to help defray his medical expenses. Since the employee was injured during the commission of an offense described in 18 U.S.C. § 351(c), his acceptance of payments from the Heroes Fund would not violate section 209.)

Ⅲ. 행동강령 및 기타 규칙과의 관계(Relationship to Standards of Conduct and Other Rules)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파트에 규정된 행정부의 행동강령은 외부출처의 선물과 공직자 사이의 선물을 다루고 있다. 선물 및 그 밖의 금품은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203(b)조, 제2635.204조 또는 제2635.304조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금품은 시장가치가 거의 없거나 대가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공직자의 직무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제209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커피, 도넛, 연하장, 기념패 및 트로피와 같은 "선물"이라는 정의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금전적 가치가 매우 낮아 공직수행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예의·관례로 간주된다.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203(b)(1)조와 제2635.203(b)(2)조를 참조하시오.
(The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xecutive Branch Employees, 5 C.F.R. part 2635, address gifts from outside sources and gifts between employees. Gifts and other items of value may be accepted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of Conduct, at 5 C.F.R. §§ 2635.203(b), 2635.204, or 2635.304. These items fall outside the scope of section 209 because they are merely gratuitous and are not intended to compensate for Government services. For example, the items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gift,” such as coffee, donuts, greeting cards, plaques, and trophies, seem so trivial in monetary value as to be considered social amenities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services. See 5 C.F.R. § 2635.203(b)(1);§ 2635.203(b)(2).)

사례 24 : 노동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소기업소유주 모임에서 새로운 최저임금법에 관하여 강연을 하였다. 공직자가 강연을 마친 이후에, 그 모임의 대표가 “강연하러 와주신 보답으로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커피와 도넛을 나눠 드시지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 공직자는 제209조를 위반하지 않고서도 커피와 도넛을 먹고 마셔도 된다. 그러한 물품을 받는 것은 특히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203(b)(1)조에 따라 허용된다.
(**Example 24 :** A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speaks to a group of small business owners about a new minimum wage law. After the employee’s talk, the leader of the group says, “We can’t offer you much for coming to talk to us, but we’d like you to share in the coffee and donuts. ”The employee may enjoy the coffee and donuts without violating section 209. Acceptance of such items is specifically permitted under 5 C.F.R. § 2635.203(b)(1).)

사례 25 : 주거 및 도시개발부에 근무하는 어느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의 일환으로, 소속 기관의 자산에 대한 점검을 나갔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건설회사는 공직자에게 점검기간 동안 착용하고 점검 일정이 끝난 이후에 가질 수 있도록, 그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안전모를 주었다. 그 안전모는 15$ 정도 한다. 그 공직자가 안전모를 받는 것은 제209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20$ 이하의 가치를 지니는 선물을 수수하는 것은 특히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204(b)조에 따라 허용된다.
(**Example 25 :** An employee of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goes on an inspection tour of a HUD property as part of his official duties. The construction company working at the site gives the employee a hard hat with the company’s logo to wear during the inspection and to keep after the tour. The hard hat is valued at $15. The employee’s acceptance of the

hat does not violate section 209. Acceptance of gifts valued at $20 or less is specifically permitted under 5 C.F.R. § 2635.204(a).)

사례 26 : 정부윤리청에 근무하는 어느 공직자는 촉박한 상황에서 규정의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그 공직자의 친구들 중의 한명이 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며칠을 밤늦게까지 근무한 것을 보상하려고 그 공직자에게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사주었다. 그 공직자는 제209조에 따라 그 식사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 식사대접은 제공자의 우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특히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204(b)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다.
(**Example 26 :** An employee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completes the drafting of a regulation under a tight time limit. One of the employee's friends offers to take her out to dinner at an expensive restaurant to reward her for working several late nights to finish the regulation. The employee may accept the meal under section 209. It is motivated by her friendship with the payor and, as such, is specifically permitted under 5 C.F.R. § 2635.204(b).)

이러한 사례들은 행동강령 제2635.203(b)조의 "선물"이라는 정의에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204조 또는 제2635.304조에 특례가 있고, 그러한 선물 역시 제209조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행동강령의 특정한 규정을 찾아서 밝혀낸다.
(These examples trace particular provisions in the Standards of Conduct to illustrate that there must be a specific exclusion from the definition of "gift" in 5 C.F.R. 2635.203(b) or a specific exception in 5 C.F.R. 2635.204 or 2635.304, in order that the gift also be permissible under section 209.)

비록 행동강령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물품은 제209조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의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9조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물품이 공직수행에 대한 보상 정도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물에 관한 제한 규칙에 따라서는 그래도 금지될 수 있다. 유사하게, 제209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수의 지급도 다른 금지규정에 여전히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제209조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보수의 지급을 받는 공직자는 연방법전 제18편 제208조 또는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502조에 따라, 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업무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제척하여야 한다. 어떤 비경력직 공직자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는 외부소득 수령 제한의 대상이 된다.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6파트를 참고하시오. 또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강의, 강연 및 저술의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들이 있다. 연방시행령 제5편 제2635.807조를 참고하시오.

(Although an item acceptable under the Standards of Conduct will not violate section 209, the converse may not be true. Something which is acceptable under section 209 may nonetheless be prohibited under the gift rules, despite the fact that it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Government services. Similarly, a payment that is permissible under section 209 may still implicate some other prohibition. Thus, for example, an employee who receives a payment acceptable under section 209 may need to recuse himself, under 18 U.S.C. § 208 or 5 C.F.R. § 2635.502, from participating in particular matters affecting the payor. Certain non-career employees and presidential appointees are subject to limitations on their receipt of outside earned income. See 5 C.F.R. part 2636. There are also rules restricting employees from receiving compensation for teaching, speaking, and writing that relate to their official duties. See 5 C.F.R. § 2635.807.)

정부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5 U.S.C. app.)

제Ⅰ권 : 연방공직자의 재산신고 요건(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s of federal personnel, 제101조～제112조)

제Ⅱ권 : 폐지

제Ⅲ권 : 폐지

제Ⅳ권 :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제401조～제408조)

제Ⅴ권 : 외부소득 및 고용에 대한 범정부적 제한(government-wide limitation on outside earned income and employment(제501조～제505조)

제Ⅴ권 : 외부소득 및 고용에 대한 범정부적 제한

5. U.S.C. app. 제501조. 외부수입의 제한(outside earned income limitation)

(a) **외부수입의 제한**. -

(1) 제(2)호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의원, 비경력직 공무원이나 종사자이면서 일반직보수체계(general schedule)의 15급 이상으로 분류된 직위에 근무하거나 일반직보수체계상에 없는 직위의 경우, 기본보수가 일반직보수체계의 15급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기본보수의 120%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받는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미연방법 제5편의 제5313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1월1일 현재 고위직보수체계(executive schedule) 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연도의 기본보수의 15%를 초과하는 외부수입을 가질 수 없다.

(2) 당해 연도의 중간에 의원, 비경력직 공무원이나 종사자이면서 일반직보수체계의 15급 이상으로 분류된 직위에 근무하거나 일반직보수체계상에 없는 직위의 경우, 기본보수가 일반직보수체계의 15급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기본보수의 120%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받는 자는 미연방법 제5편의 제5313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중간에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로서 근무한 근무일수를 분자로, 365일을 분모로 하는 분수에 고위직보수체계 Ⅱ급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기본보수를 곱한 금액의 15%를 초과하는 외부수입을 가질 수 없다.

(b) 사례금 금지(honoraria prohibition). – 개인이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어떠한 사례금이라도 받을 수 없다.

(c) 자선 기부금 처리(treatme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 제(b)항의 예외로써, 의원 · 공무원 · 종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사례금을 의원 · 공무원 · 종사자가 아닌 자선단체에 지급되는 경우 그 사례금은 의원 · 공무원 · 종사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그러한 사례금은 $2,0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의원 · 공무원 · 종사자나 그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또는 부양친척이 재정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5. U.S.C. app. 제502조. 외부고용의 제한(limitations on outside employment)

(a) 제한(limitations). - 의원, 비경력직이고 일반직보수체계의 15급 이상으로 분류된 직위에 종사하는 공무원·종사자, 일반직보수체계상에 없는 직위의 경우, 기본보수가 일반직보수체계의 15급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기본보수의 120%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받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탁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수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합명회사,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 가입하거나 고용관계를 통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

(2) 의원·공무원·종사자의 이름을 회사, 합명회사,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행위

(3) 신탁관계를 수반하는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보수를 받는 행위

(4)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임원이나 이사회의 이사로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행위

(5) 제503조에 규정된 관계 기관에 사전 통지와 승인 없이 교수활동(teaching)을 통해 보수를 받는 행위

(b) 현역에서 은퇴한 퇴직 재판관(justice)과 판사(judge)의 교수활동 보수(teaching compensation of justices and judges retired from regular active service). - 제501(a) 조에 따른 제한의 목적에 따라, 이 조항의 제(a)항 제(5)호에 따라 승인된 교수활동을 통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외부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미연방법률 제28편의 제371(b)조에 따라 현역에서 은퇴한 재판관이 받는 경우

(2) 미연방법률 제28편의 제371조 제(f)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판사가 1년 동안에 수행한 교수활동의 대가로 미연방법률 제28편의 제371(b)조에 따라 현역에서 은퇴한 미연방의 판사가 보수를 받은 경우

(3) 미연방법률 제28편의 제372(a)조에 따른 현역에서 은퇴한 미연방의 재판관 또는 판사가 받은 경우

5. U.S.C. app. 제503조. 운영(administration)

이 편은 다음에 관한 규정과 법규를 대상으로 한다.(This title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1) 다음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A) 하원의 의원·공무원·종사자에 대한 하원의 공무표준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of Official Conduc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 제(A)목에 규정된 공무원과 종사자를 제외한 상원의원과 법제 부서의

공무원과 종사자의 경우, I 편에 따른 공무원과 종사자가 제출하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위원회, 다만 이 조항의 권한이 공무원과 종사자에 대한 그 위원회에 의하여 위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정부윤리국과 행정부의 공무원과 종사자에 관하여 각 기관의 윤리감독관에 운영되는 경우

(3) 사법부 공무원과 종사자에 관하여 미연방 사법위원회(Judicial Conference)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5. U.S.C. app. 제504조. 민사 벌금(civil penalties)

(a) 민사소송(civil action). – 법무장관은 제501조 또는 제50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미연방의 적절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소송을 제기 받은 법원은 $1만 이하의 민사벌금과 금지된 행위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액 중 그 액수가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자문(advisory opinions). – 제503조에 규정된 단체는 이 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이 편을 해석하는 자문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문을 제공 받은 자, 모든 구체적인 관점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 정황에 관련되어 이 편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이 자문을 받은 이후 그것의 규정과 결정(findings)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한 경우 그런 위반행위의 결과로 (a)항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5. U.S.C. app. 제505조. 정의(definitions)

이 편의 목적에 따라(for purpose of this title) :

(1) "의원"이란 미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는 대의원 및 상주대표를 말한다.

(2) “공무원 또는 종사자”란 미연방법률 제18편의 제2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수정부종사자(special government employment)를 제외한 미연방 정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를 말한다.

(3) “사례금”이란 의원·공무원·종사자가 출연(appearance), 강연(speech), 기고(article) [출연·강연·기고의 주요 내용이 당해 공직자의 공무상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정부에서의 지위(status) 때문에 사례금을 받았다면 출연·강연·기고 포함] 를 이유로 받는 금품(money or anything of value)을 말하며, 위의 의원・공무원・종사자(친척 한 명 포함)에 의하여 발생된 출장경비를 다른 사람이 지불하거나 변제한 경우 그 출장경비를 사례금에서 제외하고, 출장경비를 지불 받거나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장경비의 범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출장경비”란 의원・공무원・종사자와 그의 친척 한 명이 주거지나 근무지를 떠나 있는 동안의 교통비, 숙박비와 식비를 말한다.

(5) “자선단체”란 「국세법,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의 제170(c)조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연방조달청법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41 U.S.C. 7)

41 U.S.C. 제423조. 계약자 입찰·제안 정보 또는 공급자 선정 정보의 공개와 입수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disclosing and obtaining contractor bid or proposal information or source selection information)

(a) 조달정보 공개금지(prohibition on disclosing procurement information)

(1) 법률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입찰·제안 정보 또는 공급자 선정 정보와 관련되는 연방기관 조달계약의 체결 전에 고의적으로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제5편의 제37장에 따라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민간부문 단체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앞의 제한사항에 더하여 그 종사자의 파견근무가 종료된 이후 3년간 입찰·제안 정보 또는 공급자 선정 정보를 고의로 공개해선 아니 된다.

(2) 제(1)호는 다음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A) 미연방의 현직공직자 또는 퇴직공직자, 연방기관의 조달사업과 관련하여 미연방을 대리하거나 대리해왔거나 또는 조언하거나 조언해왔던 사람이

(B) 그 직위(office), 고용관계(employment), 조언관계(relationship)로 인하여 입찰·제안 정보 또는 공급자 선정 정보를 알거나 알았던 사람

(b) 조달정보 입수 금지(prohibition on obtaining procurement information)
법률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입찰·제안 정보 또는 공급자 선정 정보와 관련되는 연방기관 조달계약의 체결 전에 고의적으로 그 정보를 입수해서는 아니 된다.

(c) 계약자의 민간부분 채용요청에 대한 조달공무원의 조치(actions required of procurement officers when contacted by offerors regarding non-federal employment)

(1) 간소화된 조달계약의 한도금액(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을 초과하는 연방기관의 조달계약에 직접적·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관의 공직자가 자신의 민간부문 채용 가능성에 관하여 그 연방기관 조달에 참여하는 입찰자 또는 제안자와 접촉하는 경우, 그 공직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즉시 그 공직자의 상관과 소속기관의 윤리담당 공직자(지명된 공직자)에게 서면으로 그 접촉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B) (i) 민간부문 채용의 가능성을 거절해야 한다.

(ii) 제18편 제208조의 요구사항과 다음의 경우를 근거로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연방기관 조달에 다시 참여하도록 기관이 승인하는 시점까지 그 조달에 직접적·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스스로 제척해야 한다.

(I) 그 연방기관의 조달에 더 이상 입찰자 또는 제안자가 아닌 경우

(II) 민간부문에의 채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입찰자 또는 제안자와의 모든 논의가 채용에 대한 승낙(agreement)이나 합의(arrangement) 없이 종료된 경우

(2) 해당 기관은 이 항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된 각 보고서를 제출된 이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보고서는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보고서의 일부분이 제5편 제552조 제(b)(1)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금지되는 비공개 정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이 항의 요구사항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공직자는 이 조항의 제(e)항에 규정된 처벌과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4) 입찰자 또는 제안자는 공직자가 제(1)호의 제(A)목이나 제(B)목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서, 이 항의 제한을 받는 공직자와 채용에 관한 논의를 한 경우, 이 조항의 제(e)항에 규정된 처벌과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d) 퇴직공직자의 계약자로부터 보수 수령 금지(prohibition on former official's acceptance of compensation from contractor)

(1) 연방기관의 퇴직공직자는 다음의 현직 근무 이후 1년 이내에 계약자로부터 그 계약자의 종사자, 임원, 이사 또는 상담역(consultant)으로서 보수를 수령할 수 없다.

(A) $1천만을 초과하는 계약의 계약자로 선정된 조달사업에서, 계약자 선정이나 선정된 계약자와 계약체결 당시에, 퇴직공직자가 계약담당 공무원, 공급자 선정자, 공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원, 재정·기술평가 팀의 長으로 근무한 경우

(B)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금액이 $1천만을 넘는 계약에서 사업 관리자(program manager), 사업 보조관리자 또는 계약 관리 공무원(administrative contracting officer)으로 근무한 경우

(C) 퇴직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연방기관을 위하여 다음의 결정을 한 경우

(i) $1천만을 초과하는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의 체결,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의 변경, 작업지시(task order)이나 납품지시(delivery order)의 결정

(ii) $1천만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간접비용이나 기타 배부율(overhead or other rates)을 정하는 결정

(iii) $1천만을 초과하는 계약금액의 지불을 승인하는 결정

(iv) $1천만을 초과하는 청구금액(claim,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거나 정산하기 위한 결정

(2) 제(1)호의 어느 것도, 그 호의 제(A)목, 제(B)목 또는 제(C)목에 규정된 계약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의 독립체(entity)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용역을 제작하지 않는 계약자의 부서(division)나 계열사(affiliate)로부터 연방기관의 퇴직공직자가 보수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보수를 수령하는 퇴직공직자는 이 조항의 (e)항에 규정된 처벌(penalties)이나 행정조치(administrative actions)를 받게 된다.

(4) 퇴직공직자가 계약자로부터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이 호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퇴직공직자에게 그러한 보수를 제공한 계약자는 이 조항의 (e)항에 규정된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5) 이 호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은 연방기관의 공직자 또는 퇴직공직자를 위하여 그 공직자나 퇴직공직자가 이 호에 의하여 특정 계약자로부터 보수를 수령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령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지정된 윤리기관 공직자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e) 처벌과 행정조치(penalties and administrative actions)

(1) 형사처벌(criminal penalties)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 조항의 제(a)항이나 제(b)항을 위반한 행위에 종사한 자는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제18편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받거나 두 가지의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A) 금품을 이유로 제(a)이나 제(b)항이 다루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B) 연방기관 조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을 획득하거나 누구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민사벌금(civil penalties)
법무부 장관은 이 조항의 제(a)항, 제(b)항, 제(c)항 또는 제(d)항을 위반한 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든지, 미연방의 관계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거 우위의 원칙에 의해 그 위반행위가 입증된 경우에, 그 사람은 민사벌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런 행위에 종사한 사람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5만 이하의 금액에 금지행위의 대가로 그 사람이 받았거나 제공한 금액의 두 배를 더하여 민사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그런 행위에 종사한 단체의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5십만 이하의 금액에 금지행위의 대가로 그 단체가 받았거나 제공한 금액의 두 배를 더하여 민사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3) 행정조치(administrative actions)

(A) 연방기관은 계약자 또는 어느 사람이 이 조항의 제(a)항, 제(b)항, 제(c)항

또는 제(d)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종사했다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그 연방기관은 다음의 조치 중 적절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i)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기관의 조달의 취소(cancellation)

(ii) 다음에 관한 계약의 무효화(rescission)

(I) 계약자 또는 그 계약자를 대리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II) 그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장이 증거 우위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계약자나 그 계약자를 대리하는 자가 위법행위에 종사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iii) 연방획득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의 절차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위한 중지(suspension) 또는 금지(debarment) 절차의 개시

(iv) 제5편의 제75장 또는 다른 적용 법률이나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적대적인 인사조치(adverse personnel action, 정직, 감봉, 해고 등)의 개시

(B) 연방기관이 제(A)(ii)항에 따라 계약을 무효화하면, 미연방은 법률에 규정된 처벌에 더하여 그 계약에 의해 지출된 금액(amount expended)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C) 제(A)(iii)항에 따라 개시된 중지 또는 금지 절차를 위하여, 이 조항의 제(a)항, 제(b)항, 제(c)항 또는 제(d)항을 위반한 행위에 종사하는 것이 정부 계약자 또는 하도급 업자의 현재 책무(present responsibility)에 영향을 미친다.

(f) 정의(definitions)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입찰 또는 제안 정보(contractor bid or proposal information)"란 연방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이나 제안의 일부분으로써 또는 그 입찰·제안과 관련하여 연방기관에 제출되는 다음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A) 비용 산출 또는 가격 결정 자료(제10편의 제2306a(h)조 또는 이 편의 제

254b(h)조에 정의된 조달에 관련된 바에 따름)

(B) 간접 비용과 직접 노동 임금

(C)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표시한 제작 과정, 운영 또는 기술에 관한 독점적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

(D)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자 입찰 또는 제안 정보"라고 표시한 정보

(2) "공급자 선정정보"란 연방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이나 제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된 다음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A) 연방기관의 요청으로 제출된 봉함입찰 서류(sealed bids)의 입찰가격(bid prices) 또는 개찰 이전의 입찰가격 목록

(B) 연방기관의 요청으로 제출된 제안 비용이나 가격, 또는 그 제안 비용이나 가격 목록

(C) 공급자 선정 계획

(D) 기술 평가 계획

(E) 제안서의 기술평가

(F) 제안서의 비용이나 가격 평가

(G) 계약체결 대상자(award of a contract)로 선정될 합리적인 가능성을 가진 제안서를 판별하기 위한 경쟁 범위의 측정방법(competitive range determinations)

(H) 입찰자, 제안자 또는 경쟁자의 순위

(I) 공급자 선정 위원회,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평가 서류

(J) 공급자 선정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관의 장, 그의 지명자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그 정보와 관련되는 연방기관 조달의 청렴성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태롭게 한다고 내린 개별적 결정(case-by-case determination)에 근거한 "공급자 선정 정보"라고 표시된 정보

(3) "연방기관(federal agency)"이란 제40편의 제47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4) "연방기관 조달(federal agency procurement)"이란 승인된 예산(appropriated

funds)을 사용하여 연방기관이 비연방 공급자로부터 재화와 용역(건설 포함)의 획득(경쟁적인 절차와 계약체결을 이용함으로써)을 말한다.

(5) "계약담당 공무원(contracting officer)"이란 해당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정부를 대리하여 연방기관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계약에 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이의제기(protest)"는 제35편의 제31장의 제V절에 따라, 연방기관의 조달계약 체결 또는 제안된 체결에 대해 이해관계자에 의한 문서상의 이의를 말한다.

(7) "공직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제5편 제21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B) 제5편 제2105조에 규정되어 있는 종사자

(C) 제5편 제2101(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군복무자

(g) 이의제기에 대한 제한(limitation on protests)

이의제기를 하는 자가 이 조항의 제(a)항, 제(b)항, 제(c)항 또는 제(d)항의 위반 행위의 증거로 믿을 만한 정보를 그 위반 가능성(possible violation)을 최초로 발견한 후 14일 이내에 조달을 담당하는 연방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누구든지 그 위반을 주장하는 연방기관 조달계약의 체결 또는 제안된 체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미연방의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은 그러한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할 수 있다.

(h) 예외 규정(savings provisions)

이 조항은 다음을 제한하지 않는다.

(1) 해당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접수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 또는 집단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들이 접수 받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계약자가 자신의 입찰이나 제안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접수자가 그 정보를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연방기관의 조달계약에 대한 체결 전에 연방기관이 조달을 재개할 계획이 없는 한, 그 연방기관이 취소한 조달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 또는 접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계약자 입찰, 제안 정보 또는 공급자 선정 정보에 대한 비공인 공개나 접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방기관 공직자와 연방기관 조달에 따른 계약이나 하청의 제안자 또는 잠재적 제안자 사이에 개별모임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5) 미의회, 미의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감사원장, 연방기관, 연방기관의 감사관에게 정보를 알리지 못하도록 승인하지 않고 그들이 정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한다.

(6) 연방기관 조달계약의 체결 또는 제안된 체결에 이의제기 과정에서 미연방의 감사원장에게 정보를 알리지 못하도록 승인하지 않고, 그가 정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아니한다.

(7)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요구사항(requirements), 처벌(sanction), 계약 위약금(contract penalties), 구제방법(remedies)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Public Contracts의 General Provisions. 41 U.S.C. 1)

41 U.S.C. 제22조. 미의회 의원의 이해관계(interest of Member of Congress)

미의회 의원은 누구든지 미연방에 의하여 또는 미연방을 대리하여 체결되거나 승인된 계약이나 협약의 지분(share) 또는 일부(part),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benefit)을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이 조항의 규정은 「농업조정법,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7 U.S.C. 601 et seq.」, 「연방농가대출법, the Federal Farm Loan Act」, 「비상농가담보대출법, the Emergency Farm Mortgage Act of 1933」, 「연방농가담보대출공사법, the Federal Farm Mortgage Corporation Act」, 「농가신용법, the Farm Credit Act of 1933」, 그리고 「주택소유자대출법, the Home Owners' Loan Act of 1933, 12 U.S.C. 1461 et seq.」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나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농무부 장관이 농부들과 체결하는 계약이나 협약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면제는 공공 기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Contracts, 18 U.S.C. 23)

18 U.S.C. 제431조. 미의회 의원에 의한 계약(contracts by Member of Congress)

미의회의 의원 · 대의원 · 상주대표인 자는 누구든지 그가 그 권한 · 자격을 부여받기 이전이나 이후에 직 · 간접적으로 그 자신 또는 그의 위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그의 사용(use)·이득(benefit)·편의(on his account)를 위하여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기관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 받은 공무원이나 일반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나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떠맡거나(undertake) 실행하거나 유지하거나 향유하는 경우,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체결되는 모든 계약·협약은 무효화 된다. 그리고 그런 계약 · 협약의 대가로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기관이 선불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부처 · 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요구한 선불금액을 환수하는데 실패하거나 거부당한 경우, 그 선불금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상환을 거부한 자와 그의 담보(sureties)를 상대로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8 U.S.C. 제432조. 미의회 의원과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종사자(officer or employee contracting with Member of Congress)

미연방의 공무원·종사자는 누구든지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기관을 대리하여 직·간접적으로 미의회의 의원 · 대의원 · 상주대표의 권한 · 자격을 부여받는 시점에 관계없이 그들과 계약 · 약정(bargain) ·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18 U.S.C. 제433조. 특정계약에 관한 면제 (exemptions with respect to certain contracts)

이 편의 제431조와 제432조는 일반 회사의 대체적인 이득을 위하여 체결되거나 수용된 계약·협약까지 포괄하지 아니한다. 계약·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납품(delivery)과 대금지불(payment)을 위해 준비된 환어음(bills of exchange)이나 기타 재산의 매매까지 포괄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그것의 선불, 대출, 할인, 구매 협약이나 재구매 협약, 연장, 갱신 또는 그것을 위한 담보의 인수, 양도나 대체, 또는 「부흥금융회사법, the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Act」, 「농업조정법」, 「연방농가대출법」, 「비상농가담보대출법」, 「농가신용법」, 「주택소유자대출법」, 「농민주택관리법, the Farmers' Home Administration Act of 1946」, 「뱅크헤드-존스 농가임차인법, the Bankhead Jones Farm Tenant Act」에 따라 체결된 기타의 계약 · 협약, 농작물재해보험협약(crop insurance agreements) 또는 농무부 장관이 농민과 체결한 기타의 계약·협약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면제사항은 공공 기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선물 및 여행
(Gifts and Travel)

5 U.S.C. 제7353조. 미연방 종사자에 대한 선물(gifts to Federal employees)

(a) 제(b)항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의회 의원,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의 공무원과 종사자는 다음의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의 고용주체(individual's employing entity)에 공무상의 조치(official action)를 요구하거나, 그 고용주체와 거래하거나 그 고용주체에 의하여 규제되는 활동(activities regulated by)을 수행(행정부의 경우 공무원과 종사자)하는 자

(2) 공직자가 공무상 임무(official duties)를 수행하는지 수행하지 않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

(b) (1) 각 윤리감독국(supervising ethics office)은 이 조항을 이행하고 적절한 경우에 합리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

(2) (A) 제(B)목을 조건으로,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제(1)호에 따른 윤리감독국이 제정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선물을 받을 수 있다.

(B) 공무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한 대가로 제(A)목에 따른 어떠한 선물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의원,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미연방정부나 그의 기관을 대신해서 법률에 규정된 권한(statutory authority)에 따라 선물을 받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의 어느 것도 민간부문 단체의 종사자가 제37장에 따라 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그 장에 따라서 그 단체로부터 보수와 수당(pay and benefits)을 받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c) 이 조항을 위반한 의원, 공무원과 종사자는 관계 법률, 행정명령(Executive orders)과 규칙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와 교정조치(remedial action)를 받게 된다.

(d) 이 조항의 취지에서 -

(1) "윤리감독국(Supervising ethics office)"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하원의 의원, 공무원과 종사자를 위한 하원의 표준행동강령위원회(the Committee on Standards of Official Conduct of House of Representatives)

(B) 상원의 의원, 공무원과 종사자를 위한 상원의 윤리특별위원회(the Select Committee on Ethics of the Senate)

(C) 판사, 사법부 공무원과 종사자를 위한 미연방의 연방법관협의회(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D)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과 종사자를 위한 정부윤리국(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E) 제(A)목과 제(B)목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입법부의 공무원과 종사자의 경우에는, 「정부윤리법」 제 I 절에 따라 공무원과 종사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그 장에 따라 이송되는 제(A)목과 제(B)목에 언급된 위원회. 다만, 이 조항의 권한이 그 공무원과 종사자에 관하여 그 위원회에 의해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과 종사자(officer or employee)"는 미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의 임명 직위와 선출 직위(appointive or elective position)를 보유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5 U.S.C. 제7353조. 명예클럽회원 가입에 대한 제한 (limitation on acceptance of honorary club memberships)

(a) 정의. - 이 조항에서

(1) 선물. - “선물”은 「정부윤리법, 5 U.S.C. app.」 제109(5)조에서 규정한 의미를 가진다.

(2) 사법 공무원(judicial officer). - "사법 공무원“은 「정부윤리법」 제109(10)조에서 규정한 의미를 가진다.

(b) 명예클럽회원 가입 금지(prohibition on acceptance of honorary club memberships). - 사법 공무원은 연간 $50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명예클럽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5 U.S.C. 제7351조. 상관에 대한 선물(gifts to superiors)

(a) 종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무상 상급자(official superior)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다른 종사자에게 기부금(contribution)을 요구하는 행위

(2) 직무상 상급자에게 선물로써 기부금(donation)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행위

(3) 자신보다 보수를 적게 받는 종사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

(b) 이 조항을 위반한 종사자는 고용기관이나 주체로부터 적절한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c) 각 윤리감독국(제7353조(d)(1)에 규정된 대로)은 결혼이나 퇴직과 같은 특별한 경우, 선물이 관례적으로 주어지거나 교환되는 기타의 상황에서. 자발적인 선물이나 기부금을 수수하는 것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Act. 5 U.S.C. 73)

5 U.S.C. 제7342조.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의 수령과 처리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a)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1) "종사자"란 다음을 말한다.

(A) 이 편의 제2105조에 규정된 종사자와 미연방 우정공사(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나 우편요금위원회(Postal Rate Commission)의 임원과 종사자

(B) 이 편의 제3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와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개인을 포함하여 미연방과 미연방의 기관, 부처, 시설(establishment)과 계약을 체결한 전문가(expert) 또는 상담가(consultant)

(C) 미연방의 준주·자치령의 정부, 콜럼비아구의 정부가 고용하거나 그 정부의 직위를 가진 개인

(D) 제복 착용 근무자(member of a uniformed service)

(E) 대통령과 부대통령

(F) 이 편의 제2106조에 규정된 미의회 의원(부대통령 제외)과 대위원

(G) 제(A)목부터 제(F)목까지 규정된 개인의 배우자(그 개인과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는 한)와 부양자녀(「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제152조의 정의 내에서). 다만, 그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제(A)목부터 제(F)까지에 취업한 경우 제외

(2) "외국 정부(foreign government)"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외국의 국가, 州, 지방과 市 정부를 포함한 공권력(governmental authority)의 단위

(B) 구성원이 제(A)목에 규정된 외국 정부로 구성된 국제 또는 다국적 단체

(C) 그 단위나 단체를 대리하는 동안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3) "선물(gift)"이란 외국 정부가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유형 또는 무형의 예물(present)을 말한다(훈장 제외).

(4) "훈장(decoration)"이란 외국 정부가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order), 문장(device), 메달(medal), 기장(badge), 표장(insignia), 휘장(emblem), 표창(award)을 의미한다.

(5) "최소금액(minimal value)"이란 수령 당시에 미연방에서의 소매 금액이 $1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음은 예외로 한다.

(A) 1981년 1월 1일 이후 3년 간격으로, 직전 3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소금액은 국무장관과 협의한 후 총무청장(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에 의하여 재정의 되어야 한다.

(B) 고용기관의 규정은 이 호에 따라 규정된 최소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소금액" 을 정할 수 있다.

(6) "고용기관(employing agency)" 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A) 제(c)(2)(A)항, 제(e)(1)항과 제(g)(2)(B)항에 규정된 책무(responsibility)를 하원의 사무국장(Clerk of the House)이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원의원, 공무원과 종사자를 위한 하원의 표준행동강령위원회(the Committee on Standards of Official Conduct of House of Representatives)

(B) 제(c)(2), 제(d)항과 제(g)(2)(B)항에 규정된 책무(고용기관의 승인과 관련된 책무 제외)를 상원의 사무국장(secretary of the senate)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원의원과 상원의 종사자를 위한 상원특별윤리위원회(the Select Committee on Ethics of the Senate)

(C) 판사와 사법부 종사자를 위한 미연방법원의 행정사무국(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D) 입법부 종사자와 행정부 종사자를 위해 종사자를 임용한 부처, 기관, 사무국이나 기타 단체

(b) 종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물이나 훈장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부추기는 행위

(2) 제(c)항과 제(d)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선물이나 훈장을 받는 행위

(c) (1) 미의회는 다음의 행위를 승인한다.

(A) 기념품(souvenir)이나 예의 표시(mark of courtesy)로 제공되어 받은 최소금액의 선물을 종사자가 받아서 보유하는 행위

(B) 최소금액 이상의 선물이 교육장학금 또는 질병치료의 성격이거나,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반감 또는 곤란한 상황을 일으키거나, 미연방의 외교관계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 경우에 그 선물을 종사자가 수령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i) 최소금액 이상인 유형의 선물이 미연방을 대표하여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고, 수령과 동시에 미연방의 재산이 되는 경우

(ii) 최소금액 이상의 선물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하고, 미연방의 이익에 부합하고 고용기관이 제정한 규정과 고용기관이 승인한 경우, 미연방의 외부에서의 최소금액 이상의 여행 선물이나 여행경비(교통, 식사, 숙박)를 종사자가 수령하는 경우

(2) 최소금액 이상의 유형선물 [제(1)(B)(ii)호에 규정된 선물 제외] 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종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A) 그 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의 고용기관에 기탁

(B) 그의 고용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선물을 공용(official use)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기탁

제(B)목에 따라 선물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종료된 이후 30일 안에, 고용기관은 제(e)(1)항에 따라 총무청장에게 그 선물을 보내거나, 제(e)(2)항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제공해야 한다.

(3) 종사자가 제(2)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소금액 이상의 선물을 기탁하거나, 그의 고용기관의 구체적인 지침(specific instructions)에

따라 최소금액 이상의 여행이나 여행경비를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1)(B)(ii)호에 규정된 여행이나 여행경비를 수령한 이후 30일 안에, 그 종사자는 그 선물에 대하여 제(f)항에 규정된 정보를 기재한 내역서를 그의 고용기관이나 그 고용기관의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d) 미의회는 훈장을 받은 종사자의 고용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전투작전 중에 적극적인 야전근무(active field service)를 인정받아 제공되거나, 기타 탁월하고 특별한 공적으로 수여되는 훈장을 종사자가 수령, 보유, 착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훈장은 미연방을 대표하여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고 미연방의 재산이 되어야 하며, 종사자는 그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제(e)(1)항 또는 제(e)(2)항에 따른 처분을 위해 총무청장에게 보내기 위하여 그의 고용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e) (1) 제(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을 위해 고용기관에 기탁된 선물이나 훈장은 (A) 수여자에게 반환되거나, 제40편의 제 I 절과 「연방재산 및 행정관리법,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of 1949, 41 U.S.C. 251 et seq.」 제III절의 규정에 따라 양도, 기증 또는 기타 처분을 위해 총무청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을 위해 기탁된 어떠한 선물이나 훈장이라도 국무장관의 승인이 없는 경우 매각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매각이 미연방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선물과 훈장은 협상 매매(negotiated sale)에 의하여 매각될 수 있다.

(2) 상원의원이나 상원의 종사자가 받은 선물이나 훈장을 처분하기 위해 상원의 사무국장에게 기탁되거나 공용 사용이 종료된 이후 기탁된 경우, 그 선물이나 훈장은 미연방 상원의 「예술품과 골동품에 관한 위원회, Commission on Arts and Antiquities of the United States Senate」에 의하여 처분된다. 그러한 선물과 훈장은 그 위원회에 의해 기증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고, 규정되는 조건으로 다음의 기관에 양도되거나 기증될 수도 있다.

(A) (i) 미연방, (ii) 미연방의 주, 준주, 자치령 또는 앞에서 언급한 것의 지방자치단체(political subdivision), (iii) 콜럼비아구

(B) 「국세법」 제501(a)조에 따라 면세되고 동법 제501(c)(3)조에서 규정된 단체 앞의 문장에 규정된 대로 처분되지 않은 선물이나 훈장은 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총무청장에게 이송되어져야 한다. 총무청장이 그 선물과 훈장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무청장은 그 선물과 훈장을 위원회에 반환하고 위원회는 그 선물과 훈장의 매각이 미연방의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한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 선물과 훈장을 처분할 수 있다.

(f) (1) 매년 1월31일 이전에, 각 고용기관이나 그의 대리인은 제(c)(3)항에 따라 그 기관의 종사자가 전년도에 제출한 모든 내역서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모든 내역서의 종합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는 국무장관에게 그 기관의 목록을 이송해야 한다.

(2) 그 목록은 각 유형의 선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종사자의 이름과 직위

(B) 선물을 수령한 타당한 상황과 선물에 대한 간결한 기술

(C) 외국 정부의 정체(identity)와 선물을 준 개인의 이름과 직위

(D) 선물의 수령 일자

(E) 수령 당시 미연방에서의 추정금액

(F) 선물의 처분 또는 현재의 위치

(3) 그 목록에는 각 여행이나 여행경비 선물에 대한 사항도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종사자의 이름과 직위

(B) 선물을 수령한 타당한 상황과 선물에 대한 간결한 기술

(C) 외국 정부의 정체와 선물을 준 개인의 이름과 직위

(4) (A) 중앙정보국(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 그 목록을 이송하는 경우, 중앙정보국장은 그러한 정보의 공개가 미연방의 정보출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서면으로 국무부 장관에게 입증하면, 중앙정보국장은 제(2)호와 제(3)호의 제(A)목과 제(C)목에 규정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B) 국가정보국(the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egence)이 그 목록을 이송하는 경우, 국가정보국장은 그러한 정보의 공개가 미연방의 정보출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서면으로 국무부 장관에게 입증하면, 국가정보국장은 제(2)호와 제(3)호의 제(A)목과 제(C)목에 규정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g) (1) 각 고용기관은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행정부의 모든 고용기관은 그러한 규정을 국무장관이 규정한 지침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각 고용기관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각 고용기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소속 종사자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필요한 경우, 선물의 가치를 평가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C) 이 조항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h) 법무부 장관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선물을 고의로 외국 정부에게 요구하거나 수령하거나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된 그러한 선물의 기탁과 보고를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을 접수한 법원은 부적절하게 요구하거나 수령한 선물의 소매 금액에 $5천을 더한 금액 이하의 벌금을 그 종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i) 대통령은 미연방의 외교담당 사절단의 모든 부서장들에게, 그들의 주재국 정부(host governments)에게 미연방의 일반적 정책은 미연방의 종사자가 최소금액 이상의 선물이나 훈장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j) 소속 종사자가 선물과 훈장을 수령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고용기관이 규정을 만드는 경우,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이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k) 이 조항의 규정은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의 제108A조가 적용되는 보조금이나 다른 형태의 원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22 U.S.C. 33)

22 U.S.C. 제2458a조. 미연방 종사자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의 참여 (federal employee participant in cultural exchange programs)

(a) 보조금 및 기타 외국정부의 원조 : 가족·가계에 대한 비용 지원 금지 : "미연방 종사자"에 한정

(1) 미의회는 미연방 종사자의 문화교류에 다음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기타 원조를 미연방 종사자가 수령하는 것을 승인한다.

(A) 이 편의 제2452(a)(2)(i)조에 규정된 유형의 경우

(B) 이 편의 제2451조에 규정된 목적에 상응하게 수행되어지는 경우

(C)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국무장관이 구체적으로 승인한 경우

미의회는 미연방 종사자의 가족이나 가계의 구성원에 의하여 발생된 비용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기타의 원조를 미연방 종사자가 수령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2) 이 조항의 취지에서, "미연방 종사자(federal employee)"는 제5편의 제7342(a)(1)조의 제(A)목부터 제(F)목까지 정의된 모든 종사자를 말하지만, 제(G)목에 규정된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b) 제5편의 제7342조에 해당되는 선물이 아닌 외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기타 원조(foreign grants and other assistance not gifts for purposes

of section 7342 of title 5)

이 조항의 제(a)항에 따른 미의회의 승인과 관련된 보조금이나 기타의 원조는 제5편의 제7342조에 해당하는 선물이 아니다.

(c) 규정(regulations)

국무장관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을 제정 · 공포할 수 있다.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31 U.S.C. 13)

31 U.S.C. 제1353조. 민간부문으로부터 여행 경비 수령

(a)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무청장은 정부윤리국장과 협의하여, 행정부 기관(독립행정기관 포함) 종사자의 공무상 임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자(배우자 포함)가 회의나 그와 유사한 업무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경비, 체재비용 및 부수비용에 관하여 비연방 출처로부터 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종사자가 그 기관을 대신하여 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인지에 관한 조건을 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받은 금액은 그 출장경비 등에 지출이 적합한 예산(appropriation)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물로 지불받은 경우에, 그 종사자가 정부로부터 그 출장경비를 지불받을 금액에서 비례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b) 제5편의 이 조항, 제4111조 또는 제7342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기관 또는 종사자는 제(a)항에 규정된 비용에 대한 지불금을 수령해서는 아니 여야된다. 앞 문장을 위반하여 어떠한 지불금을 수령한 종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 한다.

(1) 법률에 규정된 벌금에 추가하여, 수령된 지불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무부의 일반기금(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에 기탁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상환한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불금도 받을 권리가 없게 된다.

(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부(executive branch)"란 모든 행정부의 기관(제5편의 제105조에 정의된 바에 따름)을 의미한다.

(2) "행정부의 종사자(employee in the executive branch)"란 다음을 의미한다.

(A) 행정부에 근무하는 임명직 공무원과 종사자

(B) 제5편의 제3109조에 따른 행정부에 근무하는 전문가와 상담가(consultant)

(3) "지불금(payment)"이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보상금(payment)이나 변상금(reimbursement)을 말한다.

(d) (1) 행정부의 각 기관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가 이 조항에 따라 $250 이상의 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제(2)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정부 윤리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윤리국장은 그 보고서에 대하여 공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요구된 보고서는 각각의 지불금과 관련하여

(A) 지불금액과 지불 유형, 지불을 한 사람의 이름, 그 종사자의 이름, 회의 또는 유사 업무의 성격, 출장 시간과 장소, 출장비용의 성격 그리고 총무청장이 제(a)항에 따라 규정으로 제정한 기타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B) 전년도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의 기한 내에 있었던 지불금에 관해서는 매년 5월3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C) 전년도 4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의 기한 내에 있었던 지불금에 관해서는 매년 11월3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부금, 상금과 기타 지불금의 수령
(Acceptance of contributions, awards, and other payments. 5 U.S.C. 41)

5 U.S.C. 제4111조. 기부금, 상금과 기타 지불금의 수령

(a) 대통령령에 따라 인정된 범위에서, 비정부 시설(non-government facilities)의 훈련에 부수되는 기부금과 상금, 회의참석에 부수되는 출장비용, 체재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지불금은 제18편의 제209조와 관계없이 종사자가 지불받거나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부금, 상금과 지불금은 제26편의 제501(a)조에 따라 면세가 되며 재무부 장관에 의하여 제26편의 제501(c)(3)조에 규정된 단체로 결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b) 현금이든 현물이든 기부금, 상금 및 지불금이 이 조항의 제(a)항에 따라 출장비용, 체재비용과 기타 비용이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정부 시설에서의 훈련 또는 회의 참석에 부수되는 출장비용, 체재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종사자가 정부로부터 지불받는 때에 적절한 감액이 있어야 한다.

친척 채용의 제한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5 U.S.C. 31)

5 U.S.C. 제3110조. 친척 채용의 제한

(a)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1) "기관(agency)"이란 다음을 말한다.

(A) 행정부의 기관

(B) 입법부의 사무국, 기관 또는 기타 시설

(C) 사법부의 사무국, 기관 또는 기타 시설

(D) 콜럼비아구 정부

(2) "공직자(public official)"란 기관의 고용과 관련하여 개인을 임명, 고용, 진급, 승진시키거나 임명, 고용, 진급, 승진에 개인을 추천하는 권한을 법률,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거나 위임받은 공무원(대통령과 미의회 의원 포함), 제복 근무자, 종사자와 기타 개인을 말한다.

(3) "친척(relative)"이란 공직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백·숙부, 이·고모, 사촌, 조카, 남편, 부인, 시부·장인, 시모·장모,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 편부모, 편자녀, 의붓 형제자매,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로 관계되는 개인을 말한다.

(b) 공직자는 자신이 근무하거나 사법권이나 단속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문관 직위(civilian position)에 자신의 친척인 개인을 임명, 고용, 진급, 승진시키거나 그의

임명, 고용, 진급, 승진을 옹호할 수 없다. 소속기관에 근무하거나 사법권 또는 단속권을 행사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친척을 임명, 고용, 진급, 승진을 옹호하는 경우, 그 개인은 그 기관의 문관 직위에 임명, 고용, 진급, 승진될 수 없다.

(c)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임명, 고용, 진급, 승진된 개인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재무부는 이렇게 임명, 고용, 진급, 승진된 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d) 인사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은 자연재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유사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비상시에는, 이 조항에 의하여 고용이 금지되는 개인을 임시적으로 고용을 승인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 이 조항은 이 편의 제3317(a)조에 따라 비치된 적임자 인증서(certificate of eligibles) 상의 취업우선대상(preference eligible)인 개인을 제외하는 것이 취업우선대상이 아닌 개인을 임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취업우선대상인 개인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쟁직 채용에 대한 의원의 추천 제한

(Competitive service; recommendations of Senators or Representatives. 5 U.S.C. 33)

5 U.S.C. 제3303조. 경쟁직,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의 추천

경쟁직(competitive service) 지원자를 심사하거나 그 지원자를 임명하는 것과 관련되는 개인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으로부터 그 지원자에 대한 추천을 받거나 고려해서도 안 된다. 다만, 그 지원자의 품성이나 거주지에 대한 사항을 제외된다.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 exceptions. 5 U.S.C. 55)

5 U.S.C. 제5533조. 여러 직위에서 받는 보수지급 제한 및 예외

(a) 이 조항의 제(b)항, 제(c)항과 제(d)항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개인은 하나 이상의 직위에서 달력상 일주일(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 총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기본급을 받을 수 없다.

(b) 이 조항의 제(c)항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는 인사관리국은 관계 당국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적인 노무제공(personal services)을 즉시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도록 결정하는 경우, 그 예외가 이 조항의 제(a)항의 제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c) (1) 법률에 의해 따로 승인되지 않았거나 이 조항의 제(2)호나 제(4)호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직위 중 한 직위에 대한 보수가 상원의 사무국장 또는 하원의 사무국장으로부터 지불되거나 또는 여러 직위 중 하나의 직위가 미의회영선국에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직위들의 총 보수가 연간 $7,724(상원사무국장이 지불하는 보수의 경우 $10,540)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개인에게 하나 이상의 직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2) 이 항의 제(1)호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직위들로 받은 총 보수액의 합계가 하원의원의 보좌관 고용수당으로부터 종사자에게 지불되도록 승인되어 있는 보수의 연간 총 보수의 최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하원의 사무국장이 각각 지불하는 보수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개인에게 하나 이상의 직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이 항의 목적에 따라, "총 보수(gross pay)"는 개인이 받은 보수(연봉제를 제외하고 개인이 지불받는 경우에는 그 것에 상응)의 연간 보수를 의미한다.

(4) 이 항의 제(1)호는 하나 이상의 상담이나 전문 직위로 인하여 받은 보수가 동일한 일자에 지불되지 않는 한, 그 직위들로부터 받은 기간제(when-actually-employed basis) 상의 보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d) 이 조항의 제(a)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하나 이상의 상담이나 전문 직위로부터 받은 보수가 동일한 일자의 동일한 시간에 지불되지 않는 한, 그 직위들로부터 받은 기간제 상의 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시간제 이외의 방법으로 지불된 수수료로 구성된 보수

(3) 여름방학기간 중 하나의 직위에 고용되어 컬럼비아구의 공립학교 교사가 받은 보수

(4)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가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정규 종사자에게 부가업무를 부여하기로 검토한 경우, 공사가 종사자의 정규 업무에 부가하여 비상근 또는 부정기적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지불하는 보수

(5) 하나의 직위를 가진 개인이 수령한 보수

(A) 상원의 사무국장이나 하원의 사무국장이 지불한 보수

(B) 미의회영선국의 직위를 가진 개인이 지급받은 보수

(6) 비상근 등대지기 직위를 가진 종사자에게 미연방 해상경비대가 지불한 보수

(7) 아래 법령의 조항(purview)에 따른 보수

(A) 제2편의 제162조

(B) 제13편의 제23(b)조

(C) 제15편의 제327조

(D) 제20편의 제907조

(E) 제33편의 제873조

(F) 컬럼비아 특별지구 법률 제31편의 제631조 또는 제631(a)조

(e) (1) 이 조항은 제40편의 제174j-1조부터 제174j-7조까지 또는 제174k에 따라 고용된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조항의 제(c)항은 여름방학 동안 하나의 직위에 고용된 경우 컬럼비아구의 공립학교 교사가 받은 보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재산과 정보
(Government property and information)

18 U.S.C. 제641조. 공금, 재산 또는 기록물(public money, property or records)

누구든지 미연방이나 그 부처·기관의 기록물(record), 교환권(voucher), 금전(money), 물건(thing of value) 또는 계약에 따라 제작되거나 제작 중에 있는 재산(property)을 횡령하거나 훔치거나 도용하거나 또는 고의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전환하거나, 허가 없이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그것(기록물, 교환권, 금전, 물건, 재산)이 횡령되었거나 도난당했거나 도용당했거나 전환된 바를 알고서, 자신이 사용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것을 받거나 숨기거나 보유하는 경우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두 가지의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그러나 피고가 단일 재판에서 선고받은 모든 죄목의 금액을 합계한 소유물의 가치가 $1천 미만일 경우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의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가격(value)"이란 도매 또는 소매 중에 더 큰 액수의 액면가(face, par), 시가(market value) 또는 원가(cost price, 비용가격)를 의미한다.

18 U.S.C. 제1719조. 무료우송 특권(Franking privilege)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 편지, 소포 또는 기타 물건을 우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요금이나 등록 수수료(registry fee)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법률에 따라 허용된 공식 봉투, 라벨(label) 또는 홍보방법(endorsement)를 사용하는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18 U.S.C. 제1913조. 지출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한 로비활동 (lobbying with appropriated moneys)

미의회의 명시된 승인이 없는 때에는, 미의회의 법률에 따라 지출이 승인된 금전은 법률제정(legislation), 법률(law), 비준(ratification), 정책(policy) 또는 정부예산(appropriation)을 투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찬성, 채택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그러한 법률제정, 법률, 비준, 정책, 정부예산을 발의하는 법안(bill), 대책(measure) 또는 해결방안(resolution)을 도입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미의회 의원, 관할권(jurisdiction) 또는 어떤 기관의 공직자에게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개인적인 업무(personal service), 광고, 전신, 전화, 편지, 인쇄물 또는 기타의 방법에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것은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 또는 종사자가 미의회 의원, 공직자 또는 미의회나 그러한 공직자의 요청으로 적절한 공식채널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제정, 법률, 비준, 정책 또는 정부예산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러한 의원이나 공직자와 정보를 교류(communicate)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또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으로, 이 조항에 의한 금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외교정책, 방첩, 정보활동이나 국가안보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 조항의 위반은 제31편의 제1352(a)조의 위반을 구성한다.

31 U.S.C. 제1344조. 승용수단의 이용(passenger carrier use)

(a) (1) 지출이 승인된 예산이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연방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승용수단이 공무목적을 위한 운송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승용수단의 유지, 운행 수리비용으로 그 연방기관에 의해 지출될 수 있다.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제(b)항과 제(c)항에 열거된 개인 이외의 어느 개인을 그의 거주지와 근무지 간에 운송하는 것은 공무목적의 운송이 아니다.

(2) 제(1)호의 목적에 따라,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거주지와 다음의 다양한 지점 사이의 운송을 말한다.

(A) 이 조항의 제(e)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B) 정보수집, 방첩, 보안업무 또는 형법상 집행 임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연방기관장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공무목적을 위한 운송이다.

(b) 승용수단은 다음 연방기관의 공무원과 종사자가 주거지와 근무지 간의 이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1) (A) 대통령과 부통령

(B) 대통령이 지정하는 6명 이하의 대통령실 소속의 공무원이나 종사자

(C) 대통령의 지정하는 10명 이하의 연방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

(2)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부대법원장;

(3) (A) 제5편의 제5312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보수표 1급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B) 그 운송이 적절하다고 이 호의 제(A)목에 규정된 공무원이 결정한 경우, 그 공무원의 주참모(principal deputy) 1 명

(4) 재외 제일 외교관과 영사관, 미연방의 유엔 대사

(5) 국방부 차관, 국방부 차관보, 공군장관, 육군장관, 해군장관, 합동참모본부의 구성원과 부의장, 해양경비대 대장

(6) 중앙정보국장, 연방수사국장, 마약단속국장

(7) 연방준비제(Federal Reserve System) 이사회 의장

(8) 연방감사원장, 미연방 우정국장

(9) 이 조항의 제(d)항과 제(e)항의 제(1)호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부합되어, 연방

기관장은 고도로 비상적인 상황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보이거나, 비상사태가 존재하거나, 작전상의 문제가 공무 수행에 운송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종사자

제(d)항의 제(2)호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이동을 위한 승용 수단의 사용을 허용하는 이 항의 제(9)호에 따라 이루어진 어느 허가도 달력상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c) 제18편의 제3056(a)조에 따라 보호가 특별히 승인된 사람, 「국무부 기본 권한 법률, State Department Basic Authorities Act of 1956」 제28조, 제10편의 제2637조, 또는 「중앙정보국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제8(a)(1)조에 따라 운송이 허용된 사람의 경우에 주거지와 근무지 간의 이동에 승용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

(d) (1) 이 조항의 제(b)(9)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운송을 위하여 승용 수단을 이용하는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이름과 직위, 결정사유, 허용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비상사태 또는 이 조항의 제(b)항 제(9)호에 규정된 강력한 작전상의 문제(compelling operational consideration)가 15일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연방기관장은 이 호에 따른 허가가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일 이상 연장되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호에 따른 결정은 해당 기관장이 각 기간 종료 시에 재검토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비상사태 또는 강력한 작전상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90일 이하의 추가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 호에 따른 결정은 제(e)항의 제(1)호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이 조항의 제(b)(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이 조항의 제(a)(2)항, 제(b)(3)(B)항 및 제(9)호와 이 항의 제(2)호에 의거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임되어서는 않된다. 다만,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제(b)(9)항에

따라 대통령이 그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지정이나 결정도 오로지 공무원이나 종사자만의 편의를 위해서는 아니 된다.

(4) 이 조항의 제(b)(1)항, 제(3)(B)호와 제(9)호 및 이 항의 제(2)호에 따라 내린 지정과 결정에 대한 통보는, 해당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이름과 직위, 제(b)(9)항에 따른 결정 사유와 예상 허가 기간을 포함하여, 즉시 하원의 정부운영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와 상원의 정부업무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에 전달되어야 한다.

(e) (1) 1987년3월15일 이전에, 총무청장(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은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운영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장, 연방법원 총무국(Administrative Office of US Courts) 국장과 협의한 후, 모든 연방기관의 장들이 이 조항의 제(a)(2)(A)항, 제(b)(9)항과 제(d)(2)항에 의하여 승인된 결정을 하는 것을 통제할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2) 이 항의 제(1)호에 따라 규정을 공표함에 있어, 총무청장이 이 조항 제(a)(2)(A)항의 "현장(field work)"라는 용어의 개념정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은 종사자의 거주지와 현장 간의 운송이 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f) 각 연방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 거주지와 근무지 간에 정부의 공식적인 운송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기록(log) 또는 기타 기록물을 관리 유지해야 한다.

(g) 용어 정의

(1) "승용 수단(passenger carrier)"란 미연방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객용 자동차, 여객기, 보트, 선박, 기타 유사한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2) “연방 기관(federal agency)”이란 다음을 말한다.

(A) 부처(「1946년 8월2일의 법률(41 U.S.C 5a)」의 제18조에 규정된 용어)

(B) 집행 부처(제5편의 제101조에 규정된 용어)

(C) 군 부처(제5편의 제102조에 규정된 용어)

(D) 공기업(제5편의 제103조(1)에 규정된 용어)

(E) 정부 관리 기업(제5편의 제103조(2)에 규정된 용어)

(F) 혼합소유 공기업 (이 편의 제9101조(2)에 규정된 용어)

(G) 행정부 기관(대통령실 포함)

(H) 독립규제기관(제44편의 제3502(10)에 규정된 독립규제기관 포함)

(I) 스미소니언 재단

(J) 미연방의 세출외 예산(nonappropriated funds)으로 운영되는 산하 기관

다만, 그러한 용어가 컬럼비아구 정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외

(h) 제39편의 제410(a)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미연방 우정공사에 적용된다.

18 U.S.C. 제798조. 비밀정보의 공개(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a) 누구든지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비밀정보를 권한 없는 사람과 정보교환하거나 제공하거나 전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출판하거나 또는 미연방의 안전 또는 이득에 해가 되고 외국 정부에 도움이 되도록 비밀정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 미연방이나 외국정부의 부호, 암호 및 암호 체계의 성격, 준비, 사용에 관한 사항

(2) 미연방이나 외국정부의 암호 체계 또는 통신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사용, 준비, 계획된 기계 또는 장치의 설계, 구축, 활용, 유지 또는 수리와 관련된 사항

(3) 미연방이나 외국정부의 통신정보 수집활동과 관련된 사항

(4) 외국정부의 통신정보 수집절차를 통하여 얻어 왔던 통신정보임을 알면서도, 외국정부의 통신으로부터 통신정보 수집절차를 획득하는 것

(b) 이 조항의 제(a)항에서 사용한 용어 정의

"비밀정보(classified information)"란, 이 조항을 위반하는 때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연방 정부의 기관이 전파(dissemination) 또는 배포(distribution)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정보를 말한다.

"부호(code)", "암호(cipher)" 및 "암호 체계(cryptographic system)"란 이 용어들의 통상적인 의미에 더하여 통신(communication)의 내용, 의미 또는 취지를 위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쓰이는 비밀 기술(secret writing) 또는 모든 기계적·전기적 장치를 말한다.

"외국정부(foreign government)"란 외국의 파당(faction), 정당, 부처, 기관, 局, 군대 또는 정부를 대리하거나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미연방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내에서 정부로서 활동하거나 활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포함한다.

"통신 정보수집(communication intelligence)"은 대상으로 삼은 수신자가 아닌 측에서 통신을 가로채거나 그 통신으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권한이 없는 사람(unauthorized person)"이란 대통령에 의하여 미연방을 위해 통신정보 수입활동에 종사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정된 미연방의 부처나 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이, 이 조항의 제(a)항에 규정된 범위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c)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정식으로 구성된 상원이나 하원의 위원회 또는 양원의 공동위원회에 합법적인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 (1)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州法의 어떤 규정에 상관없이 미연방에 다음을 몰수당한다.

(A) 그 위반행위의 결과로 직간접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구성하는 재산이나 그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된 재산

(B) 그 위반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이 의도된 개인의 재산

(2) 법원은, 이 조항의 위반이 인정되는 피고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에게 제(1)호에 규정된 모든 재산을 미연방이 몰수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제(4)호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일반 마약남용 금지 및 통제법률,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0, 21 U.S.C. 853(b), (c), (e)-(p))」의 제413조의 제(b)항, 제(c)항, 제(e)항부터 제(p)항까지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A) 이 항에 따라 몰수대상이 되는 재산

(B) 그런 재산의 압류 또는 처분

(C) 이 항에 부합되는 한, 그런 재산과 관련된 행정적·사법적 절차

(4) 제28편의 제524(c)조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승인된 몰수와 매매 비용을 지불한 후에 남은 금액은 「범죄희생자법, Victim of Crime Act of 1984(42 U.S.C. 10601)」의 제1402조에 따라 설립된 범죄희생자기금(Crime Victims Fund)에 기탁되어야 한다.

(5) 이 항에서 사용된 "州"라는 용어는 미연방의 州, 컬럼비아구, 푸에르토리코와 미연방의 자치령, 準州를 의미한다.

18 U.S.C. 제1905. 일반적인 비밀정보의 공개 일반(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generally)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부처,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 연방주택금융기관(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을 대리하는 자, 「반독점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15 U.S.C. 1311-1314)」에서 규정한 법무부의 대리인, 제5편 제37장에 따라 기관에 파견되었거나 현재 파견 중인 민간부문의 종사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수행 도중 또는 부처, 기관 또는 그 공무원이나 종사자에 의해 행해질 조사나 검토를 이유로, 자신에게 온 정보, 보고서, 공보 또는 제출되어 보관된 기록을 출판하거나,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알리는 경우, 이때의 정보는 거래비밀, 절차, 운영, 작업 유형 및 기구, 어느 개인, 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협회의 신원, 비밀 통계 자료, 소득, 이득, 손실, 소비,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 의해 조사된 소득보고서나 그 사본 또는 초록을 담은 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편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되고,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50 U.S.C. 제783(a)조. 위반(offenses):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비밀정보 공개 (communica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by Government officer or employee)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부처·기관 또는 미연방이나 미연방의 부처·기관이 전체 또는 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그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알거나 또는 외국정부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다른 개인에게, 미대통령(대통령이 승인한 부처, 기관 또는 공기업의 장에 의해)에 의해 미연방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비밀로 취급된 정보를, 그 정보가 그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는 부처, 기관, 공기업의 장 또는 대통령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채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치활동 개혁법
(Hatch Act Reform Amendments of 1993)

5 U.S.C. 제7321조.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종사자는 법률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국가의 정치절차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자제할 권리를 완전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장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미의회의 정책이다.

5 U.S.C. 제7322조. 정의

이 장의 취지에 따라,

(1) "종사자(employee)"란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다음의 기관에 근무하거나 직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A) 미의회의 회계감사국(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제외한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B) 책임운영기관에 없는 경쟁직(competitive service)의 직위

(C) 市長, 시의원, 기록관(Recorder of Deeds)을 제외한 컬럼비아 정부. 다만, 제복근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정당정치국(partisan political office)"이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최근의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후보로 정당을 대표하기 위해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선출되도록 하는 사무국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당이나 부설단체 내의 사무국이나 직위를 제외한다.

(3) "정치헌금"이란

(A)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의 제공, 기부, 대출, 선불 또는 기탁을 말한다.

(B) 법적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에 기여하도록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계약, 약속, 동의를 포함한다.

(C)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후보, 정당이나 부설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후보, 정당이나 부설단체에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노무제공에 대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D)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인적인 노무제공을 포함한다.

5 U.S.C. 제7323조. 정치활동의 승인; 금지사항 (political activity authorized; prohibitions)

(a) 제(b)항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는 정치관리(political management)나 정치운동(political campaign)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결과에 간섭하거나 악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신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치헌금을 요구, 수락,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

(A) 이 편의 제7103(4)조에 규정된 동일한 연방노조단체(Federal labor organization) 또는 「해치법 개혁수정, Hatch Act Reform Amendment of 1993」의 제정일 현재로 복수후보정치위원회(multicandidate political committee, 「연방선거운동법률」 제315(a)(4)에 규정)를 가지고 있는 연방종사자단체(Federal employee organization)의 구성원

(B) 종사자가 부하 직원이 아닌 경우, 그리고

(C) 그 요청이 이 편의 제7103조에 규정된 연방노조단체의 복수후보정치위원회 또는 연방종사자단체에 기여하기 위한 경우

(3) 한 정당정치국(partisan political office) 선거에 지명 또는 후보로 입후보 하는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치활동 참여를 고의적으로 요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A) 종사자의 소속기관에서 진행 중인 보상금, 보조금, 계약, 결정·판결, 면허,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

(B) 종사자의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감사, 조사 또는 법집행 활동이 계속 진행 중인 대상 또는 참여자

(b) (1) 연방선거관리위원회(상원의 조언과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제외)의 종사자는 종사자, 미의회 의원 또는 제복근무자에게 정치헌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주어서도 아니 된다.

(2) (A) 제(B)목에 규정된 어떤 종사자(상원의 조언과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제외)도 정치관리나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B) 제(A)목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i) 다음 기관의 종사자

(I) 연방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선거보조위원회)

(II) 연방수사국(FBI)

(III) 비밀경호국(the Secret Service)

(IV) 중앙정보국(CIA)

(V) 국가안전보장회의(NSC)

(VI) 국가안전보장국(the National Security Agency)

(VII) 국방정보국(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VIII) 실적제도보호위원회(the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IX) 특별조사청(the Office of Special Counsel)

(X) 국세청 범죄조사국(the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

(XI) 관세청 조사사업국(the Office of Investigative Programs)

(XII) 알코올, 담배, 무기국(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의 법집행과(the Office of Law Enforcement)

(XIII) 국가공간정보국(th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ii) 미국 법률 제5편의 제3132(a)(4)조, 제5372조, 제5372a조 또는 제5372b조에 규정된 직위에 고용된 사람

(3) 법무부 범죄국 또는 국가안보국의 어떠한 종사자(상원의 조언과 인준을 통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제외)도 정치관리 또는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4) 이 항의 취지에 따라, "정치관리나 정치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라는 용어는 대통령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결정에 의하여, 1949년 7월 19일 이전의 경쟁직(competitive service) 종사자에게 금지되었던 그 정치관리 또는 정치운동을 의미한다.

(c) 종사자는 정치적 주제와 후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대로 투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유한다.

5 U.S.C. 제7324조. 근무 중 정치활동; 금지사항(political activities on duty; prohibition)

(a) 종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1) 종사자가 근무 중인 경우

(2) 미연방 정부,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용되거나 직위를 가진 개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이나 건물

(3) 제복을 입고 있거나 종사자의 소속이나 직위를 식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휘장을 달고 있는 경우

(4) 미연방 정부,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b)(1) 이 항의 제(2)호에 규정된 종사자는 정치활동에 관련되는 비용이 미연방의 재무부로부터 나온 금전이 아닌 경우, 제(a)항에 따라 금지된 정치활동을 제외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2) 제(1)호는 다음의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A) 종사자의 임무와 책임이 정상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되고 정상 근무 위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

(B) 다음에 해당하는 자

(i)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보수를 받는 종사자

(ii) 상원의 권고와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종사자, 그 직위가 미연방 내에 있고, 외국정부와 관련되거나 미연방법의 광범위한 관리에 있어서 미연방이 추진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종사자

5 U.S.C. § 7325 정치활동 허용; 특정 지자체에 거주하는 종사자 (political activity permitted; employees residing in certain municipalities)

인사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은 이 편의 제7323(a)조의 제(2)호와 제(3)호 그리고 제7323(b)조의 제(2)호에 규정된 금지사항과 상관없이 종사자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지자체 또는 기타 정치적 행정구역(political subdivision)에 관련된 정치 활동이나 선거운동에 적극적인 참가를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활동이 종사자의 내부이해(domestic interest)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지자체나 정치적 행정구역이 메릴랜드 또는 버지니아에 있거나 컬럼비아구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거나, 지자체 유권자의 대부분이 미연방의 종사자인 경우

(2) 인사관리국이 지자체나 정치적 행정구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종사자와 개인의 내부이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U.S.C. 제7326조. 처벌(penalties)

이 편의 제7323조와 제7324조를 위반하는 종사자와 개인은 직위가 해제되어야 하고, 그 직위에 지출이 승인된 예산은 직위해제 이후 그 종사자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만 실적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에서 만장일치로 그 위반이 직위해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30일 이상의 무급 정직의 처벌을 받게 된다.

18 U.S.C. 제601조. 정치헌금을 이유로 고용이나 기타 편익의 박탈(deprivation of employment or other benefit for political contributions)

(a) 누구든지, 다음을 거부, 박탈 또는 거부와 박탈에 대한 위협을 수단으로 직간접적으로 어떤 후보 또는 정당을 위하여 어느 사람에게 봉사(service)를 포함한 가치가 있는 물품을 고의적으로 기부하게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는

(1) 미연방 정부, 주, 주의 정치적 하부단위의 기관이나 단체에 고용, 임명 또는 근무 또는 이로부터 비롯되는 보수 또는 편익

(2) 미연방, 주, 주의 정치적 하부단위의 사업(program)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편익

이러한 고용, 임명, 근무, 보수, 급료 또는 편익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의회법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b) 용어 정의

(1) "후보자(candidate)"란 당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연방, 주, 지자체의 공직에 후보지명을 받거나, 그 공직에 당선되기를 추구하는 자이며, 연방, 주, 지자체의 공직에 후보지명이나 당선을 추구하는 자는, (A) 주법(law of State)에 따라 후보지명이나 후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치를 취했거나, (B) 후보에

지명되거나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하도록 승인한 경우 후보자로 간주된다.

(2) "선거(election)"는 (A) 일반 선거(general election)[1], 예비선거(special primary), 결선 투표(runoff election), (B) 후보를 지명하기 위하여 정당이 개최하는 전당대회(convention) 또는 당내경선(caucus), (C)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D)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해 특정 개인들에게 지지를 표현하는 예비선거, (E) 미연방 또는 주의 헌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헌법제정회의에 참가할 대표 선출 선거를 말한다.

(3) "주(State)"란 미연방의 주, 컬럼비아구, 푸에르토리코 또는 미연방의 자치령이나 준주를 말한다.

18 U.S.C. 제602조. 정치헌금의 요청(solicita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a) 다음의 사람이 「연방선거운동법률」 제301(8)조에 규정된 기부금을 고의적으로 다른 공무원, 종사자 또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 미의회 의원 후보자

(2)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또는 상주대표로 선출되었거나 그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자

(3) 미연방, 부처,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

(4) 미연방의 재무부로부터 근무의 대가로 임금 또는 보수를 받는 사람

1) 일반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통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b) 제(a)항의 금지사항은 그 활동이 제5편의 제7323조나 제7324조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연방우정국 또는 우편요금규제위원회(the postal regulatory commission)의 종사자(제5편의 제7322(1)조 정의)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U.S.C. 제603조. 정치헌금 기부(making political contributions)

(a) 미연방, 부처,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 복무의 대가로 임금 또는 보상을 재무부로부터 받는 사람은, 기부금을 받는 사람이 기부를 하는 자의 고용주이거나 고용당국일 경우, 다른 공무원, 종사자, 사람,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또는 상주대표에게 「연방선거운동법률,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2 U.S.C. 제431(8)조」의 제301(8)조에 정의된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누구든지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b)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연방선거운동법률」 제302(e)조에 규정된 승인위원회(authorized committee)에 대한 기부는 그 위원회를 승인한 개인에게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c) 제(a)항의 금지사항은 그 활동이 제5편의 제7323조나 제7324조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연방우정국 또는 우편요금규제위원회(the postal regulatory commission)의 종사자(제5편의 제7322(1)조 정의)의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U.S.C. 제604조. 구호대상자의 요청(solicitation from persons on relief)

누구든지 구호목적의 사업으로 자금 지출이 승인된 「의회 법률」에 따라 규정되거나 제공되는 보수를 받거나 고용되었거나 기타의 편익을 취하는 사람에 의하여 알려진 어떤 자에게 할당금(assessment), 기부금(subscription

or contribution)을 요청하거나 수령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러한 행위에 관계된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8 U.S.C. 제605조. 구호대상자의 이름 공개(disclosure of names of persons on relief)

누구든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구호목적의 사업으로 자금 지출을 승인했거나 위임한 「의회 법률, Act of Congress」에 따라 규정되거나 제공되는 보수를 받거나 고용되거나 편익을 받는 사람들의 목록이나 이름을 정당 후보자(political candidate), 정치위원회, 선거운동 본부장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거나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자 그리고 이러한 명단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8 U.S.C. 제606조. 정치헌금을 확보하기 위한 위협(intimidation to secure political contributions)

누구든지 이 편의 제602조에 규정된 미연방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금전이나 기타 금품(valuable)을 기부하거나 기부하지 않거나 기부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이나 종사자를 해임시키거나(discharge) 승진시키거나(promote) 강등시키거나(degrade) 기타의 방법으로 서열(official rank)이나 보수를 바꾸거나 또는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거나 위협한 경우,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8 U.S.C. 제607조. 요청 장소(place of solicitation)

(a) 금지(prohibition).

(1) 총칙. - 누구든지 미연방, 주 또는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미연방의 공무원과

종사자에 의하여 공무수행을 하는 사무실이나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이든 금전이나 금품을 기부하도록 요청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통령, 부통령, 미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미연방의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미연방, 주 또는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미연방의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직무수행을 하는 사무실이나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이든 금전이나 금품을 기부하도록 요청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처벌(penalty). -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천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b) 제(a)항의 금지사항은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제(a)항에서 규정한 사무실, 건물 또는 기타 시설에 우편으로 발송되게 하거나 배달되도록 요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부금이 수령된 이후 7일 내에 「연방선거운동법률,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제302(e)조에 정의된 정치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한 경우,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상주대표의 보좌진과 대통령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8 U.S.C. 제608조. 재복근무와 해외근무 부재자 투표(absent uniformed services voters and overseas voters)

(a) 누구든지 「재복근무 및 해외근무 부재자 투표법률,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에 따른 권리를 고의적으로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b) 누구든지 「재복근무 및 해외근무 부재자 투표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투표하는 자격을 얻기 위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거나 또는 이를 수수하는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8 U.S.C. 제609조. 군인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휘권 사용(use of military authority to influence vote of member of armed forces)

군대의 장교, 하사관, 준위, 해군하사관은 누구든지, 군인의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휘권을 사용하거나 군인에게 강제로 투표소로 가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는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이 조항의 어느 것도 정치적 사안이나 공직 후보자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18 U.S.C. 제610조. 정치활동의 강요(coercion of political activity)

누구든지 제5편의 제7322(1)조에 규정된 연방정부의 종사자에게 선거에 있어서 어떤 후보나 사안에 대해 찬성하는 투표나 그의 거부, 정치자금의 기부나 이의 거부, 어떤 후보를 위한 활동이나 이의 거부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은 정치활동에 참가하거나 그 참가를 거부하도록 위협(intimidate), 협박(threaten), 지시(command), 강요(coerce)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누구든지 이 편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5 U.S.C. 제557(d)조. 일방적인 정보교환(Ex Parte Communication)

(d) (1) 법률에 의하여 승인된 일방적인 사안의 처리에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제(a)항을 적용받는 기관의 처리에서

(A) 기관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그 처리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의 구성원, 행정법 판사 또는 기타의 종사자에게 일방적인 정보교환을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해서는 아니 된다.

(B) 그런 처리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의 구성원,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또는 기타 종사자는, 기관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그 절차의 是非(merits)에 관련된 일방적인 정보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

(C) 그런 처리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의 구성원, 행정법판사 또는 기타 종사자는 이 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정보교환을 받거나 직접 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을 통해 할 경우에 그 처리의 공식 기록에 다음을 기재해야 한다.

(i) 모든 문서 정보교환

(ii) 모든 구두 정보교환의 핵심사항을 기록한 메모

(iii) 이 항의 (i), (ii)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모든 서신 응답 및 구두 응답의 핵심을 기록한 메모

(D) 당사자에 의하여 이 항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정보교환을 접수하자마자, 청문(hearing)을 주재하는 기관, 행정법판사 또는 기타 종사자는, 정의의 관점(interests of justice)과 주요 법률의 정책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당사자에게 그 처리에서 그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그러한 위반으로 인하여 각하(dismissed), 거절(denied), 무시(disregarded)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 이 항의 금지사항은 기관이 지정하는 시점으로부터 적용되지만, 정보교환의 책임자가 청문을 위한 절차가 통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통지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금지사항은 그가 그런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항은 미의회에 정보를 알리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8 U.S.C. 제2조. 主犯(Principals)

(a) 누구든지 미연방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범행을 방조(aid), 교사(abet), 조언(counsel), 강요(command), 권고(induce), 알선하는 자는 주범으로 처벌받는다.

(b) 누구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직접적으로 미연방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를 고의적으로 초래하게 자는 주범으로 처벌받는다.

18 U.S.C. 제1001조. 일반적인 진술 또는 기재(statements or entries generally)

(a)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미연방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관할 내의 사안에서,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이 편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1) 속임수(trick), 음모(scheme), 계략(device)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을 위·변조하거나(falsify), 은폐하거나(conceal) 또는 糊塗하는(cover up) 행위

(2) 실질적으로 거짓(false), 허구(fictitious), 사기(fraudulent)적인 진술(statement) 또는 주장(representation)을 하는 행위

(3) 실질적으로 거짓, 허구, 사기적인 진술이나 記載·記述(entry)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문서나 서류(false writing or document)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b) 제(a)항은 사법절차의 당사자(a party to a judicial proceeding)나 그 당사자의 변호인(counsel)이 판사나 치안판사(magistrate)에게 제출한 진술, 주장, 문서와 서류에 관해서는 그런 당사자와 변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사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제(a)항은 다음 경우에만 적용된다.

(1) 지불청구(claim for payment)를 포함한 행정 업무(administrative matters), 재산·서비스의 구매, 인사관리·채용업무, 지원업무, 법률·규칙·규정에 따라 입법부 내의 미의회, 어느 사무국 또는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2) 하원 또는 상원의 관계 규정(applicable rules)에 따라 미의회의 위원회(committee), 분과위원회, 위원회(commission)의 권한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 또는 심사

연방 의회정보의 부정거래 금지법 해설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

(2012. 4. 4. 제정)

연방의회 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법률(An Act)

이 법률의 목적은 연방의회의 의원과 입법부 공직자가 사적 이익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직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To prohibit Members of Congress and employees of Congress from using nonpublic information derived from their official positions for personal benefit, and for other purposes).

제1조. 약칭(Short Title)

이 법률은 “연방 의회정보의 부정거래 금지법” 또는 “스탁법”이라고 한다(This Act may be cited as the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 or "STOCK Act").

제2조. 정의(Definitions)

이 법률에서(In this Act):

(1) 의회 의원 - 의회 의원은 상원의 의원, 하원의 의원, 하원의 대의원(Washington, D.C 등 準州에서 선출되어 하원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 없음) 및 푸에르토 리코의 상주 대표(하원에서 표결권 없음)를 말한다(Member of Congress - The term "Member of Congress" means a member of the Senate or House of Representatives, a Delegate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Resident Commission from Puerto Rico).

(2) 의회 종사자 - 의회 종사자는 다음을 말한다(Employee of Congress - The term "employee of Congress" means--).

(A) 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상원의 사무총장 또는 하원의 사무총장이 지급하는 보수를 받는 개인(any individual(other than a Member of Congress), whose compensation is disbursed by the Secretary of the Senate or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nd)

(B) 입법부의 그 밖의 공무원이나 종사자(공직자윤리법(미연방법전 제5편 부록 109(11)) 제109(11)에 정의되어 있음)))(any other officer or employee of the legislative branch(as defined in section 109(1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9(11)))

(3) 행정부 종사자 - 행정부 종사자는 다음을 말한다(Executive branch Employee - The "executive branch employee--)

(A) 연방법전 제5편 제2105조에 규정된 “종사자”의 의미를 갖는다(has the meaning given the term "employee" under section 2105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and).

(B) 다음을 포함한다(includes)

(ⅰ) 대통령(the President)

(ii) 부통령(the Vice President; and)

(iii) 미연방 우정국 또는 우정규제위원회의 종사자(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or the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4) 사법부 공무원 - 사법부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9(10)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Judicial Officer - The term judicial officer has the meaning given that term under section 109(10)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9(10)))

(5) 사법부 종사자 - 사법부 종사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9(8)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Judicial Employee - The term judicial employee has the meaning given that term under section 109(8)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9(8)))

(6) 윤리감독사무소 - 윤리감독사무소는 공직자윤리법 제109(18)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Supervising Ethics Office - The term Supervising Ethics Office has the meaning given that term under section 109(18)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9(18)))

제3조. 사익을 위한 미공개정보의 사용금지(Prohibition of the use of nonpublic information for private profit)

상원의 윤리특별위원회와 하원의 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과 선물에 관한 규칙, 의회 의원과 의회의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에서 유래되었거나, 자신이 직무 수행 중에 얻은 미공개정보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규칙을 포함해서, 각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규칙에 대한 해석 지침서를 발간해야 한다. (The Select Committee on Ethics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Ethic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issue interpretive guidance of the relevant rules of each chamber, including rules on conflict of interest and gifts, clarifying that a Member of Congress and an employee of Congress may not use nonpublic information derived from such person's position as a Member of Congress or employee of Congress or gained from the performance of such person's official responsibilities as a means for making a private profit).

제4조. 내부자 거래의 금지(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a) 면제 제외의 확언·단언 - 의원과 의회 종사자는 증권거래법 제10조 제(b)항 및 그 법률에 따른 규칙 10b-5를 포함한 증권법률에 따라 발생한 내부자 거래 금지에서 면제되지 않는다(Affirmation of Non-exemption - Members of Congress and employees of Congress are not exempt from 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s arising under the securities laws, including section 10(b) of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d Rule 10b-5 thereunder).

(b) 의무(Duty -)

(1) 목적 - 이 항에 따른 개정의 목적은 의원과 의회 종사자가 충성해야 하는 신뢰와 신임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Purpose -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made by this subsection is to affirm a duty arising from a relationship of trust and confidence owed by each Member of Congress and each employee of Congress).

(2) 개정 - 증권거래법 제21A조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한다(Amendment -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5 U.S.C. 78u-1)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g) 의원과 의회 종사자의 의무(Duty of Members and Employees of Congress -)

"(1) 총칙 - 스탁법 제10조에 의한 해석 원칙, 증권거래법 제10조 제(b)항 및 그 법률에 따른 규칙 10b-5를 포함하여, 이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내부자 거래 금지의 목적에 따라서, 각 의원이나 의회의 종사자는 자신의 직위에서 알게 되었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중요한 미공개 정보와 관련하여, 의회, 연방정부 및 미국 시민과의 신뢰·신임 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In General - Subject to the rule of construction under section 10 of the STOCK Act and solely for purposes of 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s arising under this Act, including section 10(b) and Rule 10b-5 thereunder, each Member of Congress or employee of Congress owes a duty arising from a relationship of trust and confidence to the Congres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citizens of the United Sates with respect to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derived from such person's position as a Member of Congress or employee of Congress or gained from the performance of such person's official responsibilities).

"(2) 정의 - 이 항에서는 다음과 같다(Definitions - In this subsection -)

"(A) 의회 의원은 상원과 하원의 구성원, 하원의 대의원, 푸에르토 리코의 상주대표를 의미한다(the term Member of Congress means a member of the Senate or House of Representatives, a Delegate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Resident Commissioner from Puerto Rico; and)

"(B) 의회 종사자는 다음을 의미한다(the term employee of Congress means --)

(i) 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상원의 사무총장이나 하원의 행정국장이 지급하는 보수를 받는 개인(any individual(other than a member of Congress), whose compensation is disbursed by the Secretary of the Senate or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ii) 정부윤리법 제109조 제1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입법부의 그 밖의 공직자(any other officer or employee of the legislative branch(as defined in section 109(1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9(11)))

"(3) 해석 원칙 - 이 항의 어떤 것도 증권법률의 반사기 규정에 관한 해석과 그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훼손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ule of Construction -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limit the construction of the existing anti-fraud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laws or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 under those provision").

제5조. (Conforming Changes to the Commodity Exchange Act)

상품거래소법 제4c조 제(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ection 4c(a) of the Commodity Exchange Act(7 U.S.C. 6c(a) is amended --)

(1) 제3호의 제(A)목 앞의 문제에서(in paragraph (3), in the matter preceding subparagraph (A) --)

(A) “연방정부”가 맨 처음 나오는 뒤에 **“또는 의회 의원이나 의회의 종사자 (그 용어는 스탁법 제2조에서 정의), 사법부 공무원이나 사법부 종사자 (그 용어는 스탁법 제2조에서 정의)”**를 삽입(by inserting "or any Member of Congress or employee of Congress(as such terms are defined under section 2 of the STOCK Act) or any judicial officer or judicial employee(as such terms are defined, under section 2 of the STOCK Act)" after "Federal Government" the first place it appears;)

(B) “직위” 뒤에 **“의원, 공무원”**을 삽입(by inserting "Member, officer", after "position of the"; and)

(C) “방식으로” 앞에 **“의회 또는 사법부에 의한”**을 삽입(by inserting "or by Congress or by the judiciary" before "in a manner"; and)

(2) 제4호에서(in paragraph (4) --)

(A) 제(A)목의 제(i)조목 앞의 문제에서(in subparagraph (A), in the matter preceding clause (i) --

(i) “연방정부”가 맨 처음 나오는 뒤에 **“또는 의회 의원이나 의회의 종사자, 사법부 공무원이나 사법부 종사자”**를 삽입(by inserting "or any Member of Congress or employee of Congress or any judicial officer or judicial employee" after "Federal Government" the first place it appears;)

(ii) “직위” 뒤에 **“의원, 공무원”**을 삽입(by inserting "Member, officer," after "position of the"; and)

(iii) “방식으로” 앞에 **“의회 또는 사법부에 의한”**을 삽입(by inserting "or by Congress or by the judiciary" before "in a manner";)

(B) 제(B)목의 제(i)조목 앞의 문제에서, **"또는 의회 의원이나 의회의 종사자, 사법부 공무원이나 사법부 종사자"**를 삽입(in subparagraph (B), in the matter preceding clause (i), inserting "or any Member of Congress or employee of Congress or any judicial officer or judicial employee" after "Federal Government"; and)

(C) 제(C)목에서(in subparagraph (C) --)

(i) 제(i)조목 앞의 문제에서, 다음의 앞에 **"또는 의회나 사법부에 의한"**을 삽입(in the matter preceding clause (i), by inserting "or by Congress or by the judiciary" --

(I)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앞에(before "that may affect"; and)

(II) **"방식으로"** 앞에(before "in a manner"; and)

(ii) 제(iii)조목에서, **"연방정부" 다음에 "의회, 의원, 의회의 종사자, 사법부 공무원 또는 사법부 종사자에"**를 삽입 (in clause (iii), by inserting "to Congress, any Member of Congress, any employee of Congress, any judicial officer, or any judicial employee," after "Federal Government,"

제6조. 재산거래의 신속한 신고(Prompt Report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a) 신고 요건 - 정부윤리법 제103의 맨 마지막에 다음의 항을 추가함으로써 개정한다(Reporting Requirement - Section 103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103)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subsection:)

"(l) 제102조 제(a)항 제5항 제(B)목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거래를 통지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그런 거래 이후에 45일 이내에, 면제와 특례에 따라서,

제101조의 어느 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다음의 사람은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Not later than 30 days after receiving notification of any transaction required to be reported under section 102(a)(5)(B), but in no case later than 45 days after such transaction, the following persons, if required file a report under any subsection of section 101, subject to any waivers and exclusions, shall file a report of the transaction:)

"(1) 대통령(The President).

"(2) 부통령(The Vice President).

"(3) 행정부의 공직자, 연방법전 제18편 제202조에 정의된 특수정부종사자(특수정부종사자는 일반직 보수표 제15등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일반직 보수표에 따르지 않는 직위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기본 보수가 일반직 보수표의 제15등급에서 지급받는 최소의 기본 보수의 120%와 같거나 더 큰 직위를 가진다), 보수 등급이 연방법전 제37편 제201조에 따른 O-7(준장이 받는 보수 등급)과 같거나 그 이상인 제복근무자 및 정부윤리청장이 동등한 직위인 것으로 분류하는 그 밖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Each officer or employee in the executive branch, including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as defined in section 202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who occupies a position classified above GS-15 of General Schedule or, in the case of positions not under the General Schedule, for which the rate of basic pay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20 percent of the minimum rate of basic pay payable for GS-15 of the General Schedule; each member of a uniformed service whose pay grade is at or in excess of O-7 under section 201 of title 37, United States Code; and each officer or employee in any other position determined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to be of equal classification).

"(4) 연방법전 제5편 제3105조에 따라 임명된 각각의 공무원(Each employee appointed pursuant to section 3105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5) 기밀성 및 정책결정 성격을 가진 이유로 경쟁 직렬에서 제외된 행정부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직자. 다만, 정부윤리청장은 규칙에 따라, 제5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또는 개인 집단을 규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적용 제외가 정부의 청렴성이나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러하다(Any employee not described in paragraph (3) who is in a position in the executive branch which is excepted from the competitive service by reason of being of a confidential or policy-making character, except that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may, by regulation, exclude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any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who are in such positions, but only in cases in which the Director determines such exclusion would not affect adversely the integrity of the Government or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Government.)

"(6) 우정공사의 총재, 부총재, 이사회의 이사, 우정공사 및 우정규제위원회의 종사자의 기본 보수가 일반직 보수표 제15등급의 최소 기본 보수의 120%와 같거나 그 이상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종사자(The Postmaster General, the Deputy Postmaster General, each Governor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nd each officer or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or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who occupies a position for which the rate of basic pay is equal to or greater than 120 percent of the minimum rate of basic pay payable for GS-15 of the General Schedule.)

"(7) 정부윤리청장 및 각 기관의 윤리담당자로 지정된 공직자(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and each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

"(8)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민간인 종사자, 대통령이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실의 종사자(특수정부종사자를 제외)(Any civilian employee not described in paragraph (3), employees 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other than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who holds a commission of appointment from the President.)

"(9) 제109조 제12호에 정의된 의회 의원(A Member of Congress, as defined under section 109(12)

"(10) 제109조 제13호에 정의된 의회의 종사자(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ngress, as defined under section 109(13).)"

(b) 시행일 - 제(a)항에 의한 개정은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된 거래부터 적용되어야 한다(Effective Date - The amendment made by subsection (a) shall apply to transactions occurring on or after the date that is 9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제7조. 정치정보 활동에 관한 보고(Report on Political Intelligence Activities)

(a) 보고서(Report -)

(1) 총칙 - 이 법률의 개시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감사원장은 의회 조사국과 협의를 거쳐, 상원의 국토안전 및 총무위원회와 하원의 정부 감시 및 개혁위원회와 사법위원회에 금융시장에서 정치정보의 역할·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In General - Not later than 12 month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n consultation with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of the Senate and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and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 report on the role of political intelligence in the financial markets).

(2) 내용 - 이 조에 의하여 의무화된 보고서는 다음에 관한 검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Contents - The report required by this section shall include a discussion of --)

(A) 정치정보의 매매가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에 관한 사항 및 투자가가 정치정보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관한 범위(what is known about the prevalence of the sale of political intelligence and the extent to which investors rely on such information;)

(B) 정치정보의 매매가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에 관한 사항(what is known about the effect that the sale of political intelligence may have on the financial markets)

(C) 매매되고 있는 정치정보가 미공개 정보로 간주되는 범위(the extent to which information which is being sold would be considered nonpublic information;)

(D) 정치정보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윤리적 문제(the legal and ethical issues that may be raised by the sale of political intelligence;)

(E) 정치정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공개 준수요건을 부과한 경우의 효과(any benefits from imposing disclosure requirements on those who engage in political intelligence activities; and)

(F) 정치정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공개 준수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실제적인 문제(any legal and practical issues that may be raised by the imposi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 on those who engage in political intelligence activities)

(b) 정의 - 이 조의 취지에 따라, 정치정보는 다음의 정보를 의미한다(Definition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political intelligence" shall mean information that is -)

(1) 어떤 사람이 행정부 공직자, 의회 의원이나 의회 종사자와 직접적인 접촉・의사교환・소통에서 얻는 정보(derived by a person from direct communications with an executive branch employee, a Member of Congress, or an employee of Congress; and)

(2)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 결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고객이나 그 투자 결정을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고객에게 재정적 보상을 대가로 제공되는 정보(provided in exchange for financial compensation to a client who intends, and who is known to intend, to use the information to inform investment decisions)

제8조. 의회 의원과 의회 공직자의 재산공개 신고서의 온라인 제출과 공개 (Public Filing and Disclosure of Financial Disclosure Forms of Members of Congress and Congressional Staff)

(a) 의회 의원과 의회 공직자의 재산공개 신고서의 온라인 공개(Public, Online Disclosure of Financial Disclosure Forms of Members of Congress and Congressional Staff -)

(1) 총칙 - 2012년 8월 31일 이내에 또는 이 법률의 개시일 이후 90일 이내에, 어떤 것이 늦든지 간에, 상원의 사무총장과 상원의 경위관 그리고 하원의 사무총장은 정부윤리법 제I편에 따라 의회 의원, 의원 후보자 및 의회 공

직자가 2012년도와 그 이후 매년 제출하는 재산공개신고서를, 그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원과 하원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In General - Not later than August 31, 2012, or 90 days after the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whichever is later, the Secretary of the Senate and the Sergeant at Arms of the Senate, and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ensure that financial disclosure forms filed by Members of Congress, candidates for Congress, and employees of Congress in calendar year 2012 and in subsequent years pursuant to title Ⅰ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respective official web-sites of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such forms are filed).

(2) 확장 - 재산공개에 대한 확장 통지는 관련된 공개내용과 함께 이 항에 따라 전산으로(컴퓨터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Extensions - Notices of extension for financial disclosure shall be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under this subsection along with its related disclosure).

(3) 신고대상 거래 - 이 법률에 의하여 추가된 정부윤리법 제103조 제1호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거래의 경우, 그 공개신고서는 그 조에 의하여 의무화된 일자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거래 공개에 대한 확장의 통지는 그 거래의 관련된 공개 사항과 함께 이 항에 따라 전산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Reporting Transactions - In the case of a transaction disclosure required by section 103(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s added by this Act, such disclosure shall be filed not later than the date required by that section. Notices of extension for transaction disclosure shall be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under this subsection along with its related disclosure).

(4) 종결 - 이 항의 요건은 제(b)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종료되어야 한다(Expiration -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shall expire upon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disclosure system established under subsection (b)).

(b) 의회 의원, 양원의 공무원 및 의회 종사자의 재산공개신고서의 전산 제출과 온라인상에서 국민이 그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함(Electronic Filing and Online Public Available of Financial Disclosure Forms of Members of Congress, Officers of the House and Senate, and Congressional Staff -)

(1) 총칙 - 제6호에 따라, 이 법률의 개시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상원의 사무총장과 상원의 경위관 그리고 하원의 사무총장은 다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In General - Subject to paragraph (6) and not lat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the Senate and the Sergeant at Arms of the Senate and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develop systems to enable --)

(2) 시스템 접속과정 - 이 항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신고서의 자료를 검색하고 분류하기 위한 사용자명은 필요 없다. 사용자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접속 통신규약은 신고서의 자료를 내려 받을 사람이 사용한다. 이 조에 따른 신고서 제출의 취지에 따라, 정부윤리법 제105조 제(b)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Log-in - No log-in shall be required to search or sort the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made available by this subsection. A log-in protocol with the name of the user shall be utilized by a person downloading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For purposes of filings under this section, section 105(b)(2)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5(b)(2)) does not apply).

(3) 국민의 이용 - 정부윤리법 제105조 제(b)항 제1호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정부윤리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전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Public Availability - Pursuant to section 105(b)(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5(b)(1), electronic availability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deemed to have met the public availability requirement).

(4) 신고대상 제출자 - 정부윤리법 제I편에 따라,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 공직자는 자신을 감독하는 윤리사무소에 전산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Filers Covered - Executive branch employees required under title I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to file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shall file the reports electronically with their supervising ethics office).

(5) 확장 - 재산공개에 대한 확장 통지는 재산공개의 관련되는 공개 내용과 함께 전산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Extensions - Notices of extensions for financial disclosure shall be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under this subsection along with its related disclosure).

(6) 추가 시간 - 정부윤리청장은 하원의 사무총장 및 상원의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에, 제1항의 요건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을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때에는, 이 항의 요건은 제1호에 규정된 날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다(Additional Time -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may be implemented after the date provided in paragraph (1) i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cretary of the Senate, identifies in writing to relevant congressional committees the additional time needed for such implementation).

(A) 정부윤리법 제I편 제103조 제(h)항 제1호 제(A)목에 따라 그들이 제출받는 신고서의 전산 제출(electronic filing of reports received by them pursuant to section 103(h)(1)(A) of title Ⅰ of the Ethics in Government of 1978; and)

(B) 다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3조 제1호에 따라 제출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 의원 후보자 및 의회 종사자가 제출하는 재산공개신고서, 거래공개신고서, 그 법률의 제1편에 따른 확장의 통지, 개정사항, 백지신탁의 공개적인 열람(public access to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filed by Members of Congress, candidates for Congress, and employees of Congress, as well as reports of a transaction disclosure required by section 103(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s added by this Act, notices of extensions, amendments, and blind trusts, pursuant to title Ⅰ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through database that --)

(i) 그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윤리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관리·유지된다(are maintained on the official web-sit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and)

(ii) 그 데이터베이스는 신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국민이 검색할 수 있고, 분류하며 내려 받을 수 있다(allow the public to search, sort, and download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2) 시스템 접속과정 - 이 항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신고서의 자료를 검색하고 분류하기 위한 사용자명은 필요 없다. 사용자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접속 통신규약은 신고서의 자료를 내려 받을 사람이 사용한다. 이 조에 따른 신고서 제출의 취지에 따라, 정부윤리법 제105조 제(b)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Log-in - No log-in shall be required to search or sort the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made available by this subsection. A log-in protocol with the name of the user shall be utilized by a person downloading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For purposes of filings under this section, section 105(b)(2)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does not apply).

(3) 국민의 이용 - 정부윤리법 제105조 제(b)항 제1호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상원과 하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전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Public Availability - Pursuant to section 105(b)(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electronic availability on the official web-sites of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deemed to have met the public availability requirement).

(4) 신고대상 제출자 - 정부윤리법이나 상원의 규칙에 따라, 상원의 사무총장이나 하원의 사무총장에게 재산공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은 개인은 상원의 사무총장, 상원의 경위관과 하원의 사무총장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Filers Covered - Individuals required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or the Senate Rules to file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with the Secretary of Senate or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file reports electronically using the systems developed by the Secretary of the Senate, the Sergeant at Arms of the Senate, and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5) 확장 - 재산공개에 대한 확장 통지는 재산공개의 관련되는 공개 내용과 함께 이 항에 따라 전산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Extensions - Notices of extension for financial disclosure shall be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under this subsection along with its related disclosure).

(6) 추가 시간 - 상원의 사무총장이나 하원의 사무총장은 이 항의 요건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을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때에는, 이 항의 요건은 제1호에 규정된 날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다(Additional Time -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may be implemented after the date provided in paragraph (1) if the Secretary of the Senate or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dentifies in writing to relevant congressional committees the additional time needed for such implementation).

(c) 기록 보존 - 정부윤리법 제105조 제(d)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Record-keeping - Section 105(d)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5(d)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d) (1) 이 편에 따라, 기관이나 윤리감독사무소 또는 하원의 사무총장이나 상원의 사무총장에게 제출되거나 이송된 신고서는, 사정에 따라, 그런 기관이나 사무소 또는 하원의 사무총장이나 상원의 사무총장이 보존해야 한다(Any report filed with or transmitted to an agency or supervising ethics office or to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the Secretary of the Senate pursuant to this title shall be retained by such agency or office or by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r the Secretary of the Senate, as the case may be.)

"(2) 그러한 신고서는 다음의 경우에 국민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Such report shall be available to the public --)

"(A) 의원의 경우, 의원을 그만둔 이후부터 6년간(in the case of a Member of Congress until a date that is 6 years from the date the individual ceases to be a Member of Congress; and)

"(B) 이 편에 따라 제출된 그 밖의 신고서의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 이후 6년간(in the case of all other reports filed pursuant to this title, for a period of 6 years after receipt of the report.)

"(3) 제2호에 따라 인정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고서는 진행 중인 조사에 필요 없는 때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제101조 제(b)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개인 또는 제101조 제(c)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선출되지 못한 개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더 이상 상원의 심의대상이 아니거나, 대통령 직위, 부통령 직위 또는 의원 직위에 지명이나 선출을 위한 후보가 더 이상 아니게 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조사나 심리에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신고서를 1년 안에 폐기해야 한다(After the relevant time period identified under paragraph (2), the report shall be destroyed unless needed in an ongoing investigation, except that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who filed the report pursuant to section 101(b) and was not subsequently confirmed by the Senate, or who filed the report pursuant to section 101(c) and was not subsequently elected, such reports shall be destroyed 1 year after the individual either is no longer under consideration by the Senate or is no longer a candidate for nomination or election to the Office of President, Vice President, or as a Member of Congress, unless needed in an ongoing investigation or inquiry.")

제9조. 그 밖의 연방 공직자(Other Federal Officials)

(a) 사익을 위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Prohibition of Use of Nonpublic Information for Private Profit -)

(1) 행정부 공직자 - 정부윤리청은 연방의 관련되는 윤리법령과 행정부 종사자의 표준윤리강령에 관한 해석 지침서를 발간해야 한다. (Executive Branch Employees -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shall issue such interpretive guidance of the relevant Federal ethics statute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xecutive branch employees, related to use of nonpublic information, as necessary to clarify that no executive branch employee may use nonpublic information derived from such person's position as an executive branch employee or gained from the performance of such person's official responsibilities as a means for making a private profit.)

(2) 사법부 공무원 - 미국의 사법위원회는 어떠한 사법부 공무원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지위에서 알게 되거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방 판사에게 적용되는 관련 윤리규칙과 연방판사의 행동강령에 관한 해석 지침서를 발간해야 한다 (Judicial Officers -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shall issue such interpretive guidance of the relevant ethics rules applicable to Federal judges, including the 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as necessary to clarify that no judicial officer may use nonpublic information derived from such person's position as a judicial officer or gained from the performance of such person's official responsibilities as a means for making a private profit).

(3) 사법부 종사자 - 미국의 사법위원회는 어떠한 사법부 종사자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지위에서 알게 되거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법부 종사자에 적용되는 관련 윤리규칙에 관한 해석 지침서를 발간해야 한다(Judicial employees -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shall issue such interpretive guidance of the relevant ethics rules applicable to judicial employees as an necessary to clarify that no judicial employee may use nonpublic information derived from such person's position as a judicial employee or gained from the performance of such person's official responsibilities as a means for making a private profit).

(b) 내부자 거래 법률의 적용(Application of Insider Trading Laws -)

(1) 면제 제외의 확언·단언 - 행정부 종사자, 사법부 공무원 그리고 사법부 종사자 증권거래법 제10조 제(b)항 및 그 법률에 따른 규칙 10b-5를 포함한 증권법률에 따라 발생한 내부자 거래 금지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Affirmation of Non-Exemption - Executive branch employees, judicial officers, and judicial employees are exempt from 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s arising under the securities laws, including section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d Rule 10b-5 thereunder).

(2) 의무(Duty -)

(A) 목적 - 이 호에 의한 개정의 목적은 행정부 종사자, 사법부 공무원 그리고 사법부 종사자가 충성해야 하는 신뢰와 신임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Purpose -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made by this paragraph is to affirm a duty arising from a relationship of trust and confidence owed by each executive branch employee, judicial officer, and judicial employee).

(B) 개정 - 이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21A조를 맨 마지막에 다음을 추가한다(Amendment -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5 U.S.C. 78u-1), as amended by this Act,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h) 그 밖의 연방 공직자의 의무(Duty of Other Federal Officials -)

"(1) 총칙 - 스탁법 제10조에 의한 해석 원칙, 증권거래법 제10조 제(b)항 및 그 법률에 따른 규칙 10b-5를 포함하여, 이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내부자 거래 금지의 목적에 따라서, 행정부 종사자, 사법부 공무원이나 사법부 종사자는 자신의 직위에서 알게 되었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중요한 미공개 정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 및 미국 시민과의 신뢰·신임 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In General - Subject to the rule of construction under section 10 of the STOCK Act and solely for purposes of 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s arising under this Act, including section 10(b), and Rule 10b-5 thereunder, each executive branch employee, each judicial officer, and each judicial employee owes a duty arising from a relationship of trust and confidenc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derived such person's position as an executive branch employee, judicial officer, or judicial employee or gained from the performance of such person's official responsibilities).

"(2) 정의 - 이 항에서(Definitions - In this subsection --)

"(A) 행정부 종사자(the term executive branch employee --)

"(i) 행정부 종사자는 연방법전 제5편 제2105조에 따른 종사자를 의미한다(has the meaning given the term employee under section 2105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I) 대통령(the President;)

"(II) 부통령(the Vice President; and)

"(III) 연방 우정공사 또는 연방우정규제위원회의 종사자(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or the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B) 사법부 종사자는 정부윤리법 제109조 제8호에서 정의한 의미를 가진다(the term judicial employee has the meaning given that term in section 109(8)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9(8)); and)))

"(C) 사법부 공무원은 정부윤리법 제109조 제10호에서 정의한 의미를 가진다(the term judicial officer has the meaning given that term under section 109(10)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9(10)).)

"(3) 해석의 원칙 - 이 항의 어떠한 것도 증권법률의 현행 반사기 규정에 관한 해석을 훼손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훼손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아니 된다(Rule of Construction - 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limit the construction of existing anti-fraud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laws or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 under those provision.".)

제10조. 해석의 원칙(Rule of Construction)

이 법률, 이 법률에 의한 개정법률 또는 이 법률의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해석 지침서에 있는 어떠한 것도 다음의 경우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Nothing in this Act, the amendments made by this Act, or the interpretive guidance to be issued pursuant to section 3 and 9 of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

(1)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종 증권법률과 상품거래소법의 반사기규정을 훼손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훼손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impair or limit the construction of the anti-fraud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laws or the Commodity Exchange Act or the authority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r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under those provisions;).

(2) 의회 의원, 의회의 종사자, 행정부 공직자, 사법부 공직자의 직위로부터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 업무・직무 및 역할・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be in derogation of the obligations, duties, and functions of a Member of Congress, an employee of Congress, an executive branch employee, a judicial officer, or a judicial employee, arising from such person's official position; or).

(3) 의회 의원, 의회의 종사자, 행정부 공직자, 사법부 공직자를 지도・규제・관리・통제하는 현행의 법률, 규칙이나 윤리적 의무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be in derogation of existing laws, regulations, or ethical obligations governing Members of Congress, employees of Congress, executive branch employees, judicial officers, or judicial employees).

제11조. 행정부 신고(Executive Branch Reporting)

(a) 행정부 신고(Executive branch Reporting -)

(1) 총칙 - 2012년 8월 31일 이내에 또는 이 법률 시행일 이후 90일 이내에, 어느 쪽이 늦던지 간에, 대통령은 정부윤리법 제I편에 따라 정부윤리법 제101조에 명시된 행정부 공직자가 2012년도와 그 이후 매년 제출하는 재산공개신고서를, 그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In General - Not later than August 31, 2012, or 9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whichever is later, the President shall ensure that financial disclosure forms filed pursuant to title I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1 et seq.), in calendar year 2012 and in subsequent years, by executive branch employees specified in section 101 of that Act a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official web-sites of the respective executive branch agencies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such forms are filed).

(2) 확장 - 재산공개에 대한 확장 통지는 관련된 공개내용과 함께 전산으로(컴퓨터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Extensions - Notices of extension for financial disclosure shall be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along with the related disclosure).

(3) 신고대상 거래 - 이 법률에 의하여 추가된 정부윤리법 제103조 제1호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거래의 경우, 그 공개신고서는 그 조에 의하여 의무화된 일자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거래 공개에 대한 확장의 통지는 그 거래의 관련된 공개 사항과 함께 이 항에 따라 전산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Reporting Transactions - In the case of a transaction disclosure required by section 103(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s added by this Act, such disclosure shall be filed not later than the

date required by that section. Notices of extension for transaction disclosure shall be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under this subsection along with its related disclosure).

(4) 종결 - 이 항의 요건은 제(b)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종료되어야 한다(Expiration -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shall expire upon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disclosure system established under subsection(b)).

(b) 행정부 공직자의 재산공개신고서의 전산 제출과 온라인상에서 국민이 그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함(Electronic Filing and Online Public Availabilities of Financial Disclosure Forms of Certain Executive Branch Employees -)

(1) 총칙 - 제6호에 따라, 이 법률의 개시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대통령은 정부윤리청장을 통하여 다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In General - Subject to paragraph (6), and not later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President,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shall develop systems to enable --)

(A) 정부윤리법 103조에 따라 의무화된 신고서의 전산 제출, 다만 그 조의 제(h)항 제외(electronic filing of reports required by section 103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3), other than subsection (h) of such section; and)

(B) 다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1조에 따라 제출의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 공직자가 제출하는 재산공개신고서, 그 법률의 제103조와 이 법률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된 거래공개신고서, 그 법률의 제1편에 따른 확장의 통지, 개정사항, 백지신탁의 공개적인 열람(public access to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filed

by executive branch employees required to file under section 101 of that Act(5 U.S.C. App. 101), as well as reports of a transaction disclosure required by section 103 of that Act, as added by this Act, notices of extensions, amendments, and blind trusts, pursuant to title Ⅰ of that Act, through databases that --)

(i) 그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윤리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관리·유지된다(are maintaine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and)

(ii) 그 데이터베이스는 신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국민이 검색할 수 있고, 분류하며 내려 받을 수 있다(allow the public to search, sort, and download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2) 시스템 접속과정 - 이 항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신고서의 자료를 검색하고 분류하기 위한 사용자명은 필요 없다. 사용자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접속 통신규약은 신고서의 자료를 내려 받을 사람이 사용한다. 이 조에 따른 신고서 제출의 취지에 따라, 정부윤리법 제105조 제(b)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Log-in - No log-in shall be required to search or sort the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made available by this subsection. A log-in protocol with the name of the user shall be utilized by a person downloading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For purposes of filings under this section, section 105(b)(2)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5(b)(2)) does not apply).

(3) 국민의 이용 - 정부윤리법 제105조 제(b)항 제1호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정부윤리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전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Public Availability - Pursuant to section 105(b)(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5(b)(1), electronic availability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deemed to have met the public availability requirement).

(4) 신고대상 제출자 - 정부윤리법 제I편에 따라,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 공직자는 자신을 감독하는 윤리사무소에 전산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Filers Covered - Executive branch employees required under title I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to file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shall file the reports electronically with their supervising ethics office).

(5) 확장 - 재산공개에 대한 확장 통지는 재산공개의 관련되는 공개 내용과 함께 전산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Extensions - Notices of extensions for financial disclosure shall be made available electronically under this subsection along with its related disclosure).

(6) 추가 시간 - 정부윤리청장은 하원의 사무총장 및 상원의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에, 제1항의 요건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을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때에는, 이 항의 요건은 제1호에 규정된 날 이후부터 시행될 수 있다(Additional Time - The requirements of this subsection may be implemented after the date provided in paragraph (1) i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cretary of the Senate, identifies in writing to relevant congressional committees the additional time needed for such implementation).

제12조. 주식공모 참여(Participation in initial public offerings)

증권거래법 제21A조는 이 법률에 따라 개정되는 바, 말미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개정된다(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5 U.S.C. 78u-1), as amended by this Act, is further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i) 주식공모 참여 - 정부윤리법 제101조 제(f)조에 규정된 개인은 주식공모 대상인 증권을 매입해서는 아니 된다(일반적으로 국민이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제12조 제(f)항 제1호 제(G)목 제(i)의 조건을 가진 의미 내에서)Participation in Initial Public Offerings - An individual described in section 101(f)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may not purchase securities that are the subject of an initial public offering(within the meaning given such term in section 12(f)(1)(G)(i) in any manner other than is available to members of the Public generally.").

제13조. 주택담보대출 신고 의무(Requiring Mortgage Disclosure)

(a) 신고 의무 - 정부윤리법 제102조 제(a)항 제4호 제(A)목에서 "배우자; 그리고"를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하여 개정한다: "배우자, 신고대상 개인이 다음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사항도 신고대상임)."(Requiring Disclosure - Section 102(a)(4)(A)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2(a)(4)(A)) is amended by striking "spouse; and" and inserting the following: "spouse, except that this exception shall not apply to a reporting individual --)

"(i) 제101조 제(f)항의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규정된 경우(described in paragraph (1), (2) or (9) of section 101(f);

"(ii) 제101조 제(f)항에 규정된 행정부의 공직자로 임명되기 위해 지명된 제101조 제(b)항에 규정된 경우, 다음의 경우 제외(described in section 101(b) who has been nominated for appointment as an officer or employee in the executive branch described in subsection(f) of such section, other than --)

"(I) 다음의 직위에 임명된 개인(an individual appointed to a position --)

"(aa) 대사급 이하의 외무공직자(as a Foreign Service Officer below the rank of ambassador; or)

"(bb) 연방법전 제37편 제201조에 따라 규정된 보수 등급이 O-6이거나 그 이하인 재복근무(in the uniformed service for which the pay grade prescribed by section 201 of title 37, United States Code is O-6 or below; or)

"(II) 연방법전 제18편 제202조에 따라 규정된 특수정부종사자(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as defined under section 202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or)

"(iii)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한 직위에서 근무하는 제101조 제(f)에 규정된 경우, 다음의 경우 제외(described in section 101(f) who is in a position in the executive branch the appointment to which is made by the President and requires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other than --)

"(I) 다음의 직위에 임명된 개인(an individual appointed to a position --)

"(aa) 대사급 이하의 외무공직자(as a Foreign Service Officer below the rank of ambassador; or)

"(bb) 연방법전 제37편 제201조에 따라 규정된 보수 등급이 O-6이거나 그 이하인 재복근무(in the uniformed services for which the pay grade prescribed by section 201 of title 37, United States Code is O-6 or below; or)

"(II) 연방법전 제18편 제202조에 따라 규정된 특수정부종사자(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as defined under section 202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and").

(b) 시행일 - 제(a)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법률의 제정일 이후에 공직자윤리법 제101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신고서에 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Effective Date - The amendment made by subsection(a) shall apply

with respect to reports which are required to be filed under section 101 of the Ethics of Government Act of 1978 on or after the data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제14조. 거래 신고 요건(Transaction Reporting Requirements)

공직자윤리법 제103조 제1호에 따라 제정되고, 이 법률의 제6조에 의하여 추가된 거래 신고 요건은, 다음의 경우라면, 광범위하게 소유된 투자기금(그러한 기금은 뮤츄얼 펀드, 레귤레이티드 투자회사(배당·이자 수입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국세청의 규제요건을 채움으로써 그 자체로서는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끝나는 투자회사), 연금 또는 이연보상제도 그 밖의 투자기금 등이 있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The transaction reporting requirements established by section 103(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s added by section 6 of this Act, shall not be construed to apply to a widely held investment fund(whether such fund is a mutual fund,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pension or deferred compensation plan, or other investment fund), if --)

(1)(A) 기금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the fund is publicly traded; or)

(B) 기금의 재산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경우(the assets of the fund are widely diversified; and)

(2) 신고해야 하는 개인이 기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재산상 이득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도 못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the reporting individual neither exercises control over nor has the ability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financial interests held by the fund).

제15조. 그 밖의 선출직 공직자와 형사상 범죄행위에 적용(Application to Other Elected Officials and Criminal Offenses)

(a) 그 밖의 선출직 공직자에 적용(Application to Other Elected Officials -)

(1) 공직자 정년퇴직 제도 - 연방법전 제5편 제8332조 제o항 제a호 제A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 Section8332(o)(2)(A)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

(A) (i)에서, "의원" 뒤에 **"대통령, 부통령, 주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를 삽입(in clause(ⅰ), by inserting,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or an elected official of a State or local government" after "Member"; and)

(B) (ii)에서, "의원" 뒤에 **"대통령, 부통령, 주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를 삽입(in clause(ⅱ), by inserting,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or an elected official of a State or local government" after "member".)

(2) 연방 종사자 정년퇴직 제도 - 연방법전 제8411조 제l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section 8411(l)(2) of title,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

(A) 제A목에서, "의원" 뒤에 **"대통령, 부통령, 주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를 삽입(in subparagraph(A), by inserting,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or an elected official of a State or local government" after "Member"; and)

(B) 제A목에서, "의원" 뒤에 **"대통령, 부통령, 주 또는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를 삽입(in subparagraph(B), by inserting,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or an elected official of a State or local government" after "Member")

(b) 형사상 범죄행위 - 연방법전 제5편 제8332조 제o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Criminal Offence - Section 8332(o)(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

(1) 제A목에서, (iii)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in subparagraph (A), by striking clause (iii) and inserting the following:)

"(iii) 범죄행위는 다음을 말한다(The Offence --)

"(Ⅰ) 이 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했던 범죄행위(is committed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subsection and --)

"(aa) 제B목의 (i), (vi), (xvi), (xix), (xxii), (xxiv) 또는 (xxvi)에 따라 지정되는 범죄행위(is described under subparagraph (B)(i), (vi), (xvi), (xix), (xxii), (xxiv), or (xxvi): or)

"(bb) 제B목의 (xxix), (xxx) 또는 (xxxi)에 따라 지정되는 범죄행위, 제B목의 (i), (iv), (xvi), (xix), (xxiii), (xxiv) 또는 (xxvi)에 따라 지정된 범죄행위에 관한 것만 해당(is described under subparagraph (B)(xxix), (xxx), or (xxxi), but only with respect to an offence described under subparagraph (B)(i), (iv), (xvi), (xix), (xxiii), (xxiv), or (xxvi); or)

"(Ⅱ) 스탁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했던 범죄행위(is committed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STOCK Act and --)

"(aa) 제B목의 (ii), (iii),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xvii), (xviii), (xx), (xxi), (xxii), (xxv), (xxvii) 또는 (xxviii)에 따라 지정되는 범죄행위(is described under subparagraph (B)(ii), (iii),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xvii), (xviii), (xx), (xxi), (xxii), (xxv), (xxvii), or (xxviii); or)

"(bb) 제B목의 (xxxi), (xxx) 또는 (xxx)에 따라 지정되는 범죄행위, 제B목의 (ii), (iii),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xvii), (xviii), xx, xxi, xxii, xxv, xxvii 또는

(xxviii)에 따라 지정된 범죄행위에 관한 것만 해당(is described under subparagraph (B)(xxxi), (xxx), or (xxx), but only with respect to an office described under subparagraph (B)(ii), (iii),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xvii), (xviii), xx, xxi, xxii, xxv, xxvii, or (xxviii)

(2) 제B목을 삭제하고 다음을 삽입한다(by striking subparagraph (B) and inserting the following:)

"(B) 이 목에서 지정하는 범죄행위는 다음의 사항만이고, 그 범죄행위의 범위는 중죄에만 해당한다(An offence described in this subparagraph is only the following, an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offence is a felony:)

"(i) 형법 제201조에 따른 범죄행위(공직자와 증인의 뇌물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201 of title 18(relating to bribery of public officials and witnesses)

"(ii) 형법 제203조에 따른 범죄행위(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의회 의원, 공직자와 그 밖의 사람의 보수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203 of title 18(relating to compensation to Member of Congress, officers, and others in matters affecting the Government))

"(iii) 형법 제204조에 따른 범죄행위(연방청구법원 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의회 의원의 활동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204 of title 18(relating to practice in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 or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by Member of Congress))

"(iv) 형법 제219조에 따른 범죄행위(외국 본인을 대리하는 공직자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219 of title 18(relating to officers and employees acting for foreign principals))

"(v) 형법 제286조에 따른 범죄행위(청구에 관하여 정부를 사취하려는 공모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286 of title 18(relating to conspiracy to defraud the Government with respect to claims)

"(vi) 형법 제287조에 따른 범죄행위(부정청구, 허위청구 또는 사기청구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287 of title 18(relating to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claims))

"(vii) 형법 제597조에 따른 범죄행위(선거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지출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597 of title 18(relating to expenditures to influence voting))

"(viii) 형법 제599조에 따른 범죄행위(후보자에 의한 임명 약속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599 of title 18(relating to promise of appointment by candidate))

"(ix) 형법 제602조에 따른 범죄행위(정치 기부금 요구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602 of title 18(relating to solicita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x) 형법 제606조에 따른 범죄행위(정치 기부금 확보를 위한 협박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606 of title 18(relating to intimidation to secure political contributions)

"(xi) 형법 제607조에 따른 범죄행위(정치 기부금 등의 수수 또는 요구 장소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607 of title 18(relating to place of solicitation))

"(xii) 형법 제641조에 따른 범죄행위(공금, 국유재산 또는 공공기록물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641 of title 18(relating to public money, property or records))

"(xiii) 형법 제666조에 따른 범죄행위(연방기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횡령 또는 뇌물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666 of title 18(relating to theft or bribery concerning programs receiving Federal funds))

"(xiv) 형법 제1001조에 따른 범죄행위(진술서 또는 기재사항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001 of title 18(relating to statements or entries generally))

"(xv) 형법 제1341조에 따른 범죄행위(시민에게서 정당한 서비스를 박탈하는 계략을 포함한 사기 및 편취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341 of title 18(relating to frauds and swindles, including as part of a scheme to deprive citizens of honest services thereby))

"(xvi) 형법 제1343조에 따른 범죄행위(시민에게서 정당한 서비스를 박탈하는 계략을 포함한 전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사기행위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343 of title 18(relating to fraud by wire, radio, or television, including as part of a scheme to deprive citizens of honest services thereby))

"(xvii) 형법 제1503조에 따른 범죄행위(공직자나 배심원에 영향력 행사나 위해행위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503 of title 18(relating to influencing or injuring officer or juror))

"(xviii) 형법 제1505조에 따른 범죄행위(부처, 기관 및 위원회의 법적 절차 방해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505 of title 18(relating to obstruction of proceedings before departments, agencies, and committees))

"(xix) 형법 제1512조에 따른 범죄행위(증인, 피해자 또는 정보 제공자 매수 행위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512 of title 18(relating to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nt))

"(xx) 형법 제1951조에 따른 범죄행위(폭력에 의한 상거래 방해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951 of title 18(relating to interference with commerce by threats of violence))

"(xxi) 형법 제1952조에 따른 범죄행위(범죄 기업을 도와주는 주간이나 해외 여행 또는 운반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952 of title 18(relating to interstate and foreign travel or transportation in aid of racketeering enterprises))

"(xxii) 형법 제1956조에 따른 범죄행위(돈 세탁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956 of title 18(relating to laundering of monetary instruments))

"(xxiii) 형법 제1957조에 따른 범죄행위(특정한 불법행위로부터 유래된 재산의 금전적 거래에 가담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957 of title 18(relating to 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s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ed unlawful activity))

"(xxiv) 형법 제96장에 따른 범죄행위(조직 범죄와 관련)(An offence under chapter 96 of title 18(relating t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xxv) 내국세법 제7201조에 따른 범죄행위(탈세 미수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720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relating to attempt to evade or defeat tax))

"(xxvi) 해외부패방지법의 제104조 제a항에 따른 범죄행위(국내 기업의 해외 무역에서 금지된 행위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04(a)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relating to prohibited foreign trade practices by domestic concerns))

"(xxvii) 증권거래법의 제10조 제b항에 따른 범죄행위(증권 사기,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relating to fraud, manipulation, or insider trading of securities))

"(xxviii) 상품거래소법 제4c조 제a항에 따른 범죄행위(상품 사기, 조작 또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4c(a) of the Commodity Exchange Act(7 U.S.C. 6c(a))(relating to fraud, manipulation, or insider trading of commodities))

"(xxix) 형법 제371조에 따른 범죄행위(범죄행위 공모 또는 연방 사취행위 공모와 관련) 다음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려는 공모의 정도까지(An offence under section 371 of title 18(relating to conspiracy to commit offence or to defraud United States), to the extent of any conspiracy to commit an act which constitutes --))

"(I) (제(i)조목, 제(ii)조목, 제(iii)조목, 제(iv)조목, 제(v)조목, 제(vi)조목, 제(vii)조목, 제(viii)조목, 제(ix)조목, 제(x)조목, 제(xi)조목, 제(xii)조목, 제(xiii)조목, 제(xiv)조목, 제(xv)조목, 제(xvi)조목, 제(xvii)조목, 제(xviii)조목, 제(xix)조목, 제(xx)조목, 제(xxi)조목, 제(xxii)조목, 제(xxiii)조목, 제(xxiv)조목, 제(xxv)조목, 제(xxvi)조목, 제(xxvii)조목 또는 (xxviii)에 따른 범죄행위)(an offence under clause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xvi), (xvii), (xviii), (xix), (xx), (xxi), (xxii), (xxiii), (xxiv), (xxv), (xxvi), (xxvii), or (xxviii); or)

"(II) 형법 제207조에 따른 범죄행위(행정부 및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에 관한 제한과 관련)(an offence under section 207 of title 18(relating to restrictions on former officers, employees, and elected officials of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xxx) 다음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범행을 허위로 부정하는 형법 제1621조에 따라 행해지는 위증)(Perjury committed under section 1621 of title 18 in falsely denying the commission of an act which constitute --)

"(I) (제(i)조목, 제(ii)조목, 제(iii)조목, 제(iv)조목, 제(v)조목, 제(vi)조목, 제(vii)조목, 제(viii)조목, 제(ix)조목, 제(x)조목, 제(xi)조목, 제(xii)조목, 제(xiii)조목, 제(xiv)조목, 제(xv)조목, 제(xvi)조목, 제(xvii)조목, 제(xviii)조목, 제(xix)조목, 제(xx)조목, 제(xxi)조목, 제(xxii)조목, 제(xxiii)조목, 제(xxiv)조목, 제(xxv)조목, 제(xxvi)조목, 제(xxvii)조목 또는 (xxviii)에 따른 범죄행위)(an offence under clause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xvi), (xvii), (xviii), (xix), (xx), (xxi), (xxii), (xxiii), (xxiv), (xxv), (xxvi), (xxvii), or (xxviii); or)

"(II) 제(xxx)조목에 따른 범죄행위(an offence under clause (xxx), to the extent provided in such clause)

"(xxxi) 제(xxx)조목에 명시된 다른 개인에게 허위 부인이나 허위증언과 관련한 형법 제1622조에 따라 행해진 위증 교사(subornation of perjury committed under section 1622 of title 18 in connection with the false denial or false testimony of another individual as specified in clause (xxx).")

제16조. 연방저당권협회와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상여금 제약(Limitation on Bonuses to Executives of FANNIE MAE and FREDDIE MAC)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저당권협회와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의 경영진은, 이 법률의 통과 이후에 그 사업체의 재산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in law, senior executives at the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and the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are prohibited from receiving bonuses during any period of conservatorship for those entities on o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제17조. 퇴직 이후 취업에 대한 협상 제한(Post-Employment Negotiation Restrictions)

(a)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제한 확대 -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법 제101조에 따라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퇴직 이후의 취업이나 보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협상이나 협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직 이후의 취업이나 보수에 관한 협상이나 협의를 시작한 사람은, 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3일 이내에, 그 협상이나 협의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사업체 이름, 그 개시일을 포함한 협상이나 협의에 관한 신고서에 서명하여 자신을 감독하는 윤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striction Extended to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an individual required to file a financial disclosure report under section 10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1) may not directly negotiate or have any agreement of future employment or compensation unless such individual, within 3 business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such negotiation or agreement of future employment or compensation, files with the individual's supervising ethics office a statement, signed by such individual, regarding such negotiations or agreement, including the name of the private entity or entities involved in such negotiations or agreement, and the date such negotiations or agreement commenced).

(b) 제척·회피 - 제(a)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은 신고서의 주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거나 외견상 이해충돌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를 회피

해야 하며, 자신을 감독하는 윤리사무소에 그 회피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회피를 하려는 개인은 그 회피사항에 관해서 제(a)항에 따른 신고서를 윤리 감독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Recusal - An individual filing a statement under subsection (a) shall recuse himself or herself whenever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or appearance of a conflict of interest, for such individual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statement, and shall notify the individual's supervising ethics office of such recusal. An individual making such recusal shall, upon such recusal, submit to the supervising ethics office the statement under subsection (a) with respect to which the recusal was made)

제18조. 민간부문 사업체의 채용결정에 대한 입법부 및 행정부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Wrongfully Influencing Private Entities Employment Decisions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 Officers and Employees)

(a) 총칙 - 연방법전 제18편 제2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n General - Section 227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

(1) 형법전의 제227의 첫머리의 "의회" 뒤에 다음을 삽입 : **"또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종사자"**(in the heading of such section, by inserting after "Congress" the following: "or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

(2) "누구든지"를 삭제하고 **"(a) 누구든지"**를 삽입(by striking "Whoever" and inserting "(a) Whoever";)

(3) "의회의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대의원, 상주대표 또는 의회의 종사자"를 삭제하고 **"적용대상 공직자"**를 삽입 (by striking "a Senate or Representative in, or a Delegate or Resident Commissioner to, the Congress or an

employee of either House of Congress" and inserting "a covered government person"; and)

(4) 다음을 마지막에 추가(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b) 이 조에서, 적용대상 공직자는 다음을 말한다(In this section, the term covered government person means --)

"**(1) 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또는 상주대표**(a Senate or Representative in, or a Delegate or Resident Commissioner to, the Congress;)

"**(2) 상하양원의 종사자**(an employee of either House of Congress; or)

"**(3) 대통령, 부통령, 연방우정규제위원회의 종사자, 그 밖의 행정부 종사자(그 용어는 연방법전 제5편의 제2105조에 정의되어 있음)**(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or any other executive branch employee(as such term is defined under section 2105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b) 사무적 개정 - 제227조와 관련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연방법전 제18편 제11장의 목차를 개정한다(Clerical Amendment - The table of contents for chapter 11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amending the item relating to section 227 to read as follows:)

"**227. 민간부문 사업체의 채용결정에 대한 입법부 및 행정부 공직자에 의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227. Wrongfully influencing a private entity's employment decision by a Member of Congress or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

제19조. 그 밖의 다른 법률 개정(Miscellaneous Conforming Amendments)

(a) 새로운 시스템 채택에 따른 의원과 후보자의 신고서 사본의 선관위 전달 폐지 -「정부윤리법」 제103조 제i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peal of Transmission of Copies of Member and Candidate Reports to State Election Officials Upon Adoption of New System - Section 103(i)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5 U.S.C. App. 103(i)) is amended --)

(1) "제i항"을 삭제하고 **"제i항 제1호"** 삽입하고(by striking "(i)" and inserting "(i)(1)"; and)

(2) 다음의 새로운 제2호를 마지막에 추가(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

"(2) 제1호의 준수요건은 스탁법 제8조 제b항에 따라, 상원의 사무총장과 경위관 및 하원의 사무총장이 개발한 시스템에 따라 전산으로 제출되고 온라인 상에 공개되는 신고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do not apply to any report filed under this title which is filed electronically and for which there is online public access,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s developed by the Secretary and Sergeant at Arms of the Senate and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under section 8(b) of the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

(b) 하원 의원의 재산공개 신고서의 보존 기한(Period of Retention of Financial Disclosure Statements of Members of the House -)

(1) 총칙 -「정직한 리더십 및 열린 정부법률(연방법전 제2편 104e조 제c항, 로비활동 공개법을 2007년에 개정한 법률임)」의 제304조 제c항은 종료 기한이 삭제되고 다음 사항이 삽입되는 것으로 개정된다. **", 또는「정부**

윤리법」 제103조 제h항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이 더 이상 아닌 날부터 6년 동안 보존"(In General - Section 304(c) of the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2 U.S.C. 104e(c)) is amended by striking the period at the end and inserting the following: ", or, in the case of reports filed under section 103(h)(1)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until the expiration of the 6-year period which begins on the date the individual is no longer a Member of Congress.").

(2) 시행일 - 제1호에 따른 개정사항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8조 제b항에 따라, 상원의 사무총장과 경위관 및 하원의 사무총장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제출되거나 그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부터 제출되는 신고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Effective Date - The amendment made by paragraph (1)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ny report which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ystems developed by the Secretary and Sergeant at Arms of the Senate and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under section 8(b) first take effect).

연방 의회정보의 부정거래 금지법 해설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

(2012. 12. 14.)

미국 연방 의회 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요약(Summary)

스탁법(연방 의회정보의 부정거래 금지법)은 2012년 4월 4일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 법률은 의회 의원, 의회 종사자 또는 연방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과 규칙에서 어떠한 면제(예외)도 없다는 사실을 단언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 법률은 모든 연방공직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고 그 비밀을 유지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며, 공직자가 사익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부정하게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The STOCK Act(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 was signed into law on April 4, 2012. It affirms and makes explicit the fact that there is no exemption from the "insider trading" laws and regulations for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employees, or any federal officials. The law also expressly affirms that all federal officials have a "duty" of trust and confidentiality with respect to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which they may receive in the cours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a duty not to use such information to make a private profit).

공직자의 증권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인 스탁법은 개정된 정부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 대상인 행정부 및 입법부의 모든 공직자가 공개 대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법률은 공개 대상인 금융거래(1978년 이후부터 공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는 공개대상인 금융거래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공개(어떻게 되든 공개대상 금융거래 이후 45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하도록 하고 있다(The STOCK Act, as part of the law's regulation of securities transactions by public officials, now requires expedited, periodic public disclosure of covered "financial transactions" by all officials i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the federal government who are covered by the public reporting provisions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s amended. The act thus works to require not only annual public reporting of such transactions(which reporting has been required since 1978), but also now requires public reporting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a notice of a covered financial transaction(but in no event more than 45 days after such transaction)).

원래 개정된 대로, 그 법률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직자가 정부윤리법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재산공개 신고서를 전산 형태로 작성해야 하고, 그 신고서가 공개적으로 검색되고 분류되며, 컴퓨터 접속 통신규약에 따라 정부 공식웹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The act as originally adopted requires all public financial disclosure statements filed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i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o eventually be made in electronic form, and to be posted on the Internet where they may be publicly searched, sorted, and, if a log-in protocol is followed, downloaded from official government web-sites).

스탁법의 개정부분은 2012년 5월에 제출된 재산공개 신고서의 인터넷 게시 요건을 연기했고,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개인적인 금융 정보가 가지는 잠재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입법 및 행정부의 신고대상 공직자에 대한 주기적인 거래신고서의 인터넷 게시도 2013년 4월 15일까지 연기했다(Amendments to the Stock Act have delayed the Internet posting requirements of the public personal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filed in May of 2012, and the Internet posting of the periodic transaction reports, until April 15, 2013, for most covered employees i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of the U.S. government, until a study can be made on the potential impact of having such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Internet).

그렇지만, 재산공개 신고서의 인터넷 게시에 관한 요건, 의회의원, 대통령과 부통령, 의원 후보자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고위직 보수표

Ⅰ급과 Ⅱ급의 직위에 있는 연방 공직자가 제출하는 모든 금융정보는 2012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다(However, the requirement for Internet posting of the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and all financial information filed by Members of Congress,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candidates of Congress, and federal official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Senate in positions on the Executive Schedule at Levels Ⅰ and Ⅱ, are in effect and are required to be posted on the Internet as of September 30, 2012).

목차(Contents)

1.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미공개 내부정보 부정이용)

1) 상품거래소법률(Commodity Exchange Act)

2) 주식공모(Initial Public Offerings(IPOs, 기업공개, 주식상장))

2. 재산공개 보고서(Public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1) 공직자의 주택담보 대출금 세금공제 폐지(Elimination of Mortgage Exemption for Personal Residences of Certain Officials)

3. 금융거래의 신속한 공개보고(Prompt Public Report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4. 인터넷에 공개보고서 게시; 전산 신고(Posting Disclosure Reports on the Internet; Electronic Reporting)

5. 의회 의원의 연금(Pensions of members of Congress)

6. 기타 규정(Other Provisions)

1) 민간부문의 채용 결정에 영향력 행사(Influencing Private Employment Decisions)

2) 퇴직 이후 취업에 관한 협상(Negotiations for Post-Government Employment)

3) 연방저당권협회와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상여금(Bonuses to Fannie Mae(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and Freddie Mac(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Executives)

4) 정치 정보에 관한 연구(Study on Political Intelligence)

스탁법은 2012년 4월 4일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그 법률은 내부자 거래금지(미공개 정보 부정사용 금지)에 관한 규칙이 의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도록 명확하고 확실하게 했으며, 연방 공직자의 개인 금융 정보, 재산 및 거래에 관한 신고서에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On April 4, 2012, the STOCK Act was signed into law. The Act clarifies and confirms that the "insider trading" rules apply to all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Members of Congress, and provides for more transparency and access to the reports on the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assets, and transactions of federal officers and employees).

요약하자면, 스탁법은 4개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The STOCK Act has, in summary, four major feature):

1) 첫째로, 현행의 증권법률과 규칙의 “내부자 거래” 규정은 의회의원, 의회 공직자 또는 그 밖의 연방 공직자에 관한 면제 또는 배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그 법률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 때문에 알게 되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와 관련하여 가지는 비밀유지 의무와 보호 의무를 명백하게 하고 있다(First, the law reaffirms the fact that the existing "insider trading" provisions of securities law and regulations do not contain any exemption or exclusion for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staff, or other federal officials. Furthermore, the law makes explicit the duty of confidentiality and trust that all public employees have concern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hat comes to them by virtue of their federal employment).

2) 두 번째로, 그 법률은 정부윤리법에 따라 입법부 및 행정부 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모든 재산 신고서를 전산제출시스템으로 하도록, 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가 제출하는 개인적인 금융 정보에 관한 공개보고서와 세부 사항들이 검색과 분류가 가능한 포맷을 가진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Secondly, the law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n electronic filing

system for all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that must be filed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 officials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nd requires that the public reports of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and details filed by all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 personnel are to be available to be publicly accessed on the Internet in a searchable and sortable format).

3) 세 번째로, 그 법률은 정부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공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가 수익성 재산(주식 및 채권의 매매)의 금융 거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4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 신고를 해야 한다(Thirdly, the law requires public reporting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 report concerning, but no later than 45 days after, a covered financial transaction in income-producing property(such as the purchase or sale of stocks or bonds) by all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 personnel who are required to file the annual public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4) 마지막으로, 그 법률은 의회의 연금 목적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명예로운 업적·공훈을 지키지 못한 의원의 범죄행위와 유죄판결의 목록을 확대하고, 연방 연금 몰수에 적용되는 그러한 유죄판결의 시한을 확대한다(Finally, the law expands the list of crimes, conviction of which would result in a Member of Congress losing all of his or her creditable service as a Member for congressional pension purposes, and broadens the time period when such conviction would apply to federal pension forfeiture).

1.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미공개 내부정보 부정이용)

새로운 법률의 규정은 연방 증권 법률 및 규칙에 있는 "내부자 거래"에 관한 금지사항으로부터 의회 의원, 의회 종사자, 그 밖의 연방 공무원과 종사자를 위한 어떠한 면제·예외 사항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단언하고 있다. 그것은

의회 의원, 의회 종사자 또는 그 밖의 연방 종사자에게는 증권법률의 내부자 거래 규정에 어떠한 면제 또는 특례도 없다는 것이 강조되며, 그러한 공직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내부자 거래 제한의 대상이 된다(The provisions of the new law expressly affirm that there exists no exemption for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employees, or for other federal officers or employees from the "insider trading" prohibition in federal securities law and regulatio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re never was any exemption or exception from the "insider trading" provisions of securities law for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staff, or for other federal employees, and such persons were subject to the insider trading restrictions in the same manner as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그렇지만, 언론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 종사자가 내부자 거래 규정에서 실제적으로 면제되거나, 그들 스스로를 제외시켰다는 국민의 인상을 만들어 낸다. 이 법률은 그러한 인식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However, certain media reports and allegations created the public impression that Members of Congress and staff were actually exempt or had "excepted themselves" from the insider trading provisions. This legislation addressed that perception).

증권법률과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부자 거래 금지사항이 의회 의원과 다른 연방 공직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단언하는 하는 것에 추가하여, 스탁법은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알게 된 중요한 미공개 정보에 관하여 보호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미국과 시민에게 져야 한다는 것을 한층 더 명백하게 단언한다(In addition to affirming that the insider trading restrictions of securities law and regulation apply to Members of Congress and to other federal officials, the STOCK Act further affirms expressly that each officer and employee of the legislative branch, each executive branch official, and each judicial officer and employee owes a duty of trust and confidence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derived from such person's public employment).

스탁법은 하원과 상원의 윤리기구에 - 하원윤리위원회와 상원의 윤리특별위원회 - 의회 의원과 의회 종사자는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자신의 직무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한 의회 규칙의 해석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한다. 비록 행정부에 이미 명확한 규칙이 있다하더라도, 그 법률은 정부윤리청으로 하여금 지침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미연방의 사법위원회에게 연방 판사와 사법부 종사자이 사용할 지침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The STOCK Act directs the ethics entities in the House and Senate - the House Ethics Committee and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Ethics - to issue interpretations of chamber rules "clarifying" that Members and staff are prohibited from using nonpublic information derived from their positions "as a means for making a private profit". Although such explicit regulations already exist in the executive branch, the legislation directs that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issue such interpretive guidance, and that the Judicial Conference of United States issue such guidance to federal judges and to judicial employees).

법률 용어의 포괄성과 전에 발간되었던 지침서에서부터, 미공개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사용제한이 의회 의원이나 종사자가 직접 거래한 그러한 정보에까지 확대되거나 그러한 정보를 전달 받은 다른 사람이 자신 또는 정보를 전달한 공직자를 위하여 사익을 얻는데 사용되는 미공개정보를 전달하는 것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야 된다(From the inclusiveness of the language of legislation, and from previous guidance, it would appear that the restrictions on the use of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extends not only to trading directly by the Member of Congress or by staff on such information, but would extend also to passing on such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o another so that such other person may make a private profit for himself or herself, or for the public official).

1) 상품거래소법률(Commodity Exchange Act)

스탁법은 사익을 위하여 미공개정보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상품, 상품 선물이나 옵션을 매매하기 위하여 미공개정보를 훔치거나 횡령해서는 아니 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연방정부의 모든 공직자에 의회의 의원과 종사자를 명백하게 포함한다(The STOCK Act expressly includes Members and employees of Congress within those employees or agents of the federal government, including all executive branch and judicial branch officers and employees, who are prohibited from using nonpublic information, imparting such nonpublic information, or stealing or converting nonpublic information to purchase or sell commodities, commodities futures, or options, for personal gain).

2) 주식공모(Initial Public Offerings(IPOs, 기업공개, 주식상장))

스타법은 정부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공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연방정부의 모든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주식공개모집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증권거래소법을 개정한다(The STOCK Act amend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o provide that all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federal government who are required to file annual public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are prohibited from purchasing securities that are the subject of an "initial public offering... in any manner other than is available to members of the public generally".)

2. 재산공개 보고서(Public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현행의 법률과 이전의 스탁법에 따라, 의회의원과 입법부의 종사자(일반직 보수표 15등급의 기본보수의 120%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종사자 포함)는 개정된 정부윤리법의 재산공개 신고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보수표 15등급으로 분류되는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일반직 보수표에는 없지만, 일반직 보수표 15등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거나 그 이상을

받는 직위에 있는 행정부 공직자는 개정된 정부윤리법의 재산공개 신고 규정을 적용 받는다. 위에 기술된 보수를 받는 종사자가 역년(1월1일부터 12월31까지)에 60일 이상을 정부에서 근무했다면, 그 종사자는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상세한 재산공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공개보고서는 기관의 윤리담당자의 사무실에서 국민이 열람할 수 있으며, 사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Under existing and pre-STOCK Act, Members of Congress and certain employees of the legislative branch(including those paid at a rate of pay exceeding 120% of the base salary of a GS-15), as well as executive branch officials who occupy "a position classified above GS-15", or if not on the General Schedule, are in a position compensated at a "rate of basic pay.... equal to or greater than 120 percent of the minimum rate of basic pay payable for GS-15", are generally subject to the public financial disclosure provision of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s amended. Those employees compensated at the rate pay described above are required to file detailed public financial disclosure statements by May 15 of the following year if the individual works for the government for more than 60 days in calendar year. These disclosure reports have been available to the public for viewing at the office of the agency ethics officer, or a copy may be furnished to those requesting a copy).

1) 공직자의 주택담보 대출금 공개면제 폐지(Elimination of Mortgage Exemption for Personal Residences of Certain Officials)

현행의 정부윤리법에 따르면, 연례적인 재산공개 신고서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1만불 이상의 부채는 공직자의 개인 주택의 담보 대출금이었다. 대통령, 부통령, 의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직위에 지명자와 재직자(대사 이하의 외무 공직자, 0-6 등급에 해당하거나 이 보다 낮은 군사요원 또는 특수정부 종사자 제외)가 신고서에 주택담보 대출금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폐지함으로써, 스탁법은 이제 공직자 자신의 주택 담보 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Under existing law in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ne of the "liabilities" of over $10,000 that did not have to be disclosed on an annual personal financial disclosure report was the mortgage on officers' or employees' personal residences. By removing the exemption for such disclosure from reports made by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Members of Congress, and nominees and incumbents in positions which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Senate (other than Foreign Service officials below the rank of ambassador, military personnel at or below grade 0-6, or special government employees), the STOCK Act now requires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the mortgages on such officials' own personal residence).

3. 금융거래의 신속한 공개보고(Prompt Public Report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정부윤리법은 1천불 이상의 수익성 재산의 모든 거래를 연례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 준수요건은 부동산, 주식, 채권, 상품 선물 또는 그 밖의 증권의 매매에 적용된다. 2012년 7월 3일부터, 스탁법은 개정된 정부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1천불 이상의 수익성 재산을 거래한 통지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그 거래 후에 45일 이내에, 그 거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has required the annual reporting of all "transactions" in income-producing property of over $1,000 in value. This requirement applies generally to the purchase or sale of real property, or of such assets as stocks, bonds, commodity futures, or other securities. The STOCK Act requires, as of July 3, 2012, the public reporting of covered transactions exceeding $1,000 in these income-producing assets to be made within 30 days of receiving notice of the transaction, but not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transaction, from all federal officers and employees i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who are required to file public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as amended).

재산거래의 더 신속한 신고를 위한 이런 준수요건은, 만약 투자기금이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그 재산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재산 공개 신고자가 그 기금의 재산상 이익을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할 수 없다면, 뮤추얼 펀드와 같은 광범위하게 보유되는 투자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정기적인 거래 신고는 증권거래에서만 적용되고,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재산의 거래는 여전히 공직자의 연례적 재산공개 신고서에서 신고 되어야 한다. 2012년 8월에 스탁법의 개정으로 채택된 명확화로 인하여, 주기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대상 개인은 아주 제한적이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직자의 배우자나 부양자녀에 의한 신고대상 거래에 관한 주기적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This requirement for more prompt report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will not apply to a widely held investment fund, such as mutual funds, if the fund is publicly traded, the assets are widely diversified, and the reporting individual neither exercise nor is allowed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fund. Furthermore, the periodic transaction reports apply only to transactions in securities, and do not apply to transactions in things such as real property. Such transactions in real property or in such holdings as mutual funds must still, however, be reported on the annual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of the official. In clarifications adopted as an amendment to the STOCK Act in August of 2012, it is now clear that reporting individuals who are required to file periodic transaction reports must file such reports with respect to covered transactions by the official's spouse or dependent children, except in very limited and unusual circumstances).

비록 주기적인 재산거래에 관하여 공직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인터넷 게시에 대한 시행일자가 연기되었지만, 그 거래를 통지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그 거래가 있은 이후 45일 이내에, 적정한 해당 윤리사무소에 그 거래를 신고하는 중요한 준수요건은 연기되지 아니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대상 공직자는 계속해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Although the implementation date has delayed for the Internet posting of the forms filed by federal officials on periodic financial transactions, the underlying requirement to report such transactions to the proper, relevant ethics office within 30 days of receiving notice of the transaction, but not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transaction, has not been delayed and continues to be required by all covered officials i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of government).

4. 인터넷에 공개신고서 게시; 전산 신고(Posting Disclosure Reports on the Internet; Electronic Reporting)

본래 개정된 대로, 스탁법은 연례적인 재산공개 신고서를 각각의 하원과 상원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회의원, 상하양원의 공직자, 의원 후보자와 모든 입법부 종사자가 2012년에 작성한 재산거래의 신속한 신고도 이와 마찬가지다. 유사하게, 정부윤리법에 따라 모든 행정부의 종사자가 2012에 작성한 재산공개 신고서는 스탁법의 원래 규정에 따라 각 행정부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고 있다. 매년 이러한 신고서는 제출 이후 얼마 있지 않아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한다(The STOCK Act as originally adopted requires the posting on the respective official web-sites of the House and Senate the annual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as well as the new prompt reporting disclosures of financial transactions, made in 2012 by Members, officers of the House or Senate, candidates to Congress, and employees of the entire legislative branch who are required to file public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Similarly, the public disclosure reports made

in 2012 by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entire executive branch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including the periodic transactions reports) were required under the original provisions of the STOCK Act to be posted on the official web-sites of the respective executive branch agencies. In subsequent reporting years, these reports are to be posted on the publicly accessible web-sites no later than days after filing).

그렇지만, 신원도용(개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신용도용 범죄)의 증가하는 기회와 가능성, 인터넷 데이터 마이닝을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현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자와 그 가족, 특히 해외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의회는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 공개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연구할 때까지, 대부분 공직자의 개인적인 재산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게 하는 준수요건을 시행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입법화했다. 스탁법의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 대통령, 부통령, 의회의원, 의회의원 후보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고위직 보수표 Ⅰ급과 Ⅱ급의 직위에 있는 공직자 - 연례적인 공개 신고서와 주기적인 거래 보고서를 2012년 9월 30에 게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2013년 4월 15일까지 신고서의 인터넷 개시를 연기했다(However, because of concerns over increasing the opportunities and potential for identity theft, the increased prevalence of "data mining" on the Internet for wrongful purposes, and concerns over the safety of federal workers and their families, particularly those who serve abroad, Congress has enacted delay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 for Internet posting of personal financial data for most federal officials until the potential impact of these new Internet disclosures may be studied. Under amendments to the STOCK Act, the disclosure reports and periodic transactions reports for high level officials -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Members of Congress, candidates for Congress, and President - appointed and Senate - confirmed officials on the Executive Schedule Ⅰ and Ⅱ - were required to be posted no

later than September 30, 2012. For all other officers and employees i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of government, however, the Internet posting of reports has been delayed until April 15, 2013).

그 법률의 통과 이후 18개월 이내에, 하원의 사무총장과 상원의 사무총장, 그리고 행정부의 관계 기관은 정부윤리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재산공개 신고서의 전산제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 시스템은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재산신고서를 검색하고 그 신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부에서 그 시스템은 정부윤리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관리·유지되어야 한다(Within 18 months of the passage of the act, the Clerk of the House and Secretary of the Senate, as well as the appropriate entities in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are instructed to develop and implement an electronic filing system for the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required to be filed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The system is to allow the public to search the reports on the Internet and, with a login, to be able to download the reports. The system for the executive branch is to be maintaine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입법부에서 의원이 제출하는 신고서는 의원직을 그만 둔 이후 6년 동안 보존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다른 종사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는 접수된 이후 6년 동안 보존되어야 한다(In the legislative branch, the reports filed by Members of Congress are to be kept for a period of six years after the date the person is no longer a Member; and other reports filed by legislative officers and employees are to be retained for a period of six years after receipt).

5. 의회 의원의 연금(Pensions of members of Congress)

현행 법률에 따라, 의원으로 재직 중에 직무상 부패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의원은 연금 취지에 합당한 의원으로서 수령하고 있는 모든 명예스러운 편익을 몰수당한다. 이 법률은 의원이 재직 중에 많은 부패 범죄행위가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연금 취지에 적합한 혜택을 수령할 수 있는 공적·명예를 상실하게 하는 것까지 확대하며, 대통령, 부통령 또는 주나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가 재직 중에 부패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금 취지에 적합한 혜택을 수령할 수 있는 공적·명예를 상실하게 하는 것까지 확대한다(Under current law, if convicted of certain offenses relating to corruption in public office while serving as a Member, a Member of Congress forfeits all of his or her creditable service as a Member for federal pension purposes. This bill expands that provision so that a Member of Congress would lose the credit for service as a Member for pension purposes if convicted of one of the numerous corruption offences not only during time served as a Member of Congress, but also if convicted of any such offenses while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or as an elected official of a state or local government).

스탁법은 또한 연방 연금 취지에 합당한 의회 의원으로서 받는 명예스러운 편익을 상실하게 하는 중죄에 대한 최종 유죄판결에 많은 다른 형사법을 추가한다. 그러한 다른 형사상 범죄행위에 이해충돌(18 U.S.C. §203), 부정청구 공모(18 U.S.C. §286), 정부에 대한 부정청구(18 U.S.C. §286), 선거매수행위(18 U.S.C. §597),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요구행위(18 U.S.C. §602), 연방 기관과 사무소에 정치자금 요구행위(18 U.S.C. §607), 정부의 예산과 재산의 절도, 유용 또는 횡령행위(18 U.S.C. §641), 정부기관의 업무 방해행위(18 U.S.C. §1505), 탈세 또는 포탈의 시도행위(26 U.S.C. §7201)를 포함한다(The STOCK Act also adds numerous other federal criminal laws for which a final felony conviction would result

in losing creditable service as a Member of Congress for federal pension purposes. Such other criminal offenses include conflicts of interest(18 U.S.C. §203); conspiracy to make false claims(18 U.S.C. §286); making false claims to the government(18 U.S.C. §287); vote buying(18 U.S.C. §597); illegal solicita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from federal employees(18 U.S.C. §602); soliciting political contributions in a federal building or office(18 U.S.C. §607); theft, conversion, or embezzlement of government funds or property(18 U.S.C. §641); false statements to the government(18 U.S.C. §1001); obstruction of proceedings before government agencies(18 U.S.C. §1505); attempt to evade or defeat paying taxes(26 U.S.C. §7201), among other offence).

6. 기타 규정(Other Provisions)

1) 민간부문의 채용 결정에 영향력 행사(Influencing Private Employment Decisions)

스탁법 제18조는 행정부의 공직자가 당파적인 정치 관계에 근거하여 민간부분의 채용결정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금지하도록 연방법전 제18편 제227조를 개정한다(Section 18 of the Stock Act amends 18 U.S.C. Section 227 to includ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in the prohibition on wrongfully attempting to influence private employment decisions based on partisan political affiliations).

2) 퇴직 이후 취업에 관한 협상(Negotiations for Post-Government Employment)

스탁법은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취업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약을 하는 경우, 그 협상과 협의를 시작한 이후 3일 안에, 해당 공직자를 감독하는 윤리사무소에 신고

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 신고서의 주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공직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법전 제18편 제208조의 현행 형법상 이해충돌 규정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고 있다. 모든 행정부 공직자에 관해서, 연방법전 제18편 제208조는 공직자가 장래의 민간부문에 취업과 관련하여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그 상대방이나 상대 기업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주는 때에는, 그와 관련되는 정부의 특정한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민간부문에 취업하기 위하여 협상하거나 그 취업을 물색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행정부 규칙, 즉 연방규칙전 제2635조, 서브파트 F의 제2635.601조부터 제2635.606조까지의 규칙이 있다 (The STOCK Act now requires any individual who must file a public financial disclosure report under the Ethics in Government Act to report all negotiations or agreements for future private employment within three days after commencement of such negotiations or agreement to the employee's supervising ethics office, and then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when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or an appearance of a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statement". These provisions do not appear to supersede, but appear to add to, the existing criminal conflict of interest provision in 18 U.S.C. Section 208. With respect to all executive branch employees, 18 U.S.C. Section 208 requires recusal of such executive branch officer and employee from any particular governmental matter when that matter affect the financial interest of "any person or organization with whom he(the employee) is negotiating or has any arrangement concerning prospective employment". Additionally, there are detailed executive branch regulations on negotiating and seeking private employment, at 5 C.F.R. Section 2635, subpart F, Section 2635.601 - 2635.606).

3) 연방저당권협회와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상여금(Bonuses to Fannie Mae(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and Freddie

Mac(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Executives)

스탁법은 이 법률의 통과 이후에, 연방저당권협회와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에서 재산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기간 중에는, 그 두 회사의 중역은 상여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The STOCK Act prohibits the receipt of bonuses by "senior executives" at the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and the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during any period of conservatorship for those entities after the passage of this act).

4) 정치정보에 관한 연구(Study on Political Intelligence)

스탁법은 정치정보의 판매에 관한 법률적·윤리적 문제, 정치정보에 종사하는 사람에 관한 보고와 등록 요건의 도입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정치정보 판매자의 신고와 등록 요건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률적·실제적인 문제, 판매되는 정치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미공개 정보로 간주할 것이지의 여부를 포함해서, 금융·자본 시장에서 정치정보의 역할에 관하여, 1년 이내에 의회조사국과 협의하여, 감사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The STOCK Act requires a report to be made by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in consultation with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within one year concerning the role of "political intelligence" in the financial markets, including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sold is considered nonpublic;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sale of political intelligence; benefits from imposing reporting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on those who engage in political intelligence; and legal and practical issues in imposing such reporting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미국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미연방규정집(시행령)

(Code of Federal Regulation)

제5편 : 공직자 인사 관리

(Title 5: Administrative Personnel)

제2635책 -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Part 2635 -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조문 목차(Section content)

Subpart A - 일반규정(Subpart A - General Provisions)

제2635.101조. 공직의 기본 의무(Basic obligation of public service)

제2635.102조. 정의(Definitions)

제2635.103조. 제복근무자에의 적용(Application to members of the uniformed services)

제2635.104조. 파견 공직자에의 적용(Application to employees on detail)

제2635.105조. 기관의 보조규정(Supplemental agency regulations)

제2635.106조. 징계 및 시정조치(Disciplinary and corrective action)

제2635.107조. 윤리 자문(Ethics advice)

Subpart B - 외부 출처 선물(Gifts from Outside Sources)

제2635.201조. 개요(Overview)

제2635.202조. 일반 기준(General standards)

제2635.203조. 정의(Definitions)

제2635.204조. 예외(Exceptions)

제2635.205조. 금지된 선물의 적절한 처리(Proper disposition of prohibited gifts)

Subpart C - 공직자 상호간 선물(Gifts Between Employees)

제2635.301조. 개요(Overview)

제2635.302조. 일반 기준(General standards)

제2635.303조. 정의(Definitions)

제2635.304조. 예외(Exceptions)

Subpart D - 재정적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ing Financial Interest)

제2635.401조. 개요(Overview)

제2635.402조. 재정적 이해관계 배제(Disqualifying financial interests)

제2635.403조. 금지된 재정적 이해관계(Prohibited financial interests)

Subpart E - 공무 수행의 공정성(Impartiality in Performing Official Duties)

제2635.501조. 개요(Overview)
제2635.502조. 사적・사업적인 관계(Personal and business relationships)
제2635.503조. 전 사용자로부터의 과도한 보상(Extraordinary payments from former employers)

Subpart F - 외부 취업(Seeking Other Employment)

제2635.601조. 개요(Overview)
제2635.602조. 적용범위와 관련 고려사항(Applicability and related considerations)
제2635.603조. 정의(Definitions)
제2635.604조. 구직 중 직무 배제(Disqualification while seeking employment)
제2635.605조. 구직 중 직무 참여를 허용하는 준수면제 또는 승인(Waiver or authorization permitting participation while seeking employment)
제2635.606조. 장래 취업에 관련된 협의에 근거한 직무배제 또는 협상 후의 그 반대(Disqualification based on an arrangement concerning prospective employment or otherwise after negotiations)

Subpart G - 직위 남용(Misuse of Position)

제2635.701조. 개요(Overview)
제2635.702조. 공직의 사적 사용(Use of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제2635.703조. 미공개 정보의 사용(Use of nonpublic information)
제2635.704조. 정부 재산의 사용(Use of Government property)
제2635.705조. 공무 시간의 사용(Use of official time)

Subpart H - 외부 활동(Outside Activities)

제2635.801조. 개요(Overview)
제2635.802조. 외부 취업과 활동의 충돌(Conflicting outside employment and activities)
제2635.803조. 외부 취업과 활동의 사전 승인(Prior approval for outside employment and activities)
제2635.804조. 대통령 지명 공직자와 기타 비경력직 공직자에 적용되는 외부 소득

제한(Outside earned income limitations applicable to certain Presidential appointees and other noncareer employees)
제2635.805조. 전문가 증인으로서 서비스(Service as an expert witness)
제2635.806조. 전문직협회의 참여 [예비]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Reserved]
제2635.807조. 강의, 연설 및 기고(Teaching, speaking and writing)
제2635.808조. 모금 활동(Fundraising activities)
제2635.809조. 정당한 재정 채무(Just financial obligations)

Subpart I -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한(Related Statutory Authorities)

제2635.901조. 총칙(General)
제2635.801조. 관련 법률(Related statutes)

Subpart A –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제2635.101조 공직의 기본 의무(Basic obligation of public service)

(a) 공직은 공공 신뢰이다(Public service is a public trust).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private gain)에 우선하기 보다는 헌법(Constitution), 법률(laws) 및 윤리 원칙(ethical principles)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모든 국민이 연방정부의 청렴성을 완전히 신뢰(complete confidence)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이 조(this section)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적 행동 원칙을 존중하고 충실히 지켜야하며, 이 장(this part)과 소속기관의 보조 규칙(supplemental agency regulations)에 규정된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b)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다음의 일반 원칙은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이 장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의 근거를 이룬다. 이 장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는 그들의 행동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조에 규정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1) 공직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우선하기 보다는 헌법, 법률 및 윤리 원칙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공공 신뢰이다.

(2) 공직자는 직무의 성실한 수행(conscientious performance of duty)과 충돌하는 재정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s)를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직자는 정부 내의 비공개 정보(nonpublic Government information)를 사용하여 재정 거래(financial transactions)에 종사하거나, 어떤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4) subpart B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공식적 조치(official action)를 요구하거나, 소속기관과 거래하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하거나 또는 공직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그들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whose interests may be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공직자는 그들로부터 선물이나 화폐적 가치가 있는 물건(gift or item of monetary value)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한 노력(honest effort)을 기울여야 한다.

(6) 공직자는 고의로(knowingly)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 의무를 부담시키는(to bind the Government) 취지의 권한이 없는 약속(unauthorized commitments or promises)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public office)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 공직자는 공평무사하게(impartially) 행동해야 하며, 어떤 사적 단체(private organization) 또는 개인에게 특혜(preferential treatment)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9) 공직자는 연방정부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승인된 활동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공직자는 정부의 업무 및 책임과 충돌을 일으키는 구직이나 고용협의(seeking or negotiating for employment) 등을 포함한 외부 취업 및 활동(outside employment or activities)을 해서는 아니 된다.

(11) 공직자는 예산낭비(waste), 사기(fraud), 권한남용(abuse) 및 부패행위(corruption)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공직자는 모든 정당한 채무(all just financial obligations)를 포함하여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신의성실(in good faith)하게 이행해야 하며, 특히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연방, 주, 지방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3) 공직자는 인종(race), 피부(color), 종교(religion), 성(sex), 국적(national origin), 나이(age), 장애(handicap)와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공평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제공하는 모든 법률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4) 공직자는 이 part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또는 윤리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일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정 상황이 법률이나 이 기준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with knowledge of the relevant facts)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th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person)에 의하여 결정된다.

(c) 관련 규정(related statutes). 이 part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 행동의 기준(standards of ethical conduct)에 추가하여,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법률이 있다. 모든 공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이해충돌 방지 법률(criminal conflict of interest statutes of general applicability to all employee), 미연방법 제18편,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및 제209조가 이 part의 관련 subpart에 요약되어 있고, 그러한 법률은 공직자의 행동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그밖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의 인용구는 subpart 1에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법률상 또는 규칙상 규제사항(statutory and regulatory restrictions)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좀 더 조심해야 하고, 특정한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주의도 기울려야 한다. 공직자는 법률의 요구조건을 통보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직자는 법규상의 제한사항에 대한 해설서 또는 개요(description or synopsis of statutory restriction)에 의존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법률 자체를 참조해야 되며, 필요에 따라 소속기관의 윤리 담당관에게 조언을 얻어야 한다.

제2635.102조 정의(Definitions)

아래의 정의는 이 part 전체에 적용된다. 추가적인 정의는 subpart 및 subpart의 각 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part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기관(Agency)"이란 미연방법 제5편 제105장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executive agency)과 우정공사(Postal Service), 우편요금위원회(Postal Rate Commission)를 의미한다.

(b) "기관 지명인(Agency designee)"이란 기관의 규칙, 지시 및 그밖의 명령(regulation, instruction or other issuance)에 의하여 다른 공직자와 관련되어 이 part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락이 필요한 어떤 결정, 승인 또는 그밖에 조치를 하는 권한을 위임 받은 공직자를 말한다. 기관은 결정, 승인, 그밖에 조치가 적시(in a timely and responsible manner)에 내려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숫자만큼의 기관 지명인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기관 지정인에 의하여 결정, 승인 또는 그밖에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은, 문제가 되는 행동(conduct in issue)이 기관장의 행동인 경우에, 지정 윤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기관장이 그러한 결정, 승인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 “기관의 윤리담당관(Agency ethics official)"은 이 장의 제2638.202조제(b)항에 규정된 지정 윤리담당관(the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 또는 임시 지정 윤리담당관(the alternate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을 말하며, 이 장의 제2638.204조에 규정된 윤리 보조담당관(deputy ethics official)을 말하며, 그 보조담당관은 지정 윤리담당관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보조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d) "기관 프로그램 또는 운용(Agency programs or operations)"이란 법률,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또는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기능을 말한다.

(e)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는 환수(restitution), 보직변경(change of assignment), 제척(disqualification), 매각(divestiture), 활동 종료(termination of an activity), 책임면제(waiver), 제한된 다각화 또는 백지신탁의 구성(creation of a qualified diversified or blind trust) 또는 상담(counseling)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 장에 대한 과거의 위반(past violation)을 처리하거나 계속되는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

(f) “지정 윤리담당관(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이란 이 장의 제2638.201조에 따라 지정된 담당관을 말한다.

(g) “징계조치(disciplinary action)"는 미연방법전 제5편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인사관리처 규칙과 지침(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regulation and instructions)에 규정된 징계조치 또는 제5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공직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유사 규칙(comparable provisions)정에 규정된 징계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견책(reprimand), 정직(suspension), 강등(demotion) 및 해고(removal)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군 장교(military officer)의 경우에는 통일군사재판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조치를 포함한다.

(h) “공직자(employee)"는 특수 정부 종사자(special Government employee)를 포함한 기관의 공무원(officer) 또는 종사자(employee)를 의미한다. 공직자에는 제복근무자(uniformed services) 중에서 장교(officers)를 포함하지만 사병(enlisted members)들은 제외한다. 공직자에는 미연방법 제5편 제3371 등에 따라 기관에 파견근무(on detail)를 하는 주, 지방정부 또는 그밖에 단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 part의 subpart B와 C를 제외한 취지에 따라, 공직자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다. 공직자로서의 지위는 보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특수 정부 종사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에 개인이 공무(official duties)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하여 지위를 떠난다.

(i) “기관장(head of an agency)"이란 한 사람 이상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의장(the chai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성원(comparable member)을 의미한다.

(j) 그(he), 그의 것(his), 그를(him)은 그녀(she), 그녀의 것(hers)와 그녀를(her) 포함한다.

(k) "사람(person)"은 개인(individual), 법인(corporation)과 사람이 지배(control)하는 자회사(subsidiaries), 회사(company), 협회(association), 기업(firm, 2인 이상의 합자), 합명회사(partnership), 조합(society),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그밖에 단체(organization) 또는 시설(institution)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람 또는 단체(entity)의 임원(officer), 종사자(employment) 또는 대리인(agent)을 포함한다. 이 part의 취지에 따라, 법인이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voting securities)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용어는 포괄적이며(all-inclusive) 외국(foreign), 주(State),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뿐만 아니라 상업상의 기업(commercial ventures)과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s)에 적용된다. 그 용어는 연방정부의 기관, 그밖에 단체 또는 그의 공무원 또는 종사자(연방 기관 또는 단체를 대리하는 공직자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l) "특수 정부 종사자(special Government employee)"란 미연방법 제18편 제202조 제(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종사자를 의미한다. 특수 정부 종사자는 연간 365일 중 130일 미만 동안 상근직이든 임시직이든, 유급 또는 무급이든 임시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되고(retained), 지명되고(designated), 임명되고(appointed), 고용(employed)된다.

(m) “기관의 보조 규칙(supplemental agency regulation)"이란 제2635.105조에 따라 발령되는 규칙을 의미한다.

제2635.103조 제복근무자에의 적용(Applicability to members of the uniformed services)

이 조를 제외하고, 이 part의 규정은 제복근무자 중 사병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복근무자 중 사병을 관할하는 각 기관은 그 기관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병의 윤리적 행동 의무(ethical conduct obligations)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런 규칙은 1989.4.12에 개정된 행정명령 12674호(Executive Order 12674)와 상위해서는 아니 되고, 그런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합군사재판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규칙상 처벌(statutory and regulatory sanctions)을 광범위하게 규정할 수 있다.

제2635.104조 파견 공직자에 적용(Applicability to employees on detail)

(a) 다른 기관에 파견(Details to other agencies). 이 조의 (d)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임무 중인 장교(uniformed officer on assignment)를 포함하여 30일 이상 동안, 소속기관(employing agency)에서 다른 기관으로 파견된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보조 규칙(supplemental agency regulations)이 아니라 파견 중인 기관의 보조 규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b) 입법부 또는 사법부에 파견(details to legislative or judicial branch). 임무 중인 장교를 포함하여 30일 이상 동안, 소속기관에서 입법부 또는 사법부로 파견된 공직자는 파견 중인 기관의 윤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파견기간 내내, 공직자는 이 조의 제(d)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를 적용받으며, 전체적으로 이 part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소속기관의 보조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미연방법전 제18편의 이해충돌방지(conflict of interest prohibitions)를 여전히 적용받는다.

(c) 비연방기구에 파견(details to non-Federal entities). 이 항에 따라 서면으로 적용이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except to the extent exempted in writing), 비연방기구에 파견 중인 공직자는 이 part와 소속기관의 보조 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공직자가 6개월 이상 법에 규정된 권한(statutory authority)에 따라 국제기구, 주 또는 지방정부에 파견 중인 경우, 지정 윤리담당관은 그 기구들이 파견 기간 중에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선물의 요청과 수령을 처리(covering solicitation and acceptance of gifts)할 수 있고, 파견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적합한 서면으로 규정된 윤리기준을 채택해왔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이 part의 subpart B에 대한 서면 면제(written exemption)를 교부할 수 있다.

(d) 기관의 특별 규정의 적용(applicability of special agency statutes). 이 조의 제(a)항과 제(b)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활동 또는 금융재산(activities or financial holdings)을 제한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지위 때문에 특별

하게 그 기관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그 규정을 이행하는 소속기관의 보조 규칙의 특정한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받아야 한다.

제2635.105조 기관의 보조 규칙(Supplemental agency regulations)

이 part에 규정된 규칙에 추가하여, 공직자는 이 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제정한 보조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a) 이 part를 보충하기 원하는 기관은 이 part에 규정된 규칙을 보충하는 기관 규칙의 동의와 공동 발간을 위하여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에 제출해야 한다. 기관이 결정한 보조 규칙은 그 기관의 프로그램과 운용의 관점에서 이 part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적합해야 한다.

(1) 이 part의 규정에 관한 보충적인 형식(in the form of a supplement to the regulations in this part)

(2) 이 part의 실체 규정에 대한 추가(in addition to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is part)

(b) 연방 정부윤리청이 동의하고 공동으로 서명(concurrence and co-signature)한 후에, 기관은 미연방규정집 제5편(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그 기관의 부담으로 발간과 법전 편찬(codification)을 위하여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보조 규칙을 게재해야 한다. 이 조에 따라 발간된 기관의 보조 규칙은 정부윤리청의 동의와 공동서명 그리고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된다.

(c) 이 조는 이 part에 따라 발행된 기관의 보조 규칙 또는 그것의 개정에 적용된다. 그것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 이 part 또는 기관의 보조 규칙에 규정된 기준을 단지 해설할 목적으로 발간된 안내서(handbook) 또는 그밖에 간행물

(2) 다음의 사항을 규정할 목적의 지침(instruction) 또는 그밖에 간행물

(i) 이 part 또는 보조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승인되어야 하는 결정, 승인 또는 그밖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 지정인(agency designee)에게 위임하는 것

(ii) 이 part 또는 보조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승인되어야 하는 결정, 승인 또는 그밖에 조치에 관한 기록(documenting) 또는 과정, 그리고 그런 서류의 보관을 위한 기관 내부 절차(internal agency procedures)를 규정하고 는 것

(3) 이 part와 상관없이(independent of this part), 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기관의 선물 허용 규정(agency's gift acceptance statute)의 시행, 비공개 정보의 보호, 정부운송수단(Government vehicles)의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규정과 같은 규정 또는 지침. 그러한 규칙 또는 지침의 내용이 행정명령 제 11222호에 따라 제정된 기관의 행동규칙의 기준(agency's standards of conduct regulations)에 포함되어 있고, 정부윤리청은 그러한 규칙 또는 지침이 기관의 보조 규칙의 일부로서 제정될 필요가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칙 또는 지침은 기관의 보조 규칙과 별개로 제정·반포될 수 있다.

(d) 미연방법 제5편 제3371장 이하에 따라,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주, 지방정부 또는 그밖에 단체의 공직자는 이 part의 규정에 추가하여, 이 조에 따라 제정된 기관의 보조 규칙(그러한 규칙이 명백하게 규정한 범위 안에서)에 의하여 규정된 요건(requirements)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2635.106조 징계와 교정 조치(Disciplinary and corrective action)

(a) 제2635.10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part와 기관의 보조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범정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칙(applicable Government wide regulations) 또는 기관의 절차(agency procedures)에 따라 취해지는 관련 교정 또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한 조치는 법률에 규정된 조치 또는 형벌(action or

penalty prescribed by law)에 부과될 수 있다.

(b) 개별 사건에 있어서, 관련 징계 또는 교정 조치를 개시하는 것은 소속기관의 책임이다. 그렇지만, 이 장의 part 2638의 절차에 따라 정부윤리청장이 교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c) 이 part와 기관의 보조 규칙의 위반은 미연방, 기관, 공무원과 종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 반하여(against) 어느 사람에게 법률상 실체적이거나 절차적인 집행력을 가지는(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보통 말하는 그런 어떤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지는 아니한다(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따라서 예를 들면, 공직자가 종족(race), 피부색(color), 종교(religion), 성(sex), 출신국가(national origin), 나이(age) 또는 장애(handicap)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제기하는 개인은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법률상 그리고 규칙상 절차를 포함해서 해당 법률과 규칙에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635.107조 윤리 자문(Ethics advice)

(a) 이 장의 제2638.201조와 제2638.202조제(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기관은 기관을 대리하여 기관의 윤리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윤리담당관 또는 임시 윤리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관의 지정 윤리담당관은 이 장의 제2638.204조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보조 윤리담당관에게 이 part의 적용과 관련된 윤리 상담을 제공하는 책무를 위임하는 권한을 가진다.

(b) 특정한 상황에서 이 part와 기관의 보조 규칙의 적용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윤리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공직자가 모든 관련 상황을 완전히 공개하면서 윤리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 윤리담당관의 자문에 의거하여(reliance upon) 신의성실하게(in good faith) 행동한 공직자는 이 part와

기관의 보조 규칙의 위반으로 인한 징계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윤리담당관에게 자문에 따르더라도, 공직자가 형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공직자가 형법에 따라 기소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윤리담당관의 조언을 신의성실하게 따르는 것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사건을 기소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공직자가 기관의 윤리담당관에게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고객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는 고객의 비밀정보를 법정에서 증언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특권)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윤리담당관이 형법(criminal code)인 미연방법전 제18편의 위반과 관련하여 접수한 정보를 신고(report)하도록 한 미연방법 제28편 제535장에 따라야 한다.

Subpart B. 외부 출처의 선물(Gifts from Outside Sources)

제2635.201조 개요(Overview)

이 subpart는 선물의 품목이 선물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이 subpart에 규정된 예외 중의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금지된 출처(prohibited source)로부터의 선물 또는 공직자의 공적 지위 때문에 주어진(given because of the employee's official position) 선물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soliciting or accepting) 것을 금지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제2635.202조 일반 기준(General standards)

(a) 일반적 금지(general prohibitions). 이 subpart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는 직간접적으로(directly or indirectly) 다음과 같은 선물을 요구 또는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지된 출처로부터(from a prohibited source) 받는 경우

(2) 공직자의 공적 지위(official position) 때문에 받는 경우

(b) 불법 사례금 법규와의 관계(relationship to illegal gratuities statute). 이 조의 제(c)항 제(1)호를 위반하여 수령한 선물이 아닌 경우, 이 subpart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령한 선물은 미연방법 제18편 제201조제(c)항 제(1)호 (B)목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불법적인 사례금이 아니다.

(c) 예외 적용의 제한(limitations on use of exceptions). 이 subpart에 규정된 예외도 불구하고, 제2635.204조제(j)항을 제외하고, 공직자는 다음의 경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 대가로(in return for being influenced in the performance of an official act)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

(2)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solicit or coerce the offering of a gift)

(3) 공직자가 사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사용(using his public office)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할 만큼(reasonable person would be led to believe) 빈번하게(on a basis so frequent) 동일 출처 또는 다른 출처(same or different sources)로부터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

사례 1. 보훈병원의 구매담당관(purchasing agent for a Veteran Administration hospital)은 회사의 신제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약사들의 외판원들(representatives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s)과 일상적으로 거래한다. 구매담당관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점심시간 중에 제약사의 외판원들과 만나자고 해서 외판원들은 구매담당관이 먹을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가지고 사무실에 일상적으로 방문했다. 그 각각의 점심 값은 6달러 이하이고 최소 허용 한도가 20달러 이하의 선물(de minimis gifts of $20 or less)에 관한 규정인 제2635.204조제(a)항의 총 한도금액인 50달러($50 aggregate limitation)도 초과하지 않지만,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아니한 선물(modest gifts)을 반복적으로(on a recurring basis) 수령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4) 법규를 위반하여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규는 다음을 포함한다.

(i) 미연방법 제18편 제201조제(b)항. 이 규정은 공직자가 공무수행에 좌우되거나(for being influenced in the performance of an official act) 공적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인된(for being induced to take or omit to take any action in violation of his official duty) 대가로 가치 있는 것(anything of value in return)을 받거나 수령하는 것을 요구, 수용 또는 동의(seeking, accepting, or agreeing to receive or accept)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미연방법 제18편 제201조제(b)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공직자(public official)"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해석되고(boardly construed), 정규 종사자와 특수 정부 종사자(regular and special Government employees)는 물론 그밖에 정부 공직자를 포함한다.

(ii) 미연방법 제18편 제209조. 이 규정은 특수 정부 종사자를 제외하고, 공직자가 정부 종사자(Government employees)로서의 복무에 대한 보상(as compensation for services)으로 미연방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보수 또는 보수의 기부 또는 보충(any salary or any contribution to or supplementation of salary)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 법규는 이 일반적인 금지규정(this general prohibition)에 주, 군 또는 시의 재무부(treasury of a State, county, or municipality)로부터 제공되는 기부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여 몇 가지 특수한 예외를 담고 있다.

(5) 제2635.204조제(l)항에 따른 것은 제외하고, 정부 조달(procurement of supplies and services for the Government)과 관련된 해당 규칙, 정책 또는 지침을 위반하여 판매자가 제공하는 홍보 교육(vendor promotional training)을 받는 경우.

제2635.203조 정의(Definitions)

이 subpart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 "기관(agency)“이란 제2635.102조 제(a)항에서 규정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 subpart의 취지에 따라, 미연방법 제5편 제101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행정부처(executive department)는 기관의 보조 규칙에 따라, 부처가 결정하는 부서(component) 중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독립된 기능(distinct and separate functions)을 수행하는 부서를 독립된 기관(separate agency)으로 지정할 수 있다.

(b) "선물(gift)“은 사례금(gratuity), 호의(favor), 할인(discount), 향응(entertainment), 접대(hospitality), 대부(loan), 잘못한 사람에 대한 관용(forbearance)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having monetary value) 그밖에 물품(item)을 포함한다. 이는 현물 지급(provided in-kind), 티켓구입(by purchase of a ticket), 선지불(payment in advance), 사후정산(reimbursement after the expense has been incurred) 등을 통해 제공되는 훈련, 교통, 지역 여행, 숙박 및 식사 등의 기증(gifts)뿐 아니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음료(soft drinks), 커피 및 도넛(coffee and donuts) 등 식사 외의 것으로 제공되는 가벼운 음식 및 다과(modest items of food and refreshments)

(2) 인사장(greeting card) 및 기념패(plaques), 증명서(certificates), 트로피(trophies) 등 본질적 가치가 거의 없는, 단지 증정(solely for presentation)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3) 일반적으로 국민이 이용 가능한 조건으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부(loans from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on terms generally available to the public)

(4) 지역적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whether or not restricted on the basis of geographic considerations) 국민 또는 모든 공직자/군관계자가 이용 가능한 유리한 시세(favorable rates)/상업적 할인(commercial discounts) 등의 기회(opportunities) 및 혜택(benefits)

(5) 공식 직무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참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이 참여 가능한 제비뽑기(random drawings) 등 대회 및 행사의 참가자(competitors in contests or events)에게 주어지는 보상(rewards) 및 포상(prizes)

(6) 공직자 복지제도에 지속적인 참여(continued participation in an employee welfare)로부터 발생하는 연금 및 기타 혜택(pension and other benefits)과 전직 사용자(former employer)에 의해 유지되는 복지제도(benefits plan)

(7) 정부에 의해 지불되거나 정부계약에 따라 정부에 의해 보증되는 사항(anything which is paid for by the Government or secured by Government under Government contract))

주의(Note) : 상용 고객(frequent fliers)에게 무료 항공권과 그밖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몇몇의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정부가 출장비를 지급한 여행(Government-financed travel)에서 받은 그러한 혜택은 공직자의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기관에 속하는 것이고, 미연방규정집 제41편 제301-53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한 단지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8) 법령으로 규정한 특정한 권한에 따라(under specific statutory authority) 정부가 수령하는 선물은 다음과 같다:

(i)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회의 또는 유사한 행사(meeting or similar function)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지(duty station) 밖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미연방법 제31편 제1353장의 권한에 따라 기관이 받는 교통비(travel), 일비(subsistence) 및 관련 비용. 기관이 수령하는 것은 미연방규정 제41편 제304-1장의 시행령(the implementing regulations)에 따라야 한다.

(ii) 기관의 자체 선물 수령 규정(agency gift acceptance statute)에 따라 기관에 의하여 수령해 왔던 그밖에 선물(other gifts provided in-kind)

(9) 공직자에 의하여 시장가치가 지급된 물품(anything for which market value is paid by the employee)

(c) "시장가치(market value)"란 공직자가 해당 선물을 구매할 경우 지불하게 되는 소매가격(retail cost)을 의미한다. 선물의 시장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비슷한 품질의 유사한 제품(similar items of like quality)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시장가치를 추정한다. 소지자에게 음식(food), 다과(refreshments), 향응(entertainment) 또는 그밖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상품권(gift of a ticket) 등의 시장가치는 상품권의 액면가(face value of the ticket)로 한다.

사례 1. 금지된 출처인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아크릴로 만든 문진(acrylic paperweight)을 받은 공직자는 로고가 새겨지지 않은 비슷한 아크릴 문진이 일반적으로 20$에 팔린다는 경험에 근거하여 해당 선물의 시장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사례 2. 공직자가 금지된 출처로부터 칵테일 연회와 실내악으로 구성된 자선행사(charitable event)의 공연 티켓을 제공받았다. 이 경우 당해 행사로부터 제공된 음식, 다과 및 향응의 가치가 단지 20$일지라도, 그 티켓의 시장가치는 액면가 250$이다.

(d) "금지된 출처(prohibited source)"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1)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의하여 공식적 처분(official action)을 요구하는 사람

(2)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does business), 거래를 하고자(seeks to do business) 하는 사람

(3)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conducts activities regulated) 사람

(4)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5) 이 조의 제(d)항의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람이 구성원 중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단체

(e) "공직자의 공적 지위 때문에 요구되거나 받게 된(solicited of accepted because of the employee's official position)" 선물이란, 해당 선물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a person other than an employee)으로부터 주어지고, 또한 공직자가 그의 연방직위와 관련된 지위(status), 권한(authority) 또는 임무(duties)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구되거나, 제공되거나 주어지지 않았을 선물을 의미한다.

주의(Note) :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은 이 part의 subpart C에 규정된 제한 대상이다.

사례 1. 오페라 협회(opera guild)에 의해 무료 정기입장권(free season ticket)이 내각 구성원 모두(all members of the Cabinet)에게 제공된 경우, 해당 선물은 그들의 공적인 지위(official position) 때문에 제공된 선물이다.

사례 2. 법무부의 지방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다양한 세입자들과 함께 정부가 임대한 사기업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에 빌딩 내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으며 이는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법무부의 금지된 출처에 해당되지 않는 호텔체인회사가 사건 보도를 접하고 국민에 대한 호의의 일환으로(as a public goodwill gesture) 빌딩에 있었던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료숙박권(a free night's lodging)을 주기로 발표한다. 해당 선물이 정부의 직위(Government positions)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 공직자들은 선물을 받아도 된다.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자의 동기가 법무부 공직자들의 직위와 관련된 지위(status), 권한(authority) 또는 임무(duties)와 연관이 없으며, 다만 화재 발생 시에 빌딩 안에 거주자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f)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받은(solicited or accepted indirectly)" 선물이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가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상태(employee's knowledge and acquiescence)에서 그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또는 부양하는 친척(parent, sibling, spouse, child, or dependant relative)에게 그 사람과 공직자 간의 관계 때문에 주어진 선물

(2) 공직자에 의한 지정(designation), 추천(recommendation), 또는 그밖에 요구조건(specification)을 근거로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 등을 포함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 단, 제2635.205조제(a)항제(2)호에 의해 썩기 쉬운 물품의 처분(disposition of perishable items)을 위해 허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사례 1. 이 subpart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를 선물로 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직자는 자신이 그 선물을 받는 대신에 자신이 자선단체의 이름을 지정한 5개 중의 한 곳이 그 선물을 받도록 제한할 수 는 없다.

(g) "판매 홍보 훈련(vendor promotional training)" 이란 제품(products)이나 서비스(services)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for the purpose of promoting) 어떤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는 훈련을 의미한다. 정부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훈련 또는 정부계약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자에 의해 제공되는 훈련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635.204조 예외(Exceptions)

제2635.202조제(a)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사항(prohibitions)은 이 조의 제(a)항부터 제(l)항에 서술되어 있는 상황에서 받은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항 중의 어느 하나의 항에 따라 공직자가 받은 선물은, 뜻밖에 받은 선물을 포함하여(including appearances) 제2635.101조제(b)항에 규정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의 제(a)항부터 제(l)항까지의 예외규정에 의해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직자가 금지된 출처 또는 공직자의 공적 지위 때문에 받게 되는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절대 부적절하지 아니하며(never inappropriate) 신중한(prudent) 행위이다.

(a) 20$ 이하의 선물(Gifts of $20 or less). 공직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per source) 매회 당(per occasion) 총 시장가치가 20$ 이하인, 요구하지 아니한 선물(unsolicited gifts)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항의 권한에 따라,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연간(in a calendar year) 받은 개별 선물들의 총 시장가치가 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예외규정은 현금(cash) 또는 주식(stock), 채권(bonds), 예금증서(certificates of deposit)와 같은 투자이익(investment interest)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회에 제공된 선물의 시장가치 또는 선물들의 총 시장가치의 합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공직자는 20$어치(worth)에 해당하는 선물 또는 선물들의 부분(portion)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를 넘어서는 초과 가치(excess value)를 지불할 수 없다. 일회에 제공된 유형 물품들(tangible items)의 총 가치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공직자는 총 20$이하의 선물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별개의 물품(distinct and separate item)을 거절할 수 있다.

사례 1.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소속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가 소속기관의 규제대상 단체의 대표로부터 각 티켓의 액면가가 30$인 브로드웨이 연극에 초대되었다. 해당 사안에서 1회당 제공된 선물의 시장가치의 총합은 60$이며, 1회에 받을 수 있는 20$보다 40$가 초과된다. 공직자는 해당 저녁공연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는 티켓 두 장의 완전한 가치인 60$를 지불해야만 공연에 참석할 수 있다.

사례 2. 국방부 지도제작국(Defence Mapping Agency) 소속 공직자가 지도제작자 협회(association of cartographers)로부터 미사일 기술의 혁신에 있어서 지도제작국의 역할에 대해 연설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의 연설 마지막에 협회는 해당 공직자에게 18$의 시장가치를 갖는 액자에 끼운 지도(framed map)와 15$의 시장가치를 갖는 지도제작에 관한 역사책을 증정한다. 두 가지 유형 물품들의 총 가치가 20$를 초과하므로, 공직자는 지도 혹은 책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사례 3. 국방부 병참국(Defense Logistics Agency) 소속 공직자는 연 4회에 걸쳐, 소속기관의 계약업체의 직원 4명으로부터 각각 10$어치의 선물을 받았다. 한 사람으로부터 20$이하 선물의 연간 50$의 제한을 적용하는 취지에 따라, 제2635.102조제(k)항에 규정된 사람이 회사뿐 아니라, 회사의 직원 및 소속 종사자를 의미하므로, 해당 사안의 네 가지 선물은 종합해야 한다. 총 50$의 제한을 적용하는 취지에 따라, 만약 그가 제2635.204조제(b)항의 사적관계(personal relationship)에 근거한 선물의 예외에 따라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직자는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의 사촌으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의 가치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사례 4. 회의나 그와 유사한 행사에 참석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수령하는 경우를 규정한 미연방법 제31편 제1353장의 권한에 따라, 환경보전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체르노빌 경험"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방사능 프로그램 부서(Office of Radiation Programs)의 공직자에게서 협회에서 제공한 여행 경비(travel expenses) 및 컨퍼런스 참가비

(conference fee)를 받았다. 컨퍼런스 중에, 공직자는 소속기관(EPA)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협회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20$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미연방법 제31편 제1353장이 회의 등의 참석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수령하는 경우를 규정한 유일한 권한이라 할지라도, 제2635.204조제(a)항에 따라 받은 20$이하의 선물은 소속기관보다는 해당공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사례 5. 근무시간 외에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소속 공직자가 국방부의 계약업체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무역 박람회(trade show)에 참석했다. 그는 X 기업의 전시장에서 15$의 컴퓨터 프로그램 디스크를 받고, Y기업의 전시장에서 12$의 약속을 적을 수 있는 달력(appointment calendar)을 받고, Z기업에서 8$어치의 델리 점심(deli lunch)을 받았다. 이 일회의 행사에서 받은 위의 세 가지 물품의 총합이 2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이 2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직자는 세 가지 물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b) 사적관계에 근거한 선물(Gifts based on a personal relationship)

공직자는 해당 선물이 공직자의 공적 지위보다는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 혹은 사적 친분(personal friendship)에 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한(clear) 상황에서는 해당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결정(가족관계 혹은 사적친분에 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을 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요인(relevant factors)에는 관계의 역사(history of relationship), 가족구성원 및 친구가 개인적으로 선물 구입비용을 지불했는지 등이 있다.

사례 1. 연방보증보험회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소속 공직자가 회원 은행에 의해 고용된 비서(secretary)와 데이트 중에 있다. 비서를 위한 주간(For Secretary's Week)에, 그 은행에서 각 비서에게 오프브로드웨이 뮤지컬 리뷰(off-Broadway musical review)의 티켓 두 장을 주고, 각 비서에게 가족 혹은 친구를 초대하여 저녁공연을 같이 즐길 것을 촉구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FDIC 공직자는 여자 친구의 초대로 극장에 갈 수 있다. 비록 최초에 해당 티켓을 그 은행이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조건 없이(without reservation) 주어진 것이고, 그녀가 해당 공직자를 초대한 것은 사적인 친분관계(personal friendship)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2. 기업 합병을 다루고 있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세 명의 파트너가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소속 공직자를 로펌의 비용으로 개인 클럽(private club)에서 열리는 골프 토너먼트 대회에 초대했다. 4명(foursome) 당 입장료는 500$이다. 해당 공직자는 비록 그 로펌이 위원회 업무를 다룸으로써 로펌에서 근무하는 세 명의 파트너와 우호적인 관계(amicable relationship)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의 1/4에 해당하는 동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로펌이 입장료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어느 정도 입증되듯이, 파트너들이 선물을 제공한 동기가 사적 친분관계가 아니라, 사업적 관계(business relationship)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c) 할인 및 이와 유사한 혜택(Discounts and similar benefits)

제2635.203조제(b)항제(4)호에 의해 선물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기회 및 혜택(opportunities and benefits)에 추가하여,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수수할 수 있다.

(1) 전문 단체(professional organization)의 회원가입에 관한 유일한 제한(the only restrictions on membership)이 전문가적 자격·자질(professional qualifications)과 관련되는 전문 단체(professional organization)에 의해 모든 정부 공직자 또는 제복근무자에게 제공되는 그 전문 단체의 활동에 참여를 위한 회원가입비 또는 그밖에 비용의 할인(reduced membership or other fees)

(2) 이 조의 제(c)항제(3)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유리한 시세와 상업적 할인

(favorable rates and commercial discounts)을 포함한 기회 및 혜택(opportunities and benefits)

(i) 회원가입이 정부 공직(Government employment)과 관련이 없는 그룹 및 계층의 회원(members of a group or class)에게 제공되는 혜택

(ii) 동일한 혜택의 제공이 유사한 규모의 단체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널리 이용 가능한 경우(if the same offer is broadly available to large segments of the public through organizations of similar size), 회원가입이 정부 공직과 관련된 공직자 단체 또는 기관 신용조합(employees' association or agency credit union)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iii) 공식적인 책무의 유형, 고위직 또는 보수의 상하에 근거하여 공직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차별을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지 아니한 그룹 및 집단에게 금지된 출처가 아닌 사람이 제공하는 혜택(offered by a person who is not a prohibited source to any group or class that is not defined in a manner that specifically discriminates among Government employees on the basis of type of official responsibility or on a basis that favors those of higher rank or rate of pay; provided, however, that)

(3) 공직자는 정부예산의 지출 결과에 따라 정부에게 주어진 어떠한 혜택도 사적인 용도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an employee may not accept for personal use any benefit to which the Government is entitled as the result of an expenditure of Government funds)

사례 1.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소속 공직자는 위원회의 공직자 단체의 모든 구성원(all members of the CPSC employee' association)에게 제조사로부터 제공되는 전자레인지 오븐에 관해서 50$ 할인(a discount of $50)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가 전자레인지 오븐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할인은 제조사가 광범위하게 많은 수의 유사한 단체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에게 제공하는 표준 할인(standard offer)이기 때문이다.

사례 2. 차관보(Assistant Secretary)는 부처 비서실(Department Secretariats)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지역 컨트리클럽의 회원가입비 5,000$의 면제를 포함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컨트리클럽이 금지된 출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할인이 고위공직자(higher ranking officials)에게 유리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3. 이민 및 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의 지방사무소 행정직원이 복사지 50박스를 구매하기 위한 주문서에 서명하였다. 해당 공급자는 인쇄 광고(literature advertises)를 통해 50박스 이상의 복사지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서류가방을 공짜로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해당 복사지가 INS의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서류가방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에 행정직원은 정부 재산인 그 서류가방을 가질 수 없다.

(d) 포상 및 명예학위(Awards and honorary degrees).

(1) 공직자는 실적주의 공직제도로 인해 주어지는 선의의 포상 혹은 공직자의 직무상 작위/부작위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의 성과로 주어지는 경우 시장가치의 총합이 200$ 이하인 선물(단, 현금 혹은 투자이익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있다. _____ 시장가치의 총합이 200$를 초과하는 선물과 200$ 가치 초과의 선물과 현금 혹은 투자이익으로 제공된 포상은 기관 윤리담당관이 포상이 기 설립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서면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i) 포상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혹은 정기적으로 지속성 보장을 위해 전적/부분적으로 자금지원이 되는 경우

(ii) 서면상의 기준에 따라 포상 수여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공직자는 학위수여 시점이 합리적인 사람이 공직자의 해당 교육기관에의 불편부당함(impartiality)에 대해 의구심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속기관 윤리담당관이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20 U.S.C. 1141(a)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명예학위를 받을 수 있다.

(3) 이 section의 (d)(1)항 혹은 (2)항에 따라 포상 및 명예학위를 받은 공직자는 해당 시상식 및 학위수여식 등이 개최되는 행사에서 본인 및 가족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음식 및 향응 또한 받을 수 있다.

사례 1. 상(prize)이 §2635.204 (d) (1)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기관 윤리담당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소속 공직자는 NIH에서 수행한 연구작업을 바탕으로 상이 수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의학상과 이에 따르는 상금(cash award)을 받을 수 있다.

사례 2. Prestigious University에서 노동장관(Secretary of Labor)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고자 한다. 장관은 기관의 윤리담당관이 명예학위 수여시점이 합리적인 사람이 장관의 해당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장관의 불편부당함(impartiality)에 의구심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명예학위를 받을 수 있다.

사례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에 의해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된 대사는 그의 배우자, 자녀와 함께 시상식 만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시상식 중에 증정되는 200$어치의 크리스탈 그릇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구에서 대사와 그의 가족에게 시상식이 열리는 도시로의 항공권 또한 제공한 경우에는, 항공권과 크리스탈 그릇의 시장가치의 총합이 200$를 초과하며, 이경우 그는 소속기관 윤리담당관의 '수상이(award is made as part of an established program of recognition)'다 라는 요지의 서면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받을 수 있다.

(e) 외부 업무 혹은 외부 고용관계에 근거한 선물(Gifts based on outside business or employment relationship).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식사(meals), 숙박(lodgings), 교통(transportation) 및 기타 혜택(other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

(1) 공직자의 배우자의 업무(business) 혹은 고용활동(employment activities)의

결과로 발생하는 혜택. 단, 해당 혜택이 공직자의 공적지위(official position)로 인해 제공되거나(offered) 혹은 향상된(enhanced)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사례 1. 농림부의 계약업체인 회사에 소속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남편으로 둔 농림부 공직자는 당해 회사가 모든 소속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리조트 시설에서 개최하는 연찬회(annual retreat)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2635.502에 따라 공직자는 남편의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직무 수행에서 배제될 수 있다.

사례 2. 국방 계약업체(defense contractor)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clerical worker)을 배우자로 둔 국방계약감사기구(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소속 공직자는 다른 사무직원들의 배우자들은 초대받지 않은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그녀와 공직자를 연찬회에 초대하는 특별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업체의 직원과 이사회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연찬회(annual retreat)에 참석할 수 없다.

(2) 공직자의 외부 업무(outside business) 혹은 고용활동(employment activities)의 결과로 발생하는 혜택. 단, 혜택이 공직자의 공적지위(official status)로 인해 제공(offered)되거나 향상(enhanced)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사례 1. 연 6회 회의를 개최하는 육군공병 환경자문위원회(Army Corps of Engineers environmental advisory committee)의 위원은 특정 연방정부 공직자(special Government employees)이다. 컨설팅 업무를 맡은 위원은 예를 들어, 만찬 초청이 위원회의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군 건설 계약업체인 기업고객으로부터 50$의 만찬 초청을 받을 수 있다.

(3) 선의의 고용논의(bona fide employment discussion)와 관련하여 장래의 고용인(prospective employer)으로부터 관례상(customarily) 제공되는 혜택. 장래의

고용인이 공직자의 직무상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구직 시(when seeking employment) 적용되는 이 part의 subpart F의 자격제한요건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사례 1.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제정하는 일을 맡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소속 공직자가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회사에 지원하고자 한다. 그녀가 적절하게 이 part의 subpart F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규정제정에 대한 업무로부터 그녀 자신을 배제시킨 경우, 그녀는 해당 회사와 고용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해당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뷰 trip과 관련된 항공요금, 호텔, 식사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4) 이 section의 (e)(1)항부터 (3)항까지의 취지에 따라, 고용(employment)은 §2635.603(a)에 규정된 의미를 지녀야 한다.

(f) Hatch Act Reform Amendments에 의해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선물 (Gifts in connection with political activities permitted by the Hatch Act Reform Amendments). 5 U.S.C. 7323의 Hatch Act Reform Amendments(1993)에 따라 정치 경영(political management) 혹은 정치 캠페인(political campaigns)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는 26 U.S.C. 527(e)에 규정된 정치조직(political organization)으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 such active participation) 행사 무료입장(free attendance at events)을 비롯한 식사(meals), 숙박(lodgings), 교통(transportation) 및 기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다. 경호원(security officer) 등 직무상 해당 공직자와 정치행사 등에 동행할 필요가 있는 여타 공직자는 정치조직에서 제공되는 행사 무료입장 및 향응을 받을 수 있다.

사례 1. 보건복지부 장관(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은 미국 상원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연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원 후보자 캠페인 위원회로부터 제공되는 항공권 티켓과 호텔 숙박권을 받을 수 있다.

(g) 대규모 모임 및 기타 행사(Widely attended gatherings and other events)-

(1) **연설 등(speaking and similar engagements).** 공직자가 컨퍼런스 등 기타 행사에 연설자(speaker), 패널토의자(panel participants) 등으로 참석하기로 된 경우 혹은 기관을 대표하여 정보를 발표하기로 한 경우에, 행사의 후원업체로부터 해당공직자의 발표가 있는 당일(on the day of presentation)에 대한 무료 참석이 제공되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다. 발표가 있는 당일에 공직자가 참석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례적(customary)이고 필수적(necessary)인 부분이며, 해당공직자 또는 소속기관에의 선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대규모 모임(widely attended gatherings).** 대규모 모임에 공직자가 참석하는 것이 기관의 정책 및 운영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해당 참석이 기관을 위한 것이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공직자는 대규모 모임의 전체(all) 혹은 적절한 부분의 무료 참석 제공(단, 공직자에 의해 요구되지 않을 것)을 받을 수 있다. 행사의 후원업체 당해 행사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료 참석의 시장가치가 335$ 이하인 경우에 _____. 대규모로 참석되는 모임이란,

(3) **기관 이익의 결정(Determination of agency interest).** 이 section의 (g)(2)항에 의해 요구되는 기관의 이익(agency interest)의 결정은 기관 지명인(agency designee)에 의해 구두로(orally) 혹은 서면으로(in writing) 이루어져야 한다.

(i) 초대를 한 사람이 공직자의 공적 임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interests)를 지닌 경우 혹은 협회나 기구 회원의 대다수가 그러한 이해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 지명자(agency designee)에 의해 공직자의 행사 참석을 통한 기관의 이익이 공직자가 행사의 무료참석을 받음으로써 공직자의 공적 임무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우려(concern)를 능가한다(overweigh)라는 서면 결정사항(written findings)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직자의 참석이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기관 지명자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는 관련 요인(relevant factors)은 행사가 기관에 대해 지니는 중요성(importance of the event to the agency),

초대한 사람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류중(pending)인 사안의 본질(nature)과 민감성(sensitivity), 그러한 사안에서 공직자 역할의 중대성(significance), 행사의 목적, 참석예정자들의 신분(identity), 무료참석의 시장가치를 포함한다.

(ii) 기관 이익에 대한 총괄적 결정은 이 section의 (g)(3)(i)항에 의해 요구되는 사람 이외의 초청객들의 모든 혹은 특정 카테고리를 커버하도록 내려져야 한다.

(4) 무료 참석(free attendance). 이 section의 (g)(1)항과 (g)(2)항의 취지에 따라 무료 참석(free attendance)은 컨퍼런스의 전체 혹은 부분(all or part of a conference) 및 기타 비용(other fee)의 면제(waiver) 혹은 행사의 필수적인 부분(integral part of the event)으로서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음식(food), 다과(refreshments), 향응(entertainment), 교육(instruction) 및 기타 물품(materials)의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 경비(travel expenses), 숙박(lodgings), 행사에 부수적인 향응(entertainment collateral to the event) 혹은 모든 참석자가 포함된 그룹 이외에서 제공된 식사(meals taken other than in a group setting with all other attendees)는 포함하지 않는다. 동반 배우자 혹은 여타인(other guests)이 초대된 경우(이 section의 (g)(6)항을 참조), 무료참석의 시장가치는 해당 공직자 자신의 참석 뿐 아니라, 동행하는 배우자 혹은 여타인의 무료참석의 시장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Note: 규정된 권한

(5) 행사의 후원업체으로부터 제공되는 비용(Cost provided by sponsor of event).

(6) 동반 배우자 혹은 기타인(Accompanying spouse or other guest).

사례 1. 금지된 출처에 해당하는 우주산업협회(aerospace industry association)가 산업계 전반에 걸친 입장료가 400이며, 약 400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2일짜리 세미나를 후원한다. Air Force 계약업체가 협회에 2,000$를 지불하여 계약업체가 지정한 Air Force의 공직자 5명을 협회가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Air Force 공직자는 무료참석을 받을 수 없다. 계약업체가 초청자를 특정하고,

그들의 참석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료참석 제공은 후원협회가 아닌, 해당 업체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계약업체가 2,000$를 협회에 지불하고 협회가 임의로 5명의 연방공직자를 초청하게끔 했다면, 이경우 후원협회에 의해 초대받은 Air Force 공직자는 그의 참석이

사례 2.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소속 공직자가 언론사에 의해 언론협회가 후원하는 연례 언론 만찬(annual press dinner)에 초대되었다. 1인당 행사 입장권은 335$이며, 행사에의 참석은 언론기구 대표 400인과 언론기구에서 초청하는 게스트로 한정된다. 만약 해당 공직자의 참석이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100인 이상이 참서할 예정이며, 입장권의 비용이 33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직자는 언론사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공직자와 동반하는 사람도 초청을 받는 경우, 이들에 대한 무료참석의 시작가치가 670$이며, 초대가 동 행사의 후원업체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반자의 무료참석은 허용될 수 없다.

사례 3.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소속 공직자와 그의 아내가 주요 공기업 사장(major utility executive)으로부터 소규모의 만찬에 초대되었다. 해당공기업의 소수 직원 및 배우자 혹은 기타인 또한 초대되었으며, 공공요금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는 소비자집단의 대표로서(?). 공직자는 해당 만찬이 참석자들과 교제할 수 있고 서로를 알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공직자는 그의 만찬 참석이 기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 예외조항에 따라 무료 초대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동 행사가 40명의 공기업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및 기타인이 초청된 회사 연찬회 대신 열린 경우라 할지라도 무료 초대를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다수인의 참석이 예상되거나 소비자그룹의 참석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참석은 여전히 다양한 시각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업 연찬회도 역시 그러한 상황 하에서 대규모 모임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사례 4.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소속 공직자가 1일짜리 컨퍼

런스의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개최되는 경제이슈관련 패널토의에 참여하게 된 경우, 후원업체의 컨퍼런스 참가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635.204 (a)항의 separate authority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연설에 대한 감사의 취지로 주어지는(token of appreciation) 20$이하의 시장가치를 갖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사례 5. Assistant U.S. Attorney가 증인반대심문에 대한 판사의 강의를 듣기 위한 지역변호사협회의 오찬회의 초대되었다. 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동 회의 참석을 위해 15$의 참석료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Assistant U.S. Attorney는 해당 참석이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결정 없이도, 변호사협회의 무료 참석 제공을 받을 수 있다. §2635.204 (a)항에 규정된 최소 허용 한도인 20$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다.

사례 6.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소속 공직자가 endangered species 에 관해 4일간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 1일차에 연설을 하게 된 경우, 후원업체가 제공하는 컨퍼런스의 1일차에 해당하는 컨퍼런스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컨퍼런스가 대규모 행사(widely attended)인 경우, 해당 공직자의 참석이 소속기관을 위한 것이라는 결정에 근거하여, 후원업체가 제공하는 컨퍼런스 나머지 일자에 대한 참석비용 면제를 제공받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h) 금지된 출처 이외의 사람으로부터의 사교적 초청(Social invita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prohibited sources). 공직자는 몇몇 사람이 참석하는 다음과 같은 사교적 행사(social event)에 참석하여 음식, 다과 및 향응을 받을 수 있으나, 여행경비 혹은 숙박제공은 받을 수 없다.

(1) 금지된 출처가 아닌 사람으로부터의 초청

(2) 모든 사람에게 참석을 위한 회비가 부과되지 않는 행사

사례 1. 몇몇 다른 정부 공직자와 다수의 민간부문 사람들과 함께, Administrator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산업스파이에 대한 새로운 모험 영화의 시사회에 초대되었다. 영화의 제작자가 시사회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다. 해당 제작사가 금지된 출처가 아니며, 해당 시사회에 초청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입장료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Administrator는 해당 시사회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

사례 2. White Hose Press Office 소속 공직자가 금지된 출처가 아닌 hostess로부터 칵테일 파티에 초대되었다. 공직자는 hostess와 아주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의 공적 지위로 인하여 초대된 것이라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수 있다.

(i) 국외 지역에서의 식사, 다과 및 향응(Meals, refreshments and entertainment in foreign areas). 41 CFR 301-7.3(c)에 규정된 국외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혹은 국외로의 공무출장 명령받은 공직자는 조찬, 오찬, 만찬 혹은 기타 회의 및 행사 중에 제공되는 음식, 다과 혹은 향응을 받을 수 있다.

(1) 국외 지역에서 회의 혹은 행사 시 제공되는 음식, 다과 혹은 향응의 미화로 환산된 시장가치는 U.S. Department of State's Maximum Per Diem Allowances for Foreign Areas, Per Diem Supplement Section 925 to the Standardized Regulations(GC, FA)에 규정되어 있는 국외 지역에서의 일일 경비(per diem rate)를 초과하지 않는다.

(2)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 혹은 외국정부 및 기타 외국기구의 대표단이 회의 혹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회의 혹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미국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촉진, 미국을 대표 혹은 소속기관 및 미국대표부(U.S. mission)의 프로그램 혹은 운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직자의 공적임무의 일환인 경우

(4) 식사, 다과 혹은 향응의 제공이 5 U.S.C. 7342 (a)(20항에 규정된 외국정부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경우

사례 1. 개발도상국의 많은 지역 사업가들이 미국 기업이 자신들의 지역에 생산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근심을 하고 있다.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소속 공직자는 지역 음식점(음식과 다과의 시장가치가 해당국가의 일일경비(per diem rate)를 초과하지 않는 음식점)에서 사업가들에 의해 개최되는 저녁만찬에 미국 기업의 부회장을 동반할 수 있다.

(j)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게 제공된 선물(Gifts to the President or Vice President).** 의전(protocol) 및 예절(etiquette) 등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수행을 고려하여, 대통령 혹은 부통령은 그 자신을 대표하여(on his own behalf) 혹은 그의 가족을 대표하여(on behalf of any family member)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635.202 (c)(1) 혹은 (2) 항, 18 U.S.C. 201(b) 혹은 201(c)(3) 혹은 미연방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k) **기관의 보조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선물(Gifts authorized by supplemental agency regulations).** 공직자는 기관의 보조규정에 따라 특별히 허용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l) **특정 규정 권한 하에 허용되는 선물(Gifts accepted under specific statutory authority).** 이 subpart에 규정되어 있는 외부출처로부터의 선물수수 금지규정은 특별히 규정에 의해 허용되어 받은 어떠한 물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규정 권한 하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26 U.S.C. 501 (c)(3)항에 따라 비과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부터 5 U.S.C 4111 권한 하에서 받는 혹은 18 U.S.C. 209에 규정된 금지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무료입장, 연수 및 회의 자료, 교통, 숙박, 음식 및 다과 혹은 훈련/회의를 위한 상환. 공직자의 선물수수는 이 title의 part 410에 따라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주의(Note) : 26 U.S.C. 501 (c)(3)항은 자선, 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조직 등 한정된 부류(limited class)의 비영리기구의 비과세 처리를 위한 권한이다. 많은 비영리기구들은 이 section하에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2) 혹은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Act, 5 U.S.C. 7342의 권한 하에 받는 외국정부 혹은 국제/다자기구 및 이의 대표자로부터의 선물. 선물 수수의 조건에 따라,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규정 혹은 동법이행절차에 따른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2635.205조. 금지된 선물의 적절한 처리(Proper disposition of prohibited gifts)

(a) 이 subpart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해당 선물이 소속기관의 특별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유형 물품(tangible item)의 경우, 해당 물품을 기여자(donor)에게 돌려주거나(return to) 또는 기여자에게 물품의 시장가치(market value of item)를 지불(pay)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의 실제 시장가격(actual market value)을 확인(ascertain)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품질의 유사한 제품(similar items of like quality)의 소매가격(retail cost)을 참고로 하여(by reference to) 시장가격을 추정한다.

사례 1. 세미나 후원업체(seminar sponsor)와의 공개적인 곤란한 상황(public embarrassment)을 피하기 위하여, National Park Service소속 공직자가 연방토지정책(Federal lands policy)에 관한 연설의 마지막에 주어진 200$어치의 기압계(barometer)를 거절하지 않았다. 공직자는 해당 기압계를 돌려주거나, 또는 지체 없이(promptly)후원업체에게 200$를 변상(reimburse)해야 한다.

(2) 유형물품(tangible item)이 썩기 쉬워서(perishable) 돌려주는 것이 현실적(not practical)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의 상관(supervisor) 및 기관 윤리담당관(agency ethics official)의 재량(discretion)으로 적절한 자선단체(appropriate

charity)에 보내거나, 해당 공직자 사무실 안에서 공유하거나(shred within the recipient's office), 또는 폐기처분(destroyed)한다.

사례 1. 상관의 승인 하에, 꽃꽂이 화환(floral arrangement)가 장애수당 청구자(disability claimant)에 의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소속 관련업무 공직자에게 주어진 경우, 사무실의 리셉션 구역(공용공간)에 놓여질 수 있다.

(3) 향응(entertainment), 호의(favor), 서비스(service), 혜택(benefit) 또는 기타 무형의 선물(intangible)의 경우, 기여자(donor)에게 해당 시장가치를 변상(reimburse)한다. 선물수수 후 공직자의 보답행위(reciprocation)는 변상(reimbursement)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1.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소속 공직자가 금지된 출처로부터 300$ 가치의 입장권을 제공받은 자선행사에 참석하고자 한다. 해당 공직자의 참석이 §2635.204 (g)항 하의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입장권의 액면가인 300$를 기여자에게 변상하는 경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4) 외국정부(foreign governments) 또는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로부터 주어진 선물은 41 CFR 101-49 part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무 상 출장과 관련하여 수수한 물품은 41 CFR 101-25.10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b) 기관은 선물의 처리(disposition) 혹은 반환(return)을 정부예산(Government expense)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직자는 이 section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반환을 위하여 정부우편(penalty mail, Federal Government mail)을 사용할 수 있다.

(c) 자진하여(on his own initiative) 이 section의 요구사항에 지체 없이(promptly) 따르는 공직자는 부적절하게(improperly) 선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물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하여 기관 윤리담당관과 지체 없이 협의한 공직자 및 윤리담당관의 자문에 따라 선물을 돌려주거나 또는 이section에 따라 선물을 처리한 공직자는 자진하여 이 section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간주된다.

C. 공직자 상호간 선물(Gifts Between Employees)

제2635.301조. 개요(Overview)

이 subpart는 공직자가 상급자(official superior)에게 선물을 주거나(giving), 기부금을 내거나(donating to) 또는 선물을 위한 기여를 요청하는(soliciting contributions for) 행위를 금지하는 기준과 공직자가 자신보다 급여를 덜 받는 공직자(employee receiving less pay than himself)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선물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선물이거나 또는 이 subpart에 규정된 예외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635.302조. 일반 기준(General standards)

(a)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Gift to superiors). 이 subpart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접적(directly) 또는 간접적으로(indirectly) 상급자에게 선물을 주거나(give a gift) 또는 선물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make a donation toward a gift) 행위

(2) 다른 공직자(another employee)에게 자신의 상급자 또는 그의 상급자(either his own or the other employee's official superior)를 위한 선물을 위해 기여할 것을 요청(solicit a contribution)하는 행위

(b) 자신보다 급여를 덜 받는 공직자로부터 받는 선물(Gifts from employees receiving less pay). 이 subpart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자신보다 급여를 덜 받는 공직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두 공직자가 상급자-하급자 관계(subordinate-official superior relationship)에 있지 않은 경우

(2) 두 공직자 간에 선물을 정당화(justify the gift)할 만 한 개인적인 친분(personal relationship)이 있는 경우

(c) 예외 적용의 제한(Limitation on use of exceptions). 이 subpart에서 규정된 예외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는 하급자의 선물 제공(offering of a gift)을 강요(coerce)해서는 아니 된다.

제2635.303조. 정의(Definitions)

이 subpart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선물(Gift)"이란 §2635.203 (b)항에 규정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정의의 취지에 따라 다른 공직자(들)가 관련되어 있는 카풀(carpool) 혹은 기타 그러한 mutual arrangement에의 참여의 결과로 받은 혜택에 대하여 공직자가 해당 비용 혹은 관련 노력의 적정한 부분을 부담한 경우에는 혜택에 대한 시장가치(market value for any benefit)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b) "간접적으로(Indirectly)"란, §2635.302 (b)항의 취지에 따라 §2635.203 (f)항에 규정된 의미를 지닌다. §2635.302(a)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물을 포함한다.

(1) 공직자가 알고 인지한 상태(employee's knowledge and acquiescence)에서 그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혹은 부양하는 친척(dependant relative)에게 주어진 선물

(2) 공직자가 선물을 변상(reimburse)하거나 또는 선물을 주는 대가로 해당 가치의 어떤 것을 주겠다(give that person something of value in exchange of giving the gift)고 약속 (promised) 또는 합의(agreed to)한 상황에서, 공직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a person other than the employee) 받은 선물

(c) 이 section의 (a)항에 대하여, “시장가치(market value)”란 §2635.203 (c)항에 규정된 의미를 지닌다.

(d) “상급자(official superior)”란 공직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수행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또는 기타 해당공직자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직자를 의미한다. 직속상관(immediate supervisor)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제외한다. 이 subpart의 취지에 따라, 공직자는 자신의 상급자의 하급자(subordinate)로 간주된다.

(e) “요청(solicit)“이란, 사적 의사소통(personal communication) 또는 일반적 공지(general announcement)를 통해 기여를 요청하는 행위(request contribution)를 의미한다.

(f)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란, 압력(pressure)이나 강요(coercion) 없이 자유롭게(freely) 행해지는 기여를 의미한다. 기여하는 공직자에 의해 그 액수(amount)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발적인 기여가 아니다. 단, 선물의 액수(amount for a gift)가 오찬, 리셉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의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직자가 해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총 비용 중 부분비용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자발적인 기여로 간주한다. 오찬, 리셉션 혹은 유사 행사의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물을 위한 기여의 경우 외에는, 상급자에게 줄 선물을 위한 기여금액 제안내용에 ‘공직자가 적게 기여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statement that an employee may choose to contribute less or not at all)’이 반드시 동반(accompany)되어야 한다.

사례 1.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소속 감독관(supervisory employee)이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재발령(reassigned)이 났다. 환송회(farewell party)의 일환으로, 12명의 하급자(subordinates)가 Khyber Repast에서 오찬을 대접하기로 했다. 각자 자신의 점심값을 지불하고, 감독

관의 점심값은 12명이 똑같이 나누어내기로 하였다. 감독관이 점심을 주문하기 전까지 그들이 기여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송만찬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당해 기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2635.304조. 예외(Exceptions)

§2635.302 (a)항과 (b)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사항은 이 section의 (a)항과 (b)항에 기술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주어지거나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635.302 (a)항과 (b)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기여(contribution) 또는 기여를 위한 요청(solicitation of a contribution)은 이 section의 (c)항에 따라서만 행해질 수 있다.

(a) 일반적 예외규정(General exceptions). 선물이 전통적으로(traditionally) 주어지거나(given) 교환된(exchanged) 경우를 포함하여, 가끔씩(on an occasional basis) 다음과 같은 선물은 상급자에게 주어지거나(given to an official superior) 또는 하급자(subordinate) 및 급여를 적게 받는 공직자(other employee receiving less pay)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1회당(per occasion) 총 시장가치가 10$ 이하인 현금 이외(other than cash)의 물품(items)

(2) 사무실에서 몇몇 공직자들 간 공유할 수 있는(shared in the office among several employees) 음식(food) 및 다과(refreshments)와 같은 물품

(3) 공직자가 사적 친구들(personal friends)에게 관례적으로(customarily) 제공하는 유형(type) 및 가치(value) 수준으로 제공되는 공직자 집(residence)에서의 사적인 환대(personal hospitality)

(4) 사적인 환대(personal hospitality)에 대한 답례와 관련하여 주어지는 관례적인 유형과 가치 정도의 물품

(5) 이 title §630.912를 위반하여 획득한 것이 아닌 한, 이 title의 subpart I 의 part 630하에서 직속상관이 아닌 공직자에게 이전된(transferred) 허가(leave). 단,

사례 1. 해변에서의 휴가 이후에 업무로 복귀하면서,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소속 조사관(claims examiner)은 해변산책로(boardwalk)에서 8$에 구입한 태피(무른 사탕)를 그의 상관에게 줄 수 있으며, 그의 상관은 이를 받을 수 있다.

사례 2. 은행 평가 담당업무(bank examination responsibilities)로 인해 잦은 출장을 요하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소속 공직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방문하는 각 도시의 기념품 머그컵을 그녀의 상관에게 줄 수 없으며, 상관은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머그컵 한개 당 가격이 5$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끔씩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Gifts given on this basis are not occasional).

사례 3. 노동부 장관(The Secretary of Labor)이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만찬에 노동부 General Counsel을 초대했다. General Counsel은 만찬에 15$의 와인을 가져갈 수 있으며, 장관은 해당 와인이 1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급자로부터 관례적인 집들이 선물(hostess gift)을 받을 수 있다.

사례 4.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서가 그의 상관에게 10$ 이하의 포인세티아 화분을 줄 수 있으며, 상관은 이를 받을 수 있다. 비서는 그의 집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상관을 초대할 수 있으며, 상관은 이에 참석할 수 있다.

(b) 특별한, 흔치 않은 경조사(Special, infrequent occasions). 상급자는 하급자 혹은 자신보다 보수를 덜 받는 공직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경조사에 적절한 선물(a gift appropriate to the occasion)을 받을 수 있다.

(1) 드물게 일어나는 경조사(infrequently occurring occasions)인 결혼(marriage), 병(illness) 또는 자녀의 출산 및 입양(birth or adoption of a child)과 같은 개인적 중대사(personal significance)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물

(2) 퇴직(retirement), 사임(resignation) 또는 전직(transfer) 등 상급자-하급자간의 관계가 종료(terminate a subordinate-official superior)되는 경우 하에서 주어지는 선물

사례 1. Tennessee Valley Authority 인사과장(personnel director)의 행정조수(administrative assistant)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인사과장에게 30$의 화환(floral arrangement)을 보낼 수 있으며, 인사과장은 이를 받을 수 있다.

사례 2.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소속 화학자(chemist)가 그의 상관인 실험실과장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다. 그는 상관과 그의 신부에게 70$에 구매한 a place setting in the couple's selected china pattern을 선물할 수 있으며, 그들은 이를 받을 수 있다.

사례 3. 상관의 연방직으로부터의 퇴임의 경우에, Fish and Wildlife Service 소속 공직자는 그의 상관에게 19$에 구매한 wildlife 사진책을 선물할 수 있으며, 퇴임하는 상관은 그 책을 받을 수 있다.

(c)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s).** 공직자는 상급자에게의 적절한 선물(appropriate gift)을 위하여 동료 공직자(fellow employees)로부터 적은 액수(nominal amount)의 자발적 기여를 요청(solicit)할 수 있으며, 또한 공직자는 상급자에게 줄 적절한 선물을 위하여 적은 액수를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1) 이 section의 (b)항에 기술되어 있는 특별하고(special), 흔치 않은(infrequent) 경조사의 경우; 또는

(2) 가끔씩(on an occasional basis), 사무실에서 몇몇 공직자들 간 공유할 수 있는 음식 및 다과와 같은 물품

공직자는 하급자 및 자신보다 보수를 덜 받는 공직자가 기여한 위와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사례 1. 퇴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Under Secretary of the Army의 직속직원들은 파티를 열어 상품권(gift certificate)을 주고자 한다. 그들은 파티를 공지하고 이에 퇴임선물을 위한 적은 액수를 포함할 수 있다.

사례 2.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General Counsel은 위원장(chairman)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하여 기여금을 모아서는 아니 된다. 크리스마스는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행사이며, 개인적인 중대사가 아니다.

사례 3. 하급자는 상급자의 취임(swearing in) 또는 높은 직책으로의 승진(기관의 보고라인 상의 승진)의 경우에 상급자에게 줄 선물을 위하여 모금(take up collection)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상급자-하급자 간의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며, 또한 §2635.304 (b)항이 의미하는 개인적인 중대사가 아니다. 그러나 하급자는 모금(take up collection)을 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그러한 경우를 기념하기 위해 직속 사무실 안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소비되는 다과를 구매하기 위하여 각 3$를 기여할 수 있다.

사례 4. 하급자는 상급자의 이직 또는 기관 외부로의 승진의 경우에 상급자에게 줄 선물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각각 적은액수를 기여할 수 있다.

사례 5.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차관(Assistant Secretary)이 결혼을 한다. 그의 비서가 직원들과 함께 전자레인지 오븐(microwave oven)을 선물하기로 하고, 차관의 하급자 각각에게 선물을 위해 5$씩 기여할 것을 공지했다. 그녀의 모금 방법은 부적절(improper)하다. 비록 그녀가 5$의 기여를 제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내용은 반드시 '기여를 요청받은 공직자는 적게 기여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statement that an employee may choose to contribute less or not at all)'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D. 재정적 이해의 충돌(Conflicting financial interests)

제2635.401조. 개관.

이 하위파트는 재정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두 개의 조항을 포함한다. 하나는 부적격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금융적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데 대한 금지조항이다. 피고용인은 §2635.403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금융적인 이익을 획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은 이 하위파트의 §2635.402에 따라 어떤 특정한 사항에 있어서 공식적인 지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특정한 문제가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갖는다면, 그에게 귀속된 이익을 갖는 피고용인 혹은 어떤 사람이건 금융적 이익을 가진 것이다. §2635.402를 상술하는 추가적인 안내를 위해서 이 장의 2640 파트 역시 참고하시오

제2635.402조. 금융적 이익에 대한 부적격.

(a) 법에 명시된 금지. 피고용인은 형사 법규 18 U.S.C. 208(a)에 따라, 어떠한 특정 사항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지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특정한 문제가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진다면 그의 지식에 기초해 이 조항에 하에서 그에게 귀속된 이해관계를 갖는 어떤 사람도 금융적 이익을 가지게 된다.

주의 : 비연방 고용을 추구할 때 적용 가능한 기준은 이 장의 하위파트 F에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피고용인은 그가 협상을 하거나 장래 고용과 관계된 계약을 할 때 18 U.S.C. 208(a) 혹은 이 섹션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피고용인의 참여가 18 U.S.C. 208(a)를 위반하는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고용인은 이 섹션의 단락 (c)에 따라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참여시키지 않아야 하며 혹은

포기를 얻거나 이 섹션의 단락 (d)에 기술되었듯이 면제의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

(b) 정의.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의 정의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

(i) 특정한 문제는, 만약 그 문제에 있어서 취해진 어떠한 결정이나 조치와 금융적 이익에 대한 문제의 예측된 효과 사이에 밀접한 인과적 관계가 있다면, 금융적 이익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효과는 비록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직접적일 것이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연결이 약화되거나, 그 문제와 독립적이고 관련되지 않은 사건들 혹은 추측에 근거한 사건들의 발생 여부에 따른 것이라면, 특정한 문제는 금융적인 이익에 대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효과의 결과로서 금융적 이익에 대한 영향을 가진 특정한 문제는 이 하위파트의 의미 내에서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ii) 만약 그 문제가 금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아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특정한 문제는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나 손실의 규모가 알려질 필요는 없으며, 수익이나 손실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주의 : 만약 특정한 문제가 구체적인 당사자와 관련된다면, 일반적으로 그 문제는 이 하위파트의 목적을 위해서, 단지 기껏해야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질 뿐이다. 이러한 효과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한 피고용인의 이익과 같이 당사자 내부에서 혹은 당사자와 함께 종업원의 금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기준 아래에서, 특정한 문제가 비당사자 안에서 혹은 비당사자와 함께 피고용인의 금융적 이익에 대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몇몇의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당사자가 회사라면 또한 특정한 문제는 그 당사자의

계열사, 모회사, 혹은 종속회사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해, 피고용인의 금융적 이익에 대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회사에 대해 계약을 수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성향은, 경쟁 신청자 중의 하나의 제안에 있어서 하도급업자로서 열거된 다른 회사에게는 또한 피고용인의 금융적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사례 1 : 국립보건원산하국립의학도선관의종업원은새로운도서관컴퓨터검색시스템을위한리뷰제안에대해기술적인평가패널로서일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그와 그의 부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공개회사인 DEF 컴퓨터 회사가 제안을 제출하였다. DEF 혹은 다른 신청자에게 시스템 계약을 수여하는 것은 그와 그의 부인의 금융적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피고용인은 그의 부적격이 포기되지 않는 한 기술적 평가 팀에 참여할 수 없다.

사례 2 : 이전의예에서, 기술적 평가 패널을 위한 과제로 그 종업원은 DEF 컴퓨터 회사가 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DEF와 사적인 비즈니스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LMN 회사가 여섯 신청자 중의 하나이다. 그 종업원은 기술적 평가 패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부적격하지 않다. LMN에 시스템 계약을 수여하거나 수여하지 않거나 하는 위원회 결정의 결과로서 종업원의 금융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기껏해야 간접적이거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2) 귀속이익. 18 U.S.C. 208(a)와 이 하위파트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 사람들의 금융적인 이익은 그것이 피고용인 자신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같은 정도로 피고용인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기능할 것이다:

(i) 피고용인의 배우자

(ii) 피고용인의 미성년 아이들

(iii) 피고용인의 무한책임파트너

(iv) 피고용인이 관리자, 감독관, 신탁 관리자, 무한책임파트너나 종업원 역할을 하는 조직체나 독립체

(v) 피고용인이 장래의 고용을 위해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맺은 자(다른 고용을 찾고 있는 피고용인은 이 부분의 하위파트 F에 있는 기준을 언급하고 따라야 한다).

사례 1 : 교육부의피고용인은여러선행을하고있는비영리단체인 kinder world 회사의 이사회에서 보수 없이 일한다. 그녀의 개인적인 금융적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을 지라도, 그녀는 kinder world에 의해 제출된 보조금 신청의 검토에 참가하는 자격을 박탈당해야 한다. 보조금의 수여 혹은 거부는 kinder world의 금융적인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금융적인 이익은 이사회의 멤버로서 그녀에게 귀속될 것이다.

사례 2 : 식품의약국피고용인의배우자는꽤건실한생체의학리서치회사에일자리를얻었다. 그 회사는 FDA 승인의 받기 위한 인공 수족을 개발해 왔고, 피고용인은 평소처럼 FDA의 심리와 승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았다. 그 배우자는 회사의 연봉을 받는 피고용인이며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의 이익은 가지지 않는다. 또한 예를 들어 만약 그녀가 회사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연금 계획에 참가하였다면 그녀는 간접적인 소유의 이익 역시 가지지 않는다. 회사에서 그녀의 직책은, FDA 승인을 보류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그녀의 연봉 또는 회사의 지속된 고용에 대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성격의 것이다. FDA 승인 과정이 그의 배우자의 금융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그 절차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2635.402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고용인의 금융적 이익은 §2635.502에 시행된 것처럼 공명정대한 원칙에 의해 박탈당할 것이다.

(3) 특정한 문제. 특정한 문제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사람 또는 별개의 인식 가능한 계층의 사람에 초점을 맞춘 숙고, 결심, 행동과 관련된 문제만을 포함한다. 그러한 사항은 비록 공식적인 당사자를 수반하지 않을 지라도 이 하위파트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는 별개의 인식 가능한 계층의 사람의 이익에 제한적으로 중점을 두는 입법 혹은 정책 입안과 같은 정부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문제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에 연결된 넓은 정책 옵션의 선택이나 고려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하위파트가 다루는 특정한 사항들은 사법적이거나 다른 소송절차, 신청, 판결 또는 다른 결정을 위한 요청, 계약, 클레임, 논란, 기소, 고발, 체포를 포함한다.

사례 1 : 감가상각이산출되는방식에대한변화를규제하는국세청규정의개정은특별한사항이아니다. 장애 청구인을 위한 항소 절차의 변화에 대한 사회보장국의 고려 사항도 또한 아니다.

사례 2 : 주(state)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트럭에 대한 안전 규범을 제정하는 주간 통상 위원회의 고려 사항은 특별한 문제를 포함한다.

(4)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개인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 문제에 있어서 부하직원의 참여에 대한 직접적이고 활동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피고용인의 연루가 그 사항에 대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참여가 특정한 사항의 결과에 대해 결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참여는 실질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책임감, 지식, 형식적인 연루 혹은 행정적이거나 지엽적인 이슈에 대한 관여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실재성의 발견은 문제에 투입된 노력뿐만 아니라 그 노력의 중요성에도 기초하여야 한다. 일련의 지엽적인 연루가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중요한 단계에서 승인하거나 참여하는 단 하나의 행동은 실질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참여는 특별한 사항에서 피고용인이 결정, 승인, 불승인, 추천, 조사 또는 충고의 제공을 통해 참여할 때 발생 할 수도 있다.

(c) 부적격. 피고용인에게 이 부분의 단락 (d)에 서술된 포기, 면제에 의해 특별한 사항에 참여하는 권한이 없다면 또는 이익이 이 부분의 단락 (e)에 따라 포기되었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특별한 문제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박탈당할 것이다. 만약 특정한 문제가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이익에 대해 갖는다면, 그에게 이익이 귀속된 피고용인 혹은 어떤 사람은 확실히 금융적인 이익을 갖는다. 부적격은 특별한 문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성취된다.

(1) 통지. 자신에게 부과된 특별한 문제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부적격시킬 필요를 인식한 피고용인은 그 부과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배정에 책임 있는 피고용인은 그가 부적격이 된 문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데 필요한 어떤 조치든 취해야만 한다. 피고용인의 부적격에 대한 적절한 구술 또는 서면 통지는 피고용인이 부적격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용인 또는 관리인에 의해 동료들에게 만들어 질 수도 있다.

(2) 기록. 피고용인은 공직자윤리국(OGE)의 도덕 협정에 따른 서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장의 파트 2634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된 부적격 진술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는 서면으로 된 부적격 진술을 제출하기 위하여 임무에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윤리국 공무원에 의해 요청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고용인은 감독관에게 또는 다른 적절한 공무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행동의 기록을 만들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사례 1 : 내무부의차관보는국립공원에합병될것으로고려되고있는토지의경계선에휴양지를소유하고있다. 합병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휴양지의 가치를 증가 시킬 것이다. 그래서 차관보는 합병에 관하여 내무부의 숙고 또는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착수하게 될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자신이 그 문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자신의 부적격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 수준

때문에 차관보는 합병에 관련된 이슈를 토론하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부하들에게 서면상의 부적격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공식적인 상급자에게 서면상의 부적격 진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녀가 적절히 행동해 왔다는 것을 기록할 정도로 현명할 지도 모른다.

(d) 부적격으로부터의 면제 또는 포기. 18 U.S.C. 208(a)에 의해 부적격한 피고용인은, 금융적인 이익의 박탈이 18 U.S.C. 208(b)(4)에 서술된 어떤 인디안의 생득권으로부터의 결과물 또는 이 단락에 서술된 개인적인 포기 또는 규제적인 면제의 대상이라는 문제에 참여하도록 허용 될 수도 있다.

(1) 규제적인 면제. 18 U.S.C.208(b)(2) 하에 일반적인 적용 가능한 규제적인 면제는, 특정한 이익이 너무나 희박하거나 하찮아서 그러한 면제가 적용될 피고용인의 서비스의 온전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정에 기초한 공직자윤리국에 의해 발행되어 왔다. 선재하는 에이전시의 규제상의 면제를 대체하는 이 장의 파트 2640의 하위파트 B 상의 규제를 보아라.

(2) 개별적인 포기. 피고용인을 하나 혹은 더 많은 특별한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개별적인 포기는, 만일 피고용인의 참여보다 앞서서 18 U.S.C. 208(b)(1) 하에서 발행될 수도 있다.

(i) 피고용인:

(A) 특별한 문제 또는 문제들의 환경과 본질에 관하여 피고용인의 임명에 책임이 있는 정부 관리자(혹은 피고용인을 위한 포기를 발행하기 위한 권한이 위임된 다른 정 부 관리자)에게 충고하라.

(B) 박탈당한 금융적인 이익의 정도와 본질에 대해 그 공무원에게 최대한 공개하라.

(ii) 그러한 공무원은 서면으로,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피고용인의 금융적 이익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피고용인으로부터 기대할 서비스의 온전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간주된다고 결정한다. 추가 안내를 위해 이 장의 파트 2640의 하위파트 C를 보시오.

(3) 연방 자문 위원회 위원 포기. 만일 피고용인의 지명에 책임이 있는 정부 공무원(또는 피고용인을 위한 포기를 발급할 권한이 위임된 다른 정부 관리자)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연방자문위원회법에 규정된 자문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혹은 지명될 것으로 고려되고 있는 특별한 정부 공무원에게 18 U.S.C. 208(b)(3)하에서 개별적인 포기가 발행될 수 있다.

(i) 1978년 정부윤리법에 따라 특별한 정부 공무원에 의해 발행된 금융 공개 보고서의 검토.

(ii) 서면으로 개별적인 서비스의 요구가 부적격 금융 이익에 의해 만들어진 이익의 갈등에 대한 가능성보다 크다는 것에 대한 보증.

(4) 포기에 관한 협의와 통지. 실현 가능한 경우, 공무원은 이 장의 단락 (d)(2) 또는 (3)에 언급된 포기를 수여하는 것에 앞서서 공직자윤리국(OGE)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도록 요구된다. 각 포기의 복사본은 공직자 윤리국의 감독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e) 부적격 금융적 이익의 박탈. 특별한 사항에 대한 참여의 부적격을 야기하는 세일 중 또는 다른 이익이나 자산의 포기에 있어, 이 부문의 단락(c)와 18 U.S.C. 208(a)는 그 문제에 대한 피고용인의 참여를 더 이상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1) 자발적인 박탈. 특별한 문제에 참여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피고용인은 부적격을 일으키는 자신의 이익을 제거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팔 수도 있다.

(2) 직접적인 박탈. 피고용인은 만약 부적격 금융 이익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2635.403(a)에 따라 발행된 대리인 추가 규제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을 매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만약 대리인이 §2635.403(b)에 따라 금융적 이익과 피고용인의 임무 혹은 대리인의 임무의 성취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특별 세금 대우를 위한 적임성. 이익을 처분하도록 지시 받은 피고용인은 이 장의 파트 2634의 하위부분 J 하에서 박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박탈의 증명서를 획득하기에 앞서서 처분한 피고용인은 이 특별한 세금 대우에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f) 잠재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공무원의 임무. 피고용인의 임무가 그가 부적격한 특별한 문제에 선임되도록 하는 상당한 가능성을 야기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대리인의 요구와 일치하도록, 갈등적인 임무를 피할 수 있기 위하여 그의 감독관이나 잠재적인 임무에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여야만 한다.

제2635.403조. 금지된 금융적 이익.

피고용인은 이 부문의 단락 (b)하에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에이전시의 결정을 이유로 또는 이 부문의 단락(a)에 따라 발행된 에이전시 규정 또는 법규에 의해 피고용인이 유지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금지된 어떠한 금융적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지 못한다.

주의: 피고용인이 금융적 이익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넓은 적용가능성이 있는 정부 법규는 없다. 만약 몇몇의 경우에 법에 명시된 제한이 에이전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장과는 독립적으로 발행된 에이전시 규제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

(a) 특정한 금융적 이익을 금지시키는 에이전시 규정. 1993년 2월 3일 이후에 발행된 추가 에이전시 규정에 의해, 에이전시는 에이전시의 피고용인 또는 어떤 부류의 에이전시 피고용인 그리고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의해 금융적 이익 혹은 일종의 금융적 이익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는 그러한 금융적 이익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에이전시에 의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에이전시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다. 에이전시가 피고용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아이들에 의한 특정 금융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배우자와 미성년 아이들에게 적용된 제한이나 금지와 서비스의 효율성과의 직접적이고 적절한 결합이 있다는 결정에 기초한 것이다.

(b) 실질적인 갈등에 대한 에이전시의 결정. 에이전시는 그러한 이익 또는 이자를 보유하는 에이전시의 피지명자의 결정에 기초한 금융적인 이익 또는 그러한 부류의 금융적인 이익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개별 피고용인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1) 피고용인 직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고용인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그의 공식적인 임무의 수행에 매우 비판적이거나 중요한 문제로부터 피고용인의 부적격을 요구하시오.

(2) 반대로 다른 피고용인은 그 피고용인의 금융적인 이익 때문에 부적격한 일을 수행하도록 손쉽게 할당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전시의 임무의 효율적인 성취에 영향력을 주시오.

사례 1 : 주요항공기엔진제조업체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공군의피고용인은전투기의개발에책임있는직책으로승진이고려되고있다. 만일 에이전시가 전투기에 대한 공군의 요구에 대한 결정과 엔지니어링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그의 금융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정을 했다면, 피고용인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18 U.S.C. 208(a)에 의해서 그러한 직책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에이전시는 피고용인이 특별한 문제에 자격을 박탈당하도록 하기보다는 그 직책에 선출되는 조건으로서 주식을 매도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c) 금융적 이익의 정의.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1) 이 부문의 단락 (c)(2)에서 제공된 곳을 제외하고, 금융 이익이라는 용어는 피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아이들에 의해 소유된 금융적인

이익에 제한된다. 그러나 이 용어는 18 U.S.C. 208(a)와 §2635.402 하에 부적격 될 수 있는 금융적 이익에 제한되지 않는다. 금융 이익은 어떠한 현재의 또는 임시적인 소유권, 자기자본, 부동산 또는 동산에서 유가증권의 이익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채 또는 보상된 고용 관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유가증권의 본질상 이익, 채권, 동업자 이익, 비용 그리고 임차권 이익, 무기물, 다른 자본의 권리, 신탁 행위, 그리고 선취특권을 포함하며, 스톡옵션 또는 상품선물과 같은 이익을 획득하거나 구매하는 어떠한 권리까지 확장된다. 그것은 피고용인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외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물이익 또는 지불되지 않은 사유지의 수령인으로서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례 1 : 규제에이전시는에이전시에규제되는독립체의주식을피고용인이소유하는것은에이전시의규제기능업무수행능력에서공신력이상당히줄어들어에이전시의목표성취를방해할수도있다고결론을내렸다.

사례 2 : 은행예금보험에가입한에이전시는추가적인에이전시규제에의해, 은행을 검열하는 피고용인이 그들이 검열하는 은행에서 대부금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가맹 은행의 검토는 은행에 대부금을 지급해야 할 피고용인의 확정된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2635.402 하에서 부적격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의 금융적 이익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우 가맹은행으로부터의 대부금은 추가적인 에이전시 규제에 의해 금지될 수 있는, §2635.403(c)에 규정에 따른 별개의 금융적 이익이다.

(2) 금융적 이익이라는 용어는 §2635.403(b)(2)(iii) 또는 (iv)하에서 금융적 이익이 피고용인에게 귀속된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공무원, 감독관, 피신탁인, 일반적인 파트너 또는 사람의 피고용인으로서 보상이 있거나 없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사례 1 : 야생마의보존을위한재단은공공지와사유지에서방목하는가축의무리를 유지하고있다. 비용이 방목 허용에 관한 연방제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단은 토지관리국(BLM)에서 발행된 연방의 초원 사용을 관리하는

모든 제안된 규칙을 일상적으로 논평한다. 토지관리국은 피고용인이 특정한 경우에 그를 부적격 시키는 대신에, 부서 내에서 정책입안 직책으로 승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단체의 무보수 부회장직을 사직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d) 매각 또는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에이전시가 이 부문의 단락 (a)(b)에 따라 금융적 이익의 박탈을 지시할 때마다, 피고용인에게는 에이전시의 지시에 순응하기 위하여 이자의 시장성과 본질, 특별한 임무의 본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에이전시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 기간은 박탈이 처음으로 지시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용인이 금융적 이익의 보유를 지속하는 한 그는 이 하위파트에 의해 부과된 어떠한 제한도 받아야 한다.

(e) 특별한 세금 대우의 적격성. 금융적 이익을 처분하거나 또는 매도하도록 요구되는 피고용인은 이 장의 파트 2634의 하위파트 J에 따라 매각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는 적격이 있을 것이다.

하위파트 E - 공무상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공평성

제2635.501조. 개관.

(a) 이 하위파트는 피고용인의 공식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 손실의 출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두 가지 조항을 포함한다. §2635.502 하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피고용인은 자신의 가정의 일원의 금융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가 알고 있는 구체적 당사자와 관련된 특정한 문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만일 관련 사실의 지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그 문제에 그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그가 결정한다면, 그가 숨겨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를 대리하고 있다고 그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른 환경이 그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을 염려하는 피고용인은 그가 특별한 문제에 참여해야만 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2635.502 에 서술된 절차를 사용해야만 한다.

(b) 제2635.503에 따라 정부 서비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전 고용주로부터 특별 퇴직 수당 혹은 다른 지불을 받아온 피고용인은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고용주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를 대리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에 참여할 수 없는 2년 동안의 부적격 기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의: 공정성에 관한 의문점은 피고용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아이들과 같은 확정된 다른 사람들 또는 피고용인 자신의 금융적 이익에 피고용인의 공식적인 임무가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만일 특별한 문제가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갖는다면 피고용인은 18 U.S.C. 208(a)의 형사상의 법규에 따라 그 자신, 그의 배우자, 무한책임사원, 미성년 아이들이 분명히 금융적 이익을 갖는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지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에 명시된

금지는 또한 피고용인이 공무원, 감독관, 피신탁자, 무한책임사원,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직체 또는 금융적 이익을 가지는 미래 고용에 대해 준비하거나 협상중인 단체의 특별한 문제에 대해 피고용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까지 확대된다.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 피고용인의 참여가 이러한 금융적 이익들 중의 한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파트의 D 또는 F에서 규정된 규범이 적용되고, §§2635.402(d)와 2635.605(a)에서 서술되었듯이 단지 규범적인 포기 또는 면제는 피고용인을 이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635.502(d)의 허가 과정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피고용인의 참여를 허가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용인의 모든 조건의 포기를 준수할 경우, 법에 명시된 포기의 수여는 피고용인의 참여에 있어서 정부의 이익이 합리적인 사람이 에이전시 프로그램의 온전함과 작용에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보다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 될 것이다. 유사하게 피고용인이 이 장의 2640파트의 하위파트 B에 진술된 면제들 중의 하나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피고용인의 참여에 있어서 정부의 이익이 합리적인 사람이 에이전시 프로그램의 온전함과 작용에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보다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제2635.502조. 개인적인 관계와 사업적 관계.

(a) 피고용인에 의한 출현의 고려. 피고용인이 특별한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가 그의 가정의 일원의 금융적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줄 것을 알 경우 혹은 그와 숨겨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경우 그리고 상황이 관계가 있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있어서 피고용인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결정할 경우에는, 그가 에이전시 피지명자에게 그 문제의 출현을 알렸고 이 장의 단락 (d)에 따라 에이전시 피지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오지 않는 한, 피고용인은 그 문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1) 어떤 관계가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갖게 하는지 고려함에 있어서 피고용인은 감독관이나 에이전시 윤리 공무원 또는 에이전시 피지명자의 도움을 찾을 수도 있다.

(2) 이 장에서 특별히 서술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상황이 그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염려하는 피고용인은 특별한 문제에 대해 그가 참여해야만 하는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 부문에서 서술된 과정을 사용해야만 한다.

(b) 정의.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1) 피고용인은 다음의 경우 숨겨진 관계를 갖는 것이다:

(i) §2635.603(c)에서 서술된 장래의 고용주를 제외하고, 피고용인이 금융적, 사적, 다른 금융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일상적인 소비자 거래는 제외한다;

주의 : §2635.603에 규정되어 잇는 고용을 탐색하는 피고용인은 이 부문보다는 이 하위파트 F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ii) 피고용인의 가정의 일원인 사람 또는 피고용인이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척;

(iii) 피고용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부양하는 아이들이 공무원, 감독관, 무한 책임사원, 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고용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일을 하려는 사람.;

(iv) 지난 일 년 이내에 피고용인을 위해 공무원, 감독관, 피신탁자, 무한 책임사원, 대리인, 변호사 계약자 또는 피고용인으로서 일해 온 사람.

(v) 26 U.S.C. 527(e)에 기술된 정치적인 당사자를 제외하고 피고용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 예를 들어 만일 조직체의 활동을 지시하는데

참여하거나 분과위원회의 의장 또는 대변인 또는 유사한 지위로 참여하거나 조직체의 공무원으로서 관여하는 경우 참여는 적극적인 것이다. 다른 경우, 모금 활동의 조정을 포함한 조직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촉진하는데 헌신한 상당한 시간은 활동적인 참여의 암시이다. 기한의 지불 또는 금융적 지원의 간청 혹은 기부는 그 자체로 활동적인 참여로 여겨지지 않는다.

주의 : 이 장의 어떠한 것도 정치적, 종교적 또는 도덕적 견해로 인해 피고용인이 이 문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도록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2)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는 §2635.402(b)(1)에 제시된 의미를 지닌다.

(3) 구체적인 당사자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는 §2637.102(a)(7)에 제시된 의미를 지닌다.

사례 1 : 미연방 조달청 (GSA)의 피고용인은 지역 개발자가 소유한 레스토랑을 구입하기 위한 제안을 하여왔다. 개발자는 GSA가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피고용인이 개발자 혹은 경쟁자의 임대차 계약 제안을 평가하는데 참여한다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용인의 공정성에 의문점이 들게 할 수도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옳은 것이다.

사례 2 : 노동부의 피고용인은 다섯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자 보건법 제정을 초안하는데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부인은 제안된 법이 제정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대기업의 행정 보조원으로서 고용되어 있다. 입법행위가 구체적인 당사자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입법행위에 계속적으로 착수할 수 있으며 손실을 입은 회사에서 일하는 그의 부인의 고용이 그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례 3 : 공군 계약자에 의해 생산된 항공 전자기기를 테스트하는데 책임이 있는 국방부 군수국의 피고용인은 그의 처제가 계약자의 모회사의 엔지니어로서 고용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회사가 거대 복합기업일 경우, 피고용인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은 그가 테스트와 평가 책임의 수행을 계속하는데 대해 그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 엔지니어는 조달 책임을 포함한 미국 연방 항공국으로부터의 고용을 승인하기 위해 전자회사의 부사장의 직위에서 막 사임하였다. 피고용인이 사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와 모든 금융적인 관계를 단절하였을 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용인이 첫 번째 관계의 하도급업자인 회사를 위한 DOT 계약자에 대한 행정에 참여하였다면, 그녀는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이전 역할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용인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갖게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례 5 : 국세청의 피고용인은 빅토리아 시대의 철도역을 복구하는 것이 목적인 사적인 조직체의 일원이고 그가 매년 자금 조달 활동을 맡고 있다. 그 상황에서 피고용인이 조직체의 면세 상황에 관한 IRS의 결정에 참여한다면, 피고용인은 조직체내에서의 자신의 활동적인 참여가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녀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갖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 에이전시 피지명자에 의한 결정. 구체적인 당사자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에 가정의 일원의 잠재적인 출현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또는 피고용인이 숨겨진 관계에 있는 누군가와의 문제에서의 역할로부터 그가 정보를 가질 경우, 에이전시 피지명자는 관련 지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이 문제에 피고용인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에 관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시 피지명자의 결정은 이 장의 단락 (a)에 따른 피고용인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의해 개시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라도 이 장의 단락 (e)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 피고용인이 참여로부터 부적격 당해 왔다는 것을

포함하여, 에이전시 피지명자는 자발적으로 또는 피고용인의 배정에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 혹은 피고용인의 감독관에 의해 요청되었을 때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만일 에이전시 피지명자가 피고용인의 공정성이 의문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결정한다면, 그는 피고용인이 이 문제에 참여하도록 위임되어야만 하는지, 이 부문 단락(d)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에이전시 피지명자가 피고용인의 참여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이 부문 단락 (e)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참여로부터 박탈당할 것이다.

(2) 에이전시 피지명자가 피고용인의 공정성이 의문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결정한다면 그는 이 부문 단락 (a) 하에 대조적인 결론에 이른 피고용인을 포함한 피고용인에게 그 문제에 대한 피고용인의 참여가 적절하다고 조언할 수 있다.

(d) 에이전시 피지명자에 의한 허가. 특별한 당사자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에 대한 피고용인의 참여가 18 U.S.C. 208(a)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그의 공정성에 관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하는 경우, 에이전시 피지명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용인의 참여에서 정부의 이익은 합리적인 사람이 에이전시 프로그램의 온전함과 작용에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보다도 중요하다는 결정에 기초하여 그 문제에 피고용인을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고려되고 있는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관련 있는 문제의 본질;

(2) 문제 해결이 관련 있는 사람의 금융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피고용인이 그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문제에 대한 피고용인의 역할의 중요성과 본질;

(4) 그 문제의 민감성;

(5) 다른 피고용인에게 그 문제를 재배치 하는 어려움

(6) 합리적인 사람이 피고용인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거하거 감소시키는 피고용인의 임무에 대한 조정.

에이전시 피지명자에 의한 허가는 피고용인에 의해 요청 되었을 때 또는 에이전시 피지명자의 재량대로 서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구체적인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허가된 피고용인은, 그 후에 에이전시 피지명자에 의해 고려된 같은 상황이 관련된 출현한 문제에 기초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참여를 부적격 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례 1 : 재무부의 인사부 부이사와 법무자문위원 사무국의 변호사는 부동산 협회의 무한책임사원이다. 부이사는 그의 감독관인 인사부 이사에게 자신의 동업자자 지원한 직위에 대한 후보를 선택하는 임무에 할당되었다고 충고하였다. 만약 선택된다면 동업자는 상당히 증가한 연봉을 받을 것이다. 부이사가 무한책임사원의 금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법규인 18 U.S.C. 208(a)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에이 전시는 이 장의 권한 아래 부이사가 패널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 할 수 없다. §2635.402를 보시오.

사례 2 :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피고용인은 자신이 최근에 고용된 중계 회사에 의한 내부자 거래의 조사에 선임되었다. 조사의 민감성 때문에 에이전시 피고용인은 비록 피고용인이 회사와 모든 금융적 관계의 역할을 단절했을지라도, 조사에 대한 피고용인의 참여의 정부의 이익이 합리적인 사람이 조사의 온전함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에이전시 피고용인은 특별한 중계회사에 의하여 피고용인이 일사적인 기록물을 전달하는 것이 정부의 이익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사례 2 : 장기간의 복잡한 세금 회계 감사와 연루된 국세청 피고용인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회사의 세금이 회계감사의 목적이 된 회사로부터 신임 관리 직책을 승인했다는 조언을 들었다. 왜냐하면 회계 감사는 본질적으로 완료된

것이며 피고용인은 그 사건을 잘 숙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에 에이전시 피지명자는 피고용인이 검토의 추가적 레벨을 받는 회계감사를 완성하는 것이 정부의 이익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e) 부적격. 피고용인에게 이 부문의 단락 (d)에 의해 그 문제에 참여할 권한이 있지 않는 한, 이 부문의 단락 (a)(c)에 따라 피고용인 또는 에이전시의 피지명자가 피고용인 가정의 일원의 금융적 이익 또는 그가 숨겨진 관계를 가진 사람의 역할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이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에는 피고용인은 구체적인 당사자가 연루된 특별한 문제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적격은 이 문제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1) 통지. 피고용인은 자신이 할당 받은 특정한 당사자와 연루된 특별한 문제에 대한 참여로부터 자신을 부적격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신의 임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임무에 책임이 있는 피고용인은 그가 부적격한 문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부적격한 당사자가 연루된 특정한 문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이나 상관에 의해 피고용인의 부적격에 대한 적절한 구술 혹은 서면 통지가 동료 직원에게 발해질 수 있다.

(2) 기록. 만일 그에게 공직자윤리국(OGE)의 윤리적 협정에 준수하는 서면으로 된 증거를 보관하기 위하여 이 장의 2634 파트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면 혹은 서면으로 된 부적격 진술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의 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에이전시 윤리국 공무원에 의해 특별히 요청되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용인은 서면으로 된 부적격 진술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고용인이 감독관이나 다른 적절한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된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행동의 기록을 만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f) 적절한 고려사항들. 정직과 온전함을 위한 피고용인의 명성은 이 장에 의해 요구된 어떠한 결정의 목적을 위한 관련 있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제2635.503조.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특별 급여

(a) 부적격 요구. 이 부문의 단락 (c)에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만일 피고용인이 정부 서비스에 들어가기 앞서 이전 고용주로부터 특별 급여를 받았다면 피고용인은 이전 고용주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를 대표하는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이년동안 박탈당해야 할 것이다. 2년의 부적격 기간은 특별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사례 1 : 인준청문회 후 그리고 취임 한 달 전 사이에 차관보 피지명자는 고용주부터 특별 급여를 받았다. 그의 취임 후 1년 11개월 동안 차관보는 그의 이전 고용주가 당사자인 특별한 문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사례 2 : 피고용인은내무부에근무에앞서탄광운영자인이전고용주로부터특별 급여를받았다. 그 후로 2년 동안 피고용인은 특별한 탄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이전 고용주의 임무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용인의 이전 고용주가 그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용인은 모든 탄광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간에 대한 입법행위를 기초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 입법 행위는 어떠한 당사자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b) 정의.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정의들이 적용될 것이다:

(1) 특별 급여는 다음에 의하여 지불되는 $10,000의 가치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투자 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물건을 의미한다:

(i) 한 개인이 정부 직책을 위해 고려되고 있거나 정부직책을 수락하였다는 것이 이전 고용주에게 알려진 이후에 만들어진 결정에 기초한 지급;

(ii) 이전 고용주의 확립된 보상, 파트너쉽 혹은 혜택 프로그램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보상, 파트너쉽, 혜택 프로그램은 만약 그것이 조례나 계약 혹은 다른 서면 형식에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연방 서비스에 근무하기 이전에 유사한 지급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확립된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것이다.

사례 1 : 작은회사의부사장은대사로추천되었다. 회사에 대한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회사법에 의해 제공된 정기 퇴직 급여와 더불어 $50,000를 지불하기로 투표하였다. 정기 퇴직 급여는 특별 급여가 아니다. 회사가 다른 떠나는 공무원들에게 유사한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0의 불필요한 지불은 특별 급여이다.

(2) 이전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공무원, 감독관, 피신탁자, 무한책임사원, 대리인, 변호사, 계약자 또는 피고용인으로서 일해 온 사람을 포함한다.

(c) 부적격의 포기. 이 장의 부적격 요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전 고용주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를 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정하게 행동하기 위한 피고용인의 임무에 의문을 품지 않을 정도로 급여의 양이 상당하지 않다는 발견에 기초하여 포기될 수도 있다. 포기는 서면으로 행해질 것이며 에이전시의 대표자에 의해 행해질 것이며 또는 지불의 수령인이 에이전시의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피지명자에 의해 주어질 수 있다. 포기 권한은 18 U.S.C. 208(b) 하에 특별급여의 수령인인 피고용인을 위하여 개별적인 포기를 발행할 수도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온 사람에게 에이전시 대표자에 의하여 위임될 수도 있다.

하위파트 F - 다른 고용의 탐색

제2635.601조. 개관.

이 하위파트는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특별한 문제에 의해 금융적 이익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과의 고용관계를 추구할 경우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부적격 요구를 포함한다. 특별히 그것은 피고용인이 협상 중이거나 장래의 고용에 관하여 준비 중인 사람의 금융적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를 미치는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 피고용인의 참여를 부적격 시키는 18 U.S.C.208(a)의 요구를 다룬다. 이 장의 §2635.402와 §2640.103를 보시오. 이 법규적인 요구 사항을 넘어서서, 그것은 또한 고용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피고용인의 행동이 실제적인 고용 협상에 미치지 못할 때 장래의 고용주의 금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문제로부터 부적격을 요구하는 공정성 부재의 쟁점을 검토한다.

제2635.602조. 적용가능성과 관련 고려사항.

피고용인이 18 U.S.C. 208(a) 또는 §2635.101(b)를 포함한 윤리적 행동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될 특별한 문제가 장래 고용주의 금융적 이익 또는 장래 고용에 관하여 준비를 한 사람의 금융적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면 장래 고용에 관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고용을 추구하는 피고용인은 §§2635.604 ~ 2635.606의 적용가능한 부적격 요구를 준수해야만 한다. 피고용인이 이 하위파트를 준수하는 것은 또한 이 부분의 하위파트 D 또는 E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것이다.

주의: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특별한 문제에 의해 금융적 이익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과의 고용을 추구하는 피고용인은 이 하위파트 하에서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용인은 특정 조달 문제에 연루된 에이전시 공무원에게 적용 가능한, 41 U.S.C. 423(c)와 같은 고용을 위한 접촉 또는 토론에 부과된 다른 법규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a) 관련 고용 제한 –

(1) 연방 피고용인일 동안의 외부고용. 연방 고용과 동시에 외부 고용을 떠맡기를 숙고하고 있는 피고용인은 이 부분의 하위파트 G와 H 하에서 그의 외부 활동에 적용 가능한 어떤 규제라도 준수해야만 한다. 피고용인은 또한 외부 고용 활동의 결과로서 이 부분의 하위파트 D 또는 E 하에서 적용될 수도 있는 부적격 요구를 준수해야만 한다.

(2) 고용 후의 제한. 연방 고용의 종결 이후에 맡겨진 고용을 숙고하고 있는 피고용인은 적용 가능한 고용 후의 제한에 관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에이전시 윤리 공무원과 상담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 후 법규인 18 U.S.C.207를 시행하는 규정은 이 장의 파트 2637와 2641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용인은 41 U.S.C. 423(d)와 같은 계약자로부터 고용 후 보수의 승인에 대한 추가적 법규 금지에 복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의를 해야 한다.

(b) 인터뷰 여행과 여흥. §2635.203(d)에 정의된 금지된 출처인 장래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여행비용을 보상할 경우 또는 고용 토론에서 흔히 있는 다른 합리적인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할 경우 피고용인은 §2635.204(e)(3)에 따라 그런 생활편의 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2635.603조. 정의.

이 하위파트의 목적을 위하여:

(a) 고용은 동시에 또는 차후에 연방의 고용을 떠맡든지 간에 비연방 고용의 어떤 형태 혹은 피고용인에 의한 개인적인 서비스 조항과 관련된 비즈니스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사무원, 감독관, 피고용인, 대리인, 변호사, 컨설턴트, 계약자,

무한책임사원, 피신탁자로서의 개인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사례 1 : 은퇴할의도를발표한인디언문제국의피고용인은부족과의가능한컨설팅계약에관하여부족의대표자들에의한접근을받았다. 부족이 협상을 원하는 독립적인 계약적 관계는 이 하위파트의 목적을 위한 고용이다.

사례 2 : 보건사회복지부의피고용인은회사의이사회의일원으로서그의활동의가능성을토론하기위하여비영리회사의공무원과의미팅에초대되었다. 보수 유무에 관계 없이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것은 이 하위파트의 목적을 위한 고용으로 여겨진다.

(b) 일단 피고용인이 이 섹션의 단락 (b)(1)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면 이 섹션의 단락 (b)(2)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을 추구하지 않을 때까지 피고용인은 고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1) 만약 피고용인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음과 관련되었다면 고용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i) 어떤 사람과 고용을 위한 협상에 관여하는 것. 18 U.S.C. 208(a)의 목적을 위하여 협상이라는용어는가능한고용협상에관한합의에도달하기위한관점에서상호적으로수행된다른사람혹은그사람의대리인또는중개인과사이에이루어진의사소통이나논의를의미한다. 이 용어는 구체적인 직책에서 고용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의 토론에 제한되지 않는다.

(ii) 가능한 고용에 관하여 어떠한 사람 혹은 대리인이나 중개인에게 요청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한 경우. 그러나 만일 의사소통이 다음의 경우이었다면 피고용인은 고용 추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A) 구직 요청의 목적만을 위하여;

(B) 산업 또는 다른 별개 계층의 부분으로서 피고용인의 임무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력서나 다른 고용 제안을 제출하는 목적을 위하여.

피고용인은 고용 논의에서 이익을 가리키는 어떤 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고용 관계를 추구하기를 시작했다고 여겨질 것이다;

(iii) 가능한 고용에 관하여 어떤 사람 혹은 그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부터의 요청하지 않은 의사소통의 거절을 제외한 응답을 하는 것.

(2) 피고용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더 이상 고용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i) 피고용인 또는 장래의 고용주가 고용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가능한 고용의 모든 토론이 종결된 경우; 혹은

(ii) 피고용인이 장래 고용주로부터 고용 논의과정에서 이익을 가리키는 어떠한 것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피고용인이 요청되지 않은 이력서나 고용 제안을 발송한지 2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논의를 연기하는 반응은 요청되지 않은 고용 접근, 제안, 이력서의 거절이나 장래 고용 가능성의 거절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례 1 : 의료재정청(HCFA)의 피고용인은 연방 서비스에서 그만두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전화하라고 요청한 주(州) 보건부의 관리에 의해 업무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피고용인은 주 공무원에게 자신의 직업에 매우 만족해 하며 다른 직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피고용인은 만일 자신이 정부를 그만 두기로 결심한다면 그의 관심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피고용인의 일에 관한 칭찬에 대해 그에게 감사해 했다. 피고용인은 요청되지 않은 고용 접근을 거절했으며 고용 추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사례 2 : 예1의 피고용인은 자신이 주 보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래 고용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으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주정부와 고용을 논의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용인은 예측 가능한 미래시점까지 고용 논의를 단지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주 보건부와 고용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

사례 3 : 방호계약 감사원(DCAA)의 피고용인은 육군 납입자의 간접비 계좌를 회계 감사하고 있다. 계약자의 본부에 있는 동안, 계약자의 회계부서의 책임자는 피고용인에게 자신의 부서에서 다른 회계사를 고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피고용인이 DCAA를 떠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말하였다. DCAA의 피고용인은 어떠한 종류의 일이 관련되어 있는지 관심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회계부서가 해야 할 직위의 임무와 DCAA의 피고용인의 부적격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 그들은 연봉을 토론하지는 않는다. 부서의 책임자는 자신이 아직 특정한 직위를 채울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다는 것과 그가 추가적인 직원들을 위한 필요한 승인을 받았을 때에 피고용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용인과 계약자의 관리는 가능성 있는 고용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용인은 육군 납입업자와 고용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례 4 : 섬유산업에적용가능한안전기준을기초하는것을돕고있는직업안정및보건행정청의피고용인은그의이력서를 25개의 섬유 제조 회사에 발송하였다. 그는 25개의 고용 추구를 시작하지 않았다. 만일 고용 논의에 흥미를 나타내는 이력서 수취인으로부터 답장을 받는다면, 피고용인은 그 순간 응답자와의 고용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례 5 :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특별 정부피고용인은 모든 가맹 은행에 적용 가능한 규칙의 검토를 위해 형성된 자문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계약 컨설턴트로서의 업무를 제공하면서 가맹 은행에 요청되지 않은 서신을 발송하였다. 그녀는 고용 제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나타내는 어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의 고용을 추구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제안을 수취를 알리는 편지는 고용 논의에 있어서 관심의 표시가 아니다.

사례 6 : 미국 지질조사국에 고용된 지질학자는 6개의 정유회사에 대한 정부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팀의 일원으로서 일해 오고 있다. 그 지질학자는 소송에서 지정된 피고인 정유회사에 자신의 이력서를 보냈다. 그 지질학자는

그 정유회사와 고용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력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동안 고용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지원서를 철회하거나 2개월 이내에 그녀의 이력서가 거절되었음을 통지 받는다면, 그녀는 그러한 철회를 한 날로부터 혹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유회사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c) 장래의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고용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여겨지는 접촉이 대리인이나 다른 중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 장래 고용주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만약 대리인이 장래 고용주의 신원을 피고용인에게 확인한 경우, 피고용인과 고용 관계를 정립하려는 목적을 위해 대리인이나 다른 중개인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2) 만약 대리인이 장래 고용주의 신원을 피고용인에게 확인 한 경우, 고용 관계를 설립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피고용인의 대리인이나 다른 중개인에 의해 접촉된 사람.

사례 1 : 연방항공국(FAA)의 피고용인은 3개 주 지역의 항공 안전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녀는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고용구직회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회사는 FAA의 피고용인에게 그녀의 관할하에 있는 2개의 항공 당국에 그녀의 이력서를 보냈으며 그 회사와 장래 논의를 할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피고용인이 각각의 당국과 개인적으로 고용 논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공 당국은 그녀의 미래 고용주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를 받은 각 당국과 그들의 신원을 알자마자 고용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d)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 특정한 문제, 개인적, 실질적인이라는 용어의 각각의 의미는 §2635.402(b)(1), (3), (4)에 진술되어 있다.

제2635.604조. 고용을 추구하는 동안의 부적격.

(a) 부적격에 대한 의무. 피고용인의 참여가 §2635.605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다면, 피고용인은 §2635.603(b)의 의미 내에서 고용을 추구하고 있는 장래의 고용주의 금융적 이익에 대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주는 특정한 문제에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부적격은 그 특정한 문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b) 통지. 피고용인은 자신이 배정받은 특정한 문제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부적격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그 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신의 임무에 책임이 있는 피고용인은 그가 부적격한 문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용인의 부적격에 대한 적절한 구술 혹은 서면 통지는, 피고용인이 부적격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이나 상관에 의해 동료직원에게 발하여 질 수 있다.

(c) 문서화. 피고용인은 공직자윤리국의 윤리 협정을 준수하였다는 서면 증거를 이장의 파트 2634에 의해 요구 받지 않는 한 혹은 에이전시의 윤리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의 임무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적격에 대한 서면 진술을 특별히 요구 받지 않는 한, 서면 부적격 진술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피고용인은 상관이나 다른 적절한 관리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행동의 기록을 만들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사례 1 : 퇴역군인국의 피고용인은 실험실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계약의 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퇴역군인국 계약의 하도급업자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기 전에, 피고용인은 그 감사에서 자신을 부적격 시켜야만 한다. 피고용인은 상관의 승인 없이는 계약 감사로부터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업무 배정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관에게 그의 의도를 공개해야 한다.

사례 2 : 식품의약청(FDA)의 피고용인은 제약회사로부터 가능한 고용 관계에 대하여 서면 접촉을 받았다. 그 피고용인은 그 회사가 FDA의 승인을 받기를 바라는 약품을 시험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거절이 아닌 답장을 하기 전에, 피고용인은 시험에서 추가적인 참여로부터 자신을 부적격 시켜야 한다. 피고용인이 그의 시험 책임을 다른 동료에게 떠맡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는 그 일을 다른 동료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그의 부적격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료와 승인에 대한 작업을 해온 다른 사람이 그 시험에 대한 그의 조언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혹은 그 문제에 피고용인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은 그러한 개개인들에게 그의 부적격을 조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례 3 : 규제 에이전시의 법무자문위원은 규제 받고 있는 회사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장래 고용에 관하여 논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규제 받고 있는 단체의 금융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법무자문실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한 서명권한이 보조 법무자문위원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법무자문위원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맡을 것을 요구 받지 않을 것이다. 법무자문위원은 사무실 내의 업무 배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규제 받고 있는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단순히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부적격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자문실의 인지 범위 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법무자문위원이 관여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추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는 규제 에이전시의 커미셔너와 서면 부적격 진술을 문서화하여 그의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부적격을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혹은 특별히 에이전시의 윤리 공무원이나 커미셔너에 의해 서면 부적격 진술을 보관할 것을 요청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례 4 : 한 과학자는 오존층의 악화와 관련된 연구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는 패널로서 일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재단(NSF)에 특별 정부피고용인으로서 고용되었다. 그 과학자는 탄화플루오르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국립과학재단의 보조금을 몇 년 전에 수령한 대학의 교수진

의 일원으로서 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보조금 신청은 없다. 그 대학이 패널의 검토를 위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피고용인은 부적격 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d) 상당한 갈등에 대한 에이전시의 결정. 특정한 사람과 고용관계를 추구하는 피고용인의 행동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자신을 부적격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비판적이어서 피고용인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에이전시가 결정하는 경우, 에이전시는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허락하거나 혹은 고용을 추구하는 동안 보수 없이 휴가를 떠나거나 다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635.605조. 고용을 추구하는 동안 참여의 허락에 대한 포기 또는 승인.

(a) 포기. §2635.603(b)(1)(i)에 규정되어 있듯이, 피고용인이 18 U.S.C. 208(a)의 목적을 위한 고용 협상으로 여겨지는 논의에 관여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18 U.S.C. 208(b)(1) 혹은 (b)(3)의 승인 하에 발행된 서면 포기를 수령한 후에만 장래 고용주의 금융적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주는 특정한 문제에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포기는 §2635.402(d)에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 장의 파트2640의 하위파트 C를 보아라. 특정 피고용인을 위해서 18 U.S.C. 208(b)(2)의 승인 아래 규제 상의 면제가 또한 적용될 수 있다(이 장의 파트 2640의 하위파트 B를 보아라).

사례 1 : 농림부의 피고용인은 오렌지 재배업자와 가능한 고용에 관하여 두번의 전화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재배사 내에서의 특정 직책을 위한 피고용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아직 급여나 다른 계약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피고용인은 18 U.S.C. 208(a)와 §2635.603(b)(1)(i)의 의미 내에서 고용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8 U.S.C. 208(b)(1)하에 발급

된 서면 포기가 없는 경우, 피고용인은 재배사가 적용 가능한 할당량을 위반하여 오렌지를 배송했다고 주장하는 경쟁사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b) 에이전시 피지명자에 의한 승인. 피고용인이 §2635.603(b)(1) (ii) 혹은 (iii)의 의미 내에서 고용을 추구하는 경우, 만약 피고용인이 장래 고용주의 금융적 이익에 대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줄 특정한 문제에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합리적인 사람은 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피고용인은 에이전시 피지명자가 §2635.502(d)에 진술된 기준에 따라 그의 참여를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 : 지난 달에 교육부의 피고용인은 한 대학에 그녀의 이력서를 보냈다. 그녀는 따라서 비록 아직 답장을 받지 않았을 지라도 §2635.603(b)(1)(ii)의 의미 내에서 대학과 고용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2635.502(d)에 따른 에이전시 피지명자에 의한 구체적 허가가 없는 경우, 그녀는 대학에 의해 제출된 보조금 신청을 검토하는 임무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제2635.606조. 장래 고용 관한 혹은 다른 협상 이후의 준비에 기초한 부적격

(a) 고용 혹은 고용에 관한 준비. 피고용인은 18 U.S.C. 208 (b)(1) 혹은 (b)(3)의 승인 하에 발행된 서면 허가에 의해 혹은 18 U.S.C. 208 (b)(2)의 승인에 따른 규제상의 면제에 의해 그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허가 되지 않는 한, 장래 고용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를 고용한 사람의 금융적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주는 특정한 문제에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부적격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기와 면제는 §2635.402(d)에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 장의 파트 2640의 하위파트 B와 C를 보아라.

사례 1 : 군 장교는 방위산업 계약자로부터 6개월 뒤 그가 군부대에서 은퇴한 후 일을 시작하라는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가 정부에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관리는 18 U.S.C. 208(b)(1)의 승인 하에 서면 포기를 받지 않는 한, 특정한 방위 계약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례 2 : 한 회계사는 2년 임기의 통화감사원(COC)의 한 직책을 제안 받았다. 대기업인 그녀의 사적인 고용주는 그 직업이 그녀의 기술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2년간의 무급 휴직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그녀는 2년 뒤 그 회사를 위해 복귀하는 것에 동의했다. COC의 피고용인으로 예정된 2년의 기간 동안, 그 회계사는 그 회사와 미래 고용에 관한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금융적 이익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줄 어떠한 특정 문제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부적격 시키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b) 제안의 거절 혹은 부정. §2635.502(c)의 목적을 위하여 에이전시 피지명자는 적절한 경우에, 전 단락의 피고용인이 더 이상고용을 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이 고용협상의 결론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 종속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은 합리적인 사람이 에이전시의 절차형성 결정의 온전함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염려가 특정한 문제에 대한 피고용인의 참여로 인한 정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정 그리고 §2635.502(d)에 나열된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있는 사항들의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1 : 증권거래위원회의 피고용인은 증권중개인을 대리하는 로펌과 고용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증권중개인에 대한 조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았다. 그 로펌은 피고용인이 추구하는 파트너쉽 지위를 제안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용인이 더 이상 그 로펌과 고용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고용 협상의 이력의 관점에서 피고용인이 그 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행동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염려가 피고용인의 참여로 인한 정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에이전시 피지명자의 결정에 기초하여, 그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피고용인은 계속하여 부적격 당할 것이다.

하위파트 G - 지위의 오남용

제2635.701조. 개관.

이 하위파트는 피고용인이 연방 고용으로 인해 그가 접근한 정보와 원천의 적절한 이용, 그리고 공적인 시간과 권한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두 개의 조항을 포함한다. 이 하위파트는 다음과 관련된 기준들을 진술하고 있다.

(a) 사적 이익을 위한 공공사무실의 사용;

(b) 비공개 정보의 사용;

(c) 정부 재산의 사용

(d) 공적인 시간의 사용.

제2635.702조. 사적 이익을 위한 공공사무실의 사용.

피고용인은 그가 고용관계를 갖고 있거나 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피고용인이 관리이거나 멤버인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비정부 조직의 지위와 관련된 사람, 친구, 친척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혹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의 보증 선전을 위하여, 그리고 피고용인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공사무실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섹션의 단락 (a)에서 (d)에 진술된 구체적인 금지들은 이 일반적인 기준들에 적용되지만, 이 섹션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타적인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a) 이익의 유도 혹은 강압. 피고용인은 그가 비정부 조직상의 지위와 관련된 사람 혹은 친구, 친척 혹은 자기자신을 위해 어떠한 혜택이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강압하거나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의 공적 지위와 관련된 권한이나 타이틀 정부직책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

사례 1 : 친척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피고용인은 제조회사의 법무자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문제를 논의하는 도중에 피고용인은 자신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회사의 서류들을 검토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피고용인은 그의 친척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써 그의 공적 권한을 언급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을 위반했다.

사례 2 : 상무부의 피고용인은 친구로부터 상무부내의 다른 부서에 의해 자신의 회사의 수출 면허가 왜 아직 발급되지 않았는지 결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부서 직원 회의에서 피고용인은 특정한 허가의 승인이 지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그 특정한 허가가 빨리 처리되도록 요청했다.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함으로써 친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인 지위를 사용한 피고용인은 또한 18 U.S.C. 205를 위반한 것이다.

(b) 정부 허가의 양상. 이 파트에 달리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피고용인은 에이전시나 정부가 그의 개인적인 활동이나 다른 사람의 활동을 인가하거나 승인했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공적 지위와 관련된 권한이나 타이틀 혹은 공적 직책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지위에서 가르치거나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피고용인은 §2635.807(b)에 의해 허락된 방법으로만 자신의 공적인 타이틀이나 직책을 언급할 수 있다. 피고용인은 연방 고용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혹은 연방고용의 과정에서 그가 다룬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에 기초해서 고용추천이나 성격 언급에 대한 요청의 경우에만, 자신의 공적인 타이틀을 사용한 추천서에 서명을 할 수 있다.

사례 1 : 자신의 스태프 중 이전 부하직원을 위해 추천편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받은 재무부의 피고용인은 공공용 편지지를 사용하여 추천서를 쓸 수도 있고, 공식적 타이틀을 사용하여 편지에 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피고용인이 정부에서 처리하지 않은 개인적인 친구를 위해 추천서를 요청 받은 경우라면, 그 추천이 연방 고용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그는 공적 타이틀이나 공공용 편지지를 사용하여 추천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용인의 개인적인 친구를 위한 추천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편지의 본문에 그의 공적인 지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할 수도 있다.

(c) 보증 선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용인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을 보증 선전하기 위하여 그의 공적 지위와 관련된 권한이나 타이틀 정부 직책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

(1) 상품, 서비스 혹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권한을 증진시키는 것

(2) 에이전시의 요구나 기준에 따라 문서화된 결과 혹은 에이전시의 임무 지원에 있어서 성취를 인정하는 에이전시 프로그램 하에서 성취에 대한 인식의 결과.

사례 1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위원은 자신의 이전 고용주에 의해 생산된 어떤 전자제품이 주거용으로 안전하다는 점이 CPSC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증 선전하는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례 2 : 상무부의 해외상업서비스 부서에 근무하는 관리는 미국의 통신회사로부터 통신서비스와 장비를 조달하는 과정에 있는 스페인 정부의 대표와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회사는 다섯 개의 유럽회사와 경쟁입찰을 하고 있으며, 상무부의 법에 규정된 임무에는 미국 회사들의 수출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공식적인 임무의 한 부분으로서 해외상업서비스부서의 관리는 스페인의 관리를 만나서 미국 회사의 조달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3 : 환경보호국의 관리는 유류회사에 그 회사의 정제 과정이 연방 대기 품질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가리키는 서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유류회사가 텔레비전 광고에서 자사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신탁관리자"라고 묘사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편지를 정기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그가 알지라도 그러하다.

사례 4 : 법무차관보는 그가 존경하는 작품의 작가에 의해 쓰여진 조직범죄에 관한 소설을 보증 선전하는 책 표지에서 그의 정부 직책을 언급하거나 그의 공식적인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신문에 책 리뷰를 쓰는 과정에서도 그러하다.

(d) 사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는 공적 임무의 수행. 피고용인의 공적인 임무의 수행이 특혜를 주는 대우를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사용의 출현을 낳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은 그의 임무가 비정부적 지위와 연관된 사람이나 친척 혹은 친구의 금융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2635.502에 의해 적용 가능한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여야 한다.

(e) 호칭과 계급 용어의 사용. 이 장의 어떠한 것도 "어너러블(The Honorable)과 같은 일반적인 호칭 용어를 사용하여 일상적으로 연설하는 피고용인이나 군대 혹은 대사관의 계급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활동과 연계하여 그러한 호칭과 계급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2635.703조. 피공공 정보의 사용.

(a) 금지. 피고용인은 조언이나 추천 혹은 권한 없는 폭로를 알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비공공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비공공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에 연루되어서도 안 된다.

(b) 비공공 정보의 정의.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비공공 정보는 피고용인이 연방 고용으로 인해 알게 된 정보나 대중에게 이용가능 하지는 않지만 그가 알고 있는 혹은 합리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말한다. 그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정보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1) 5 U.S.C. 552에 의해 일상적으로 공개로부터 면제되는 것 혹은 규정이나 법규, 행정명령에 의해 폭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2) 에이전시에 의해 기밀사항으로 지정된 것;

(3) 사실상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그리고 대중의 요구에 의해 이용가능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

사례 1 : 해군의 피고용인은 그의 임무 도중에 작은 회사가 전기 시험 장비에 대한 해군의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회사나 공급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체결이 대중에게 발표될 때까지 그의 친구나 친척들에게 조언을 하여서도 안 된다. 그러한 행동들을 이 섹션뿐만 아니라 연방 보안 법률도 위반할 수 있다.

사례 2 : 건설 계약을 위한 제안을 평가하는 것에 연관된 총무청(GSA)의 피고용인은 그 작업에 입찰한 회사에 고용된 친구에게 경쟁회사의 제안 조건을 공개할 수 없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입찰 혹은 경매 정보는 특히 41 U.S.C. 423에 의해 보호되는 비공개 정보이다.

사례 3 : 피고용인은 여분의 부품을 위한 군대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몇몇 회사에 의해 제출된 제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분배 받은 자원 선택 팀의 일원이다. 평가 팀의 일원으로서, 피고용인은 경쟁자들 중의 하나인 알파회사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 정보에 접근하였다. 그는 해군의 부품계약을 위해 경쟁하기 위하여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베타회사를 돕기 위해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48 CFR parts 3, 14,15에 있는 연방획득규정은 18 U.S.C. 1905와 41 U.S.C. 423하에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조달과 다른 계약 정보를 방출하는 것을 제한한다. .

사례 4 :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피고용인은 공개가 면제된 정보를 무심코 정보자유법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서류와 함께 포함시켰다. 그 서류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관계 없이, 피고용인의 공개는 이장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한 없는 공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 5 : 육군공병의 피고용인은 환경보호를 위한 단체의 활동과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에이전시의 절차규정에 의해 허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용인은 그 단체나 신문사의 기자에게 특정한 댐을 짓기 위한 장기간의 계획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제2635.704조. 정부 재산의 사용.

(a) 기준. 피고용인은 정부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된 목적을 제외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정부 재산을 사용하거나 그것의 사용을 허락하여서는 안 된다.

(b) 정의.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1) 정부 재산은 하청업체 직원의 서비스를 포함한 정부 재산에 의해 구입된 어떠한 권리나 다른 무형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유권, 임차권 혹은 다른 재산적 이익을 가진 어떤 형태의 부동산 혹은 동산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사무실 물품, 전화, 다른 통신장비와 서비스, 정부 메일, 자동화 정보처리 능력, 인쇄, 생산시설, 정부 기록, 정부 차량 등을 포함한다.

(2) 허가된 목적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허가된 목적이나 정부 재산이 일반 대중에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사례 1 : 총무청(GSA)규정 41 CFR 101‐35.201 하에서, 피고용인은 그의 개인적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장거리 전화를 할 수 있다.

사례 2 : 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무실 컴퓨터가 있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피고용인은 개인적인 투자 리서치를 위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사례 3 : 이 타이틀의 파트 251의 인사국 규정에 따라, 사법부에 고용된 변호사는 자신이 멤버로 있는 전문가 협회에 의해 후원 받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기 위한 논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워드프로세서와 에이전시의 사진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제2635.705조. 공적 시간의 사용.

(a) 피고용인 자신의 시간의 사용. 다른 목적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한, 피고용인은 공적 시간을 자신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직한 노력을 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5 U.S.C. 6301(2)에 의해 면제된 대통령 지명인을 포함하여 귀휴제 하에 있지 않은 피고용인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의 합리적인 비율을 정직한 노력으로 소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례 1 : 사회보장국의 피고용인은 그가 멤버로 있는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어떤 대의 활동을 위해 공적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U.S.C. 7131에 따라, 비록 그것이 장애 보상청구 심사관으로서 피고용인에게 배정된 임무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그의 공적 시간의 적절한 사용이다. .

사례 2 : 퇴역군인국에 의해 고용된 약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전문가 협회에 의해 후원 받는 약물 남용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자로 참가하기 위해 결근을 허락 받았다. 연방직원 매뉴얼의 챕터 630의 가이드에 따라 에이전시에 의해 부여된 용인된 결근이 피고용인의 연차휴가 계정에 부과됨이 없이 공적 임무로부터 부재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근은 공적 시간이 아니다.

(b) 부하 직원의 시간의 사용. 피고용인은 법률 혹은 규정에 따라 허가되었거나 공적 임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에게 공적 시간을 사용하도록 격려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압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사례 1 : 주택도시개발청의 피고용인은 근무 시간에 비서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서한을 타이핑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근무외 시간 동안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거나 강압하는 것은 §2635.702(a)에 위반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한 활동이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지불되는 경우에는 비서는 집에서 자신의 시간을 활용해 서신을 타이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은 이 장의 하위파트 C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관에게 선물을 수반할 것이다.

Subpart H – 외부 활동(Outside Activities)

제2635.801조. 개요(Overview)

(a) 이 subpart는 이 part의 다른 subpart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에 추가하여, 공직자의 외부 취업, 외부 활동 및 개인적인 재정상의 채무(outside employment, outside activities and personal financial obligations of employees)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보상을 받는 외부 활동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외부 활동(uncompensated as well as to compensated outside activities)에도 적용된다.

(b) 외부 취업이나 다른 외부 활동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공직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이 subpart의 모든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An employee who wishes to engage in outside employment or outside activities must comply with all relevant provisions of this subpart, including, when applicable:).

(1) 공직자의 공식적인 직무와 충돌하는 외부 취업 또는 다른 외부 활동 금지 (the prohibition on outside employment or any other outside activity that conflicts with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2) 외부 취업과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을 위한 소속기관 고유의 요구사항(any agency-specific requirement for prior approval of outside employment or activities)

(3)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인과 그 밖의 비경력직 공직자의 외부 소득 수령 제한 (the limitations on receipt of outside earned income by certain Presidential appointees and other non-career employees)

(4)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유급 또는 무급의 활동에 대한 제한(the limitations on

paid and unpaid service as an expert witness)

(5) 전문가 단체 참여 제한(the limitations on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organizations)

(6) 유급 또는 무급의 강의, 강연 및 기고 제한(the limitations on paid and unpaid teaching, speaking, and writing)

(7) 기금 모금 활동 제한(the limitations on fundraising activities)

(c) 공직자의 외부 고용과 그 밖의 외부 활동은 이 part의 다른 subpart에 규정된 해당 조항과 소속기관의 보조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Outside employment and other outside activities of an employee must also comply with applicable provisions set forth in other subparts of this part and in supplemental agency regulations). 이러한 것들은 공직자가 이 part의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가 고용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있거나 사인의 자격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사익을 위하여 공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These include the principle that an employee shall endeavor to avoid actions creating an appearance of violating any of the ethical standards in this part and the prohibition against use of official position for an employee's private gain or for the private gain of any person with whom he has employment or business relations or is otherwise affiliated in a nongovernmental capacity).

(d) 이 subpart의 규정과 이 part의 다른 subpart에 추가하여, 외부 취업이나 그 밖의 외부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this and other subparts of this part, an employee who wishes to engage in outside employment or other outside activities must comply with applicable statutes and regulations). 이 part의 subpart I에 다수 규정된 법률의 관련조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미연방법 제18편 제201조제(b)항, 이 규정은 공직자가 공적 조치의 수행에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또는 직무에 위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도록 유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수령하거나 받는 것을 요구 또는 동의하는 것을 금지한다(18 U.S.C. 201(b), which prohibits a public official from seeking, accepting or agreeing to receive or accept anything of value in return for being influenced in the performance of an official act or for being induced to take or omit to take any action in violation of his official duty;).

(2) 미연방법 제18편 제201조제(c)항, 이 규정은 공직자가, 적절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법률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적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수령하거나 받는 것을 요구 또는 동의하는 것을 금지한다(18 U.S.C. 201(c), which prohibits a public official, otherwise than as provided by law for the proper discharge of official duty, from seeking, accepting, or agreeing to receive or accept anything of value for or because of any official act;).

(3) 미연방법 제18편 제203조제(a)항, 이 규정은 공직자가 부처, 기관 그 밖의 특정 단체와 미연방이 당사자이거나 또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된 대리 업무로 인해 보상을 받거나 수령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동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18 U.S.C. 203(a), which prohibits an employee from seeking, accepting, or agreeing to receive or accept compensation for any representational services, rendered personally or by another, in relation to any particular matter in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or has a direct and substantial interest, before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specified entity). 이 규정은 제한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수정부종사자를 위한 기준뿐만 아니라 몇몇의 예외들도 포함한다(This statute contains several exceptions, as well as standards for special Government

employees that limit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4) 미연방법 제18편 제205조. 이 규정은 미연방과 청구소송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리인이나 변호사로서 활동하거나, 미연방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직무에 있어서 어떤 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특정 단체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리인이나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행위를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금지한다(18 U.S.C. 205, which prohibits an employee, whether or not for compensation, from acting as agent or attorney for anyone in a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from acting as agent or attorney for anyone, before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specified entity, in any particular matter in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or has a direct and substantial interest). 이것은 또한 미연방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돕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사례금, 지분 또는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It also prohibits receipt of any gratuity, or any share of or interest in a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consideration for assisting in the prosecution of such claim). 이 규정은 제한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수정부종사자를 위한 기준뿐만 아니라 몇몇의 예외들도 포함한다;(This statute contains several exceptions, as well as standards for Government employees that limit the scope of the restrictions)

(5) 미연방법 제18편 제209조, 이 규정은 특수정부종사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정부종사자로서 근무한 보상(보수)으로 미연방을 제외한 다른 어떤 출처로부터 보수, 기부금, 보수에 대한 보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적용을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를 포함한다(18 U.S.C. 209, which prohibits an employee, other than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from receiving any salary or any contribution to or supplementation of salary from any source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as compensation for services as a Government employee. The statute contains several exceptions that limit its applicability;)

(6) 미연방 헌법의 보수 조항인 제I조, 제9항, 제8호, 이 규정은 는 미연방에서 유급 또는 명예(신임) 직위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미연방 의회가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외국 정부로부터 급여 또는 보상을 포함한 선물, 사무실, 직위 또는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The Emoluments Claus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Ⅰ, section 9, clause 8, which prohibits anyone holding an office of profit or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from accepting any gift, office, title or emolument, including salary or compensation, from any foreign government except as authorized by Congress). 추가로, 미연방법 제18편 제219조는 만약 공직자가 미연방법 제22편 제611조 이하에 따라 외국 대리인으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면, 공직자가 외국 정부, 회사 또는 사람을 포함하여 외국 본인의 대리인이 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In addition, 18 U.S.C. 219 generally prohibits any public official from being or acting as an agent of a foreign principal, including a foreign government, corporation or person, if the employee would be required to register as a foreign agent under 22 U.S.C. 611 et seq.;)

(7) 미연방법 제5편 제7321조부터 제7326조까지의 해치법 개혁 수정, 이 규정은 행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관장한다(The Hatch Act Reform Amendments, 5 U.S.C. 7321 through 7326, which gover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executive branch employee; and)

(8) 미연방법 제5편 붙임(1978년의 정부윤리법)의 외부 취업 제한, 이 규정은 비경력직 공직자가 특정 활동의 대가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관계와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나 그 밖의 단체가 공직자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The limitations on outside employment, 5 U.S.C. App.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which prohibit a covered noncareer employee's receipt of compensation for specified activities and provide that he shall not allow

his name to be used by any firm or other entity which provides professional services involving a fiduciary relationship). 규정의 실행은 이 chapter의 제2636.305부터 제2636.307까지에 포함되어 있다(Implementing regulations are contained in 2636.305 through 2636.307 of this chapter).

제2635.802조. 외부 취업 및 활동과의 충돌(Conflicting outside employment and activities)

공직자는 자신의 공적인 직무와 충돌 관계에 있는 외부 취업 또는 그 밖의 외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와 충돌 관계에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An employee shall not engage in outside employment or any other outside activity that conflicts with his official duties. An activity conflicts with an employee;s official duties:).

(a) 만약 외부 활동이 법규나 소속기관의 보조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또는 (If it is prohibited by statue or by an agency supplemental regulation; or)

(b) 제2635.402(재정적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배제)조와 제2635.502조(사적 거래 관계로 인한 직무배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만약 외부 활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쳐 공직자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If, under the standards set forth in §§2635.402 and 2635.502, it would require the employee's disqualification from matters so central or critical to the performance of his official duties that the employee's ability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position would be materially impaired).

공직자는 비록 외부 활동이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더라도, 이 part에 규정된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 part의 subpart D와 E에 따라 특정한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회피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Employees are cautioned that even though an outside activity may not be prohibited under this section, it may violate other principles or standards set forth in this part or require the employee to disqualify himself from participation in certain particular matters under either subpart D or subpart E of this part).

사례 1 : 환경보호국(EPA)의 공직자는 방금 승진하였다. 그의 새로운 직위의 주된 임무는 위험한 폐기물 처리(disposal of hazardous waste)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그러한 규칙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평을 제출하는 비영리 환경 단체의 회장(president of a nonprofit environmental organization)으로서 일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공직자로서의 직위는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빈번하게 실질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입장에서 그의 직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His service as an officer would require his disqualification from duties critical to the performance of his official duties on a basis so frequent as to materially impair his ability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position).

사례 2 : 화학 용액을 사용하는 제조사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노동안전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앞으로도 맡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안전보건국(OSHA)의 공직자는 OSHA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생산 운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회사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계약을 제안 받았다. 공직자는 비록 자신이 이러한 산업에 영향을 주는 OSHA기준에 현재 작업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의 컨설팅 계약이 그러한 기준에 다시 작업하기 전에 완전히 끝나리라고 예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계약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비록 컨설팅 계약이 제2635.802조의 의미에서 충돌관계에 있는 활동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공직자가 그의 공식적인 직위를 외부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으며, 제조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공적 직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

제2635.803조. 외부 취업 및 활동의 사전 승인(Prior approval for outside employment and activities)

1993년 2월 이후에 제정된 소속기관의 보조규칙에 의하여 사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공직자는 외부 취업 또는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When required by agency supplemental regulation issued after February 2, 1993, an employee shall obtain prior approval before engaging in outside employment or activities). 그것이 윤리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은 보조규칙에 의하여 공직자 또는 어떤 범주의 공직자가 외부 취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유형의 외부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해야 한다(Where it is determined to be necessary or desirable for the purpose of administering its ethics program, an agency shall, by supplemental regulation, require employees or any category of employees to obtain prior approval before engaging in specific types of outside activities, including outside employment).

제2635.804조. 대통령 임명자와 그 밖의 비경력직 종사자에 적용되는 외부 소득 제한(Outside earned income limitations applicable to certain Presidential appointees and other noncareer employees)

(a) 상근의 비경력 직위에 대통령 임명자(Presidential appointees to full-time noncareer positions). 상근의 비경력 직위에 대통령 임명자는 그 대통령 임명 기간 동안에 수행된 외부 취업 또는 그 밖의 외부 활동의 대가로 어떠한 외부 소득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A Presidential appointees to full-time noncareer positions shall not receive any outside earned income for outside employment, or for any other outside activity, performed during that Presidential appointee). 이 제한은 1989년 4월 12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직자의 의무가 만족스럽게 이행된 외부 취업 또는 그 밖의 외부 활동의 대가로 받은 외부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This limitation does not apply to any

outside earned income received for outside employment, or for any other outside activity, carried out on satisfaction of the employee's obligation under a contract entered into prior to April 12, 1989)..

(b) 비경력직 대상 공직자(Covered noncareer employees). 이 chapter의 제2636.303조제(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경력직 대상 공직자는 어떤 역년에서든, 그 역년의 1월 1일부터 유효한 미연방법 제5편 제5313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보수표의 레벨 II에 대한 기본 보수의 연 15프로의 비율을 초과하는 그 역년에 속하는 외부 소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Covered noncareer employees, as defined in 2636.303(a) of this chapter, may not, in any calendar year, receive outside earned income attributable to that calendar year which exceeds 15 percent of the annual rate of basic pay for level II of the Executive Schedule under 5 U.S.C. 5313, as in effect on January 1 of such calendar year). 공직자는 이 chapter의 제2636.301부터 제2636.304조까지에 규정된 제한을 시행하는 규정들을 참고해야 한다(Employees should consult the regulations implementing this limitation, which are contained in §§2636.301 through 2636.304 of this chapter).

주의(Note) : 외부 소득에 관한 15퍼센트의 제한에 추가하여, 비경력직 대상 공직자는 다음 활동의 대가로 어떠한 보수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In addition to the 15 percent limitation on outside earned income, covered noncareer employees are prohibited from receiving any compensation for:), 신탁관계를 포함한 전문 직업을 개업하는 경우(practicing a profession which involves a fiduciary relationship;), 신탁관계를 포함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와 관계를 맺거나 고용되는 경우(affiliating with or being employed by a firm or other entity which provides professional services involving a fiduciary relationship;), 협회,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임원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경우(serving as an officer or member of the board of any association, corporation or other entity;) 사전 승인 없이 가르치는 경우(or teaching without prior approval). 시행 규정은 이 chapter의 제2636.305부터 제2636.307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c) 정의. 이 조의 취지에 따라(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1) 외부 소득은 제2636.303조제(b)항제(7)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chapter의 제2636.303조제(b)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Outside earned income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2636.303(b) of this chapter, except that §2636.303(b)(7) shall not apply).

(2) 상근의 비경력 직위의 대통령 임명자는 다음을 제외하고, 미연방법 제5편 제5312조부터 제5317조까지에 규정되거나 법규상 또는 실무상으로 대통령의 임명에 의하여 충원되는 상근 직위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의미한다(Presidential appointee to a full-time noncareer position means any employee who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a full-time position described in 5 U.S.C. 5312 through 5317 or to a position that, by statute or as a matter of practice, is filled by Presidential appointment, other than:)

(i) 시간당 기본급이 일반직 보수표 1단계인 GS-9보다 적은, 미연방법 제3편 제105조 또는 제3편 제107조제(a)항의 권한에 따라 충원되는 직위(A position filled under the authority of 3 U.S.C. 105 or 3 U.S.C. 107(a) for which the rate of basic pay is less than that for GS-9, step 1 of the General Schedule;)

(ii) 대통령직 이양의 결과로 변화에 보통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정된 백악관 운영부서 안의 직위(A position, within a White House operating unit, that is designated as not normally subject to change as a result of a Presidential transition;)

(iii) 제복 근무를 하는 직위(A position within the uniformed services; or)

(iv) 상원에 보고 또는 승인이 필요 없는 외무 직원이 근무하는 직위(A position in which a member of the foreign service is serving that does not requir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사례 1 : 비경력직 공직자에 의해 보통 충원되는 백악관실의 정책 결정 직위에 파견된 법무부의 경력직 공직자는 상근의 비경력 직위에 대통령 임명자가 아니다.

사례 2 : 이 편의 제213.3301조에 따라 보수표 C의 직위에 소속기관이 임명한 에너지부의 공직자는 상근의 비경력직의 대통령 임명자가 아니다.

제2635.805조. 전문 증인으로서 역할(Service as an expert witness)

(a) 제한(Restriction). 공직자는 자신의 참여가 이 조의 제(c)항에 따라 소속기관에 의하여 허가되지 않는 한, 미연방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연방의 법원 또는 기관과의 소송절차에서 미연방을 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상 유무에 관계없이, 전문 증인으로서 역할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An employee shall not serve, other than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as an expert witness, with or without compensation, in any proceeding before a cour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or has a direct and substantial interest, unless the employee's participation is authorized by the agency under paragraph (c) of this section). 이 조의 제(b)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제한은 그 소송절차의 대상인 특정직무 또는 특정 소송절차에 공직자 또는 특수정부종사자로서 참여한 경우에만 특수정부종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this restriction shall apply to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only if he has participated as an employee or special Government employee in the particular proceeding or in the particular matter that is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

(b) 특수정부종사자에게 해당되는 추가적인 제한(Additional restriction applicable to certain special Government employees).

(1) 이 조의 제(a)항에 규정된 제한에 추가하여, 이 조의 제(b)항제(2)호에 규정된 특수정부종사자는 미연방을 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제(c)항에 따라 공직자의 참여가 허락되지 않는 한, 법정이나 기관에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절차에 보상 유무에 관계없이 전문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된다(In addition to the restriction describ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described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shall not serve, other than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as an expert witness, with or without compensation, in any proceeding before a cour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his employing agency is a party or has a direct and substantial interest, unless the employee's participation is authorized by the agency under paragraph (c) of this section).

(2) 이 조의 제(b)항제(1)호의 제한은 다음의 특수정부종사자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The restriction in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who:)

(i)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자(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ii) 법규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serves on a commission established by statute; or)

(iii) 연 365일 중에서 60일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has served or is expected to serve for more than 60 days in a period of 365 consecutive days).

(c) 전문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허가(Authorization to serve as an expert witness). 만약 공직자의 증언·진술이 이 part에 규정된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공직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소속기관의 윤리담당관은 이 조의 제(a)항과 제(b)항에 의해 금지된 전문 증인 역할에 대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Provided that the employee's testimony will not violate any of the principles or standards set forth in this part, authorization to provide expert witness service otherwise prohibited by paragraph (a) and (b) of this section may be given by the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 of the agency in which the employee serves when:)

(1) 만약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소송절차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 법무부와 그 문제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한 후에, 기관의 지명된 윤리담당관은 공직자가 전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이해관계에 관련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After consultation with the agency representing the Government in the proceeding or, if the Government is not a party,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agency with the most direct and substantial interest in the matter, the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 determines that the employee's service as an expert witness is in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or)

(2) 기관의 지명된 윤리담당관은 증언·진술의 주된 사안이 제2635.807조제(a)항 제(2)호(i)의 의미 안에서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The 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 determines that the subject matter of the testimony does not relate to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within the meaning of §2635.807(a)(2)(i)).

(d) 이 조의 어떠한 것도 공직자가 관계 당국에 의해 소환되어 사실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Nothing in this section prohibits an employee from serving as a fact witness when subpoenaed by an appropriate authority).

제2635.806조. 전문협회 참여(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유보]

제2635.807조. 강의, 강연 및 저술(Teaching, speaking and writing).

(a) 강의, 강연 또는 저술에 대한 보상(Compenation for teaching, speaking or writing). 이 조의 제(a)항제(3)호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정부종사자를 포함한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 강연 또는 저술에 대하여 정부를 제외하고 어떠한 출처로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Except as permitted by paragraph (a)(3) of this section, an employee, including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shall not receive compensation from any source other than the Government for teaching, speaking or writing that relates to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1) 보상의 수령에 있어서 다른 제한과의 관계(Relationship to other limitations on receipt of compensation). 이 조에서 포함된 보상 금지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chapter에 규정된 다른 보상 수령 제한에 추가된 것이다(The compensation prohibition contained in this section is in addition to any other limitation on receipt of compensation set forth in this chapter, including:)

(i) 비경력직 대상 공직자는 보상을 받는 강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얻기 위한 이 chapter의 제2636.307조에 포함된 요건; 그리고(The requirement contained in §2636.307 of this chapter that covered noncareer employees obtain advance authorization before engaging in teaching for compensation; and)

(ii) 대통령 임명자와 그 밖의 비경력직 대상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외부 소득 수령에 대한 이 chapter의 제2635.804조와 제2636.304조의 금지 및 제한(The prohibitions and limitations in §2635.804 and §2636.304 of this chapter on receipt of outside earned income applicable to certain Presidential appointees and to other covered noncareer employees).

(2) 정의. 이 항의 취지에 따라(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i) 만약 다음과 같은 것이라면, 강의, 강연 또는 저술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는 것이다(Teaching, speaking or writing relates to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if:)

(A) 공직자의 직무로서 맡아 착수한 활동(The activity is undertaken as part of the employee's official duties;)

(B) 특정 문제에 관한 공직자의 전문 지식보다는 주로 그의 직위 때문에 강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황(The circumstances indicate that the invitation to engage in the activity was extended to the employee primarily because of his official position rather than his expertise on the particular subject matter;)

(C) 공직자의 직무 수행 또는 불수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강의에 초청을 하거나 그 강의에 대한 보상을 제의하는 경우(The invitation to engage in the activity or the offer of compensation for the activity was extended to the employee, directly or indirectly, by a person who has interests that may be affected substantially by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of employee's official duties;)

(D) 강의 초청이 제2635.703조제(b)항에 규정된 미공개 정보인 계획 또는 공식적인 자료로부터 실질적으로 유도된 경우; 또는(The invitation conveyed through the activity draws substantially on ideas or official data that are nonpublic information as defined in §2635.703(b); or)

(E) 이 조의 제(a)항제(2)호(i)(E)(4)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활동의 대상은 다음의 사안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룬다(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a)(2)(i)(E)(4) of this section, the subject of the activity deals in significant part with:)

(1) 공직자가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지난 1년 동안 담당했던 사안(Any matter to which the employee presently is assigned or to which the employee had been assigned during the previous one-year period;)

(2) 진행 중에 있거나 발표된 기관의 정책, 계획 또는 업무; 또는(Any ongoing or announced policy, program or operation of the agency; or)

(3) 이 chapter의 제2636.303조제(a)항에 규정된 비경력직 공직자의 경우에, 그의 소속기관의 계획과 업무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주제 영역, 산업 또는 경제 부문(In the case of a noncareer employee as defined in §2636.303(a) of this chapter, the general subject matter area, industry, or economic sector primarily affected by the programs and operations of his agency).

(4) 이 조의 제(a)항제(2)호제(i)목(E)(2) 및 제(3)호의 제한은 특수정부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The restrictions in paragraphs (a)(2)(i)(E)(2) and (3) of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이 조의 제(a)항제(2)호제(i)목(E)(1)의 제한은 특수정부종사자의 현재의 임명 기간에만 적용된다. 만약 특수정부종사자가 임명된 첫 해 또는 그 임명이 계속된 1년 동안 60일 이상 일하지 않았거나 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제한은 특수정부종사자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특정 당사자와 관련된 특정직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The restrictions in paragraph (a)(2)(i)(E)(1) of this section applies only during the current appointment of a special Government employee; except that if the special Government employee has not served or is not expected to serve for more than 60 days during the first year or any subsequent one year period of that appointment, the restriction applies only to particular matters involving specific parties in which the special Government employee has participated or is participating personally and substantially)

주의(Note) : 제2635.807조제(a)항제(2)호제(i)목(E)는 비록 강의, 강연 또는 저술이 기관의 책임 영역 안에 있는 주제를 일반적으로 다루더라도, 비경력직 대상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자신의 교육적 배경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그의 수련이나 타고난 전문적 영역 내의 주제에 관한 강의, 강연 또는 저술로 인한 보상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사례 1 :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집행부 이사(director of the division of enforcement at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우표 수집에 아주 관심이 많으며, 그 분야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면서 자신의 수집을 발전시키는데 수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는 국제우표수집연구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philatelists)로부터 미국 우표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네 개의 일련의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제가 그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강연 시리즈의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상품중개인(commodities broker)의 유사한 초청을 수락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2 : 정부연구의 주된 분야가 암의 발달에 대한 분자상의 기초인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과학자는 그가 국립보건원의 직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에 특히 초점을 맞춘 책을 쓰는 것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과학자는 만약 그 책이 국립보건원에서의 최근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체 과학계로부터 수집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든 암의 치료에 대한 교과서를 저술하거나 편집하는 활동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은 아마도 다른 많은 chapter들 중에서 암 발달의 분자적 기초를 논의하는 chapter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그 책은 비록 국립보건원 연구로부터 얻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최근의 암 치료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례 3 : 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공직자는 자신의 시간을 이용하여(퇴근 후에) NHTSA에 의해 수집되고 작성된 자동차 충돌에 관한 가치 있는 통계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한 차량 구입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를 준비했다. 그는 그 가이드에 대해 로열티나 다른 어떤 형태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가이드는 NHTSA의 계획 또는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공직자는 비록 NHTSA가 개발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간략하고 부수적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중고차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소비자 가이드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공직자는 미국의 증권 산업에 대한 규제를 특별히 다룬 책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주제는 SEC의 계획 또는 업무에 대한 규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그 책이 SEC의 계획 또는 업무에 대한 부수적인 논의만을 포함하는 한 다양한 유형의 증권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다룬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사례 5 : 상무부의 노사관계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는 연방 공직자의 노동관계와 노동조합과의 협상참여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인정받는 전문가이다. 그 공직자는 만약 그의 강의가 상무부나 노동관계정책부서에서 다루어진 노사관계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불공정 노사 관행에 관한 연방노사관계국(FLRA)의 결정을 설명하는 일련의 강의로 민간의 훈련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 노사 관행의 연방 공직자에 대한 FLRA의 결정은 상무부의 구체적인 계획 또는 업무가 아니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FLRA의 공직자는 보수를 받고 동일한 강의를 할 수 없다.

사례 6 : 환경보호국(EPA)에 고용된 프로그램 분석가는 EPA의 탄생과 임무에 관하여 간략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미국에서의 환경 운동의 역사에 관한 책으로부터 로열티와 그 밖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EPA의 비경력직 대상 공직자는 EPA의 계획과 업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주제 영역을 다룬 동일한 책을 저술한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공직자는 또한 구체적인 EPA 규제 또는 그 밖의 계획과 업무에 관해 초점을 맞춘 책을 저술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사례 7 : 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는 영세기업이 정부 계약을 위한 경쟁을 저해하는 조달 규정의 수정을 위한 조사와 권고를 위해 소집된 자문위원회에 근무하기 위해 특수정부종사자로 1년간 임명을 받았다. 그 임명에 따른 그 변호사의 일은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는 규제 인증 요건의 반경쟁적 효과에 관한 기사를 쓰고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규제가 비록 자문위원회의 검토에 의한 것이라도 그러하다. 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초점을 맞춘 규정은 특정 당사자와 관련된 특정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미공개이기 때문에, 그는 영세 사업자가 제공한 소유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미팅에서 일어나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기사를 쓰고 보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례 8 : 해양생물에 관한 전문가인 생물학자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해 승인된 산호초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NSF의 특수정부종사자로서 연중 60일 이상 고용되었다. 그 생물학자는 해양생물에 관한 전반 그리고 특히 산호초에 관하여 강의, 저술 또는 강연에 대해 보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수정부종사자로 임명된 기간 동안에는 그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NSF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논문, article)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 후자만이 특수정부종사자가 담당한 사안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례 9 : 국제 금융 거래의 전문가는 도산한 저축 대부 조합(failed 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의 소유주에 대한 기소에 있어서 증거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1년간의 특수정부종사자로 임명을 받았다. 그는 그 직책에 60일 이하로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재직 기간에 어떤 기사가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 기소에 관한 기사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기소는 특정한 당사자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이다.

(ii) 제2635.203조제(a)항에 따라 독립부서로 지정된 부처의 부서가 독립부서로 간주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기관은 제2635.102조제(a)항에 규정된 의

미를 가진다(Agency has the meaning set forth in §2635.102(a), except that any component of a department designated as a separate agency under §2635.203(a) shall be considered a separate agency).

(iii) 보수는 공직자의 강의, 강연 또는 저술활동으로 인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포함하여 대가, 보수 또는 소득을 포함한다(compensation includes any form of consideration, remuneration or income, including royalties, given for or in connection with the employee's teaching, speaking or writing activities). 미연방법 제31편 제1353조, 제5편 제4111조 또는 제7342조와 같이 특정한 법규의 승인 또는 기관의 선물 수령 규칙에 따라 받는 것을 제외하고, 보수는 현물, 티켓 구매, 선불 또는 후불로 제공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교통, 숙박 및 식사 등을 포함한다(Unless accepted under specific statutory authority, such as 31 U.S.C. 1353, 5 U.S.C. 4111 or 7342, or an agency gift acceptance statute, it includes transportation, lodgings and meals, whether provided in kind, by purchase of a ticket, by payment in advance or by reimbursement after the expense has been incurred) . 다음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It does not include:)

(A) 이 part장의 subpart B에 따라 금지된 출처에 의하여 제공된 물건(Items offered by any source that could be accepted from a prohibited source under subpart B of this part;)

(B) 강의 또는 강연이 행해지는 행사에서 제공되는 참가비용 또는 교재의 면제와 같은 식사 또는 그 밖의 참석의 부대비용(Meals or other incidents of attendance such as waiver of attendance fees or course materials furnished as part of the event at which the teaching or speaking takes place;)

(C) 강의, 강연 또는 저술활동의 기록을 제공하는 기사(논문)나 기사의 재판,

강연 테잎 그리고 유사한 아이템을 포함한 책이나 출판물의 복사본; 또는 (Copies of books or of publications containing articles, reprints of articles, tapes of speeches, and similar items that provide a record of the teaching, speaking or writing activity; or)

(D) 미연방규정 제5편 제2636.303조제(a)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비경력직 대상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경우에, 강의, 강연 또는 저술활동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교통, 숙박 또는 식사를 포함한 출장경비(In the case of an employee other than a covered noncareer employee as defined in 5 CFR 2636.303(a), travel expenses, consisting of transportation, lodgings or meal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teaching, speaking or writing activity).

주의(제(a)항제(2)호제(iii)목) : 제2635.807조제(a)항과는 별개로, 미연방법 제18편 제209조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당국은 공직자가 여행 경비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전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 추가로, 재산공개보고서를 제출하는 공직자는 해당하는 한계와 배제에 따라, 미연방을 제외한 다른 출처로부터 수령한 여행 또는 여행비용을 반드시 자신의 재산공개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Independent of §2635.807(a), other authorities, such as 18 U.S.C. 209, in some circumstances may limit or entirely preclude an employee's acceptance of travel expenses. In addition, employees who file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should be aware that, subject to applicable thresholds and exclusions, travel and travel reimbursements accepted from sourc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ust be reported on their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사례 1(제(a)항제(2)호제(iii)목) : 산림청의 GS‐15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인 지위에서 대중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피드 독해 테크닉을 개발하고 광고하였다. 공직자는 자신이 산림청 직원으로서 기초하고 있는 토지 관리 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단체의 대표로부터 그 기술에 대한 연설을 초대받았다. 그 대표는 공직자에게 $200의 연설 비용과 모든 여행 경비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여행 경비를 제공받을 수는 있지만

연설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연설 활동은 제2635.807조제(a)항제(2)호(i)목(C)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연설에 대한 보수는 금지된다. 반면에 연설 활동과 관계되어 발생한 여행 경비는 GS－15 공직자에게 금지된 보수가 아니다.

사례 2(제(a)항제(2)호(iii)목) : 단지 각료 직책으로 최근 지명되었기 때문에, 정부 관리는 주요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로부터, 균형 잡힌 생활을 위한 여가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상급 회사 간부의 연설을 위해 아스펜에서 개최되는 회사 미팅에 참석해달라고 초대 받았다. 그 회사는 관리의 여행경비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관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제2635.807조제(a)항제(2)호(i)목(B) 하에서 연설 활동은 자신의 공적 임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는 이 장의 §2636.303(a)에 규정 되어 있듯이 숨겨진 비직업적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여행 경비는 그녀에게 있어 금지된 보수이다.

사례 3(제(a)항제(2)호제(iii)목) : 최근에 결론이 난 합병 사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연방통상위원회(FTC)의 GS－14 변호사는 뉴욕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그의 사적 지위에서 그 사례에 대해 연설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배정된 사법적 행정적 절차와는 별개로 FTC를 대표하여 공개적 연설을 할 책임이 없다. 컨퍼런스의 후원자는 변호사에게 뉴욕으로의 여행과 관계된 비용을 배상하겠다고 제안 했다. 그들은 또한 변호사에게 그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수로서 샌프란시스코로의 무료 여행을 제안했다. 변호사는 뉴욕으로의 여행 경비는 받을 수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로의 경비는 받을 수 없다. 그의 강연은 §2635.807의 단락 (a)(2)(i)(E)(1)와 (a)(2)(i)(E)(2)하에서 자신의 공적 임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장의 §2636.303(a)에 규정된 숨겨진 비직업적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뉴욕 여행 경비는 그에게 있어 금지된 형태의 보수가 아니다. 반면에 연설 활동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샌프란시스코로의 여행 경비는 금지된 형태의 보수이다. 만약 그가 숨겨진 비직업적 피고용인이라면 샌프란시스코로의 여행 경비는 뿐만 아니라 뉴욕으로의 여행 경비 역시 수락할 수 없을 것이다.

사례 4(제(a)항제(2)호제(iii)목) : 심각한 고통에 대한 치료를 개발에 전념해온 옹호자 그룹은 국립보건원(NIH)에 대하여 에이전시의 고통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를 논할 수 있는 컨퍼런스 연설자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그룹은 또한 피고용인의 컨퍼런스 참석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요구되는 이익 충돌 분석을 수행한 후에, 국립보건원은 41 CFR chapter 304 하에 성문화된 총무청 규정 실행과 31 U.S.C. 1353에 의해 여행 경비의 수령을 허가하고 피고용인이 그 여행을 떠맡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의된 것처럼 컨퍼런스에서 옹호자 그룹은 피고용인의 호텔 경비와 몇 끼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중에 그 그룹은 에이전시에 피고용인의 항공운임 비용과 몇 끼의 추가 식사 비용을 상환하였다. 옹호자 그룹에 의한 모든 지불은 승인 가능하다. 피고용인은 공식적으로 연설한 것이고 그 경비 지급은 31 U.S.C. 1353 하에서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2635.807(a)(2)(iii) 하에서 그러한 보수는 금지되지 않는다. 동일한 결과가 국가공무원 훈련법의 5 U.S.C. 4111의 에이전시 선물 수령 법규 혹은 5 U.S.C. 7342의 외국으로부터의 선물 법규에 의해 적절하게 승인된 비정부 소스에 의한 경비 지급이 얻어질 수 있다.

(iv) 수령이란 피고용인에 의한 보수의 실제적이고 건설적인 수취가 있어서 피고용인이 그것의 사후적인 사용을 지시하거나 보수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용인에 의해 수령된 보수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A) 피고용인의 지명, 추천 혹은 다른 구체적인 행위에 기초하여, 자선단체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지불된 것; 혹은

(B) 피고용인의 지식과 묵인하에 그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혹은 다른 독립적인 사촌에게 지불 된 것.

(v) 특정 당사자와 관련된 특정한 문제의 의미는 이 장의 §2637.102(a)(7)에 진술되어 있다.

(vi)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의 의미는 §2635.402(b)(4)에 진술되어 있다.

(3) 특정 교육 활동에 대한 제외. 활동이 이 장의 단락 (a)(2)(i) (B) 혹은 (E) 하에서 피고용인의 공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은 만약 수업이 다음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피고용인에 의한 복수의 프리젠테이션이 요구되는 수업 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 다음의 정기적으로 정립된 커리큘럼:

(A) 20 U.S.C. 1141(a)에 정의된 고등 교육 기관;

(B) 20 U.S.C. 2891(8)에 정의된 초등학교;

(C) 20 U.S.C. 2891(21)에 정의된 중등학교;

(ii) 이 장의 단락 (a)(3)(i)에 기술된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 혹은 주 혹은 지방 정부에 의해 후원을 받고 자금을 조달 받는 교육 혹은 훈련 프로그램.

사례 1 : 인가받은 대학교의 정규 비즈니스 스쿨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고급회계 과목을 가르치는 원가계산기준심의회의 피고용인은 비록 수업의 상당한 부분이 정부와의 계약 적용 가능한 원가 계산 기준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사례 2 :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에 고용된 변호사는 주립 대학교에서 연방고용 차별법을 다루는 수업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의 후원을 받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동일한 세미나를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수업의 주제는 EEOC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초점을 둔 것이고 수업의 후원자가 인가 받은 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 3 : 국립인문학재단(NEH)의 피고용인은 사립대학교로부터 예술가와 시인, 작가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연구에 대해 수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용인의 공적 의무의 일부로서 그는 국립인문학재단으로부터 그 대학교가

받아온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 대학은 피고용인의 임무 수행 혹은 불이행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그러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용인은 비공공 정보의 사용과 관련되거나 그의 공적 임무의 일부로서 수행된 어떤 교육활동으로 인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b) 공적 지위에 대한 언급. 대외 활동 혹은 외부고용의 일부로서 교육, 말하기, 글쓰기에 관여하고 있는 피고용인은 어떤 책이나 세미나, 수업, 프로그램 혹은 유사한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혹은 그의 글쓰기, 말하기,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적인 타이틀이나 직위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1) 피고용인은 만약 그의 타이틀이나 직책이 다른 중요한 전기상의 디테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의 교육활동이나 말하기, 글쓰기와 관련되어 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가 주어질 때 몇 가지 전기상의 세부사항 중 하나로서 자신의 타이틀이나 직위가 포함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2) 피고용인은 만약 기사에 출판된 자신의 견해가 반드시 에이전시나 미국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에이전시에 대한 만족에 대한 합리적인 중요한 부인과 함께 타이틀이나 직위가 수반되는 경우, 피고용인은 과학이나 전문 저널에 출판된 기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타이틀이나 직위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상적으로 “어너러블(The Honorable)과 같은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하거나 군대나 대사관의 계급과 같은 계급 용어를 사용하는 피고용인은 자신의 교육, 말하기, 글쓰기와 관련하여 호칭이나 계급 용어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주의 : 몇몇 에이전시는 특정 연설이나 책, 기사 혹은 유사한 상품이 적절한 부인을 포함하고 있는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이 장을 준수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에이전시의 사전 승인이나 검토, 허락을 요구하는 정책을 가질 수 있다.

사례 1 : 국립해양대기관리처(NOAA)에 고용된 기상학자는 허리케인에 대한 대학원 강좌를 가르쳐 달라는 지역 대학의 요청을 받았다. 그 대학은 대학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모든 교수와 함께 이력상의 세부사항이 기록된 수업 자료에서 기상학자의 이전 고용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그의 정부 타이틀과 지위와 함께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타이틀이나 직위는 예를 들어, 그의 이름 아래에 볼드체로 NOAA, 수석 기상학자와 같은 정부타이틀을 특징짓는 방식으로 수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반대로, 그의 타이틀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하는 것이 NOAA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

사례 2 : 질병대책센터(CDC)에 의해 방금 고용된 의사는 세포 구조에 관한 자신의 이전의 독립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논문을 저술하였다. 미국 의학 협회의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는 것에 부수하여, 만약 그 논문이 CDC의 발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독립적인 연구 결과임을 언급하면서 CDC에 의해 발생한 것을 부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CDC의 부소장 Dr. M. Wellbeing 으로서 논문에 대한 크레디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3 :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피고용인은 은행 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미국 은행 협회 위원회의 정기 미팅에서 보수 없이 사적인 지위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용인은 만약 다른 적절한 이력상의 세부사항 역시 언급된다면 미팅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피고용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제2635.808조. 기금조성 활동.

피고용인은 연방 작업장에서 자선 기금 조성 활동을 하는 경우 이 장의 단락 (b)와 (c) 그리고 이 타이틀의 파트 950의 제한에 따르는 경우에만 기금 조성에 관여할 수 있다. of this section.

(a) 정의.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1) 기금조성은 다음의 행위를 통하여 26 U.S.C. 527(e)에 정의된 정치단체를 제외하고 비영리단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i) 자금이나 물건의 판매의 권유; 혹은

(ii) 참여나 참석의 비용의 일정 부분이 그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에 의해 자선 세금 공제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피고용인에 의한 이벤트의 수행에의 참여.

(2) 이벤트의 수행에의 참여는 리셉션 라인에 서있거나 이벤트 동안 주빈석에 앉아 있는 것 또는 명예회장으로서 일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벤트의 프리젠테이션이나 프로모션에 적극적이고 가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만약 피고용인이 알기에 확실히 자신의 참여가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경우이어서 단지 이벤트에 참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이벤트 동안의 공공연설을 포함하는 것에 비하여, 이 장의 단락 (a)(3)에 규정된 공공연설이나 그러한 연설에의 적절한 참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벤트의 수행에의 참여에 의한 비용의 포기는 이 장의 하위파트 B의 목적을 위한 선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주의 : 이 장은 당파적인 정치 그룹이나 당파적인 정치 관리에 대한 후보자, 정치적 당사자를 위한 기금조성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후원금 조성에 적용되는 법규상의 제한이 있다. 예컨대, 해치법 개혁 수정안 1993년 법의 5 U.S.C. 7323(a) 하에서 피고용인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알면서 정치적인 기부금을 받거나 수락하거나 권유할 수 없다. 나아가 18 U.S.C. 607에 의해 피고용인은 연방 사무실에서 정치후원금을 받거나 간청할 수 없다. 그리고 해치법 개혁 수정안에서 허락된 것을 제외하고, 18 U.S.C. 602에 의하여 다른 피고용인으로부터 정치적 후원금을 고의로 간청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사례 1 : 교통부장관은 올스타 축제를 위한 행사에서 마스터로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티켓의 가격은 $150이며, 지역 병원에 기부될 것이기 때문에 자선 기부로서 세금이 면제된다. 그 행사에서 마스터로서 일하면서, 장관은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 연설은 만약 피고용인의 에이전시가 발표될 정보의 보급을 위한 적절한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고 결정한 경우 그리고 피고용인이 비영리단체를 위한 기부나 다른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용인이 자신의 공적 지위에서 공적 임무와 관련된 대상 문제에 관해 연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연설이 책임, 프로그램 혹은 §2635.807(a)(2)(i)(E)에 기술된 피고용인의 에이전시의 운영에 관한 공적 임무에 관한 것이라면 혹은 피고용인이 말하는 것이 허용된 행정 정책에 관한 것이라면 대상 문제는 피고용인의 공적 임무와 관련된 것이다.

사례 1 : 노동부 장관은 노숙자 가족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수익금을 모금하고 탁월한 노동계 리더를 기념하기 위한 연회에서 연설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장관은 연설의 상당부분을 행정의 밝은 면과 시민들로 하여금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돕도록 격려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행정 정책에 관해 연설하는 것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연회에서의 그녀의 연설은 공적 연설이다. 그러나 장관은 만약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를 강조하면서 연설을 결론지었다면 기금조성 행사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 : 한 자선단체는 학습 장애 아동을 위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워싱턴 DC지역의 시골 클럽에서 열리는 2일간의 토너먼트를

후원하고 있다. 그 단체는 교육부 장관에게 토너먼트의 결승전 후에 열릴 시상식 만찬에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찬은 특정한 연설을 하기 위한 적절한 포럼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장관은 §2635.204(g)(1)에 의해 만찬에서 연설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에게 제공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4) 개인적으로 간청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혹은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교신을 통해 그 사람의 성명이나 신원을 사용함으로써 기부나 다른 지원을 요청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만약 그러한 언급이나 통신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미디어나 구술 언급 혹은 대량생산된 서신 아이템의 동시적인 전달을 통해 기금조성을 간청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간청이 §2635.203(d)의 의미 하에서 금지된 원천으로서의 사람이나 부하직원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것을 피고용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그것은 서신을 기초하는 것이나 봉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혹은 기부금의 회계 담당처럼 기금 조성에 있어서 비밀의 도움을 주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례 1 : 지역 사립 학교를 위한 기금 조성을 간청하는 편지에 서명한 에너지국(DOE)의 피고용인이 그의 에너지국의 직책이나 타이틀을 언급하지 않은 500개의 편지 복사본을 지역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발송한 경우, "개인적으로 간청"한 것이 아니다. 비록 에너지국에 고용된 몇몇 개인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지라도 그러하다.

(b) 공적 지위에서의 기금 조성. 만약 법규나 행정명령, 규정 혹은 에이전시의 결정에 따라서 피고용인이 그의 공적 임무의 일부로서 기금 조성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피고용인은 공적 지위에서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적 지위에서 참여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피고용인은 그의 공적인 타이틀이나 지위,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1 : 공적 지위에서 참여하는 것이 이 타이틀의 파트 950에 의해 허가되었기 때문에, 육군성장관은 군부대 직원들에게 합동 연방 캠페인에 기부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회람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c) 개인적인 지위에서의 기금조성.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용인은 개인적인 지위에서 기금 조성에 관여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이나 다음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자금이나 다른 지원을 개인적으로 간청하는 것:

(i) 피고용인이 특별정부피고용인이 아니라면 §2635.203(d)에 의미 내에서 금지된 원천으로서 피고용인이 알고 있는 사람; 혹은

(ii) 만약 피고용인이 특별정부피고용인인 경우, 그의 공적 임무의 수행 또는 불이행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진 사람, 즉 §2635.203(d)(4)의 의미 내에서 금지된 원천으로 피고용인이 알고 있는 자;

(2) 자금 조성을 위한 노력에 더하기 위하여 그의 공적 지위와 관련된 공적 권한이나 지위, 타이틀을 사용하건 사용을 허락하는 것. 예외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너러블(The Honorable)"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거나 혹은 군대나 대사관에서의 계급을 언급하는 피고용인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호칭이나 계급 용어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달리 이 장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떤 조치에 관여하는 것.

사례 1 : 한 비영리 단체는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골프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해군장관은 그 단체가 다른 출전자들에게 참가비 형식의 기부에 대한 대가로 해군장관과 4인조 18홀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을 모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례 2 : 실적제보호위원회의 피고용인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 학교를 위한 기금 조성 글을 복사하기 위하여 에이전시의 복사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사기 사용은 정부 재산의 사용에 관한 §2635.704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사례 3 : 법무차관보는 노숙자 보호소를 위한 기금조성 권유 편지에서 "John Doe, 법무차관보"라고 서명하지 못 할 것이다. 금지된 원천이나 부하직원을 목표로 하는 간청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동일한 대량 생산된 편지가 큰 규모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는 또한 금지된 원천으로부터의 자금 조성을 간청하기 위해 "John Doe"라는 서명을 편지에 하지 못할 것이다.

제2635.809조. 금융적 의무.

피고용인은 특히 법에 의해 부과된 연방 세금, 주 세금, 지역 세금과 같은 모든 금융적 의무를 포함하여 시민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단순한 금융적 의무는 피고용인에 의해 승인된 혹은 법원에 의해 판결로 결정된 어떠한 금융적 의무를 포함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어떠한 금융적 의무를 정직하게 이행할 의도를 의미한다. 피고용인과 채권자로 주장된 자 사이에 논쟁이 있는 경우, 이 장은 에이전시가 논쟁이 되고 있는 부채의 유효성이나 액수에 관하여 결정하거나 혹은 주장된 채권자를 대신하여 부채를 추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Subpart I – 관련 법정 권한(Related Statutory Authorities)

제2635.901조. 일반(General).

이 part의 subpart A부터 H까지에 규정된 윤리행동 기준에 추가하여,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제정한 법률이 상당히 있다. 제2635.902조에 규정된 목록은 그러한 법률들 중에서 보다 중요한 몇몇을 나열하고 있다. 그것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참고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이 part의 전반에 걸쳐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기준들을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충돌 법규(the basic conflict of interest statutes)에 대한 참고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규와 같이 보다 제한된 적용 범위를 가진 법규는 제외하고 있다.

제2635.902조. 관련 법규(Related Statutes)

(a) 뇌물 요구(교사) 또는 수령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solicitation or receipt of bribes, 미연방법 제18편 제201조제(b)항)

(b) 불법 사례금 요구(교사) 또는 수령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solicitation or receipt of illegal gratuities, 미연방법 제18편 제201조제(c)항)

(c) 정부를 상대로 한 대리행위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seeking or receiving compensation for certain representational services before the Government, 미연방법 제18편 제203조)

(d)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도와주거나, 대리인 또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assisting in the prosecution of claims against the Government or acting as agent or attorney before the Government, 미연방법 제18편 제205조)

(e) 퇴직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 후 취업제한(미연방법 제18편 제207조, 이 chapter의 제2637 part와 제2641 part의 시행 규칙)

(f) 퇴직 공직자가 계약자로부터 보상을 수령하는 행위 금지(the prohibition on certain former agency officials' acceptance of compensation from a contractor, 미연방법 제41편 제423조제(d)항)

(g) 공직자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단체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참여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participating in matters affecting an employee's own financial interests or the financial interests of other specified persons or organizations, 미연방법 제18편 제208조)

(h) 비연방의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제안자 또는 입찰자와 접촉하는 경우,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the actions required of certain agency officials when they contact, or are contacted by, offerors or bidders regarding non-Federal employment, 미연방법 제41편 제423조제(c)항)

(i) 미연방을 제외한 다른 출처로부터 공무 수행(공직)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수, 기부금 또는 보충적인 보수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receiving salary or any contribution to or supplementation of salary as compensation for Government service from a source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미연방법 제18편 제209조)

(j) 상급자에 대한 선물 금지(미연방법 제5편 제7351조)

(k) 특정한 금지된 출처로부터 선물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solicitation or receipt of gifts from specified prohibited sources, 미연방법 제5편 제7353조)

(l) 컴퓨터와 관련하여 사기적인 접근(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행위)과 이와 관련된 행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fraudulent access and related activity in connection with computers, 미연방법 제18편 제1030조)

(m) 외국으로부터 선물과 훈장의 수령과 처리를 규율하는 규정(the provisions governing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연방법 제5편 제7342조)

(n) 보류(Reserved)

(o) 정치활동(선거운동) 금지(the prohibitions against certain political activities, 미연방법 제5편 제7321조 ~ 제7326조, 미연방법 제18편 제602조, 제603조, 제606조, 제607조)

(p) 불성실과 파업 금지(the prohibitions against disloyalty and striking, 미연방법 제5편 제7311조 및 제18편 제1918조)

(q) 외국대리인등록법(미연방법 제22편 제611조 ~ 제621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the general prohibition against acting as the agent of a foreign principal required to register under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미연방법 제18편 제219조)

(r)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참여하거나 조장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임용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ment of a person convicted of participating in or promoting a riot or civil disorder, 미연방법 제5편 제7313조)

(s) 주류를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의 임용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ment of an individual who habitually uses intoxicating beverages to excess, 미연방법 제5편 제7352조)

(t) 정부 운반수단의 남용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misuse of a Government vehicle, 미연방법 제31편 제1344조)

(u) 무료 우송 특권의 남용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misuse of the franking privilege, 미연방법 제18편 제1719조)

(v) 정부에 속하는 사항·문제에 대한 사기 또는 허위의 진술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fraud or false statements in a Government matter, 미연방법 제18편 제1001조)

(w) 공공 기록물을 숨기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concealing, mutilating or destroying a public record, 미연방법 제18편 제2071조)

(x) 수송요청서의 위조 또는 날조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counterfeiting or forging transportation requests, 미연방법 제18편 제508조)

(y) 정보자유법과 사생활법에 따른 정부가 보유한 비밀 정보의 공개 제한(the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certain sensitive Government information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the Privacy Act, 미연방법 제5편 제552조 및 제552a조)

(z) 기밀 정보의 공개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미연방법 제18편 제798조 및 제50편 제783조제(a)항)

(aa) 재산권 정보(산업기술 정보, 독점적 정보)와 다른 기밀성 정보의 공개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disclosure of proprietary information and certain other information of a confidential nature, 제18편 제1905조)

(bb) 조달 정보의 공개 또는 획득 금지(the prohibitions on disclosing and

obtaining certain procurement information, 미연방법 제41편 제423조제(a)과 제(b)항)

(cc) 정부로부터 또는 정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unauthorized use of documents relating to claims from or by the Government, 미연방법 제18편 제285조)

(dd) 특정 인사업무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certain personnel practice, 미연방법 제5편 제2302조).

(ee) 공무원 임용 시험 방해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interference with civil service examinations, 미연방법 제18편 제1917조)

(ff) 로비를 위한 예산 사용 제한(the restrictions on use of public funds for lobbying, 미연방법 제18편 제1913조)

(gg) 친족의 임용이나 승진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participation in the appointment or promotion of relatives, 미연방법 제5편 제3110조)

(hh) 다른 사람이 공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가치 있는 것(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solicitation or acceptance of anything of value to obtain public office for another, 미연방법 제18편 제211조)

(ii) 미연방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횡령하기 위한 음모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conspiracy to commit an offense against or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미연방법 제18편 제371조)

(jj) 정부 예산이나 재산의 착복 또는 횡령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embezzlement or conversion of Government money or property, 미연방법 제18편 제641조).

(kk) 정부 예산을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failing to account for public money, 미연방법 제18편 제643조)

(ll) 공직자의 임용으로 인해 공직자가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금전이나 재산의 횡령 금지(the prohibition against embezzlement of the money or property of another person that is in the possession of an employee by reason of his employment, 미연방법 제18편 제654조)

미국 하원 윤리 매뉴얼
(HOUSE ETHICS MANUAL)

윤리위원회
(COMMITTEE on STANDARDS of OFFICIAL CONDUCT)

2008년 호
(2008 Edition, Supersedes All Prior Editions)

Part I – 윤리적 행동의 원칙(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제101조. 윤리적 행동의 원칙(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모든 국민이 연방 정부의 청렴성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방 공직자는 이 명령 제201조와 제301조에 따라 공포되는 규칙에서 시행되는 윤리적 근무(ethical service)의 근본적인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a) 공직은 국민이 믿고 맡긴 것이므로, 공직자는 자신의 사익에 우선하여 헌법, 법률 그리고 윤리 원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public service is a public trust. requiring employees to place loyalty to the Constitution, the law, and ethical principles above private gain.)

(b) 공직자는 직무의 성실한 수행과 충돌하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hold financial interests that conflict with the conscientious performance of duty)

(c) 공직자는 비공개 정부정보를 이용하여 재정 거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고, 사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engage in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nonpublic Government information or allow the improper use of such information to further any private interest)

(d) 공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합리적 예외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소속기관에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속기관과 거래를 하거나 소속기관이 규제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직자의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금전적인 물품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except pursuant to such reasonable exceptions as are provided by regulation, solicit or accept any gift or other item of monetary value from any person or entity seeking official action

from. doing business with, or conducting activities regulated by the employee's agency, or whose interests may be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 performance pr nonperformance of the employee's duties.)

(e) 공직자는 직무 수행에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employees shall put forth honest effort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f) 공직자는 정부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의 어떠한 종류의 승인되지 않은 약정이나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make no unauthorized commitments or promises of any kind purporting to bind the Government.)

(g)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h) 공직자는 공평하게 행동하고, 사적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act impartially and not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ny private organization or individual)

(i) 공직자는 연방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이를 승인되지 않은 활동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protect and conserve Federal property and shall not use it for other than authorized activities.)

(j) 공직자는 공적인 정부 업무 및 책임과 충돌하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외부 취업 또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engage in outside employment or activities, including seeking or negotiating for employment, that conflict with official Governmen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k) 공직자는 관계 당국에 낭비, 사기, 남용 및 부패를 신고해야 한다.(employees shall disclose waste, fraud, abuse, and corruption to appropriate authorities)

(l) 공직자는 신의성실하게, 특히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연방, 주 또는 지방세 납부와 같은 모든 정당한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여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employees shall satisfy in good faith their obligations as citizens, including all just financial obligations, especially those such as Federal, State, or local taxes-that are imposed by law.)

(m) 공직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생국, 나이 또는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을 위하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법률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employees shall adhere to al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vide equal opportunity for all Americans regardless of race, color, religion, sex, national origin, age, or handicap.

(n) 공직자는 법률과 이 명령에 따라 공포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employees shall endeavor to avoid any actions creating the appearance that they are violating the law or the ethical standards promulgated pursuant to this order.)

제102조. 외부소득 제한(Limitations on Outside Earned Income)

(a) 백악관, 정책 개발실 그리고 각료회의에 근무하는 상근 비경력직 공직자를 포함하여, 행정부의 상근 비경력직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떠한 공직자도 재직 기간 동안에 외부 취업 또는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no employee who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a full-time non-career position in the executive branch(including full-time non-career employees in the White House Office, the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the Office of Cabinet Affairs), shall receive any earned income for any outside employment or activity performed during that Presidential appointment)

(b) 제(a)항에 규정된 금지는 미연방법 제3편 제105조 및 제107조제(a)항에 따른 일반직 보수표 9등급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수의 최저 급여보다 적은 임금으로 고용된 상근비경력직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외부 취업은 외부 취업의 승인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의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the prohibition set forth in subsection(a) shall not apply to any full-time non-career employees employed pursuant to 3 U.S.C. 105 and 3 U.S.C. 107(a) at salaries below the minimum rate of basic pay then paid for GS-9 of the General Schedule. Any outside employment must comply with relevant agency standards of conduct, including any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outside employment.)

Part Ⅱ – 정부윤리청의 권한(Office of Government Ethics Authority)

제201조.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 정부윤리청은 다음에 의하여 이 명령에 관한 것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a) 법무부 장관 및 인사관리처장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강제성이 있는 행정부 행동 기준의 단일하고 포괄적이며 명확한 체제를 수립하는 규칙을 공포(promulgating,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regulations that establish a single, comprehensive, and clear set of executive-branch standards of conduct that shall be objective, reasonable, and enforceable)

(b) 관계 법률, 규칙, 결정 및 정책들을 설명하는 행정부 공직자를 위한 윤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주기적으로 갱신.(developing, disseminating, and periodically updating an ethics manual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describing the applicable statutes, rule, decisions, and policies)

(c) 법무부 장관과 동시에, 미연방법 제18편 제207조의 퇴직후 취업 법률의 규정; 미연방법 제18편 제208조의 일반적인 이해충돌 법령률 그리고 미연방법 제18편 제209조의 급여보조를 금지하는 법률을 해석하는 규칙을 공포.(promulgating, with the concurrence of the Attorney General, regulations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post-employment statute, section 207 of title 18, U.S.C.; the general conflict-of-interest statute, section 208 of title 18, U.S.C.; and the statute prohibiting supplementation of salaries, section 209 of title 18, U.S.C.)

(d) 법무부 장관 및 인사관리처장과 협의하여, 정부윤리법에 따른 공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부 공직자에 의한 비공개(비밀) 재산공개 체계를 수립하는 규칙을 반포. 그러한 규칙은 기관이 어떠한 공직자가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지침이 되는 기준을 포함한다.

(e) 이 명령에 따라 기관이 제정·공포하는 규칙의 시행은 이 명령에 부합하고 그에 따라 공포될 것을 보장

제202조.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7조제(e)항의 의미와 취지에 따라 현재 서로 구분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의 기관에서, 그러한 기관은 미연방법 제18편 제207조제(c)항에 따른 하나의 기관으로 취급된다.(in that the agencies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EOP) currently exercise functions that are not distinct and separate from each other within the meaning an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07(e) of title 18, U.S.C., those agencies shall be treated as one agency under section 207(c) of title 18, U.S.C.)

Part Ⅲ – 기관 책임(Agency Responsibilities)

제301조. 기관 책임(Agency Responsibilities). 각 기관장은 다음을 해야 한다.

(a)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정부윤리청의 포괄적인 행정부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그 기관의 특정 기능과 활동에 대한 특별 적용 가능성을 갖는 규칙으로 보완. 보조적인 기관 규칙은 그러한 행정부 전체에 대한 규정의 부록으로 준비되며, 기관의 비용으로 미연방규칙 제5편에 포함되기 위하여 정부윤리청과 공동으로 공포되어야 한다.

(b)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이 명령과 이 명령에 따라 공포되는 규칙을 재심사할 것을 보장

(c) 기관의 연간 윤리 교육 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정부윤리청과 협조. 그러한 교육은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공직자, 대통령실의 모든 공직자, 공개 또는 비공개 재산공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공직자, 계약 및 조달 관련 공직자와 기관장이 지정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의무적인 브리핑까지 포함한다.

(d) 실행가능 한 경우,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8조에 따른 준수 면제를 부여하기 전에, 정부윤리청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협의하고, 정부윤리청에 준수 면제서의 사본을 제출

(e) 기관의 지정된 윤리담당관의 직급, 책임, 권한, 인력배치 및 자원이 윤리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 지원은 실행 가능한 경우, 윤리 활동에 대한 별개의 예산 항목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Part Ⅳ – 권한의 위임(Delegations of Authority)

제401조. 기관장에게 위임(Delegations of Agency Heads). 미연방 법 제18편의 제203조제(d)항, 제205조제(e)항 및 제208조제(b)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 개인에게 준수 면제나 승인을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준수 면제나 승인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소속기관(또는 위원회, 위원단의 이사회 또는 그 개인을 고용한 유사한 위원회)의 장에게 위임된다.

제402조. 대통령 고문에 위임(Delegations to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a) 제401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단, 이사회 또는 대통령이 설치한 유사한 단체의 대통령 임명인에 대한 준수 면제나 승인을 부여할 수 있는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5조제(d)항, 제205조제(e)항 그리고 제208조제(b)항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고문에게 위임된다.

(b) 미연방법 제3편의 제105조 그리고 제107조제(a)항에 따라 임명된 개인들에게 준수 면제와 승인을 부여하는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8조제(d)항, 제205조제(e)항 그리고 제208조제(b)항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고문에게 위임된다.

제403조. 행정 업무에 관한 위임(Delegation Regarding Civil Service). 인사관리처와 정부윤리청은 적절하게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일반 규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연방법전 제5편 제7301조에 의하여 대통령에 위임된 권한을 위임받는다.

Part Ⅴ –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제501조. 폐지(revocations). 다음의 행정명령은 이로써 폐지된다.

(a) 1965. 5. 8.의 행정명령 제11222호

(b) 1986. 9.25.의 행정명령 제12565호

제502조. 예외 규정(Savings Provision)

(a) 이 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안들과 관련하여 이미 대통령과 그 위임자들이 취한 모든 행위들과 행정명령 제11222호 그리고 행정명령 제12565호 또는 법정 권한에 따라 공포된 규칙을 포함하여, 이 명령의 공포 시 유효한 모든 행위들은, 이 명령의 규정들과 양립할 수 없거나, 법률이나 대통령의 조치에 의하여 운영을 종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절하게 수정되고, 개정되어 이 명령과 이 명령에 따라 공포되는 규칙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들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명령의 제102조의 어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1989년 4월 12일 전에 체결된 기존의 계약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b) (미연방규정 제5편의 제735장의 행정명령 제11222호의 권한과 개별 기관 규정의 권한에 따라) 제출되는 재산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는 지속된다.

제503조. 정의(Definitions). 이 명령의 취지에 따라,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계약 공직자와 조달 공직자(contracting officers and procurement officials)의 의미는 1988년의 연방조달정책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하다.

(b) 공직자(employee)라 함은 특수정부종사자를 포함하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를 의미한다.

(c) 기관(agency)이라 함은 미연방법 제5편의 제105조에 정의된 행정기관, 제103조에 정의된 공기업, 제101조에 정의된 행정 부처, 제104조에 정의된 행정부의 독립된 시설(회계감사원 제외)과 미합중국 우편서비스 및 우편등급위원회를 포함한다.

(d) 기관장(head of an agency)이라 함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그러한 기관의 의장이나 유사한 구성원을 의미한다.

(e) 특수정부종사자(special Government employee)는 미연방법 제18편 제202조 제(a)항에 정의된 특수정부종사자를 의미한다.

제504조.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이 명령은 행정부 내부 관리의 증진만을 목적으로 하고 미합중국, 그 기관들, 그 공직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상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이며 강제력이 있는 권리나 혜택을 창설하고자 하지 않는다.(this order is intended only to improve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executive branch end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by a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agencies, its officers, or any person.)

행정명령 제11222호 - 공직자 윤리기준

(Executive Order 11222 –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연방법 제3편의 제301조에 따라 미연방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965. 5. 8.

Part Ⅰ - **정책**(Policy)

제101조. 정부가 국민의 동의(the consent of the governed)를 바탕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국민은 정부의 청렴성에 완전한 신뢰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정부의 모든 개별 공직자(officer, employee or adviser)는 그 자신의 청렴성과 모든 공식 조치의 행동에 의하여(by his own integrity and conduct in all official actions)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해주어야 하고(help to earn)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must honor).

Part Ⅱ - **행동 기준**(Standards of Conduct)

제201조. (a) 이 조의 제(b)항에 따라 제정·공포된 규칙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공직자도 다음의 사람, 회사 또는 집단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선물(gift), 사례금(gratuity), 호의(favor), 향응(entertainment), 대부(loan), 금전적 가치를 가진 그밖에 물품(other thing of monetary value)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계약, 그밖에 거래 또는 재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는 경우(has, or is seeking to obtain, contractual or other business or financial relationships with his agency)

(2) 소속기관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conducts operations or activities which are regulated by his agency)

(3)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has interests which may be substantially affected by performance or nonperformance of his official duty)

(b) 소속기관장은 인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 의하여 조정되고 승인되는 이 조의 제(a)항을 시행하고, 소속기관의 업무와 의무 그리고 소속기관 공직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예외를 제공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 선물을 수수하는 동기가 관계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가족 또는 개인적 관계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선물을 받아도 됨 - 가장 분명한 사례로서는 공직자의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이다.(governing obvious family or personal relationships where the circumstances make it clear that it is those relationships rather than the business of the persons concerned which are the motivating factors - the clearest illustration being the parents, children or spouses of federal employees)

(2) 공직자가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 오찬이나 만찬 또는 그밖에 회의나 시찰 여행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다과의 취식을 허용(permitting acceptance of food and refreshments available in the ordinary course of a luncheon or dinner or other meeting or on inspection tours where an employee may properly be in a attendance)

(3)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이, 공직자들의 적절하고 통상적인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관례적인 조건으로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허용(permitting acceptance of loans from banks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on customary terms to finance proper and usual activities of employees, such as home mortgage loans)

이 조는 그러한 규정들을 제정·공포하는 경우 시행될 것이다.(This section shall be effective upon issuance of such regulations)

(c) 공직자는 제(a)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금지하든 아니든, 다음을 초래할 만

하거나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방지하도록(avoid any action, whether or not specifically prohibited by subsection(a), which might result in, or create the appearance of-) 하는 것이 이 조의 목적이다.

(1) 사익을 얻기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는 경우(using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2) 단체나 사람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any organization or person)

(3) 정부의 효율성 또는 절약을 방해하는 경우(impeding government efficiency or economy)

(4) 공직자의 행동·조치의 완전한 독립성이나 공평성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losing complete independence or impartiality of action)

(5) 공식적인 계통·경로 외부에서 정부 결정을 내리는 경우(making a government decision outside official channels)

(6)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affecting adversely the confidence of the public in the integrity of the Government)

제202조. 비록 이해충돌과 외부 활동을 다루는 법률, 이 행정명령 및 인사관리처의 규정 그리고 기관의 규정이 준수되는 한, 공직자에 의한 그런 강의, 강연 및 저술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고 할지라도,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그의 공식적인 정부 직무 사이에 실제적이거나 외견상의 충돌(a conflict, or an apparent conflict, between the private interests of the employee and his official government duties and responsibilities)을 초래할 수 있는 강의, 강연 또는 저술을 포함하여 어떠한 외부 활동(in any outside employment)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03조. 공직자는 다음의 경우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a) 연방 공직자로서의 책임 및 직무와 실제적으로 충돌하거나 실제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direct or indirect financial interests that conflict substantially, or appear to conflict substantially, with their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s Federal employees)를 가지는 경우

(b) 공직자의 직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결과로 또는 그러한 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s as a result of, or primarily relying upon,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ir employment)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이러한 금융거래 외에는, 공직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도로(to the same extent as private citizens)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개별적인 임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좀 더 제한할 수 있다.

제204조. 공직자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활동을 제외하고(other than officially approved activities) 어떠한 종류의 연방 재산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는 자신에게 맡겨지거나 지급된 장비 또는 지급품을 포함한 모든 연방 재산(all Federal property, including equipment and supplies, entrusted or issued to him)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된다.

제205조. 공직자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식적인 정보(official information not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를 사적인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for the purpose of furthering a private interest)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6조.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특히 연방, 주 또는 지방 세금과 같은 모든 정당한 재정적 채무를 납부해야 한다.(an employee is expected to meet all just financial obligations, especially those - such as Federal, State, or local taxes - which are imposed by law.)

Part Ⅲ - 특수정부종사자의 윤리적 행동 기준(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Special Government Employees)

제301조. 이 장은 행정부에서(in the Executive Branch) 근무하는 미국연방법전 제18편 제202조에 정의된 모든 "특수정부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제302조. 자문위원, 조언자 또는 그밖에 특수정부종사자(consultant, adviser or other Special Government Employees)는 그 자신의 사적 이익, 특히 그와 가족 관계, 사업 관계 또는 재정 관계를 가지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바라는 것이 이유가 되거나 또는 사적 이익을 바라는 것이 이유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의 공직을 이용(any use of his public office which is motivated by, or gives the appearance of being motivated by, the desire for private gain for himself of other persons particularly those with whom he has family, business, or financial ties)해서는 아니 된다.

제303조. 자문위원, 조언자 또는 그밖에 특수정부종사자는 그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특히 그와 가족 관계, 사업 관계 또는 재정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포함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문, 권고 또는 제안으로, 사적인 개인 이익을 위하여(for private personal gain, either by direct action on his part or by counsel, recommendations, or suggestions to others) 그의 정부 근무의 결과로 얻은 어떠한 내부 정보를 사용(any use of information obtained as a result of his government service)해서는 아니 된다.

제304조. 조언자, 자문위원 또는 그밖에 특수정부공직자는 그 자신, 특히 그와

가족 관계, 사업 관계 또는 재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타인에게 재정적 이득을 제공하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인을 협박하여 강압하거나 협박하여 강압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의 직위를 이용(use his position in any way to coerce, or give the appearance of coercing, another person to provide any financial benefit to him or persons)해서는 아니 된다.

제305조. 조언자, 자문위원 또는 그밖에 특수정부종사자는 정부에 근무하고 있거나 정부에서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while employed by the government or in connection with his work with the government) 그 자신 또는 특히 그와 가족 관계, 사업 관계 또는 재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위하여 선물, 사례금, 대출 또는 호의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어떠한 것을 그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from persons having business with his agency anything of value as a gift, gratuity, loan or favor for himself or persons) 수령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306조. [1986. 9.25. 행정명령 제12565호에 의하여 폐지]

Part Ⅳ - **재정적 이해관계의 신고**(Reporting of Financial Interests)

제401조. 정책(Policy),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윤리적 기준을 보존 및 증진하기 위하여, 비공개(비밀) 재정신고시스템이 행정부의 공직자를 위해서 수립된다. 그러한 비공개(비밀) 신고는 개정된 "정부윤리법"의 제2장에 의하여 수립된 재정 공개 시스템을 보완한다.

제402조. 정의(Definition). 이 장의 취지에 따라,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법률"이란 개정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을 의미한다.

(b) "공직자(employee)"란 함은 특수정부종사자를 포함하는 어느 기관의 공무원 또는 종사자를 의미한다(미연방법 제18편 제202조제(a)항의 정의에 따른다)

(c) "행정부(Executive Branch)"는 행정 기관이나 단체 또는 행정 기구가 법률의 제1장이나 제2장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미연방법 제5편 제105조에 정의된) 행정부의 행정 기관과 다른 단체 또는 행정 기구(Executive agency and any other entity or administrative unit in the Executive Branch)를 포함한다.

제403조. 재정 신고의 포괄 시스템(Comprehensive System of Financial Reporting). 법률 제2장에 따른 행정부 공직자를 위한 재정 신고의 포괄적 시스템이 있다. 그러한 포괄 시스템은 다음을 요구한다.

(a) 법률 제201조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직위를 가진 공직자들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 보고서

(b) 이 장의 제404조에 따라 지정된 직위를 가진 공직자에 의한 비공개(비밀) 보고. 이러한 보고는 법률 제207조에서 비밀로 보관되어야 하고, 미연방법 제5편 제552조제(b)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승인된 것에 한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보고서의 공개는 미연방법 제552a조의 사행활보호법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04조. 정부윤리청. 이 행정명령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윤리청은 다음에 따라 이 장을 관리할 책임을 맡는다.

(a) 법무부 장관 및 인사관리처와 협의하여 다음의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 비공개(비밀) 보고를 해야 하는 직위와 이해충돌법률 및 규칙에 비추어 그러한 보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유형, 각 행정부 기관이 승인하는 활동을 안내하는 기준

(2) 그러한 보고서 제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규정들의 개발

(b) 각 행정부 기관이 비공개 보고를 해야 하는 각각의 직위를 지정하도록 보장

(c) 행정부의 기관들이 제정·공포한 규칙의 시행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보장.

Part Ⅴ - 이해충돌과 관련된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5조와 제208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위임(Delegating Authority of the President Under Section 205 and 208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Relating to Conflicts of Interest)

제501조. 이 장에서 사용되는, "부처(department)"라 함은 행정 부처(executive department)를 의미하며, "기관(agency)"이라 함은 독립 기관이나 시설 또는 공기업(independent agency or establishment or a Government corporation)을 의미하며, 그리고 "기관의 장(head of an agency)"이라 함은 1인 이상에 의하여 인솔되는 기관의 경우, 그런 기관의 의장 또는 의장과 동등한 구성원(chairman or comparable member of such agency)을 의미한다.

제502조. 대통령이 임명을 책임지는 직위에 근무하는 특수정부종사자를 포함하여 정부의 공무원 또는 종사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허용하기 위하여, 이 장의 제503조 및 504조에 규정된 바에 부합되게 그 범위까지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5조 및 제208제(b)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된다.

제503조. 제502조에 언급된 대통령의 권한이 부처·기관의 장 또는 의장에게 소속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된다.

제504조. 제502조에 언급된 대통령의 권한이 관리의 목적을 위하여 부처 또는 기관 내에 있거나 소속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된다.

제505조. 이와 반대로 이 장의 전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는, 제502조에 언급된 대통령의 권한 위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 행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의 장

(b) 대통령실의 실장에게 소속되지 아니하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c) 대통령이 설치한 위원회(committees), 이사회(boards), 위원단(commissions) 또는 유사한 집단(similar groups)에 근무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Part VI - **개정 법률의 제1753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정 권한에 대한 인사관리처의 시행 규정**(Providing for Performance by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f Certain Authority Vested in the President by Section 1753 of the Revised Statutes)

제601조. 인사관리처는 대통령의 승인, 재가 또는 그밖에 조치 없이, 공공조직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개정된 미연방법(미연방법 제5편 제631장) 제1753조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되고 권한을 부여받는다.(1978.12.28. 행정명령 제12107호로 개정)

제602조. 제601조의 권한에 따라 제정·공포된 규정들은 이 명령에 규정된 윤리적 행동의 기준들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Part Ⅶ -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제701조. 인사관리처는 이 명령에 따라 배정된 책임에 추가하여 다음의 권한이 정식으로 부여된다.

(a) 이 명령의 II, III 그리고 IV장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 및 지침의 제정・공포

(b) 기관의 규정이 이 명령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 규정 정기적으로 심사

(c) 행정부 내의 높은 윤리 기준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명령의 개정을 대통령에게 권고.(1978.12.28. 행정명령 제12107호로 개정)

제702조. 각 기관장은 이로써 법률과 이 명령 그리고 인사관리처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들을 그 기관의 특정한 기능과 활동에 특별하게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보충해야 한다. 각 기관장은 또한 (1) 이 조에 따라 제정・공포된 규정이 최대한 널리 배부되고, (2) 조언이나 해석을 요청하는 공직자에게 자문을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을 보장한다.(1978.12.28. 행정명령 제12107호로 개정)

제703조. 다음은 폐지된다.

(a) 1961. 5. 5.의 행정명령 제10939호

(b) 1963.10.29.의 행정명령 제11125호

(c) 1954. 5.10.의 행정명령 제10530호의 제2조제(a)항

(d) "공직자의 행동 기준"의 1961. 7. 20.의 백악관 보고서.

(e) 1962. 5. 2.의 대통령 보고서, "특수정부종사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이 폐지의 발효일은 이 명령의 제701조제(a)항에 따른 인사관리처 규정의 제정・공포일자이다.(1978.12.28. 행정명령 제12107호로 개정)

제704조. 이 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안과 그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승인된 규정을 포함하여, 이 명령의 제정·공포의 시간상 효력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이 명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수정, 개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705조. 이 명령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여기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관(agency)"이라는 용어는 행정 부처(executive department)나 독립 기관(independent agency) 또는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을 의미한다. "공직자(employee)"란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officer or employee of an agency)를 의미한다.

제706조. 이 명령은 우정사업 재구성법(Postal Reorganization Act of 1970)에 의하여 설립된 미연방 우정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1971. 4.23. 행정명령 제11590호로 개정)

행정명령 제12674호 - 공직자 윤리 강령

(Executive Order 12674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미연방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모든 행정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정하고 엄격한 윤리적 행동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행정명령 제12731호에 의하여 수정됨)

1989. 4.12.

Part I – 윤리적 행동의 원칙(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제101조. 윤리적 행동의 원칙(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모든 국민이 연방 정부의 청렴성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방 공직자는 이 명령 제201조와 제301조에 따라 공포되는 규칙에서 시행되는 윤리적 근무(ethical service)의 근본적인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a) 공직은 국민이 믿고 맡긴 것이므로, 공직자는 자신의 사익에 우선하여 헌법, 법률 그리고 윤리 원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public service is a public trust. requiring employees to place loyalty to the Constitution, the law, and ethical principles above private gain.)

(b) 공직자는 직무의 성실한 수행과 충돌하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hold financial interests that conflict with the conscientious performance of duty)

(c) 공직자는 비공개 정부정보를 이용하여 재정 거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고, 사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engage in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nonpublic Government information or allow the improper use of such information to further any private interest)

(d) 공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합리적 예외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소속기관에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속기관과 거래를 하거나 소속기관이 규제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직자의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금전적인 물품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except pursuant to such reasonable exceptions as are provided by regulation, solicit or accept any gift or other item of monetary value from any person or entity seeking official

action from. doing business with, or conducting activities regulated by the employee's agency, or whose interests may be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 performance pr nonperformance of the employee's duties.)

(e) 공직자는 직무 수행에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employees shall put forth honest effort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f) 공직자는 정부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의 어떠한 종류의 승인되지 않은 약정이나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make no unauthorized commitments or promises of any kind purporting to bind the Government.)

(g)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h) 공직자는 공평하게 행동하고, 사적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act impartially and not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any private organization or individual)

(i) 공직자는 연방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이를 승인되지 않은 활동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protect and conserve Federal property and shall not use it for other than authorized activities.)

(j) 공직자는 공적인 정부 업무 및 책임과 충돌하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외부 취업 또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employees shall not engage in outside employment or activities, including seeking or negotiating for employment, that conflict with official Governmen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k) 공직자는 관계 당국에 낭비, 사기, 남용 및 부패를 신고해야 한다.(employees shall disclose waste, fraud, abuse, and corruption to appropriate authorities)

(l) 공직자는 신의성실하게, 특히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연방, 주 또는 지방세 납부와 같은 모든 정당한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여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employees shall satisfy in good faith their obligations as citizens, including all just financial obligations, especially those such as Federal, State, or local taxes-that are imposed by law.)

(m) 공직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생국, 나이 또는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을 위하여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법률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employees shall adhere to al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vide equal opportunity for all Americans regardless of race, color, religion, sex, national origin, age, or handicap.

(n) 공직자는 법률과 이 명령에 따라 공포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employees shall endeavor to avoid any actions creating the appearance that they are violating the law or the ethical standards promulgated pursuant to this order.)

제102조. 외부소득 제한(Limitations on Outside Earned Income)

(a) 백악관, 정책 개발실 그리고 각료회의에 근무하는 상근 비경력직 공직자를 포함하여, 행정부의 상근 비경력직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떠한 공직자도 재직 기간 동안에 외부 취업 또는 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no employee who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a full-time non-career position in the executive branch(including full-time non-career employees in the White House Office, the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the Office of Cabinet Affairs), shall receive any earned income for any outside employment or activity performed during that Presidential appointment)

(b) 제(a)항에 규정된 금지는 미연방법 제3편 제105조 및 제107조제(a)항에 따른 일반직 보수표 9등급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수의 최저 급여보다 적은 임금으로 고용된 상근비경력직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외부 취업은 외부 취업의 승인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의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the prohibition set forth in subsection(a) shall not apply to any full-time non-career employees employed pursuant to 3 U.S.C. 105 and 3 U.S.C. 107(a) at salaries below the minimum rate of basic pay then paid for GS-9 of the General Schedule. Any outside employment must comply with relevant agency standards of conduct, including any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outside employment.)

Part Ⅱ – 정부윤리청의 권한(Office of Government Ethics Authority)

제201조. 정부윤리청(Office of Government Ethics). 정부윤리청은 다음에 의하여 이 명령에 관한 것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a) 법무부 장관 및 인사관리처장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강제성이 있는 행정부 행동 기준의 단일하고 포괄적이며 명확한 체제를 수립하는 규칙을 공포(promulgating, in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regulations that establish a single, comprehensive, and clear set of executive-branch standards of conduct that shall be objective, reasonable, and enforceable)

(b) 관계 법률, 규칙, 결정 및 정책들을 설명하는 행정부 공직자를 위한 윤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주기적으로 갱신.(developing, disseminating, and periodically updating an ethics manual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describing the applicable statutes, rule, decisions, and policies)

(c) 법무부 장관과 동시에, 미연방법 제18편 제207조의 퇴직후 취업 법률의 규정; 미연방법 제18편 제208조의 일반적인 이해충돌 법령률 그리고 미연방법 제18편 제209조의 급여보조를 금지하는 법률을 해석하는 규칙을 공포. (promulgating, with the concurrence of the Attorney General, regulations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post-employment statute, section 207 of title 18, U.S.C.; the general conflict-of-interest statute, section 208 of title 18, U.S.C.; and the statute prohibiting supplementation of salaries, section 209 of title 18, U.S.C.)

(d) 법무부 장관 및 인사관리처장과 협의하여, 정부윤리법에 따른 공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부 공직자에 의한 비공개(비밀) 재산공개 체계를 수립하는 규칙을 반포. 그러한 규칙은 기관이 어떠한 공직자가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지침이 되는 기준을 포함한다.

(e) 이 명령에 따라 기관이 제정·공포하는 규칙의 시행은 이 명령에 부합하고 그에 따라 공포될 것을 보장

제202조.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7조제(e)항의 의미와 취지에 따라 현재 서로 구분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의 기관에서, 그러한 기관은 미연방법 제18편 제207조제(c)항에 따른 하나의 기관으로 취급된다.(in that the agencies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EOP) currently exercise functions that are not distinct and separate from each other within the meaning an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07(e) of title 18, U.S.C., those agencies shall be treated as one agency under section 207(c) of title 18, U.S.C.)

Part Ⅲ – 기관 책임(Agency Responsibilities)

제301조. 기관 책임(Agency Responsibilities). 각 기관장은 다음을 해야 한다.

(a)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정부윤리청의 포괄적인 행정부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그 기관의 특정 기능과 활동에 대한 특별 적용 가능성을 갖는 규칙으로 보완. 보조적인 기관 규칙은 그러한 행정부 전체에 대한 규정의 부록으로 준비되며, 기관의 비용으로 미연방규칙 제5편에 포함되기 위하여 정부윤리청과 공동으로 공포되어야 한다.

(b)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이 명령과 이 명령에 따라 공포되는 규칙을 재심사할 것을 보장

(c) 기관의 연간 윤리 교육 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정부윤리청과 협조. 그러한 교육은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공직자, 대통령실의 모든 공직자, 공개 또는 비공개 재산공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공직자, 계약 및 조달 관련 공직자와 기관장이 지정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의무적인 브리핑까지 포함한다.

(d) 실행가능 한 경우,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8조에 따른 준수 면제를 부여하기 전에, 정부윤리청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협의하고, 정부윤리청에 준수 면제서의 사본을 제출

(e) 기관의 지정된 윤리담당관의 직급, 책임, 권한, 인력배치 및 자원이 윤리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 지원은 실행 가능한 경우, 윤리 활동에 대한 별개의 예산 항목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Part Ⅳ – 권한의 위임(Delegations of Authority)

제401조. 기관장에게 위임(Delegations of Agency Heads). 미연방 법 제18편의 제203조제(d)항, 제205조제(e)항 및 제208조제(b)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 개인에게 준수 면제나 승인을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준수 면제나 승인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소속기관(또는 위원회, 위원단의 이사회 또는 그 개인을 고용한 유사한 위원회)의 장에게 위임된다.

제402조. 대통령 고문에 위임(Delegations to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a) 제401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단, 이사회 또는 대통령이 설치한 유사한 단체의 대통령 임명인에 대한 준수 면제나 승인을 부여할 수 있는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5조제(d)항, 제205조제(e)항 그리고 제208조제(b)항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고문에게 위임된다.

(b) 미연방법 제3편의 제105조 그리고 제107조제(a)항에 따라 임명된 개인들에게 준수 면제와 승인을 부여하는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8조제(d)항, 제205조제(e)항 그리고 제208조제(b)항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고문에게 위임된다.

제403조. 행정 업무에 관한 위임(Delegation Regarding Civil Service). 인사관리처와 정부윤리청은 적절하게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일반 규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연방법전 제5편 제7301조에 의하여 대통령에 위임된 권한을 위임받는다.

Part Ⅴ –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제501조. 폐지(revocations). 다음의 행정명령은 이로써 폐지된다.

(a) 1965. 5. 8.의 행정명령 제11222호

(b) 1986. 9.25.의 행정명령 제12565호

제502조. 예외 규정(Savings Provision)

(a) 이 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안들과 관련하여 이미 대통령과 그 위임자들이 취한 모든 행위들과 행정명령 제11222호 그리고 행정명령 제12565호 또는 법정 권한에 따라 공포된 규칙을 포함하여, 이 명령의 공포 시 유효한 모든 행위들은, 이 명령의 규정들과 양립할 수 없거나, 법률이나 대통령의 조치에 의하여 운영을 종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절하게 수정되고, 개정되어 이 명령과 이 명령에 따라 공포되는 규칙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들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명령의 제102조의 어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1989년 4월 12일 전에 체결된 기존의 계약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b) (미연방규정 제5편의 제735장의 행정명령 제11222호의 권한과 개별 기관 규정의 권한에 따라) 제출되는 재산보고서에 대한 비밀유지는 지속된다.

제503조. 정의(Definitions). 이 명령의 취지에 따라,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계약 공직자와 조달 공직자(contracting officers and procurement officials)의 의미는 1988년의 연방조달정책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하다.

(b) 공직자(employee)라 함은 특수정부종사자를 포함하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를 의미한다.

(c) 기관(agency)이라 함은 미연방법 제5편의 제105조에 정의된 행정기관, 제103조에 정의된 공기업, 제101조에 정의된 행정 부처, 제104조에 정의된 행정부의 독립된 시설(회계감사원 제외)과 미합중국 우편서비스 및 우편등급위원회를 포함한다.

(d) 기관장(head of an agency)이라 함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그러한 기관의 의장이나 유사한 구성원을 의미한다.

(e) 특수정부종사자(special Government employee)는 미연방법 제18편 제202조 제(a)항에 정의된 특수정부종사자를 의미한다.

제504조.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이 명령은 행정부 내부 관리의 증진만을 목적으로 하고 미합중국, 그 기관들, 그 공직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상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이며 강제력이 있는 권리나 혜택을 창설하고자 하지 않는다.(this order is intended only to improve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executive branch end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by a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agencies, its officers, or any person.)

행정명령 제13490호 - 공직자 윤리의무

(Executive Order 13490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미연방법 제3편의 제301조와 제5편의 제3301조와 제7301조를 포함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2009. 1.21.

제1조. 윤리서약(Ethical Pledge). 2009년 1월 20일 이후, 모든 행정기관에 임명된 사람(appointee)은 다음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서명과 동시에 계약상 의무(contractually committed)를 지켜야 한다.

"국민이 믿고 신탁한 미국 정부의 직위에 내가 임명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내가 준수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강제되는 다음의 의무에 전념할 것을 약속합니다.(As a condition, and in consideration, of my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a position invested with the public trust, I commit myself to the following obligations, which I understand are binding on me and are enforceable under law)

"1. **로비스트의 선물 금지(lobbyist gift ban).** 나는 임명인으로서 근무기간 동안에 등록된 로비스트 또는 로비단체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I will not accept gifts from registered lobbyists or lobbying organizations for the duration of my service as an appointee)

"2. **회전문 금지 - 정부에 진입하는 모든 임명인(revolving door ban - all appointees entering government).** 나는 임명 일자로부터 2년 동안, 나의 이전 사용자 또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당사자가 연관된, 규제와 계약을 포함한 특정 사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I will not for a period of 2 years from the date of my appointment participate in any particular matter involving specific parties that is directly and substantially related to my former employer or former clients, including regulations and contracts)

"3. **회전문 금지 - 정부에 들어오는 로비스트(revolving door ban - lobbyists entering government).** 만약 내가 임명 이전 2년 동안에 등록된 로비스트였다면, 제2호의 제한 준수에 추가하여, 나는 취임 이후 2년 동안에 다음을 하지 않을 것이다.

(a) 나의 임명 전 2년 안에 내가 로비를 하였던 특정 사안에 참여(participate in any particular matter on which I lobbied within 2 years before the date of my appointment)

(b) 그 특정 사안이 속하는 특정한 문제 분야에 참여(participate in the specific issue area in which that particular matter falls)

(c) 나의 임명 전 2년 안에 내가 로비를 했던 행정 기관에 구직을 하거나 취업을 받아들이는 행위(seek or accept employment with any executive agency that I lobbied within the 2 years before the date of my appointment)

"4. **회전문 금지 - 정부를 떠나는 임명인(revolving door ban - appointees leaving government)**. 내가 정부를 떠날 즈음에,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7조제(c)항에 규정된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직자와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퇴직 후 취업제한에 해당된다면, 나는 퇴직 후 2년 동안 그러한 제한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If, upon my departure from the Government, I am covered by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n communicating with employees of my former executive agency set forth in section 207(c) of title 18, Unite States Code, I agree that I will abide by those restrictions for a period of 2 years following the end of my appointment)

"5. **회전문 금지 - 로비를 하기 위해 정부를 떠나는 임명인(revolving door ban - appointees leaving government to lobby)**. 제4호의 제한 준수에 추가하여, 나는 정부를 떠날 즈음, 행정부의 잔여기간 동안에 해당 행정부 공직자 또는 비경력 고위공직 임명인에 로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in addition to abiding by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4, I also agree, upon leaving Government service, not to lobby any covered executive branch official or non-career Senior Executive Service appointee for the reminder of the administration)

"6. **채용 자격 약속(employment qualification commitment)**. 내가 내리는 채용이나 그밖에 고용 결정이 지원자의 자격, 능력 그리고 경험에 근거할 것에 동의한다.(I agree that any hiring or other employment decisions I make will be based on the candidate's qualifications, competence, and experience)

"7. **집행 동의(assent to enforcement)**. 나는 2009. 1.21. 대통령이 제정·공포한 '행정부 공직자 윤리의무'라고 명명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읽어본 바, 이 행정명령이 앞의 의무에 적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한다.(I acknowledge that the Executive Order entitled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issued by the President on January 21, 2009, which I have read before signing this document, defines certain of the terms applicable to the foregoing obligations and set forth the methods for enforcing them)

나는 이 협정·계약의 일부로 그리고 내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 행정명령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 서약의 조건을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이유로 내가 준수해야 할 법률상 또는 그밖에 합법적 제한에 추가하는 것을 이해한다.(I expressly accept the provisions of that Executive Order as a part of this agreement and as binding on me. I understand that the terms of this pledge are in addition to any statutory or other legal restrictions applicable to me by virtue of Federal Government service)

제2조. 정의. 여기와 이 명령의 제1조에서 규정된 서약서에 사용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a) **'행정기관(Executive agency)'**은 미연방법 제5편의 제1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각 행정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한다. 이 명령의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은 미합중국 우편서비스 및 우편규제위원회(Postal service and Postal Regulatory Commission)를 포함하지만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을 제외한다.

(b) **'임명인(appointee)'**은 고위공직(또는 다른 고위공직 체계)의 모든 상근, 비경력직으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인,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비밀 또는 정책결정의 특성을 이유로 경력직에서 제외되는 직위에 임명된 임명인(유사한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보수표 C 및 다른 직위)을

포함한다. 고위 외무직 또는 군장교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c) **'선물(gift)'**

(1) 미연방규정 제5편 제2635.203(b)조에 규정된 정의를 포함한다.

(2) 미연방규정 제5편 제2635.203(f)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간접적으로 요청하거나 수령한 선물도 포함한다.

(3) 미연방규정 제5편 제2635.204(b), (c), (e)(1)와 (3) 및 (j)-(l)에 의하여 제외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d) **'해당 행정부 공직자(covered executive branch official)'와 '로비스트(lobbyist)'**는 미연방법 제2편 제1602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른다.

(e) **'등록된 로비스트 또는 로비단체(registered lobbyist or lobbying organization)'**는 미연방법 제2편 제1603(a)조에 따른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로비스트나 단체를 의미하며, 그러한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등록된 로비스트'는 거기에서 명시된 각각의 로비스트를 포함한다.

(f) **'로비(lobby)'와 '로비를 한(lobbied)'**이라 함은 등록된 로비스트로 활동하거나 활동해왔음을 의미한다.

(g) **'특정 사안(particular matter)'**이라 함은 미연방법 제18편의 제207조 및 미연방규정 제5편 제2635.402(b)(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h) **'특정 당사자와 관련된 특정 사안(particular matter involving specific parties)'**은 미연방규정 제5편 제2641.201(h)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되, 의사소통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특정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만남 또는 그밖에 행사에 참석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이전 사용자 또는 의뢰인과의 만남이나 의사소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이전 사용자(former employer)'**이라 함은 임명인이 임명되기 이전 2년 동안에 종사자, 임원, 이사, 신탁관리자 또는 무한 책임 파트너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전 사용자'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행정기관이나 그밖에 단체, 컬럼비아 특별자치구, 원주민 자치구, 미국 영토나 점유지의 행정기관이나 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j) **'이전 의뢰인(former client)'**이라 함은 임명인이 임명되기 이전 2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대리인, 변호인 또는 자문가로 활동한 사람을 의미하며, 임명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연설이나 유사한 출연에만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임명인이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임명인의 이전 사용자의 의뢰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k) **'나의 이전 사용자 또는 이전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된(directly and substantially related to my former employer or former clients)'**이란 의미는 임명인의 이전 사용자 또는 이전 의뢰인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l) **'참여(participate)'**라 함은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m) **'퇴직 후 취업제한(post-employment restrictions)'**이라 함은 미연방법 제18편 제207(c)조의 규정과 예외 그리고 시행 규정을 포함한다.

(n) **'정부 공직자(Government official)'**는 행정부의 종사자를 말한다.

(o) **'정부(Administration)'**라 함은 이 명령에 해당되는 임명인의 임명 시기에 활동하는 현재 대통령의 모든 재임 기간을 의미한다.

(p) **'서약(pledge)'**이라 함은 이 명령 제1조에 규정된 윤리 서약을 의미한다.

(q) 법률과 규칙의 규정에 대한 모든 참조는 2009년 1월 20일 현재 유효한 규정들을 의미한다.

제3조. 준수 면제(waiver).

(a) 관리예산처장 또는 그/그녀의 지명자가 (i) 글자그대로 제약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제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ii) 준수면제를 교부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서면으로 보증한다면, 관리예산처장 또는 그/그녀의 지명자는 대통령의 고문 또는 그/그녀의 지명자와 협의하여, 현재 또는 퇴직 임명인에게 임명인 자신이 서명한 서약에 기재된 제약에 대한 준수면제를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다. 준수면제는 그 보증서에 관리예산처장 또는 그/그녀의 지명자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된다.(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his or her designee, in consultation with the Counsel to the President or his or her designee, may grant to any current or former appointee a written waiver of any restrictions contained I the pledge signed by such appointee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his or her designee, certifies in writing (i) that the literal application of the restriction is inconsistent 재소 the purposes of the restriction, or (ii) that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to grant the waiver. A waiver shall take effect when the certification is signed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his or her designee.)

(b)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국가 안보와 경제와 관련된 위급한 상황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행정 기관과의 최소 허용 접촉은 이 서약 제3호에 기재된 제약에 대한 준수면제의 이유가 될 수 있다.(the public interest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exigent circumstances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or to the economy. De minimis contact with an executive agency shall be cause for a waiver of the restrictions contained in paragraph 3 of the pledge)

4조. 운영(administration).

(a)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윤리청장과 협의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규칙이나 절차(그 기관의 지정된 윤리담당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그 기관의 일

반적인 윤리 규칙과 절차에 가능한 일치하는)를 제정하여, 각 기관의 모든 임명인이 취임하거나 임명인이 되는 경우,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서약서 제3호에 대한 준수가 그 임명인의 직무 개시 전 대통령의 고문이나 그/그녀의 지명자가 승인하고 각 임명인에게 적용될 서면 윤리 협약·계약서에서 다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서약에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배우자 취업문제와 그밖에 충돌은 임명인과의 윤리 협약·계약서에서 다루어지며, 그러한 협약·계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윤리 상담을 통하여 다루어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명령이 그 기관에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b)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관련하여, 제4조제(a)항에 규정된 임무는 대통령 고문 또는 그/그녀의 지정인의 책임이 된다.

(c) 정부윤리청장은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1) 각 기관이 제4조제(a)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 명령의 서약서와 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2)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고문 그리고 그 지명자와 협의하여, 적절하다면, 서약의 적용에 관하여 현재 또는 퇴직 임명인에게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서 각 기관의 지정 윤리담당관을 지원한다.

(3)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고문 그리고 그 지명자와 협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과 절차를 채택한다.

(i) 앞서 말한 책임을 이행

(ii) 모든 행정부 공직자에게 서약의 제1조에 규정된 로비스트 선물 금지를 적용

(iii) 로비스트에 의한 선물금지의 목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하여 로비스트 선물 금지의 제한적 예외를 승인

(iv) 어떠한 사람도 미연방규정 제5편 제2635.205조에 규정된 것처럼 적절하게 선물을 처분하였다면, 로비스트 선물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함

(v) 정부 공직자의 공식적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민간 사업체에 향후 취업을 협의하는 것에 참여하는 정부 공직자를 위한 기존의 규칙과 절차들이 정부 프로그램과 운영의 청렴성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vi) 인사관리처장과 협의하여 모든 행정부 공직자가 서약 제6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보장.

(4) 관리예산처장과 협의하여, 행정부 정부 조달 로비 공개를 규율 하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들에 대한 완전한 준수가 달성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정부 조달 로비 및 로비에 대한 대통령의 인가의 공개를 가능한 확장하고, 행정부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입법에 대한 추천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보고한다.

(5) 서약과 이 명령의 운영에 대한 연간 공개 보고서를 제출한다.

(d) 정부윤리청장은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 고문 그리고 인사관리처장과 그 지명자들과 협의하여, 대통령에 서약 제5호의 회전문 금지가 조달 과정에 관련된 모든 행정부 공직자에 가능한 완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보고하여, 그들이 공직을 떠난 후, 2년 동안 그들이 지난 2년 간 담당한 업무에 따른 정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직자도 로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행정부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입법을 위한 추천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e) 임명인이 서명한 모든 서약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준수면제 증명서는 그 임명인의 기관장에 제출되어 그의 공식적 개인 폴더 또는 이와 동등한 폴더에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5조. 집행(enforcement).

(a) 여기 규정된 서약의 계약, 신탁 그리고 윤리적 약속은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이 조에 따라 미합중국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피해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확인 판결, 금지 명령 또는 금전적 구제(손해배상)를 위한 사법적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금지 절차를 포함한다.(the contractual, fiduciary and ethical commitments in the pledge provided for herein are solely enforceable by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is section by any legally available means, including debarment proceedings within any affected executive agency or judicial civil proceedings for declaratory, injunctive, or monetary relief)

(b) 퇴직 임명인의 소속기관에서 정당하게 지정된 권한에 의하여 그가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통보 받은 퇴직 임명인은 서약에서 언급한 기간에 더하여 향후 5년의 기간까지 그 기관의 공직자에게 로비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윤리청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의 장은 이 명령의 위반 가능성과 제(c)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위한 이첩, 사실인정과 조사를 규정하는 절차(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를 수립한다.(any former appointee who is determined, after notice and hearing, by the duly designated authority within any agency, to have violated his or her pledge may be barred from lobbying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at agency for up to 5 years in addition to the time period covered by the pledge. the head of every executive agency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establish procedures to implement this subsection, which procedures shall include(but not be limited to) providing for fact-finding and investigation of possible violations of this order and for referrals to the Attorney General for his or her consideration pursuant to subsection(c))

(c) 법무부 장관이나 그/그녀의 지명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서명된 서약의 위반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조사를 수행하

는 것이 적절한 관련 연방조사당국에 그러한 조사를 요청하고(upon receiv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possible breach of any commitment in a signed pledge, to request any appropriate Federal investigative authority to conduct such investigations as may be appropriate)

(2) 약속의 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행할 것으로 또는 지속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지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안을 심리하는 미합중국 지방법원의 관할로 퇴직 공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개시한다.(upon determining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believe that a breach of a commitment has occurred or will occur or continue, if not enjoined, to commence a civil action against the former employe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with jurisdiction to consider the matter)

(d) 그러한 민사 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그 지명인은 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in any such civil action, the Attorney General or his or her designee is authorized to request any and all relief authorized by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퇴직 공직자가 서명했던 서약의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미래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적절하다면 그러한 임시적 제한명령과 사전적 또는 영구적인 명령(such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and preliminary and permanent injunctions as may be appropriate to restrain future, recurring, or continuing conduct by the former employee in breach of the commitments in the pledge he or she signed)

(2) 퇴직 공직자가 서명한 서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퇴직 공직자가 수령한 모든 금전이나 가치가 있는 것에 관한 회계와 지불을 미합중국 재무성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신탁 확립(establishment of a constructive trust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requiring an accounting and payment to the United States Treasury of

all money and other things of value received by, or payable to, the former employee arising out of any breach or attempted breach of the pledge signed by the former employee)

6조.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a) 이전의 어떠한 행정명령도 이 명령에 의하여 폐지되지 아니한다. 이 명령이 이전 명령과 부합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 명령이 적용된다.

(b) 이 명령의 규정 또는 그 규정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명령의 나머지 부분과 그 규정의 다른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c) 이 명령의 어떠한 것도 다음의 사항을 훼손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법률에 따라 부처, 기관 또는 그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

(2) 예산, 행정 또는 입법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처장의 기능

(d) 이 명령은 관계 법률에 부합하게 시행되며, 예산 유효성(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의 대상이 된다.

(e) 이 명령은 미합중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리고 공직자, 대리인, 그밖에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at law or in equity) 실질적 또는 절차적으로 집행 가능한 어떠한 권리나 혜택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f) 이 명령에 규정된 정의들은 이 명령의 용어에만 적용되며, 달리 기존의 법률을 훼손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지 않는다.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COIB)
(Conflict of Interest Board of The City of New York)

뉴욕시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public servants)가 사적이익(personal benefit)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외견상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 자신, 직계존비속 또는 공직자와 재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익을 위하여 공직을 사용하는 경우

○ 뉴욕시와 관계없는 목적을 위해 뉴욕시의 자원을 사용, 뉴욕시의 비밀정보를 민간인 또는 회사에 유출하는 경우

○ 뉴욕시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거나 공무 수행의 대가로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받는 경우

○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또는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뉴욕시와 사업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부업을 하거나(take a second job),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

○ 상관 또는 부하와 사적인 재정적 관계(private financial relationship)를 맺는 경우

○ 부하에게 정치 운동을 하도록 하거나 정치헌금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뉴욕시와 관계있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해당 직위에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기업과 향후 취업을 협의하는 경우

○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 기업을 대리하여 전 기관과 접촉을 하거나, 재직 중에 직접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처리했던 사안에 대하여 퇴직 후에도 취급하는 경우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 요약
(New York Conflict of Interest Law)

1. 지위 · 권한 남용(Misuse of Office) : 공직자는 자신, 가족, 사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정적 이익을 위하여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자원 남용(Misuse of City Resources) : 공직자는 뉴욕시의 로고가 인쇄된 관용 편지지(City letterhead), 인력(personnel), 장비, 보급품 또는 자원을 뉴욕시와 관계없는 곳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이거나 사사로운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선물(Gifts) : 공직자는 뉴욕시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5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금품 · 급여(Gratuities) : 공직자는 자신의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뉴욕시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 아무 것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채용청탁(Seeking other Jobs) :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직장을 부탁하거나 얻어서는 아니 된다.

6. 부업(Moonlighting) : 공직자는 뉴욕시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거나 뉴욕시로부터 허가 · 인가 · 교부 · 수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과 함께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소유지분(Owning Business) : 공직자는 뉴욕시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거나 뉴욕시로부터 허가·인가·교부·수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업 또는 기업의 일부라도 소유해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 동거인, 자녀 어느 누구도 위 경우의 사업 또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8.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 공직자는 뉴욕시를 떠난 후에라도, 뉴욕시의 비밀정보를 유출하거나 뉴욕시와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뉴욕시와 접촉(Appearance Before the City) : 공직자는 뉴욕시와 관련된

문제로 뉴욕시 소속 기관과 접촉을 하거나 아무데서나 대리를 한 대가로 뉴욕시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0. 변호사와 전문가(Lawyers and Experts) : 공직자는 뉴욕시가 수행하거나 뉴욕시에 대항해서 수행되는 소송에서 뉴욕시의 이익에 반하는 변호사나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1. 부정 임용 · 승진(Buying Office or Promotion) : 공직자는 뉴욕시 공직자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대가로, 또는 승진이나 급여 인상을 이유로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것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2. 부하와 거래 금지(Business with Subordinates) : 공직자는 부하나 상급자와 어떠한 사업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3. 부하에 대한 정치 청탁(Political Solicitation of Subordinates) : 공직자는 직간접적으로 부하에게 정치헌금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정치활동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4. 정치활동 강요(Coercive Political Activity) : 공직자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어떠한 정치활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를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15. 정치청탁 강요(Coercive Political Solicitation) : 공직자는 정치헌금을 받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누구든지 위협하거나 그에게 어떤 것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6. 고위공직자의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ies by High-Level Officials) : 부시장(deputy mayor), 뉴욕시 소속 기관장(agency head), 부기관장(deputy or assistant agency head), 수석 보좌관(chief of staff), 국장(director), 이사 또는 위원(member of board or commission)은 뉴욕시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뉴욕시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뉴욕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의 선거운동에 기여하도록 어느 누구에게라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이러한 임명직 공무원은 정당의 어떠한 지위도 맡아서는 아니 된다.

17. 퇴직 후 1년간 활동금지(Post-Employment One-Year Ban) : 뉴욕시를 떠난 후 1년 동안, 전직 공직자는 자신이 근무했던 소속 기관과 접촉한 대가로 뉴욕시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8.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1년간 활동금지(Post-Employment One-Year Ban for High-Level Officials) : 선출직 공무원, 부시장, 뉴욕시계획위원회 의장(chair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예산관리처장(heads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법무국장(Law Department), 행정국장(Department of Citywide Administrative Services), 재정국장(Department of Finance), 조사국장(Department of Investigation)은 뉴욕시를 떠난 후 1년 동안, 뉴욕시 정부의 전 부서와 접촉한 대가로 뉴욕시를 포함해서 너느 누구로부터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9. 퇴직 후 특정 업무 취급 금지(Post-Employment Particular Matter Bar) : 뉴욕시를 떠난 후, 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처리했던 특정 업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20. 부정 행동(Improper Conduct) : 공직자는 뉴욕시에서 부여받은 임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충돌방지위원회가 규정한 어떤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어떤 지위나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21. 다른 공직자의 유인(Inducement of Others) :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이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위반하도록 시도하거나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22. 신고 및 제척(Disclosure and Recusal) : 공직자가 이 윤리강령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에 직면하자 마자 바로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충돌 내용을 신고하고 제척, 재산 매각 또는 그밖에 조치 등 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23. 자원봉사(Volunteer Activities) :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에 자원봉사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으며, 비영리단체는 그가 속한 뉴욕시 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소속 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가 뉴욕시와 비영리기관 사이의 사업관계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뉴욕시와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관리자나 국장이 될 수 있다.

뉴욕시 헌장 제68장

(New York City Charter Chapter 68, Conflict of Interest)

제2600조. 전문(Preamble) 공공 업무는 공공 신뢰다(Public service is a public trust). 공직자의 행위에 관한 이러한 금지는 뉴욕시의 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의 청렴성을 증진시키고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다.

제2601조. 정의(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뉴욕시에 자문 또는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committee, council, board or similar entity)를 말하며, 뉴욕시를 대리하여 최종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하여 어떠한 최종 조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거나, 법률에 따라 부여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2. “기관(agency)"은 뉴욕시, 자치구(county), 독립구(borough), 사무소(office), 지위(position), 행정기관(administration), 부서(department), 과(division), 국(bureau), 이사회(board), 위원회(commission), 공사(authority), 공기업(corporation), 자문단(advisory), 위원회(committee), 그밖에 정부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뉴욕시 금고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심의회(council), 선출직 사무소(office of each elected official),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지역학교위원회(community school boards), 지역위원회(community boards), 금융서비스공사(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 보건의료원(health and hospital corporation), 공영개발공사(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 뉴욕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은 기관에 포함되고, 법원(court), 공공도서관을 유지·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구, 박물관, 식물원, 수목원(arboretum), 묘지(tomb), 기념관(memorial building), 수족관(aquarium), 동물원 또는 유사한 시설은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공직자가 근무하는 기관(agency served by a public servant)"은 유급 공직자의 경우, 그 유급 공직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무급 공직자의 경우, 임명된 무급 공직자가 그 단체에 보고하거나 그 무급 공직자를 임명한 공직자의 기관이나 공직자의 관할 하에 있다면, 그 무급 공직자를 임명하는 공직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 이러한 경우에 무급 공직자가 근무하는 단체가 무급 공직자가 임명된 단체이다.

4. “접촉(appear)"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적 행정행위(ministerial matter)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공직자와 “관계되는(associated)" 사람과 기업은 배우자, 동거인(domestic partner),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sibling); 공직자와 사업관계(business) 또는 기타 재정적 관계(financial relationship)를 가진 사람; 공직자가 현재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present or potential interest)를 가지는 각각의 기업을 포함한다.

6. "백지신탁(blind trust)“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동거인, 미성년자(unemancipated child)가 모르는 수익권(beneficial interest), 재산권(holdings)과 소득의 원천(source of income)의 신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탁은 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그 신탁은 독립 당국, 수탁인의 자유재량 및 신탁의 소득 원천과 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비밀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7. "위원회(board)“는 이 장에 의하여 설립된 이해충돌방지위원회(the conflict of interest board)를 의미한다.

8. "뉴욕시와 관련되는 직무(business dealing with the city)"는 물품(goods), 용역(services) 또는 재산(property)의 판매(sale), 구매(purchase), 임대차(rental), 처분(disposition) 또는 교환(exchange) 그리고 허가(license), 승인(permit), 교부(grant) 또는 보조(benefit) 그리고 앞의 사항의 이행(performance)과 소송(litigation)과 관련된 업무(transaction)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공직자의 주거 또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적 행정행위와 관련된 업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9. "도시(city)“는 뉴욕시와 뉴욕시의 기관(agency of the city)을 포함한다.

10. "선출직 공직자(elected official)"는 시장, 감사원장(comptroller), 부시장(public

advocate, 옴부즈만 역할 수행), 독립구청장(borough president) 또는 지방의회 의원(member of the council)과 같은 공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1. "기업(firm)은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합자회사(joint venture), 합명회사(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공영기업(public benefit corporation), 지역개발공사(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또는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은 그 밖의 유사한 단체(entity)를 제외한다.

12. "이해관계(interest)"는 기업에서 소유 지분(ownership interest) 또는 지위(position)를 의미한다.

13. "법률(law)"은 주와 지방 법률(state and local law), 이 헌장(this charter)과 이것에 따라 제정된 규정(rules)을 의미한다.

14. "위원(member)“는 위원회의 위원을 의미한다.

15. "기속적 행정행위(ministerial matter)"는 뉴욕시에 의한 허가(license), 승인(permit) 그밖에 면허(permission)의 발행을 포함한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를 의미한다. 그것은 규정된 방법(prescribed manner)으로 처리되지만,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재량(substantial personal discretion)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16. "소유 지분(ownership interest)"은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미성년 자녀가 어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interest)이다. 그 지분은 기업의 자본 중 5% 이상 또는 현금이나 다른 투자 형태로 2만5천달러를 초과하고, 그 기업의 부채(indebtedness) 중에서 5% 또는 2만5천달러를 초과한다. 그리고 공직자, 그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미성년 자녀가 그 기업의 경영상의 관리 또는 책임(managerial control or responsibility)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하여 더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된다. 다만, 연금제도(pension plan), 이연보상계획(deferred compensation plan) 또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 상호부금), 공직자와 그 배우자, 동거인 또는 미성년 자녀가 통제할 수 없는 투자금액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백지신탁인 경우도 소유지분에 포함

되지 아니 한다.

17. "특정 사안(particular matter)"은 특정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과 관련된 판결 또는 보조금, 결정,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에 한정된 계약, 조사, 고발, 기소, 체포 그밖에 처분과 특정 사안을 유발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사건, 절차, 신청, 요청을 의미한다.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법률 또는 조례의 제안, 심사 또는 제정이나 지역제 조례의 예산이나 조문(the budget or text of the zoning resolution)에 관한 조치는 특정 사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18. “지위(position)"는 기업의 소유지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변호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자문위원(consultant), 임원, 이사, 수탁인, 종업원 또는 관리 지위와 같은 기업에서의 지위를 의미한다.

19. "공직자(public servant)"는 공직자가 아닌 자문위원회의 무급 위원(unpaid members_을 제외하고, 지역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officials), 공무원(officers) 그리고 근로자(employees)를 의미한다.

20.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는 뉴욕시와 기본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자를 의미한다.

21. a. “배우자(spouse)"는 공직자와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아니한 남편 또는 부인을 의미한다.

    b. "동거인(domestic partner)"은 행정법규(administrative code) 제3-240조에 따라 등록된 동거관계, 1989년 8월 7일에 시행된 제123호 행정명령에 따라 등록된 동거관계, 1993년 1월 7일에 시행된 제48호 행정명령에 따라 등록된 동거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2. “감독 공직자(supervisory official)"는 공직자의 직무를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권한(authority)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23. “미성년 자녀(unemancipated child)"는 공직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와 의붓 자녀를 의미한다.

제2602조. 이해충돌방지위원회(conflict of interest board)

a. 지방의회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둔다. 시장은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b. 위원들은 그들의 독립성, 청렴성, 시민의 헌신(civic commitment)과 고도의 윤리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위원들도 공직이나 선출직에 출마해서는 아니 되고, 어느 관할에서도 공직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당직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뉴욕시를 상대로 하는 로비스트로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c. 각각의 위원은 6년 동안 근무한다. 처음 임명되는 3명의 임기의 경우, 한 위원은 1990. 3.31에 퇴임할 수 있도록 임명되어야 하고, 한 위원은 1992. 3.31에 퇴임할 수 있도록 임명되어야 하고, 또 한 위원은 1994. 3.31에 퇴임할 수 있도록 임명되어야 하고, 나머지 두명 중에 한 위원은 1992. 3.31에 퇴임할 수 있도록 임명하고, 나머지 한 위원은 1994. 3.31에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임명되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최소한 60일 전에 후임 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재직 중인 위원의 임기가 1년 연장되고, 그 후임자의 임기는 1년이 단축된다. 만약 지방의회가 시장이 제출한 추천서를 45일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 추천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어느 위원도 연임 이상으로 재직할 수 없다. 시장은 처음 지명을 1989년 2월 1일에 해야되고, 나중의 2명은 1990년 3월 1일에 지명되어야 한다.

d. 위원들은 지방의회의 조언과 동의를 받는 위원회에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받는 최고액과 같은 보수(per diem compensation)를 일당제로 받는데,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일(calendar day) 단위로 보수를 받는다.

e. 위원회의 위원은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60일 안에 시장은 지방의회에 추천을 해야 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만약 지방의회가 45일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그 지명은 확정된 것으로 처리된다.

f. 위원들은 직무태만(substantial neglect of duty), 중대한 비리행위(gross

misconduct in office), 직무수행에 관한 무능력과 이 조의 위반으로 서면경고와 소명을 거친 후에 시장에 의하여 경질될 수 있다.

g.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밖에 공무원, 종사자와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변호사의 권한은 서면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위원회의 변호사, 공무원, 종사자 또는 컨설턴트는 조언 의견을 발령하거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소환장을 발령하거나, 이 장에 대한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벌칙을 권고 또는 부과할 수는 없다. 위원회는 조언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h. 위원회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개최되어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개최된다. 위원회의 두 위원이 정족수(quorum)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모든 조치는 최소한 두 명의 위원의 찬성으로 행해진다.

제2603조. 권한 및 의무(powers and obligations)

a. **규칙(rules).** 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고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는 목표와 부합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b. **훈련과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1. 위원회는 공직자에게 이 장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알려 주고 이해를 도와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관련 해석 규칙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공직자의 교육을 위하여 상설 프로그램(ongoing program)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

2. (a) 위원회는 이 장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공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개인이 공직자가 된 이후 10일 이내에, 이 장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서약서(written statement)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서약서는 인사철에 유지되어야 하고, 해당 공직자는 그 서약서를

받아서 읽어보고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010.11. 2. 발효)

(b) 각각의 공직자는 공직자가 된 이후 6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공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적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년마다, 각 기관은 위원회와 시장의 운영국(mayor's office of operation)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각 기관은 소속 공직자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력해야 하고, 훈련과 일정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필요한 훈련은 위원회가 개발한 자동 또는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원회 또는 위원회와 협력 하에 각 기관의 인사부서가 직접 제공할 수 있다.

(c) 공직자가 이 조문에 따른 훈련을 받지 않거나, 이 장의 복사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 조문에 의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관이 인사파일에 규정된 서약서 또는 완료된 훈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가 이 장을 준수해야 하거나 각 기관이 이 규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c. 조언 의견(advisory opinions).

1.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모든 사안과 관련된 조언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조언 의견은 공직자와 그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직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 요청은 위원회가 규정한 형식에 요청한 사람이 서명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견은 요청서에 제시된 사실에 근거하여 서면의 서명된 문서로 제공된다.

2. 조언 의견은 공직자에 의하여 제기된 장래의 행위 또는 처신에 관련해서만 발령되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이 의견 요청에서 생략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조언 의견을 합리적으로 준수한 것 때문에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벌칙이나 징계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견을 재고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한 후에 예전의 발행된 조언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수정된 조언 의견은 공직자의 장래의 행위 또는 처신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3. 위원회는 공직자 또는 기타 관련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삭제를 한 후에 위원회의 조언 의견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언 의견은 주제별로 그리고 이 헌장의 조문과 규칙 번호에 의한 상호 참조로 색인화 되어야 하며, 그 색인은 연도별 및 누계로 관리되어야 한다.

4. 늦어도 1990년 9월 1일까지, 위원회는 지금까지 유효한 헌장의 제68장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이 장의 해석으로서의 조언 의견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해야 하는데, 그 것은 위원회가 이 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해석 가치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결정한다.

5.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는 임용예정 공직자와 전직 공직자(prospective and former public servant)를 포함하고, 감독 공직자는 임용예정 공직자를 감독하는 감독 공직자와 전직 공직자를 감독하는 감독 공직자를 포함한다.

d. 재산 신고(financial disclosure).

1. 주와 지방의 법률에 따라 공직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재산 신고서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신고서에 대하여 재산신고와 관련된 적용 법률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해야 하고, 이 장의 규정의 준수 또는 위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뉴욕시와 모든 공직자가 재산신고 관련 법률 규정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신고서의 제출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 신고(complaints).

1. 위원회는 이 장의 위반혐의 신고(complaints alleging violations)를 접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서면 신고서를 접수할 때마다, 다음을 할 수 있다.

   (a) 위원회가 더 이상의 추후 조치(further action)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b) 위원회가 신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조사국장에게 이첩할 수 있다.

(c) 공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다는 최초의 결정을 할 수 있다.

(d) 만약 위원회가 그 위반 혐의가 사소하거나 공직자에 대한 관련 징계 조치가 미결인 경우, 공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장의 위반 혐의를 이첩할 수 있다.

3.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는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다.

f. 조사(investigations).

1.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위원회의 책무와 관련되는 어떤 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조사국(department of investigation)에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진다. 조사국장은 합리적인 시간 안에 그 사안을 조사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비밀 조사결과 보고서(confidential written report of factual findings)를 위원회에 제출 한다.

2. 조사국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든 없든, 이 장의 위반에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비밀 보고를 위원회에 할 수 있다.

g. 위원회에 사안 이첩(referral of matters within the board's jurisdiction).

1.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의 감독 공직자는 그 공직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처신에 관하여 심사를 요청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이 조의 제e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고 처리된다.

2. 기관이 이 장의 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받거나, 이 장의 위반이 발생했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기관은 그 문제를 위원회에 이첩한다. 그러한 이첩은 이 조의 제e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고 처리된다.

3.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는 전직 공직자를 포함하고, 감독 공직자는 전직 공직자를 감독했던 감독 공직자를 포함한다.

h. 청문(hearings).

1. 만약 위원회가 신고, 조사 또는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기초하여, 이 장의 규정을 공직자가 위반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서(determination in writing)를 공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는 위원회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결정한 사실에 대한 내용과 위반한 법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직자에게 위원회의 처리절차 규정을 알려야 한다. 그러한 공직자는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답변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그 공직자의 소명을 접수한 후에, 위원회는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위원회는 그 사안을 기각하고 공직자에게 서면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공직자의 소명을 심사한 후에, 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만약 공직자가 주의 법률이나 징계 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의 대상인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사안을 이첩해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기관에 이첩된 때에는 그 기관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3. 청문이나 청문의 기회를 가진 후에, 위원회는 공직자가 이 장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경우, 그 공직자의 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 소속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기관장인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에,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전현직 소속기관장에게 처벌을 권고하거나, 기관장인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처벌을 권고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고용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적절한 처벌을 권고할 수 있다. 그 명령서에는 사실에 대한 인정결과(findings of fact)와 법률의 적용 결과(conclusion of law)를 포함한다. 처벌이 권고된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지방의회는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위원회의 청문은 공직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된다. 명령서, 위원회의 사실인정 및 결과(order and the board's findings and conclusions)는 공개된다.

5. 위원회는 이 장을 위반한 모든 사람의 성명, 근무처 및 명령 일자를 분류한 색인을 작성·유지해야 한다.

6. 임명권자(appointing officer)에 의한 해고 또는 징계 처분이 위원회가 그런 공직자의 처신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임명권자가 그런 공직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이 조에 규정한 어느 것도 공직자의 임명권자가 그런 공직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에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7.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란 용어(term public servant)는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다.

h.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위원회는 이 헌장의 제1106조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시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위원회의 절차와 활동에 대한 요약,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술, 신고와 접수받은 이첩 및 처분결과의 통계치 및 평가, 위원회의 입법적·행정적 권고사항, 위원회의 규칙, 연간 의견과 명령의 색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j. 개정(revision).

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을 심사해서, 지방의회에 개정하거나 추가해야할 사항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심사와 권고는 5년마다 최소한 1회 정도 진행되어야 한다.

k.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기록물, 보고서, 비망록과 서류철은 비밀이며 공개적인 조사대상(public scrutiny)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04조. 금지된 이해관계 및 행위(prohibited interest and conduct)

a. 뉴욕시의 업무 행위에 참여하는 기업에서의 금지된 이해관계(prohibited interest in firms engaged in business dealing with the city)

1. 아래의 제3항에서 규정된 것은 제외

   (a)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공직자가 알기에,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업무 행위(business dealings)에 참여하는 기업에 이해관계(지분 또는 주식)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조의 제b항제1호에 따라, 지역위원회(community board)의 임명된 위원은 지역 위원회 또는 자치구 위원회(borough board)와 어느 사안에 관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b) 정규직 종사자는 어느 누구라도 뉴욕시의 업무 행위에 참여하는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이해관계가 위원회의 규칙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상장기업(publicly traded)인 경우는 제외된다.

2. 상장기업의 이해관계를 획득하거나 허용하기 전에,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기업이 그 기관의 업무 행위에 참여하는지의 여부 결정에 관하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 결정은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공되고, 이 항의 제1항에서 금지한 사항과 관련하여 뉴욕시와 공직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3. 공직자가 되기 전의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유지분(ownership interest)을 가지는 개인,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1호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금지되는 업무 행위를 알지 못하다가 추후에 업무 행위를 알게 되는 공직자, 공직자의 이해관계 획득이 추후에 제1호에 의하여 소유지분이 금지되는 업무 행위를 시작하려는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법률의 시행으로(by operation of law)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유지분을 획득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되기 전이든 아니면 이미 공직자가 되었든, 그 업무 행위를 알게 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a) 소유지분을 매각(divest)해야 한다.

   (b) 금지되는 소유지분을 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개인 또는 공직자가 위원회에 이 항의 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유지된다면, 공직자의 적절한 공무(official duties) 수행과 양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 내용을 표시한 명령서를 발급한다.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공직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그 이해관계가 뉴욕시의 처분에 따라 영향 받는 방식(manner), 그리고 일반 시민에 비치는 충돌의 외견(appearance of conflict)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위원회가 충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매각(divestiture) 또는 그러한 이해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명령해야 하는데, 공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5.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은 뉴욕시 정부의 행정부이다(executive branch)

   (b) 부시장, 예산관리처장, 행정국장, 법무국장(corporation counsel), 재정국장, 조사국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뉴욕시 정부의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광역 정책(city-wide policy)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결정(policy discretion)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의 소속기관은 뉴욕시 정부의 행정부이다.

   (c) 예산위원회(board of estimate)의 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지명된 공직자의 소속기관은 예산위원회에 포함된다.

   (d) 지방의회 의원의 소속기관은 뉴욕시 정부의 입법부이다.

6. 제2606조의 제a항과 제b항의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가 뉴욕시와의 그런 업무 행위를 알았어야 한다면(should have known of), 공직자는 뉴욕시와 업무행위를 안 것으로 간주된다(shall be deemed to know of).

b. 금지된 행위(prohibited conduct).

1. 이 조의 제a항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다음을 제외하고 특별히 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로

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a) 선출직의 경우에, 그러한 조치는 금지되지는 않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관계되는 기관인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지방의회 또는 예산위원회의 공식 기록(official records)에 알릴 수 있다.

(b) 지역위원회의 임명 위원의 경우에, 그러한 조치는 금지되지는 않지만, 위원 또는 위원과 관련되는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위원회 또는 자치구 위원회에 관련되는 사안에 표결권을 행사에서는 아니 된다.

(c) 그밖에 모든 공직자의 경우에, 그 이해관계가 1만달러 이하라면 그러한 조치는 금지되지는 않지만, 위원회에 그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2.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업무(business), 처리(transaction) 또는 사적인 채용(private employment)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하는 재정적이거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3.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직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공직자와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을 위하여 재정적 이득, 계약, 허가, 특권 또는 다른 사적이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직무 수행의 결과로 얻었으나 아직 일반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뉴욕시의 재산, 업무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 또는 공직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직간접인 재정적 또는 다른 사익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것은 낭비, 비능률, 부패, 범죄활동이나 이해충돌에 연루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직자가 알거나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 그 공직자가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5.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바와 같은 가치 있는 선물을, 공직자가 알기에 뉴욕시의 업무 행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기에서 규정된 것은 공직자가 가족이나 친목행사(social occasions)에 관례적인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6.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대가를 받고 어떠한 뉴욕시 기관에서 사익(private interest)을 대리해서는 아니 되며, 뉴욕시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사익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정규직 종사자가 아닌 공직자에게는 이 금지사항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에만 적용된다.

7. 어떠한 공직자라도 뉴욕시가 일반 당사자인 소송 또는 뉴욕시 또는 공무 수행 과정 중에 있는 뉴욕시의 공직자가 고소인인 재판이나 소송절차에서 뉴욕시의 이익에 반하는 변호사(attorney) 또는 법률 고문(counsel)로서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호는 재판에 참여할 자격 또는 권한이 결정되기 전에, 소송, 재판,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의 지위 때문에 참여하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에 의하여 고용된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호는 소송, 재판 또는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 또는 권한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것은 법무국장의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규직 종사자가 아닌 공직자에게는 이 금지사항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에만 적용된다.

8.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뉴욕시에 의하거나 뉴욕시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뉴욕시의 이익에 반하는 유급 전문가(paid expert)로서 전문가의 소견(opinion evidence)을 진술해서는 아니 된다. 정규직 종사자가 아닌 공직자에게는 이 금지사항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에만 적용된다.

9.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아니 된다.

   (a) 협박(intimidation), 위협(threats)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ies)에 참여하도록 다른 공직자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시도하는 경우

   (b) 부하 공직자에게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관리하거나 도와주는 것,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의 권유 또는 유세, 공직자의 의무나 책무에 관련이 없는 유사한 행위를 포함한다. 만약 선거운동이 공직자의 의무 또는 책무 내에서의 사안과 관련이 있다면, 여기에 포함된 어느 것도 공직자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그밖에 유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10.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공직자로서 지명, 임명, 선출 그리고 고용되는 것을 대가로 금전 또는 금품을 사람에게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1. 공직자는 직간접적으로 다음을 해서는 아니 된다.

    (a) 불이익에 대한 위협(threat of prejudice), 서열(rank), 보수(compensation) 또는 기타 직업관련 지위 또는 기능에서의 이득을 보장하거나 약속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정치자금의 기부(political assessment, subscription or contribution)를 강요, 유인 또는 요구하는 경우

    (b) 공직자로 지명, 선출, 고용되거나 서열, 보상 또는 직업관련 지위 또는 기능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약속해 하는 경우

    (c) 부하 공직자로 하여금 정치자금을 지불하도록 강요, 유인 또는 요구하는 경우

12.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하고, 부시장, 기관장, 위원회의 규칙에 의하여 규정된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간접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 호에 규정된 어느 것도 공직자가 공직 후보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를 위하여 연설하거나 선거자금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13.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뉴욕시를 제외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수(compensation)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의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급여(gratuity)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4. 공직자는 자신의 부하직원 또는 상급자인 다른 공직자와 업무 관계 또는 재정적 관계(business or financial relationship)를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15. 선출직, 부시장, 전시 또는 자치구 차원의 선출직, 기관장 또는 위원회의 규칙에 의하여 규정된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타 공직자는 정당의 전국 또는 주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c. 이 조는 다음을 금지하지 아니한다(this section shall not prohibit).

1.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시민의 의무수행을 위하여

뉴욕시 기관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without compensation)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공직자가 시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주택공급(housing), 일반적인 복지 입법(general welfare legislation) 또는 경찰력의 행사 등 이익(benefit) 또는 시설(facility)을 수령하가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3. 공직자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4. 의사, 치과의사, 검안사, 족부의사, 약사, 척추지압사 또는 사회복지법(social services law) 제12편 제5조에 따른 서비스 또는 보급품을 지급하는 자격을 가지고 뉴욕시 재정으로부터 보수 또는 보상을 받는 사람이 전문적인 서비스와 보급품을 사회복지법 제12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사회복지법 제12편에 따른 감사, 심사 또는 기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보급품의 경우에, 뉴욕주의 보건국이 그러한 서비스 또는 보급품을 위한 지불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그들의 공무 수행과 충돌되는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 호에서 어느 것도 뉴욕시에 의한 고용과정에서 공급되어야 하는 서비스 또는 보급품을 위한 사회복지법 제12편에 따라 그런 사람에게 지불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5. 경찰국의 제복근무자가 보안분야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그런 구성원이 경찰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런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경찰국장에 의하여 제정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6. 공직자가 비영리 체제로 운영되면서 뉴욕시와의 업무 행위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 협회 기타 그런 기관에 변호사, 대리인, 중개인, 종사자, 임원, 이사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다음과 같다면,

(a) 그런 공직자가 그러한 업무 행위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b) 뉴욕시 기관에 공직자가 고용되어 있으나 감독, 통제 또는 규제를 받지 않는 뉴욕시 기관과의 업무 행위에 그런 비영리법인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것이 기관장이나 시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제외

(c) 공직자가 뉴욕시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 없는 중에도, 그런 공직자에 의한 그런 활동이 항상 수행되는 경우.

(d) 그런 공직자가 그런 활동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7.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 주택보존개발국의 재산관리소의 종사자, 이 호에 따라 행정관리국의 국장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관리국의 종사자, 그 국의 국장, 부국장, 조국장(assistant commissioner) 또는 동급의 다른 사람 또는 그 국의 후임자가 공매(public auction) 또는 봉함 입찰 불하(sealed bid sale)에서 뉴욕시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또는 구매 또는 뉴욕시 소유의 6 또는 그 이하의 주거단위를 가진 주거용 건물 구입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만약 그런 공직자가 재직 중에 구매하는 뉴욕시의 재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또는 사안에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인 심사에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행정관리국장은 이 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사안과 관련된 행정관리국의 모든 종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8. 공직자가 노동조합원인 경우, 단체협약에 참여하거나 노동조합비(paying union or shop fees or dues)를 내는 공직자, 노동조합원인 부하 직원에게 노동조합 정치행동위원회(union political action committee) 또는 기타 유사 단체에 기부할 것을 권유하는 공직자.

d. 퇴직 후 취업제한(post-employment restrictions).

1. 현직 공직자는 (i) 이 항에 따라 퇴직 후에 취업한 기업에서의 행위가 제한되는 지위에 취업시켜 달라고 요청 또는 협상하거나 취업해서는 아니 되며, (ii) 만약, 현직 공직자가 뉴욕시를 대리해서 특정 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면, 현직 공직자는 뉴욕시와 특정 사안에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에 취업을 요구 또는 협상하거나 취업해서는 아니 된다.

2.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소속기관에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여기에 규정된 어느 것도 퇴직 공직자가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이나 법정에 허용된 출석에 수반되는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소송절차가 소속기관에 근무 중일 때 종료되지 않았다면 퇴직 공직자는 소속기관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도록 예산위원회의 위원이 임명한 공직자가 근무한 기관은 예산위원회에 포함된다.

3. 부시장, 예산관리처장, 행정국장, 법무국장, 재정국장, 조사국장, 도시계위원회 의장을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뉴욕시의 어느 기관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이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입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로 구성되고, 행정부는 옴부즈만(public advocate) 사무실을 포함하여 뉴욕시의 모든 기관으로 구성된다.

4. 공직자로서 근무한 사람은 누구든지 유급이든 무급이든 자신이 공직자로서 결정, 승인, 권고, 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던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동일한 당사자를 위하여 뉴욕시와 접촉하거나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5. 뉴욕시를 떠난 후에, 공직자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공서비스로부터 얻은 비밀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것은 공직자가 알거나 합리적으로 믿기에, 낭비, 비능률, 부패, 범죄 활동 또는 이해충돌과 관련되는 행위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 뉴욕시를 떠난 후에, 기업에 취업을 협상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방, 주 또는 연방기관에 취업 또는 대리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 항에 규정된 어느 것도 전직 공직자가 뉴욕시와 접촉하는 기업과 관계를 맺거나 취업을 하거나, 뉴욕시와의 업무 행위와 관련된 기속적 행정 행위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e. 기업에서 허용되는 취업(allowed positions).

현직자 또는 공직자는 이 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취업을 유지하거나 협상할 수 있다. 만약 기관장이나 관계 기관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은 후에, 위원회가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정하고, 기업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뉴욕시의 목적과 이해에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605조. 보고(reporting).

공직자는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입법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재정상 또는 기타 사익의 성격과 범위를 입법기관의 공식 기록에 공개적으로 보고하지 않고서는, 뉴욕시 입법기관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시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06조. 처벌(penalties).

a. 도급공사(contract work), 업무(business), 판매(sale) 또는 업무처리(transaction)를 포함하는 이 장의 제2604조 또는 제2605조의 위반이 발생한 것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속기관장과 협의 거친 후에, 기관장인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문제의 업무처리를 몰수하고 무효화(forfeit and void)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b. 이 장의 제2604조 또는 2605조의 위반이 발생한 것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속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에, 기관장인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2만5천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임명권자(appointing authority) 또는 공직 또는 고용관계로부터 불이익(penalties), 정직(suspension), 해고(removal)를 하는 법률상 책무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b-1. 이 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규정된 처벌에 추가하여, 위원회는 제2603조의 제h항에 부합하는 규칙에 따른 위반의 결과, 피고(respondent)가 얻은 이득 또는 수혜를 뉴욕시에 환수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c. 이 장의 제2604조 또는 제2605조를 위반한 사람은, 경범죄(misdemeanor)에

처해지고, 거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공직이나 고용관계를 상실한다. 제2604조의 제b항의 제10호를 위반한 사람이 유죄가 인정되면, 뉴욕시에서 영원히 선출, 임명 또는 고용되는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 장의 제2604조의 제a항의 위반으로, 이 항에 따라 유죄로 판결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뉴욕시와의 업무 행위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음이 밝혀져야 한다.

d. 이 조의 제a항, 제b항과 제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04조의 제b항의 제2호의 위반이 위원회의 규칙에 의하여 인정된 행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위반은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607조. 로비스트의 선물(gifts by lobbyists).

행정법률(administrative code) 제3편의 제2장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이 장과 제34장에 따른 이해충돌의 조사와 결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신고, 접수, 조사 그리고 결정되어야 한다.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규칙
(Rules of the Board Conflict of Interest)

뉴욕시 규칙 제53편(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Title 53)

제1장 : 이해충돌(Chapter 1 : Conflict of Interest)

제1-01조. 고액 선물(Valuable Gifts).

(a)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5호의 목적을 위하여, "고액 선물"은 금전(money), 봉사(service), 대출(loan), 여행(travel), 접대(entertainment), 향응(hospitality), 물건(thing) 또는 약속(promise)의 형태로든 또 다른 형태로든, 공직자가 받은 5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선물(gift)을 의미한다. 만약 선물이 12개월 안에 다음의 1개 이상의 상황에서 공직자에게 주어진다면, 공직자가 받은 2개 이상의 선물은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5호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선물로 간주된다. (1) 공직자가 선물을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경우, (2) 공직자가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i) 친족 또는 내연관계(domestic partner), (ii) 같은 회사 또는 자회사(affiliated firms)의 이사(director), 신탁 관리자(trustee) 또는 종사자로부터 받은 경우

(b) 이 조의 제a항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1) "친족(relative)"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sibling) 그리고 조부모; 배우자 또는 내연관계의 부모, 내연관계, 자녀, 형제자매;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내연관계; (2) 만약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회사(subsidiary)이거나 기업들이 공동으로 모기업(parent firm)을 가지고 있거나 각 기업의 보유 지분의 25%를 공동으로 소유한 주주(stakeholder)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들은 "자회사(affiliated)"이다; (3) "기업(firm)", "배우자(spouse)" 그리고 "소유 지분(ownership interest)"은 헌장 제2601조에서 규정한 그러한 용어의 의미를

가진다; (4) "내연 관계(domestic partner)"는 뉴욕시 행정법률 제1-112(2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내연 관계의 의미를 가진다.

(c)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5호의 취지를 위하여, 공직자는 자신이 알기에 뉴욕시와의 거래 행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하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가족 또는 친목행사(social occasions)에 관례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1) 업무 행위(business dealings)에 관계되기 보다는 가족 또는 개인적 관계(family or personal relationship)가 주된 요인(controlling factor)인 것으로 보여 지는 경우

(2) 선물을 받은 공직자가 다음의 외견(appearance)을 가져오거나 자아내지 아니하는 경우

(i) 사익을 위하여 자신의 공직을 사용하는 것

(ii)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특혜(preferential treatment)를 주는 것

(iii) 공직자 자신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independence or impartiality)을 훼손하는 것

(iv)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물이나 호의(gifts or favors)를 수령하는 것

(d)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5호의 취지를 위하여, 공직자는 상(awards), 훈장(plaques)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이 실질적으로 재판매 가치를 가지지 아니한 다면, 공공서비스의 답례로(in recognition of public service) 공개적으로 주어지는 상, 훈장 등을 받을 수 있다.

(e)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5호의 취지를 위하여, 공직자는 다음의 경우에 뉴욕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료 식사나 다과(free meals or refreshments)를 받을 수 있다.

(1) 공직자가 공식적인 이유(official reasons)로 참석한 회의에서 제공되는 경우

(2) 일반적인 가격체계(public price structure)가 없고 개인적인 지불이 불가능한 회사의 식당, 클럽 또는 기타의 환경(setting)에서 제공되는 경우

(3) 공직자가 공식적인 이유로 참석한 회의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시작하여 식당에서 식사 시간 내내 계속되고, 식사 참석을 거절하거나 개인적인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4) 벽지(out-of-the-way location)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주관자(host entity)가 무료 식사 또는 다과를 제공하거나, 대체 시설(alternative facility)을 이용할 수 없거나 개인적인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5) 공직자가 뉴욕시의 이익을 대리하는 상황에 있지 않았더라면 음식과 다과를 사서 먹지 않았을 경우

(f)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5호의 취지를 위하여, 공직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 공직자가 전문적이거나 교육적인 프로그램(professional or educational program)에서 토론자(panelist) 또는 발표자(speaker)로 참석하고 음식과 다과가 모든 토론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음식 또는 다과를 먹을 수 있다.

(2) 공직자가 후원 기관(sponsoring organization)의 초대 손님(guest)으로서 전문적이거나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다.

(3) 예를 들어 주거, 교육, 입법 또는 뉴욕시 정부 행정을 포함하는 행사와 같이, 뉴욕시의 정책으로 뉴욕시가 후원하거나 장려하는 기념식 또는 행사(ceremonies or functions)에 초대 손님이 될 수 있다.

(4) 공직자는 경영계(business), 노동계(labor), 전문 직업군(professions), 매체(news media) 또는 시민, 자선 또는 지역적 특성(civic, charitable or community nature)을 가진 조직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의 공적인 일(public affair)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헌장 제2601조 제8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공직자의 소속기관과의 업무 행위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사안에 관계된 단체로부터 초청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뉴욕시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공직자는 직원인 경우에 소속기관장의, 기관장인 경우에는 부시장에게 사전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서면으로 해당 공직자의 참석을 승인받은 행사 또는 의식(function or occasion)에 초대 손님이 될 수 있다.

(g)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5호의 취지를 위하여, 선출직 공직자 또는 그 선출직 공직자에 의하여 승인 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보좌관인 공직자는 경영계, 노동계, 전문직업군, 매체 또는 시민, 자선 또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조직들의 대표로 구성된 후원 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그 단체가 초청한 경우, 참석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핵심 보좌관(central staff)을 승인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지방의회의 의장(speaker of the council)이다.

(h) (1)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5호의 취지를 위하여, 민간 단체(private entity)로부터 출장관련 경비(travel-related expenses)를 공직자가 수령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공직자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뉴욕시에 준 선물로 간주될 수 있다.

(i) 그 출장의 목적이 뉴욕시를 위한 것이고, 뉴욕시 재정(City funds)에서 지불되는 경우

(ii) 그 출장 준비(travel arrangement)가 그 목적에 알맞은 경우

(iii) 그 출장의 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기간인 경우

(2) 부적절한 행동의 외관(an appearance of impropriety)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는 그러한 출장과 출장경비를 수령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기관장인 경우에는 부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뉴욕시와의 업무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액 선물(valuable gift)"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만약 공직자가 그러한 고액 선물을 받는다면, 그 제공자(donor)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에게 그 고액 선물의 수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그 감사관은 그 선물의 적절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다. 이 조에서 어느 것도 공직자가 형법(criminal law), 뉴욕시 기관 규칙(City agency rules) 또는 시장의 집행명령(Mayoral Executive Orders, 1978년 집행명령 16호 포함)을 포함해서 관련 법령(applicable laws)을 위반하여 행동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시장의 집행명령은, 선물을 수령했든 반환했든 소속기관의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인계하도록 추가적인 조건(additional requirements)을 부여할 수 있다.

(j) 뉴욕시 기관들은 소속 직원의 선물에 관한 규칙을 이 조에 의하여 해석되는

것처럼,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5호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제한적(restrictive)으로 제정하는 것이 장려된다.

(k) (1) 이 조에서 어느 것도 공직자가 뉴욕주의 형법(New York State Penal Law)에 한정하지 않고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규칙을 위반하여 고액 선물(gift of any value)을 수령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2) 이 조의 규정들은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2호의 규정과 위원회규칙 제1-13조(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돌하는 행위의 금지),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3호(사익추구를 위하여 공직을 사용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금지),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13호(공직수행의 대가로 뉴욕시 이외의 보상 수령 금지 및 보수 수령 금지)와 함께 읽혀야 된다.

제1-02조.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공직자(Public Servants charged with Substantial Policy Discretion).

(a)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12호와 제2604조 제b항 제15호의 취지를 위하여, 공직자가 기관의 주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요한 책무(major responsibilities)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된 판단(independent judgement)을 행사한다면, 그 공직자는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공직자는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기관장, 부기관장, 보조 기관장, 위원회의 위원과 주요 사무소, 국, 실 등의 책임자이다. 기관장은 다음을 하는 사람이다.

(1) 기관장은 이 조에 의하여 정의한 바와 같이, 그 기관에서 실질적 정책결정을 하는 공직자를 직함(title), 지위(position) 또는 이름(name)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기관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직함, 지위 또는 이름을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기관장은 이러한 공직자에게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12호와 제2604조 제b항 제15호에 규정된 제한 사항(restrictions)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해충돌방지위원회는 기관이 제출한 목록에서 공직자의 직함, 지위 또는 이름이 추가되거나 빠져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 또는 삭제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기관은 즉시 해당 공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b) 각 기관은 이 조의 제a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추가 또는 삭제 관련 사항을 공람(public inspection)시킬 수 있다.

제1-03조. 뉴욕시의 지방의회 의원이 보유할 수 있는 지역 의회 지도자의 개념보다 비교적 덜 정치적인 공직의 개념(Definition of Lesser Political Office than that of Assembly District Leader which may be Held by Members of the City Council)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15호의 취지를 위하여, 지역 의회 지도자(assembly district leader)의 개념보다 “그 정도가 비교적 덜한 정치 공직(lesser political office)"인 정치 공직(political office)의 개념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자치 위원회의 위원(membership on a county committee)

(b) 자치 집행 위원회의 위원(membership on a county executive committee)

(c) 주 위원회의 위원(membership on a state committee)

(d) 국가 위원회의 위원(membership on a national committee)

제1-04조. 상장 기업의 정의(Definition of a Firm Whose Shares are Publicly Traded)

헌장 제2604조 제a항 제1호 제b목의 취지를 위해, “상장 기업(a firm whose shares are publicly traded)"은 기업의 주식을 일반 사람에게 팔면서, 국립증권거래소(national securities exchanges) 또는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s)에서 공개 거래(public trading)를 위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상장되고 등록된(listed and registered) 기업을 의미한다.

제1-05조. 백지신탁의 개념(Definition of Blind Trust)(생략)

제1-06조. 기본적 고용관계의 개념(Definition of Primary Employment with the City)

(a) 헌장 제2601조 제20항의 취지를 위하여, "뉴욕시와의 기본적인 고용관계(primary employment with the City)"는 뉴욕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전임제(full-time basis)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매주 20시간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정된 공직자의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b) "뉴욕시와의 기본적인 고용관계"는 다음의 고용관계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i) 의장을 제외한 도시계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의 위원

(ii)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용된 인턴(intern), 전임 학생(full-time students)

(iii) 연속 6개월(six consecutive months)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iv)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와 같이, 6개월을 초과했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 특별한 프로젝트, 조사 또는 프로그램에서 고용된 사람

(c) 헌장 제2601조 제20호의 취지를 위해, 보상(compensation)이라는 용어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비용에 따른 상환(reimbursement) 또는 일당제(per diem payment)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1-07조. 전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의 개념(Definition of Agency Served by a Former Public Servant)

헌장 제2604조 제d항 제2호의 취지를 위해, 전직 공직자가 뉴욕시에서 퇴직하기 전에 1년 안에 여러 기관에 근무한 경우에는, 전직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각각의 뉴욕시 기관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 재산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절차(Procedures for Obtaining an Extension of Time Within Which to File a Financial Disclosure Report) (생략)

제1-09조. 도시계획위원에 의한 뉴욕시 기관과의 접촉 금지(Prohibited Appearance Before City Agencies by City Planning Commissioners)

(a) 정의(Definitions)

접촉(Appear).

"접촉"은, 헌장 제2601조 제4호에 부합되게, 기속적 행정행위(ministerial matters)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고 의사소통(make any communication)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 접촉(Indirect Appearance).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뉴욕시의 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접촉한(appear indirectly)"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그 위원의 기업의 구성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안에 관하여 그 위원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기관에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인 접촉은 그 위원의 이름 또는 직인이 찍힌 프로젝트 계획서 또는 서류의 제출 그 자체만으로는(in and of itself and without more)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속적 행정행위(Ministerial).

헌장 제2601조 제15호의 취지에 따라, "기속적" 행정행위(ministerial matter)는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를 의미한다. 이미 규정된 방법(prescribed manner)으로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재량(substantial personal discretion)과는 관계가 없이 뉴욕시가 처리하는 허가, 승인 또는 그밖에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b) 금지된 접촉(Prohibited appearance)

(1) 헌장 제192조 제b항의 취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하는 위원은 누구든지,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 부시장과 그들의 보좌관; 시장의 계획조정국(Mayor's Offi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자치구 청장(office of the Borough Presidents); 뉴욕시 지방의회, 지역위원회(community boards); 예술위원회(Art Commission); 환경조정국(office of Environmental Coordination); 랜드마크 보존위원회(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하기 위한 고충항소위원회(Hardship Appeals Panel)

(2) 헌장 192조 제b항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에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i) 재심사 절차(reconsideration proceedings)에서 자치구 감독관 또는 건축국장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이 건축국에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계획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접촉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지구 지정(zoning) 또는 토지 사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건축국(Department of Buildings)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ii) 지구 지정 또는 토지 사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기준 및 항소 위원회(Board of Standards and Appeals)와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iii) 토지 사용과 관련된 허가와 승인에 관하여 소비자국(Department of Comsumer Affairs)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iv) 산업경제국(Department of Business Services)과 지구 지정 또는 토지 사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산업경제국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뉴욕시와 계약을 체결한 지방 개발 공사(local development corporation)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v) 뉴욕시 소유의 토지의 주요 권리(concessions), 사업권(franchises), 획득(acquisition), 사용 또는 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상 승인(statutory approval) 또는 그밖에 공식적인 조치 또는 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특별승인을 위한 신청서, 동일유형의 토지 사용 재심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에 따르는 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계획, 환경, 재정 또는 기타 측면에 관하여 뉴욕시 기관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 재산등록신고서의 보유(Retention of Financial Disclosure Reports) 생략)

제1-11조. "소유 지분"의 개념에서 금액 조정(Adjustment of Dollar Amount in Definition of "Ownership Interest")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뉴욕시 헌장 제2601조 제16항의 "소유 지분"의 금액은 4만 달러에서 4만4천 달러로 조정되었다.

제1-12조. 부동산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정국, 감사실과 법무국에 근무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직자의 "특정 사안"의 개념(Definition of "Particular Matter" for Tax Commissioners and Certain Other Public Servants in the Tax Commission, Department of Finance, Comptroller's Office, and Law Department in relation to Real Estate Tax Assessments)

(a) 뉴욕시 헌장 제2604조 제d항 제4호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정국, 감사실 또는 법무국에서 근무했거나 고용된 적이 있는 전직 공직자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뉴욕시와 접촉해서는 아니 되고, 그 공직자가 제b항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활동에 참여한 사항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정해진 구획(a given parcel of property)에 대한 과세연도(tax year) 또는 바로 다음의 차기 과세연도(the immediately subsequent tax year)와 관련되는 소송에 관하여 제공된 서비스를 대가로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b) 제a항은 전직 공직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구획과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1) 전직 공직자가 부동산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세금부과의 정정을 위한 신청(이의제기)을 들은 경우; (2) 그러한 이의제기에 관련된 부과를 해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청구를 심사하는 경우; (3) (i) 평가(appraisal)의

준비 또는 재심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 (ii) 부동산 세금 부과의 심사, 분석 또는 권고 또는 (iii) 세금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그것은 협상, 해결, 재판 또는 재심에 한정하지 않고 포함한다.

제1-13조. 뉴욕시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2호에 의한 금지 행위(Conduct Prohibited by City Charter §2604(b)(2))

(a) 이 조의 제c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 공직자가 뉴욕시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 동안에 개인적이고 사적인 활동(personal and private activities)을 추구하는 것은 뉴욕시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2호의 위반이다

(b) 이 조의 제c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 공직자가 뉴욕시의 목적이 아닌 것을 위해서 뉴욕시의 공인 편지지를 사용하고, 인력, 장비, 자원 또는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은 뉴욕시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2호의 위반이다

(c) (1) 공직자가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개인적이고 사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뉴욕시의 장비, 자원, 인력과 보급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뉴욕시 공인 편지지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i) 활동의 유형이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소속기관의 종사자가 뉴욕시의 목적과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이해충돌방지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ii)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그런 활동을 추구하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2) 특정 활동이 다른 뉴욕시의 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종사자는 그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관장은 그런 활동을 승인하기 전 10일 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에게 서면 통보(written notice)를 해야 한다.

(d) 어느 공직자가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또는 고의적으로(knowingly)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뉴욕시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1)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뉴욕시 헌장 제2604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청탁(solicit), 요청(request), 명령(command), 강요(importune), 방조(aid), 유인(induce) 또는 야기(cause)하는 경우

(2) 하나 이상의 사람이 뉴욕시 헌장 제2604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야기하도록 동의하는 경우

(e) 비록, 위원회는 그 행위가 이 조의 제a항, 제b항, 제c항 또는 제d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뉴욕시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2호의 위반을 사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조에 규정된 어느 것도, 이 조의 제a항부터 제d항이 금지한 것을 제외한 행위가 뉴욕시 헌장 제2604조 제b항 제2호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위원회가 적발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제1-14조. 재산등록법의 취지에 따라 정책결정 직위를 가진 뉴욕시 종사자 (City Employees Holding Policymaking Positions for Purposes of the Financial Disclosure Law)

행정 법률 제12-110(b)(3)(a)(3)의 취지에 따라, 뉴욕시 종사자가 뉴욕시 규칙 제53편의 제1-02조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결정(substantial policy discretion)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공직자는 정책결정 직위(policymaking position)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1-15조. 뉴욕시 종사자의 직무는 계약과 기타 사안에 관하여 협상, 허가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City Employees Whose Duties Involve the Negotiation, Authorization, or Approval of Contracts and of Certain Other Matters)

(a) 행정 법률 제12-110(b)(3)(a)(4)의 취지에 따라, 뉴욕시 종사자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종사자는 계약(contracts), 임대차(leases), 독점이용권(franchises), 점용허가(revocable consents), 영업권(concessions), 지구지정 변경신청(applications for zoning changes), 적용 제외 조치(variances), 특별 승인(special permits)의 협상, 허가 또는 승인을 포함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1)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입찰 요청서(bid request) 또는 변경지시(change order)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

(2) 입찰의 반응성(responsiveness) 또는 매도인(vendor) 또는 입찰자(bidder)의 책임성에 관한 결정

(3) 입찰 평가(evaluate a bid)

(4) 계약, 임대차, 독점이용권, 점용허가, 영업권, 지구지정 변경신청, 적용 제외 조치, 특별 승인 또는 변경지시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협상하거나 결정

(5) 계약, 임대차, 독점이용권, 점용허가, 영업권, 지구지정 변경신청, 적용 제외 조치, 특별 승인 또는 변경지시가 내려지는 여부 또는 누구에게 허용되는지를 권고하거나 결정

(6) 행정 법률 제12-110에 따라 뉴욕시 또는 기관을 대리하여 계약, 임대차, 독점이용권, 영업권 또는 변경지시를 승인

(7) 뉴욕시의 조달에 관한 정책, 규칙 또는 규정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공포(promulgate)

(b) 계약, 임대차, 독점이용권, 점용허가, 영업권, 지구지정 변경신청, 적용 제외 조치, 특별 승인과 관련하여 단지 기속적 행정행위(ministerial tasks)만을 수행하는 사무직원(clerical personnel)과 다른 공직자는 행정 법률 제12-110(b)(3)(a)(4)에 따른 재산등록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감독 하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사무 업무(clerical tasks, 타이핑하기, 서류철 정리하기, 계약, 임대차, 독점이용권, 점용허가, 영업권, 지구지정 변경, 적용 제외 조치, 특별 승인 또는 회의일정 등의 배부, 입찰자나 매도자의 신원 확인하기)만을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유사하게, 제안요청서, 입찰요청서, 변경지시, 계약, 임대차, 독점이용권, 점용허가, 영업권, 지구지정 변경신청, 적용 제외 조치, 특별 승인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조달 정책, 규칙, 규정을 기록하지만 그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1-16조. 로비스트와 로비스트를 제외한 사람으로부터의 선물 금지 (Prohibited Gifts From Lobbyists and Exceptions Thereto)

(a) 행정 법률 제3-225조에 따라, 행정 법률 제3-213(c)(1)에 규정된 등록대장(statement of registration)에 등재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제의(offer)하거나 교부(give)해서는 아니 된다.

(b) 이 조의 취지에 따라,

(1) 행정 법률 제3-213(c)(1)에 따른 등록대장(statement of registration)에 등재되어야 하는 사람은 (i) 로비스트, (ii) 로비스트의 배우자, 내연자, (iii) 로비스트의 미성년 자녀와 (iv) 로비스트가 단체에 속해 있다면, 로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로비스트 또는 그 로비스트의 국(局)에 고용된 임원과 종사자, 그러한 임원 또는 종사자의 배우자, 내연자와 미성년 자녀

(2) “로비스트”는 행정 법률 제3-211조에 규정된 의미와 같다.

(3) “제의(offer)"는 (i) 선물을 교부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제의하거나 (ii) 선물을 증여하기 위하여 준비를 시도 또는 제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4) “교부(give)"는 (i) 선물의 제공(tender of a gift), (ii) 선물을 증여하는데 있어서 대리인으로서 활동(action as an agent in the making of a gift) , (iii) 선물 증여를 위한 준비(arrangement for the making of a gift)

(5) "선물(gift)"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포함되고, 금전, 서비스, 대차, 여행, 접대, 향응, 물건 또는 약속 등 어떠한 형태의 것이라도 모두 포함된다.

(c) 행정 법률 제3-225조와 이 조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선물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1) 조직의 대의명분(cause)을 홍보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름, 로고 또는 메시지가 담긴 펜(pens), 머그컵(mugs), 모자(hats), 티셔츠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판매를 할 수 없는 사소한 홍보 물품(de minimis promotional items)

(2) 가족 구성원 또는 개인적으로 매우 친한 친구로부터 가족 행사 또는 친목 행사에서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선물, 모든 정황을 고려해볼 때, 로비활동의

주된 요인(controlling factor)으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것이 다음 사항으로 귀결되거나 보여 지는 것 보다는 가족 또는 개인적인 관계로 보여 지는 선물

(i) 사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는 경우

(ii)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경우

(iii)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우

(iv)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물 또는 호의를 받는 경우

(3) 상장(awards), 감사패(plaques)와 기타 유사한 품목이 재판매 가치가 없는 경우에 공공서비스의 답례로서 공개적으로 수여되는 상장, 감사패 또는 기타 품목

(4) 다음 상황에서 뉴욕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또는 목적으로 한 무료 음식 또는 다과

(i) 공직자가 공식적인 이유로 참석한 회의 중에 제공되는 경우

(ii) 공개적인 가격구조가 없고(일반 사람에게 팔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안 된 경우), 개별적인 지불이 불가능한 회사의 구내 식당, 클럽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경우

(iii) 공직자가 공식적인 이유로 참석한 회의가 처음에는 업무환경에서 시작되었으나 정상적인 식사 시간까지 계속되어 참석을 거절하거나 개별적인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iv) 격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초청 단체가 무료 음식이나 다과를 제공하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v) 공직자가 뉴욕시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음식이나 다과를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5) 전문적이거나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토론자나 연사로 참석한 경우, 음식이나 다과가 모든 토론자에게 제공되는 때의 음식이나 다과

(6) 후원 조직의 손님으로서 전문적이거나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참석을 초청받은 경우

(7) 주택, 교육, 입법 또는 정부 행정 등을 포함하는 뉴욕시의 정책문제로 뉴욕시가 후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사에 참석 초청

(8) 경영계, 노동계, 전문직군, 매체 또는 시민・자선·지역적의 성격을 가진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 공적인 일로 초청하는 경우

(9) 선출직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에 의하여 승인된 선출직 공직자의 보좌관 또는 경영계, 노동계, 전문직군, 매체 또는 시민·자선 또는 지역적 성격을 가진 대표로 구성된 조직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승인한 지방의회의 핵심 보좌관인 공직자에 의한 참석 초정

(10) 공직자에게 제의되거나 교부된다기보다는 뉴욕시에 제의되거나 교부되는 선물로서 사적인 단체로부터 받은 출장 경비, (i) 출장이 뉴욕시의 목적이고, 뉴욕시의 재정으로부터 적절하게 지급되고, (ii) 그 출장 준비가 그 출장 목적에 부합되고, (iii) 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할 정도로 합리적인 기간이기만 한 경우

(d) 이 조의 어느 것도 행정 법률 제3-213(c)(1)에 따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으로 하여금 뉴욕주 로비법에 한정하지 않고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의하거나 교부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17조. 재산등록신고서 필수 제출자로 지정된 것에 관한 이의절차(Procedures to Appeal a Designation as a Required Filer of a Financial Disclosure Report)(생략)

윤리(ETHICS)

헌장 68 : 알기 쉬운 가이드
(a Plain Language Guide to Chapter 68)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
(New York City's Conflict of Interest Law)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발간
(Conflict of Interest Board, 2008. 9.)

서 문

뉴욕시 공직자는 하루에도 수천의 공식적인 결정을 한다. 몇 가지만 말한다면, 건축물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사무실에 어떤 종류의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지, 누가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등이다. 모든 공직자가 지녀할 하나의 책무(one responsibility)는 뉴욕시 헌장 68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s of Interest Law)을 고수함으로써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청렴성과 공신력을 보호(protect the integrity of, and public trust in)하는 것이다. 이런 규칙 중에는 누가 생각해도 상당히 분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여러분은, 이해충돌방지위원회(Conflicts of Interest Board)가 이 법률과 여러분이 처한 특정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위원회의 주요 전화번호가 이 소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인 헌장 68은 여러분의 공적인 의무(public duties)와 사익(private interests) 간의 충돌을 규제한다.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인 COIB는 헌장 68을 운영(administer)하고 집행(enforce)하고 해석(interpret)하는 기관이다.

이 법률에 따른 대다수의 충돌은 현실적으로 재정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다 (For the most part, under this law, are financial or political in nature)

사례 : 명절기간(holiday season)에, 여러분의 기관과 자주 거래하는 회사의 대표가 여러분에게 값비싼 선물을 제의하는 경우

사기업은 그의 종업원들이 그들과 거래하는 기업들로부터 값비싼 명절 선물을 받도록 허용할지 몰라도, 뉴욕시 공직자는 명절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공직자에 대한 그러한 제한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가 된다. 명백하게, 그 선물이 여러분의 소신을 흔들거나(sway your opinion), 어떤 프로젝트에 좀 더 주의를 끄는데 사용된다면(garner more attention towards a project), 그 매도자(vendor)는 이 선물로 영향력을 구매(purchasing influence)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공식적인 결정(official decisions)이 일반 시민에게

좋은 것(공익)과 관련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명절에 특별한 것을 주는 사람과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사실, 여러분에게 사안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단순하게 선물을 수령하는 것조차도(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소신을 흔들었든 아니든 간에) 이 매도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청렴성이 모든 사람에 의하여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다: 경쟁 매도자(competing vendors), 동료 직원(fellow-employees), 일반 시민과 언론. 다시 말해서, 뉴욕시 헌장 제68장은 특별한 배려(special consideration(impropriety, 부적절한 행동)의 대가로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특정 기간에 선물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러한 선물을 받는 것은 최소한 부적절한 인상(appearance of impropriety)을 주고, 그러한 외관은 여러분의 공식적인 청렴성(official integrity)과 전체적인 뉴욕시의 청렴성 모두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뉴욕시 공직자를 위한 대부분의 이해충돌 규칙은 뉴욕시 헌장 제68장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규칙들은 최소한의 표준(minimum standards)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칙의 위반은 중대한 벌칙을 초래한다. 그 규칙들은 감독자(supervisors), 매도자, 외부 종사자들이 여러분을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행위를 범하도록 하는 권한남용(abuses)과 부적절한 압력(improper pressure)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한다. 뉴욕시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은 핵심(bottom line)을 나타낸 것이지 뉴욕시 공직자로서 목표하는 최고의 표준(the highest standards)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수령하는 것은 매도자 또는 일반 시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관과 거래를 하는 매도자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실 어느 기관들은 그들의 종사자가 그 기관과 업무관계를 가진 단체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라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기관에서 적용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관의 상담자에게 상의하여야 한다.

제68장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Who is covered under chapter 68?)

이 소책자에서 논의되는 행위규칙(rules of conduct)은 봉급 또는 직급(salary or rank)을 막론하고, 상근(full-time), 비상근(part-time) 또는 일당제(per diem)와 상관없이, 모든 유급의 고위공직자(officers), 종사자(employees), 공무원(official)에게 적용된다. 이런 규칙의 일부는 무급직이지만 지역 위원회와 지역 교육 위원회의 위원(Community Boards and Community Education Councils)과 같이 뉴욕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문제의 공직자의 유형(비상근/상근/일당제, 유급/무급)에 따라, 그 규칙들은 어느 정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위원회의 위원은 상근 공직자가 보유를 금지당하고 있는 민간 기업체에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전달 내용(What this booklet will tell you)

이 알기 쉬운 가이드는 뉴욕시 공직자의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다음의 분야를 논의한다.

- 선물, 향응, 식사, 팁과 출장 수령(Accepting Gifts, Entertainment, Meals, Tips, and Travel)
- 사익을 위한 뉴욕시 직위 남용(Misusing City Position for a Private Advantage)
- 부업, 개인 사업과 투자로부터의 수입(Receiving Income from Second jobs, Your Own Business, and Investments)
-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Volunteering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 정치 활동 참여(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 사적 목적을 위한 비밀정보 사용 또는 누설(Using or Disclo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Private Purposes)
- 뉴욕시 퇴직(퇴직 제한)(Leaving City Service)(Post-Employment Restrictions)

가이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What can happen to Violators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Law)

○ 이해충돌방지 위반의 신고방법(How to Report Conflicts of Interest Violations)

○ 신고자 보호(Whistleblower Protection)

○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How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Conflicts of Interest Law)

○ 이해충돌방지법의 승인장과 면책(Approval Letters and Waivers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Law)

○ 여러분의 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요청(Requesting a Training Session for Your Agency)

더 자세한 정보(For More Information)

우리는 이 소책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공적인 업무와 사익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유형을 인식하도록 희망한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문제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잠재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여러분이 COIB에 접촉하기를 희망한다.

이 소책자의 뒤편에, 여러분은 이 소책자에서 논의된 주제에 관하여 이해충돌방지법과 위원회의 규칙에 관한 빠른 참조(Quick Reference)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규칙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도중에 특별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212) 442-1400으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 규칙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관의 총괄 자문관에게 전화하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웹 사이트(www.nyc.gov/ethics)에 질의하시오.

선물, 향응, 식사, 팁과 출장의 수령(Accepting Gifts, Entertainment, Meals, Tips, and Travel)

뉴욕시의 모든 공직자는 제68장의 고액선물 규칙(valuable gift rule)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여러분이 알거나 알았어야 하기에 뉴욕시와 업무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기업으로부터 50달러 이상(제68장의 취지에 따라 "고액"의 현재 정의는 50달러이다)가치를 가진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뉴욕시와 거래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누구의 책무인가요? 여러분들이다. 여러분의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 여러분에게 제공되었다면, 선물 제공자가 뉴욕시와 모종의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선물에 관한 규칙은 집합적이고 누증적이다(aggregate and cumulative). 이는 15달러와 31달러의 선물, 즉 각각 50달러 이하의 선물을 두 개 이상 받았다면 이는 51달러의 선물로서 하나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일인이나 그 동일인의 친척 또는 관계인(affiliated persons, 같은 회사의 두 종업원과 같이)으로부터 12개월 안에 선물을 받았다면 한 사람이 50달러 이하의 선물로 준 것으로 간주한다.

뉴욕시 공직자가 뉴욕시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수령한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형사적 범죄(criminal violation)가 될 수 있다. 금전, 스카치(a bottle of scotch), 현지 식당에서의 저녁식사(dinner at a local restaurant), 농구 게임의 입장권, 아틀랜틱 시티의 여행(a trip to Atlantic City, 관광지), 여러분의 주택에 대한 개보수(renovation) 또는 그밖에 또 다른 것으로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예외 사항(There are some Exceptions)

친목행사(social occasions)에서의 선물은 문제의 제공자와 맺고 있는 업무 관계(business relationship)보다 긴밀한 사적 친구관계(close personal friendship)가 우선하는 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인 친구관계가 선물을 준 이유라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 만약 예의 제공자가 오랜 친구지만 현재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판단(official opinion)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기타 예외 사항(There are other Exceptions to the Gifts Rule, such as)

감사패(Plaques)

실질적인 재판매 가치(substantial reale value)를 가지지 아니하는 공공서비스의 보답으로 받는 상패(awards)와 감사패의 수령

출장 경비(Travel Expenses)

다음 사항일 경우에 뉴욕시(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라기보다는)의 선물로서 민간단체(private entity)로부터의 받은 출장 관련 경비

(1) 그 출장을 여러분의 기관이 승인한 경우

(2) '그 출장이 뉴욕시의 목적이고 따라서, 뉴욕시가 출장비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3) 그 출장 준비가 출장 목적에 적합한 경우

(4) 그 출장 기간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경우

사례 : 여러분은 뉴멕시코 주에 있는 매도자로부터 구매한 장비를 검사하기 위해 소속 기관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았다. 그 매도자가 항공편과 숙박비를 지불했다. 그 출장이 소속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출장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길거나 비싸지 않는 경우(이것은 경우에 따라 2등석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아닌 뉴욕시가 받을 수 있는 선물로 보여 진다. 결국에, 그 매도자가 여러분의 항공권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뉴욕시가 지불해야 한다.

입장권(Tickets)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 내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무료 입장권(free tickets)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1) 후원 단체의 초대 손님으로서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2) 뉴욕시 정책에 관한 사안으로서 뉴욕시가 후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사

(3) 후원 단체(소속기관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의 초대 손님으로서 경영계, 노동계, 전문직군, 언론계와 시민・자선・지역 적 성향의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조직의 공적인 업무

(4) 뉴욕시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면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참석 승인을 받은 행사

사례 : 여러분이 문화국(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에 근무하면서, 문화국으로부터 자금과 자재를 지원 받는 극장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극장 중의 하나가 연례 경축행사(yearly gala event)를 개최하는데, 자금 제공자(funder)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극장들의 프로젝트의 초록(excerpts)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이 경축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기관장이 문화국의 보조를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여러분을 문화국의 대표로서 거기에 참석하도록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성격의 예외 사항은 이해충돌방지위원에서 이용 가능한 위원회 규칙(Rule of the Board)에 규정되어 있다. 규칙은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다.

선물 대 사례금(Gifts versus Tips)

이해충돌방지법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뉴욕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for performing your City job) 어떤 사람으로부터든지(anyone)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도(anything of value)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불법적인 사례금(illegal gratuity)"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익이 뉴욕시 종사자로서 여러분의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부

터 어떠한 사례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최선의 의도라 할지라도(even with the best of intentions), 그러한 사례금의 수령은 뉴욕 시민이 이미 세금으로 지불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사례금이 필수적이라는 전반적인 인식(overall perception)을 만들어 낸다. 사례금에 관해서, 허용되는 금액은 아무 것도 없다. 50달러도 아니고, 5달러도 아니고, 50센트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선물이나 사례금의 제공에 대하여 매우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공하는 사람은 뇌물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여러분의 공식적인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어떤 것이다. 뇌물은 제공되는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불법이다.) 여러분은 소속기관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이나 조사국(Department of Investigation)에 사례금, 선물 또는 뇌물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례 : 주민이 그의 고물 의자를 위생국(Sanitation Department)이 수집할 수 있도록 가두(on the curb)에 놓았다. 그의 고물 의자를 수집하는 위생국 직원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가 위생국 직원 각각에게 10달러를 주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불법적인 사례금이다.

꽃이나 초콜릿 또는 기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리 (What about flowers or chocolates, or other perishables?)

(1)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위하여 공식 자격(official capacity)으로 어떤 일을 수행한 결과,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된 초콜릿, 꽃 그리고 기타 유사한 종류와 같은 물건

이러한 것들은 사례금이고, 보통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문제로 반납이 곤란한 감사의 작은 표시는 때때로 뉴욕시에게 제공된 선물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용 구역(common area)에 놓여 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드린 노

인으로부터 꽃이나 초콜릿을 받아서 전 직원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감사의 표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속기관이다.) 라디오, 티브이 그리고 금전과 같이 꽤 상당한 사례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형적으로 공유하기가 어렵고, 그 사례금의 가치와 그것을 수령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그것을 반납하는 귀찮은 일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2) 명절 기간이나 여러분의 생일에 뉴욕시와 거래하는 매도자로부터 받은 물건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선물로 간주되고, 이런 이유로 “고액 선물 규칙(Valuable Gifts Rule)"이 이러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것들은 과일 바구니, 꽃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음식물(fare)이 포함된다. 만약 그것들이 반납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이 받은 선물로 처리되어야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위의 (1)에서와 같이, 그 과일 바구니가 42달러인지 53달러인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분이 사무실에 가지고 있으면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펜, 머그컵, 핀, 모자 등과 같은 홍보 용품(promotional "schwag")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하찮은 가치 밖에 없어서 “고액 선물” 맥락에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듯이 금으로 만든 펜, 모피로 만든 모자, 스포츠 스타가 서명한 머그컵 등은 예외다. 실재적으로 재판매 가치가 없는 보통 홍보용품은 받아서 사용해도 된다.

그렇지만, 꽃이나 음식물과 같은 반납이 불가능한 선물일지라도 소속기관의 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비록 여러분은 소속기관의 감사관에게 홍보용품을 신고해야 할지에 관해서 확인을 받고 싶겠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홍보용품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기관마다 이러한 종류의 홍보용품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다르기 때문이다.)

서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여러분의 소속기관은 제68장보다 엄격한 규칙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기관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각 기관은 외부 매도자, 고객, 그리고 다른 뉴욕시 기관과 다른 업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몇몇의 기관의 종사자는 다른 기관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된다. 공직자는 이러한 엄격한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소속기관이 가지고 있는 선물에 관한 정책이 무엇이든지간에 시장의 집행명령 제16호는 시장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기관들의 모든 종사자는 조사국에 선물, 선물의 제의 그리고 다른 이해충돌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적 목적을 위한 비밀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
(Using or Disclo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Private Purposes)

공직자는 뉴욕시 종사자로서 알고 있는 비밀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밀정보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된다.

사례 : 뉴욕시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 결과로, 여러분은 뉴욕시 기관이 어느 건물에 사무 공간을 임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공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이런 이로운 정보(advantageous information)를 친구, 친척, 부동산 업자나 기업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68장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그 정보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업무 중에 알려지게 된 것이고 대중이 이용할 수 없다. 그러한 공개를 통해서 일방의 당사자(one party)에게 부당한 이익(unfair advantage)을 주는 것은 뉴욕시의 청렴성을 창밖으로 던지는 것이다.

사익을 위한 직위의 남용
(Misusing One's City Job for Private Advantage)

제68장은 공직자 자신(for oneself), 직계 친족(close relatives), 동업자(business associate)에 대한 사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뉴욕시의 직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례 : 여러분의 형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호의적이고 신속한 검사(favorable or speedy inspection)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직원으로서 여러분의 직위를 이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례 : 여러분이 개인적인 세금 문제(personal tax problem)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뉴욕시의 로고가 인쇄된 편지지(City letterhead)를 사용하여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에 그것에 관한 편지를 보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뉴욕시 기관의 로고가 인쇄된 편지지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른 뉴욕시 기관에 편지를 보낼 경우에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헌장은 뉴욕시의 업무가 아닌 것에 뉴욕시 편지지, 인력(personnel), 장비(equipment), 자원(resources)이나 보급품(supplies)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적사용 허용정책(the Acceptable Use Policy)

일반적으로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기관들은 "사적사용 허용정책"을 채택해 왔다. 그것은 뉴욕시의 자원에 대한 사소한 사적사용을 허용(for acceptable "incidental personal use")하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개인적인 시내전화(local personal calls)가 사소하고 여러분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많은 다른 사무기기(office technology)도 마찬가지다.

사례 : 브룩클린에 있는 공직자의 어머니에게 때때로 하는 간단한 전화(occasional, short call)는 뉴욕시의 시간과 통신시스템(City time and telephony)을 사소하게 사적으로 사용(incidental personal use)한 것으로 위원회에 의하여 판단된다.

뉴욕시의 장거리 전화를 사용하여 호주에 있는 공직자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은 회수와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물론 소속기관이 뉴욕시의 장거리 전화를 사용하는 개인 통화에 대한 비용을 배상받는(reimbursement)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제외된다.)

모든 기관이 "사적사용 허용정책"을 채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무기기와 자원의 사소한 사용에 관한 소속기관의 정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의 법무관과 상의해 보아야 한다.

사적사용 금지(Unacceptable Personal Use)

뉴욕시 재산의 아주 작은 품목(even small items of City property)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사적사용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사적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여 징계처분이나 기소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적절한 사용(improper use)이 사사로운 업무용(private business purpose)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뉴욕시의 재산을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적사용 허용정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뉴욕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파 발언(hate speech) 또는 선거운동 문서(political literature)를 송부하는 것이 사례들이다. 소속기관으로부터 고가의 품목을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차용하는 것은 심지어 형사상 기소를 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복하면, 이 소책자에서 논의해왔던 일반적인 규정(general conditions)보다, 뉴욕시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해 뉴욕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훨씬 엄격한 이해충돌과 관련된 규칙을 가지고 있다. 공직자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식

적인 정책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법무관과 상의해야 한다.

부업, 자기사업과 투자로부터 소득 (Receiving Income from Second Jobs, your own Business, and Investments)

많은 뉴욕시 공직자(City employees)는 부업(moonlighting), 외부 업무(outside businesses) 또는 투자(investments)를 통하여 뉴욕시가 지급하는 봉급을 보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활동은 허용되지만, 소득의 외부 출처가 여러분의 직무와 이해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부업(Moonlighting)

뉴욕시에서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뉴욕시 기관과 업무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뉴욕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뉴욕시에 재화나 용역을 팔기 위해서 계약을 하거나 뉴욕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기업(사립 대학교 포함)을 포함한다.

뉴욕시 기관과 업무 행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서면 승인서(written approval)와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로부터 책임면제 서류(waiver)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그 기업이 뉴욕시와 업무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내야 할 책무는 여러분에게 있다.

만약 여러분이 뉴욕시에서 20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여러분은 뉴욕시와 업무 행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뉴욕시 기관과 거래하는 회사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만약 기업이 여러분 자신의 기관과 거래한다면, 소속기관장의 서면 승인과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책임면제 서류를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 기업에서 직위를 가질 수 없다. 이 규칙은 지역 위원회의 위원들을 포함해서 유급이든 무급이든 모든 비상근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지구조정 제안서(zoning proposal)에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 자치구청

장에 의하여 구성된 특별시민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무급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와우! 모든 레스토랑, 술집과 조그만 가게(all restaurants, bar, and mom & pop stores)는 시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느냐? 여러분이 거기에서 부업을 하기 위해서 책임면제 서류가 필요한 것이냐?

보통 보건국이나 소비자국에 의한 허가는 형식적(pro forma)인 사안이고 뉴욕시에 물건을 팔거나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뉴욕시와의 업무 행위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부업으로 일하는 술집이 보건국과 마찰을 빚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술집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정 반대다.

여러분의 외부 고용주가 뉴욕시와 거래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a) 그 회사의 회계 또는 재무담당자에게 질문
b) 여러분의 소속기관의 회계 또는 인사담당에게 벤덱스 검색을 요구(VENDEX는 뉴욕시 계약관련 DB다)
c)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직원에게 전화

확인사항 대조표(Checklist) : 민간 고용자 또는 공직자 자신의 외부 기업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 공직자는 다음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민간 고용자 또는 외부 업무를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직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민간 고용자 또는 공직자 자신의 기업을 위하여 뉴욕시 로고가 인쇄된 편지지, 인력, 장비, 자원 또는 보급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근무시간 중에 고용자 또는 자기 업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고용자 또는 자기 업체를 도와주기 위하여 뉴욕시의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뉴욕시의 어느 기관과 대항하는 사안에 관하여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책임면제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고용주나 자기 업체를 위해서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

○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책임면제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뉴욕시가 일방이거나 고소인인 경우에 뉴욕시의 이익에 반하는 변호사로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책임면제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뉴욕시의 이익에 반하는 전문가로서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만약 여러분이 매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마지막 3개의 제한사항은 여러분의 소속기관과 관련된 경우만 적용된다.

사례 : 여러분이 매주 15시간 정도 인적자원관리국에서 근무한다면, 위생국과 관련된 사안에서 민간 고용주를 위하여 근무할 수 있다.

즉, 위에서 논의된 다른 필요조건과 인적자원관리국이 외부고용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필요조건을 준수한다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민간 고용주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의 직위를 사용한다는 외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속기관과 관련된 어떤 사안에 있어서 민간 고용주를 돕는 것을 포함한다.

외부 전문 업무(Outside Professional Practices)

여러분이 기업에서 변호사, 대리인, 중개인 또는 컨설턴트로 일한 다면, 여러분은 그 기업에서 직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사례 : 만약 여러분이 소방국의 상근 종사자이며, 또한 허가 받은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여러분은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책임면제 서류 없이는 뉴욕시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을 위하여 중개인으로서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

인력파견업체(Temping agencies)

여러분이 일하는 인력파견 소개소가 뉴욕시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력파견 소개소에 의하여 배정받은 기업이 뉴욕시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민간의 인력파견 직업소개소(private temporary employment agencies)를 통하여 부업을 하는 뉴욕시 직원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화를 해야 한다.

외부 사업과 투자(Outside Business and Investments)

뉴욕시와 업무 행위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 소유 지분(ownership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에 관하여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또한 여러분의 배우자, 등록된 내연관계(registered domestic partner) 또는 미성년 자녀가 뉴욕시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에 적용된다. (여러분의 자녀는 19세 미만이고 미혼이고 여러분과 함께 거주한다면 미성년이다.) 소유 지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다음의 확인사항 대조표(checklist)를 보시오.

확인사항 대조표(Checklist) : 여러분의 지분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에서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

○ 기업의 5% 이상 있는 경우

○ 4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채(채권과 같이) 중 5% 이상인 경우

○ 기업의 부채의 4만 달러 이상인 경우

그렇지만, 여러분의 지분이 위의 것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등록된 내연관계 또는 미성년 자녀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즉, 여러분과 그들이 “경영 지분(managing interest)"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기업에서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

사례 : 만약 여러분이 매주 20시간 이상 위생국에서 근무하고, 부인이 뉴욕시 총무국에 문구류를 파는 문구 공급 회사의 20%를 소유하는 동업자라면, 여러분은 금지된 소유 지분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을 하도록 한다. 여러분의 부인이 뉴욕시에 문구류를 팔 수 없도록 하거나, 여러분이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소유지분을 공개하고, 여러분의 지분에 관한 승인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몇 가지 제한을 붙여서 위의 지분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여러분이 매주 20시간 이하로 뉴욕시에서 일한다면, 여러분과 가족은 여러분의 소속기관을 제외한 뉴욕시 기관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소유지분을 가지는 것이 허용된다.

사례 : 여러분이 위생국에서 이틀간 근무한다면, 여러분은 소비국과 거래를 하는 사업체를 소유할 수 있지만, 위생국과 거래하는 기업체를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연금계획(pension plan), 이연 보상계획(deferred compensation plan), 또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에 의한 투자를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소유 지분은 연금계획(pension plan), 이연 보상계획(deferred compensation plan), 또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의 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와 유사하게, 적격의 백지신탁에서 보유하는 지분은 금지된 소유지분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상급자와 하급자(Superiors and Subordinates)

모든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하급자와 사업 또는 재정관계(business or financial relationship)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례 : 여러분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감독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재임대할(sublet) 수 없다.

사례 : 여러분이 외부에서 목공일(caroentry work)을 하는 경우,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서 사사로이 일을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심지어 무료로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점심에 나의 상사나 하급자에게 5달러도 빌려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상사가 매일 5달러를 빌려가서 여러분에게 갚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따른 금지된 재정 관계(prohibited financial relationship)는 아니지만, 그것은 상사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직위를 남용한 경우에 확실히 해당된다.

사례 : 여러분은 상급자나 하급자와 함께 아파트를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분납(splitting rent)하는 것은 재정적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례 : 여러분은 하급자로부터 1천달러를 빌릴 수 없고, 하급자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도 아니 되고, 여러분의 상급자는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잠재적으로 강압적(potentially coercive)일 수 있고, 설사 그것들이 아니라 해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평가와 직무 배정(fair & impartial evaluations and job assignments)을 하는 상급자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직원 사이의 선물(Gifts between City Workers)

우리는 매도자로부터 고액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겠는데, 뉴욕시의 다른 종사자를 위하여 선물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고액 선물 규칙(Valuable Gifts Rule)"은 공직자에게 뉴욕시와 거래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에만 적용된다. 그것은 두 공직자 사이의 선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내가 나의 상급자나 하급자와 재정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물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선물 제공에 관하여 제약이 있다. 이제 차례로 그 제약들을 살펴보자.

1) 하급자가 상급자에게(Subordinate to Superior)

여기에서, 부하직원이 그의 상급자인 그녀의 생일에 꽤 괜찮은 선물(예를 들어 75달러)을 주었다. 사무실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첨쟁이(suck-up)로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그것 자체로는 형사범죄가 아님), 이것은 부하직원에게는 문제를 제기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상급자는 그러한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는 그 자신이나 동료(associate)가 사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직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상관인 그녀가 부하직원으로부터 75달러 선물을 받는 경우(부하직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정확하게 바로 그것이다. 상급자는 그러한 경우에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 커피 잔, 카드 등

2) 상급자가 하급자에게(Superior to Subordinate)

여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75달러의 선물을 준다. 우리는 여전히 직위의 남용 또는 남용의 인상(appearance of misuse)을 가지는가? 아니다.

부하직원은 상급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지만, 제68장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작동되는 모범사례에 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 어떤 점에서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준 선물이 상당히 정기적이고 값비싼 것인 경우, 사람들은 상급자가 어떤 종류의 침묵을 사려고 시도하는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3) 상호 감독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는 두 공직자(Between two public servants who do not have a supervisory relationship between one another)

한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선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축제일 파티, 생일 등등(holiday parties, birthday, and the like)

설사 사무실 파티(office parties)가 상급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모든 참석자가 공직자인 그 파티에서 명백한 금지사항은 없다. 그렇긴 해도, 그런 행사의 개최를 주관하기 위한 더 좋거나 나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실제로 엄격한 규칙은 없지만, 그것들은 명심할 만한 좋은 방법이다.

1) 참석은 실제로 임의적(optional)이어야 하며, 초청에 있어서 서로 이해를 해야(be communicated) 한다.
2) 그 목적을 위해서, 상급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그 파티를 개최하는 것이 최선이다.
3) 그 파티에서 참석은 너무 비싸서는 아니 된다. 때때로 참석 비용은 봉급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4) 특별한 수상자(particular honoree)를 위한 카드가 있는 경우, 비록 어떤 선물에 기여한 부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것에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계모임(Sou-Sous)

계모임(sou-sous), 저축 클럽(savings clubs)은 절대적으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재정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상급자가 어떤 하급자를 계모임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상급자/하급자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직들이 계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나, 몇몇의 기관은 직장에서 동료들간의 재정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법무관에게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한다.

걸 스카우트 쿠키, 기금모금 행사, 초콜릿 바, 에이븐 화장품 (Girl Scout Cookies, Fundraisers, Booster Bar, Avon)

이것은 상급자와 부하직원 사이의 재정적 관계에 관한 제한사항에 있어서 작은 예외(one tiny potential exception)로써, 그것은 부하직원은 판매하고 상급자는 사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반대는 아니다. 또한, 상급자가 살 수 있는 금액은 25달러로 제한된다. 그 이유는 상급자는 부하직원보다 강압에 덜 취약하고, 사고 않 사고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만약 여러분이 에이븐 화장품, 걸 스카우트 쿠키 또는 다른 유사한 물건을 직장에서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의 법무관에게 상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몇몇의 기관은 재정활동(financial activities)의 특성에 상관없이 직장 내에서 어떠한 재정활동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사용제한 허용정책을 기억해야 된다. 소속기관이 이러한 물건을 팔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팔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자선활동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공직자에 의한 자선활동은 이해충돌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반면에 비영리단체에서의 유급활동(paid work)은 외부 유급활동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 부업, 자기소유 사업, 투자를 통한 소득 수령.)

하지만, 여러분이 뉴욕시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거래관계를 맺으려는 비영리단체와 관계된 경우에는, 여러분은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 여러분은 뉴욕시와 거래관계가 있는 그 단체의 업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여러분은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서 급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근무시간이 아닌 여러분의 자유시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 여러분은 사용제한 허용정책에서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뉴욕시의 장비, 자원 또는 보급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한된 범위에서, 소속기관이 여러분의 자원봉사 활동을 소속기관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판단한 다면, 여러분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근무시간 내에 뉴욕시의 자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음은 다양한 봉사활동의 사례와 이에 수반되는 제한사항 (The following are several examples of different kinds of volunteering and the restrictions they may or may not carry)

1) 여러분은 인적자원관리국의 직무 분석관(staff analyst)이다. 여러분은 노숙인보호국(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이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도 한다. 그 비영리단체는 여러분의 소속기관과 아무런 거래관계도 갖지 아니하고, 접촉도 하지 아니한다.

뉴욕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여러분의 근무분야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이 이사회가 뉴욕시 기관과 관계가 있는 어떤 사항(재정지원, 프로그램, 뉴욕시에 반하는 소송과 기타)에 관해서 협의하는 때에는 여러분은 이러한 협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분은 그 회의실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은 이 이사회에 복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뉴욕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대화는 이 이사회에서 다루어 질 것이므로, 여러분은 뉴욕시와 관련된 사안으로부터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여러분은 그 비영

리단체의 뉴욕시 업무에 관계된 서류조차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은 또한 그 비영리단체와 뉴욕시가 관련된 사안에서 비영리단체를 대리해서는 아니 된다. 비영리단체는 뉴욕시의 보조금 또는 다른 것의 연장(renewal)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뉴욕시 공직자를 만나는 경우, 여러분은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여러분이 비영리단체의 뉴욕시 관련 사안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소속기관장의 허락과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준수면제(waiver)를 받아야 한다.

2) 여러분은 위의 (1)에서와 같이, 비영리단체의 이사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단체는 여러분의 소속기관인 인적자원관리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피(recusal)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 단체의 이사회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더 나아가, 승인을 받은 경우, 위의 첫 사례에서 회피를 위한 모든 준수사항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단체와 소속기관 또는 어떤 뉴욕시 기관과의 사이에 사안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에 추가하여 이해충돌방지위원회의 준수면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비영리단체에서 정책결정이나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단체가 여러분의 업무와 관계가 없다면, 자원봉사 규칙(the volunteering rule)은 비교적 덜 엄격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속기관과 거래관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만약 소속기관과 거래관계가 있는 독해 프로젝트에서 어린이에게 책 읽어 주기(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어린이에게 책 읽어 주기)를 하는 경우,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은 정책결정과 관리책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치 활동에 참여(Engaging in Political Activity)

뉴욕시 공직자는 공직 후보자(candidate for office)에게 정치자금 제공 또는

선거운동에 참여와 같이 대부분 정치활동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직위/자원의 남용(Misuse of Position/Resources)

공직자는 공직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사례 :** 여러분은 뉴욕시 공인편지지를 사용해서 자금모금 서신을 보내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를 위하여 뉴욕시의 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복사기를 사용해서 선거 전단지(campaign flier)를 복사해서는 아니 된다.

강요/외견적 강요(Coercion/Perceived Coercion)

공직자는 어떤 사람에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부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부하직원에게 요구해서도 아니 된다.(여러분이 평가하는 사람에게 정치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암묵적 명령(implied order)으로 쉽게 오인될 수 있다.)

매관매직(Buying Office)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potential public servants)는 정치헌금을 통해서 뉴욕시의 직위 또는 승진을 구매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는 공직에 지명되거나 뉴욕시의 직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교부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고위직에 의한 기금 모금(Fundraising by High-Level Appointees)

몇몇의 고위공직자는 누구에게든 공직 후보자 또는 공직에 출마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정치헌금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고위공직자는 역시 어떤 정당에서 지위를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 선거운동의 유급활동(Paid Work for a Local Political Campaign)

지방 선거운동에서 유급직위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외부고용과 같이 처리되지만 하나의 커다란 예외가 있다.

다른 외부 활동(outside job)과 같이, 여러분이 선출직(elective office)을 위하여 지방 선거운동에 종사한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그 지방 선거운동에서 어떤 이득을 획득(obtain any advantage)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뉴욕시 직위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 선거운동을 위하여 뉴욕시 공인편지지, 인력, 장비, 자원 또는 보급품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conduct any business)해서는 아니 된다.
-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뉴욕시의 비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뉴욕시 기관과 관계되는 어떤 사안에 관하여 선거운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분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로부터 준수면제(waiver)를 받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지방 선거운동에서의 부업과 다른 종류의 부업과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설사 지방 선거운동이 뉴욕시 기관들(정치자금 위원회(Campaign Finance Board)와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와 같은)과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있다할 지라도, 여러분은 이해충돌방지위원회로부터 준수면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여러분의 소속기관이 그러한 준수사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시, 소속기관의 총괄 법무관에게 상의), 여러분은 부업을 가지기 위해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여전히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지만, 이해충돌방지위원회는 위의 제한사항이 충족되는 한, 지방 선거운동에 유급직위를 가지는 것은 제68장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자금위원회와 같은 선거운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는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유급이든 무급이든 좀 더 엄격한 규칙을 가질 수 있

다. 그러한 기관의 종사자는 정치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법무관에게 상의하여야 한다.

공직 출마(Running for Office)

공직에 출마한 공직자는 그들이 휴직(take a leave of absence)을 해야 하는 어떤 제한사항(certain restrictions)에 직면할 수 있다. 연방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federally-funded lines)의 종사자는 정당 직위(partisan political office)에 출마하기 전에 모든 것을 사임해야 할 수 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출마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해충돌위원회에 전화해서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알 수 있다.

퇴직(Leaving City Service)
(퇴직 후 제한, Post-Employment Restriction)

구직(Seeking a Job)

뉴욕시 종사자로서, 여러분은 민간분야(private sector)의 기업과 자주 거래를 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퇴직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래했던 기업에서 종사하기 위한 가능성에 관하여 대화하기 위해서 접촉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멈춰야 한다. 이런 종류의 관계망 형성(networking)은 금지되어 있다. 유사하게, 여러분이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기업이 공직 경험을 가진 사람(someone with your City experience)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 기업의 빈자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런 기회(these possibilities)를 알아보는 것은 뉴욕시 종사자에게 이해충돌을 제공할 수 있다. 외부의 제삼자(outside observer)에게는, 여러분이 뉴욕시 공직자의 지위(capacity)에서 거래를 하는 회사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청렴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소위 XYZ 개발회사에 취업(possible job)에 관하여 협의하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무에서 XYZ와 거래관계가 있는 어떠한 업무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사례 : 만약 XYZ가 여러분의 소속기관에 제출한 허가신청서(permit application)를 여러분이 심사 중에 있는 경우, 여러분은 (1) 허가신청서에 관한 여러분의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2)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상급자가 XYZ에 관한 여러분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경우에는 XYZ와 취업(job)에 관하여 협의해서는 아니 된다.

퇴직 후(After You Leave)

여러분이 퇴직 후에 XYZ개발회사에 취업한 경우, 여러분은 여전히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제한사항(restriction)을 준수해야 한다.

1) 여러분이 공직자로서 직접적(personally)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in a substantial way) 처리한 특정 사안(specific matter)에 관해서는 XYZ를 위해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제한은 평생 금지(lifetime bar)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지만(is interpreted narrowly), 여러분이 특정 사안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의 법무관에게 연락해 보아야 한다.

2) 퇴직한 후 1년 동안, 여러분은 XYZ를 위해서 여러분의 전 소속기관의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1년 금지(one-year ban)라고 한다. 이것은 회의(meetings), 전화 통화(telephone calls) 그리고 편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직자로서 여러분이 담당했던 업무(assignment)에 관해서 취급하지 않고, 퇴직한 후 1년 동안 전 소속기관과 접촉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전 소속기관과 관계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그 1년 기간은 여러분이 퇴직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휴가(on leave)" 중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공직자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3) 여러분은 재직 중에 알게 된 비밀정보(confidential City information)를

사익(private advantage)을 위해서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정보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정보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정보의 비밀성(confidentiality)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법무관 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여러분이 상술한 것을 하고 싶다면, 즉 1년 안에 여러분의 민간 고용주를 위하여 전 소속기관과 접촉하거나 여러분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동일한 사안을 취급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전 소속기관장의 승인과 이해충돌방지위원회로부터 준수면제를 얻어야 한다. 여러분은 위원회가 퇴직 후 취업제한 준수면제(post-employment waivers)를 자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퇴직 후 취업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조언을 받으시려면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전화 주시오.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동(Moving to another Government Position)

여러분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거나(go into business for yourself) 또는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경우 위의 제한사항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 그렇지만,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다른 정부기관에 종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각의 근무경력(employment history)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특정한 취업 제의(particular job offer)가 퇴직 후 취업제한 규칙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소속기관의 법무관이나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조언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상황에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어떤 회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회사가 여러분의 전 소속기관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계약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이 뉴욕시를 위하여 처리했던 사안에 관한 일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회사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여러분이 취급할 수 없는 사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하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퇴직 공직자는 이런 제한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수천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고, 여러분의 새로운 사용자는 아마도 그러한 위반과 관

련된 혹평(bad press) 또는 제68장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이 뉴욕시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 있는 사실을 감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What can happen If I Violate Conflict of Interest Rule?)

뉴욕시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이해충돌방지위원회와 소속기관으로부터 엄격한 벌칙을 받을 수도 있다. 위반자는 소속기관의 징계절차를 통하여 강등되거나(demoted)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정직되거나(suspended) 심지어 해고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각 위반에 대하여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징계 또는 해고를 권고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는 또한 지방검찰청(Distrct Attorney's Office)이 기소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위반자는 유죄판결로 인하여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지거나 공직을 잃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 또는 거래를 무효화 시킬수 도 있다.

이해충돌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How To Report Conflict of Interest Violations)

뉴욕시 공직자와 주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윤리법률(ethics law)이 위반되는 경우 피해를 입는다.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212)825-5959로 조사국(Department of Investment)에 전화하거나 소속기관의 감사관에게 전화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전화 또는 편지를 쓸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위원회에 하는 모든 신고는 비밀이다.

신고자 보호(Whistleblower Protection)

윤리적 위반 혐의(possible ethical violations)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뉴욕시 공직자는 흔히 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Statute)이라고 부르는 뉴욕시 조

례 제12-113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이 법률은 뉴욕시 공직자 또는 뉴욕시와 거래하는 민간인에 의한 부패행위(corruption), 형사범죄(criminal activity),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중대한 관리부실(gross mismanagement) 또는 권한남용(abuse of authority)을 신고한 공직자에 대하여 뉴욕시 공직자가 저지르는 불이익한 인사조치(adverse personal action) 형태의 보복행위(retaliation)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신고자 보호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위의 신고행위를 조사국, 감사원(Comptroller), 옴부즈만(Public Advocate) 또는 지방의회 의원(Council Member)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상급자에게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여러분이 신고자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조사국에 직접 신고하시오.

미연방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2010. 9.

대통령·의회 제출 보고서

미국실적제도보호위원회



U.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1615 M Street, NW
Washington, DC 20419-0001

September 2010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귀하

미국 법률 제5권 제1204조제a항제3호〔5 U.S.C. § 1204(a)(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실적제도보호위원회(U.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가 작성한 보고서「미연방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를 제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한 연방공직자가 현행 법률과 판례(case law)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자(a protected whistleblower)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현직의 연방공직자 또는 지원자(applicant)는 법률·규칙·규정 위반(a violation of any law, rule, regulation), 중대한 관리부실(gross mismanagement), 중대한 예산낭비(gross waste of funds), 권한남용(abuse of authority), 공공의 보건·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substantial and specific danger to public health or safety)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in the course of the employer's duties)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은 피하고, 부패행위자가 아닌 신고접수처를 활용하며, 소속기관으로부터 보복행위(징계조치, 승진인사 거부, 징계조치 또는 승진인사 거부에 관한 협박)를 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는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에 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적절한 채널을 통해 시정조치(redress)를 요청해야합니다. 잠재 신고자(potential whistleblower)가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MSPB는 보호심판을 위한 관할권을 갖지 못하며, 다른 형태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잠재 신고자가 소속기관이 취한 보복조치로부터 보호를 받기위해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연방정부 내에서 발생하는 사기(fraud), 예산낭비(waste), 권한남용(abuse), 불법행위(illegality) 및 그 밖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정부역량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할 때 이 보고서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위원장
Susan Tsui Grundmann

MSPB의 보고서 「미연방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는 2010년 12월 7일(화)에 공개됐으나 2010월 9월(최종본 발행 승인일자)로 표기함. 레이아웃 디자인, 인쇄, 배포절차 등 결정에 필요한 시한을 고려해 12월 7일까지는 정부를 포함한 어디에도 사실상 공개되지 않음.

U.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Susan Tsui Grundmann, *Chairman*

Anne M. Wagner, *Vice Chairman*

Mary M. Rose, *Member*

Office of Policy and Evaluation

Director

John Crum, Ph.D.

Deputy Director

Laura Shugrue

Project Manager

Sharon Roth

■ 목 차

제1장 요약

제2장 서문

제3장 연혁

제1절 특별조사청(OSC)과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WPA)

제2절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제4장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자의 필요조건

제1절 부패행위의 정의

- 법률·규칙·규정 위반
- 권한남용
- 중대한 관리부실 혹은 중대한 예산낭비
- 공공의 보건·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 부패행위 기준 요약

제2절 신고접수처

- 부패행위자에게 신고한 경우
- 법률 혹은 시행령에 금지한 신고처

제3절 일상 업무과정과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

- 일상 업무와 소속기관이 부여한 기타 의무사항
- 신고가 전문적인 직업상의 의무 경우

제4절 합리적 믿음

제5절 부패신고로 간주되는 경우

제6절 부패신고가 아닌 행위에 대한 보호

제5장 보복행위의 정의

제1절 인사조치

제2절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경우(혹은 그렇게 할 것처럼 협박하는 경우)

제3절 기여요인

- 지식/타이밍 테스트
- 기여요인에 대한 그 밖의 증거
-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제6장 시정조치 요청 수단

- 원심 관할권
- 개인소권(IRA)에 따른 심판청구
- 직접 심판청구
- 비신고자 보복조치에 대한 MSPB 관할권

제7장 결론

제8장 <발췌문> 미국 법령집 제5편

제1장 요약

연방정부에는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으로 금지하는 인사조치가 있는데, 이것을 금지된 인사조치(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 PPPs)라고 한다.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금지된 인사조치 중 하나는 법률・규칙・규정의 위반, 중대한 관리부실, 중대한 예산낭비, 권한남용, 공공의 보건・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연방공직자에게 보복을 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2] 통상 그러한 연방공직자를 신고자라고 하고, 신고를 이유로 연방공직자에게 취하는 인사조치를 보복행위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모든 사람을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자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모든 보복행위가 법적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실적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는 법률에 따라 심판과 연구임무를 통해 각 정부기관이 금지된 인사조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3]. 심판임무를 통해 MSPB는 관할권 내에 있는 사건을 심판하여 금지된 인사조치를 무효화하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MSPB는 금지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는 모든 주장(혐의)에 대해 자동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관할권을 갖게 된다. 특히 금지된 인사조치 중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관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MSPB는 연구임무를 통해, 금지된 인사조치가 없는 정부가 공익(public's interest)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MSPB는 '행정업무(civil service) 및 정부기관의 실적제도'와 관련된 모든 분야(topic)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4] 이 보고서는 부패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를 다룬 보고서 중의 하나로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5] 이 보고서의 목

2) 5 U.S.C. § 2302(b)(8)

3)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기관 전체를 가리켜 'the MSPB'로, 심판사례를 발행하는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위원회(the Board)'로 지칭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법률 또는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등 다른 기관이 실적제도보호위원회를 지칭할 때는 기관 전체를 가리켜 '위원회 (the Board)'로 종종 언급한다. 따라서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를 다룰 때 동 보고서의 일부 인용 구문에서는 '위원회 (the Board)'를 쓰지만 인용 구문이 아닌 경우 '위원회 (the Board)'란 용어는 심판사례를 발행하는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가리킨다.

4) 5 U.S.C. § 1204(a)(3)

적은 소속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연방공직자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연방공직자 또는 지원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보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2. 연방공직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접수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바른 신고접수처(the right type of party)에 신고를 해야 한다.
3. 연방공직자 자신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이 아닌 신고접수처에 신고해야 한다.
4. 부패행위자가 아닌 신고접수처에 신고해야 한다.
5. 부패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이 있어야 한다. 연방공직자가 반드시 정확(correct)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믿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동종 분야의 전문가(disinterested observer)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반드시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한다.
6. 신고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보복행위(보복적인 인사조치를 당하거나 승진 등의 우호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위의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겠다는 위협. 이하 '보복행위'라 한다)를 당해야 한다.[6]
7. 신고와 보복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어야(demonstrate) 한다.
8. MSPB에 보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적절한 채널(OSC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7]

하지만 신고자가 상위의 모든 보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법은 소속기관이 신고

---

5) MSPB는 이전에도 부패신고를 구체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1981년과 1993년에 발표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보고서와 뉴스레터 기사를 통해 부패신고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부패신고 관련 연구 및 기사 전체 목록은 MSPB 웹사이트(www.mspb.gov/stud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동료 직원들이 신고자를 더 이상 예전처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등의 비공식적인 행위(intangible effect)는 인사조치가 아니다. 기타 유형의 조치, 특히 기밀정보사용 허가 취소(revocation of a security clearance)는 연방공직을 상실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 법에 따른 보호요청을 제기할 수 있는 인사조치가 아니다.

7) MSPB가 독점적인 관할권(separate jurisdictional authority)을 갖는 인사조치가 아닐 경우, 공직자는 특별조사청(Office of the Special Council, OSC)에 먼저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OSC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호요청(detailed complaint)을 하지 못했거나 OSC의 조사 종결을 (혹은 조사가 미종결된 경우 120일을) 기다리지 못할 경우에는 MSPB는 해당 보호요청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게 된다.

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신고자에게 동일한 인사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할 경우에는 신고자가 요청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8]

제2장 서문

"고도의 도덕원칙에 헌신한(dedication to the highest morale principles) 신고자가 그 대가로 괴롭힘이나 학대(harassment and abuse)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고자는 경력 상의 심각한 피해를 당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의 불법행위, 예산낭비,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일은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업무(effective civil service)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거대한 연방 공직체계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패행위의 은폐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연방 정부기관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이건 부패행위 발생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부패행위에 분노하는 공직자는 존재한다. 필요한 것은 공직자가 행정낭비(administrative abuses)를 신고하고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는 것이다." [9]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CSRA)을 제정한 목표 중의 하나였다. CSRA를 통해 미국 의회는 최초로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가해진 부당한 처벌로부터 연방공직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률을 제정했다. CSRA에서 규정한 신고자 보호조항은 1989년, 1994년 두 차례 개정됐다. 최근에 의회는 동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하여 동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개정을 고려해왔다.

---

8) 5 U.S.C. § 1221(e)(2).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규명이 필요한 주장(혐의)을 판단하는 자(the trier of fact)의 내심에 확고한 믿음(belief)을 줄 수 있는 입증의 정도(measure or degree of proof)이다. 이는 증거우위에 의한 입증(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주로 민사소송의 입증기준, 51% 이상)보다 높은 입증 기준이다(beyond reasonable question 보다 입증부담(burden of proof)이 낮은 수준). 5 C.F.R. § 1209.4(d)

9) S. Rep. 95-969,8(1978 U.S.C.C.A.N 2723, 2730). (1978년 제정된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과 함께 발표된 상원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례(legal precedents)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의 개정사항과 공직자가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다룬다.[10] 연방기관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필요성과 사기(fraud), 예산낭비(waste), 권한남용(abuse), 불법행위(illegality) 및 공공 위험(public danger)을 시정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에 따른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가 이러한 조항 제정을 시도했다.

MSPB는 금지된 인사조치와 실적제도의 건전성을 연구·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가 잠재 신고자, 이들의 조력자, 연방기관, 의회, 대통령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바라지만, 이 보고서는 심판 차원에서 위원회가 갖는 공식 견해는 아니다.[11] MSPB에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모든 당사자는 관련 법률, 규정 그리고 선례를 직접 참고하길 권한다.

MSPB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심판하는 기관이므로 이 보고서는 MSPB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여타 연구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다. MSPB의 연구에는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평가와 실적제도 원칙 유지를 위한 법률, 규정, 관리행위, 기타 행정업무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포함된다. 하지만 심판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이 보고서에서는 제공 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연방 법률, 규정 또는 정책에 대한 개정 사항은 배제했다. 이 보고서에서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현행 법률의 일부 내용이나 해당 법률 해석을 담당하는 위원회(the Board)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연방공직신고자에 관련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고행위를 좀 더 쉽게 다루고자, 법률·규칙·규정의 위반행위, 중대한 관리부실, 중대한 예산낭비, 권한남용, 공공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부패행위(wrongdoing)'로 정의할 것이다.[12]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를 '잠재 신고자(potential whistleblower)'로 규정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보호요청 사건의 관할권을 MSPB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호대상 신고자(protected whistleblower)'라고 규정한다.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다루겠지만 모든 잠재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10) 현직 연방공직자와 더불어 공직 지원자도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다. 5 U.S.C. § 2302(a)(2)(A) 하지만 신고를 이유로 가해진 보복행위에 대한 보호요청이 대부분 공직자와 관련된 것이기에 이 보고서에서는 공직 지원자를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11) '위원회'의 자문제공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5 U.S.C. § 1204(h).

12) 5 U.S.C. § 2302(b)(8).

신고자와 관련된 일부 관계 법률을 분리 가능한 사본 형태로 이 보고서 뒤에 수록한다. 이것은 해당 법률의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 보고서에 대한 참고 이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하지만 독자들은 보고서를 읽는 과정에서 맥락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본을 분리하여 손쉽게 참고할 수 있다.

제3장 연혁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의 제정과정과 부패신고자의 보호조치 요구(claims)를 판정(evaluate)하는데 관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현행의 법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연혁을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제1절 특별조사청(OSC)과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WPA)

1970년대 후반 의회와 대통령은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연방공직신고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1978년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상원의원과 그의 보좌관들은 부패행위신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정부업무위원회(th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보고서에선 "부패행위신고 사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률이 있긴 하지만, 법원은 부패행위신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길 꺼려해 왔다"고 지적했다.[13]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1978년 의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연방공직자에게 가해진 보복 문제(issue of retaliation)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갖춘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CSRA)을 제정했다. 연방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복행위(reprisal)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복행위를 취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처음으로 행정업무 내에 마련됐다.[14]

---

13) 정부업무위원회(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부패행위신고자-정부의 예산낭비(waste), 권한남용(abuse), 뇌물수수(corruption)를 신고하는 연방공직자에 관한 보고서」, 1978년 2월 4쪽. (정부업무위원회는 리히 상원의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대중서비스 차원에서 공개하면서 보고서 내용은 정부업무위원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명시했다.)

14) S. Rep. 95-969, 8 (1978 U.S.C.C.A.N. 2723, 2730).

CSRA에 따라 특별조사청(the Office of the Special Counsel, OSC)은 MSPB의 소속기관으로 설립됐다. MSPB는 인사위원회(the Civil Service Commission)의 후신으로 특정 형태의 부당한 인사조치 혐의를 심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반면 OSC는 신설 기관으로 기소를 담당했다. OSC는 금지된 인사 조치에 관한 혐의를 접수, 조사하기 위해 설립됐다. OSC는 실적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MSPB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금지된 인사조치를 취한 정부 관계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소속기관의 부패행위을 신고한 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방지 혹은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OSC에 주어졌다.[15]

하지만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CSRA는 의회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OSC는 부패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됐다. 그에 따라 의회는 1989년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WPA)을 통과했다.

>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WPA)은 특별조사청(OSC)의 역할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면서 1989년 통과됐다. 당시 1979년 이래 OSC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에 제소한 건수는 전무했다. "불이익을 당하기 싫으면 잠자코 있으라는 한 전직 특별검사의 부패신고자를 향한 충고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다. 부패신고자들은 정부업무위원회(the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에 자신들은 OSC를 협력기관이라기 보단 적이라 생각한다며 OSC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16]

WPA는 OSC를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 MSPB로부터 분리했다. WPA는 또한 최초로 개인소권(Individual Right of Action, IRA) 규정을 두었다. 앞으로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IRA는 부패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조치에 대해 MSPB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연방공직자들에게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WPA가 제정되기 전에는 OSC를 통해서만 MSPB에 제소할 수 있었다. 공직자들은 MSPB에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인사조치에 관한 항소사건(otherwise appealable action)에서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의 일환으로 부패신고자에게 가해진 징계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었다.[17] 1994년 WPA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18]

---

15) S. Rep. 95-969, 24 (1978 U.S.C.C.A.N. 2723, 2746).
16) S. Rep. 103-358, 2 (1994 U.S.C.C.A.N. 3549, 3550).
17)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은 (1) 소속기관이 인사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해로운 실수를 범했거나 (2)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과 같은) 금지된 인사조치(PPP)에 근거했거나 (3) 인사조치 결정이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신고자가 해당 인사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루어진다. 5 U.S.C. § 7701(c)(2). 정부기관은 인사조치가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근거한다는 점을 입증해야할 부담이 있지만 적극적 항변을 주장하는 항소자는 적극적 항변을 증거우위에 따라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5 C.F.R. § 1201.56(a)(2).

제2절 연방순회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의 판결을 심리하는 항소법원이다. 다른 12개 항소법원은 개별 관할지역이 있다는 점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서 올라오는 항소사건은 제9 순회항소법원에서 심판하고 뉴욕지방법원에서 올라오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항소사건은 제2 순회항소법원에서 심판한다. 반면, 특정 관할지역은 없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아주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발생장소가 세계 어디이건 MSPB가 관할권을 갖는 사건인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SPB의 판결에 대한 모든 항소를 심리하게 된다.[19] MSPB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따라야한다.[20]

하지만 판결마다 유형이 다르다. 특히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선례로서 효력이 있는 경우 혹은 없는 경우 있다. 선례로서 효력이 없는 사건을 인용 시 종종 'table'이란 용어가 함께 표기된다. 'Fed. Appx.'도 선례로서 효력이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침이나 설득력있는 추론을 위해 선례로서 효력이 없는 입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선례로서 효력이 없는 판결들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선례로서 효력이 없는 입장에 선례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21]

반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선례로서 효력이 있는 판결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방순회항소법원 자체 기각

---

18) 1994년 WPA 개정 목적은 OSC의 부패신고자 관련 정보 공개 규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OSC가 사건이 종결된 부패신고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OSC가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을 두고 부패신고자가 MSPB에 사건을 직접 제소할 경우 관련 증거에 대한 신고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S. Rep. 103-358, 1-2 (1994 U.S.C.C.A.N. 3549, 3550).

19) MSPB와 고용기회평등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모두 관할권을 갖는 사건은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s)에 항소가 가능하며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 대신 관할지역이 있는 순회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

20) 5 U.S.C. § 7703(b)(1)에 따르면 개정 내용에서 제시하듯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금지된 차별조치주장과 관련한 사건 이 외에 사건에 대한 위원회 판결을 재심청구(petition for judicial review)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고려해 위원회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위원회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는 반면 다른 순회법원의 판결은 설득력은 있지만 통제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페이럴 대 재향군인 관리국 사건(*Fairall v. Veterans Administration),* 33 M.S.P.R. 33, 39 (1987), aff 'd, 844 F.2d 775 (Fed. Cir. 1987).

21)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규정 32.1(d)).

(2) 판결에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에 의한 기각
(3) 대법원[22] 결정에 의한 기각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기각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부패신고자와 관련한 일부 판결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이는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제4장 부패신고자 성립요건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상의 부패신고자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고하는 정보 유형, 부패행위를 '올바른' 신고접수처(the correct party)에 신고한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올바른' 채널(the correct channels)을 통해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사항이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신고자가 부패행위 의혹에 대해 합리적 믿음이 있는 경우, 부패행위가 다양한 단계별로 기 정해놓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 의회가 부패신고자 관련 법률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부패행위인 경우. 제4장에서는 각 성립요건에 대해 다룬다.

제1절 부패행위란 무엇인가

연방공직자[23]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동 법은 보호대상 신고자를 "법률·규칙·규정의 위반행위, 중대한 관리부실, 중대한 예산낭비, 권한남용, 공공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24]을 입증한다고 신고자 자신이 합리적으로 믿는"

22) 사건 제소자가 항소권을 갖는 연방순회항소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올라온 MSPB 판결 사건을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이 있다. 이는 사건 이송 (certiorari 혹은 "*cert*") 허가 혹은 거부라 부른다. 동 보고서의 주석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언급에선 '사건 이송 거부(*cert, denied*)'란 말이 사용된다. 이는 제소자가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다는 의미다. MSPB가 심리한 사건에 대해 사건 이송 허가가 난 경우가 몇 차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문 일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분석이 향후 사건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고의로 변경한 경우 또한 있었지만 드문 일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종 판결이다.

23) 수습직원이나 임시직 직원 대부분이 제외되는 부당한 조치를 항소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공직자에 대한 정의와는 달리 부패신고의 경우 '공직자'란 용어의 정의는 포괄적이다. 또한 임시직 직원이나 공직 지원자와 같이 수습직원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홀튼 대 해군성 사건(*Horton v. Department of the Navy)*, 66 F.3d 279, 282 (Fed. Cir. 1995); 로페즈 대 주택도시개발부 사건(*Lopez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98 F.3d 1358 (Fed. Cir. 1996) (Table); 5 U.S.C. § 2302(a)(2)(A). 부패신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수습직원이나 임시직 직원이 항소권을 갖는 경우를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MSPB 웹사이트(www.mspb.gov/studies)에 게재된 「Navigating the Probationary Period After Van Wersch and McCormick」 제하의 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24) 5 U.S.C. § 2302(b)(8)(A).

정보를 신고한 연방공직자나 지원자로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연방공직신고로 간주될 수 있는 부패행위의 범주는 법률 위반, 관리부실, 민간인의 의한 사기, 예산낭비, 권한남용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범주가 모두 동일한 수식어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수식어구는 신고 대상이 된 부패행위가 보호가 성립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어구 사용은 중요하다. 일부 부패행위는 보호가 성립되려면 '중대(gross)'하거나 '실질적(substantial)'이어야 한다. 반면 그 밖의 부패행위의 경우 이러한 수식어구를 수반하지 않고도 보호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법률·규칙·규정의 위반

법률·규칙·규정의 위반을 신고한 공직자는 부패신고자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법률·규칙·규정 위반이 아주 사소한 수준일 수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소한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는 보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5] 다행히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소하다는데 대한 정의를 제시했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라면 "소관업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히 사소하고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 생각하는 사안"을 잠재 신고자가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26]

일례로, 프레드릭 대 법무부 사건(*Frederick v. Department of Justice)*에서 전직 국경순찰대요원(워맥)은 동료 요원(메이베리)이 멕시코 측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 멕시코에 입국해 국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신고하면서 법률 위반 사례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정확한 국경의 위치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메이베리가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들어갔

25) 랜거 대 재무부 사건(*Langer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265 F.3d 1259, 1266 (Fed. Cir. 2001).

26) 드레이크 대 국제개발청 사건(*Drake v.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543 F.3d 1377, 1381 (Fed. Cir. 2008). 드레이크(*Drake*)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위반이 사소하다고 간주되는 사건은 '고의성이 없는' 행위인 반면 사소하지 않은 위반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인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랜거 대 재무부 사건(*Langer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265 F.3d 1259, 1267 (Fed. Cir. 2001); 헤르만 대 법무부 사건(*Herman v. Department of Justice),* 193 F.3d 1375, 1381 (Fed. Cir. 1999) (신고대상이 된 행위가 고의성이 없으므로 해당 신고에 대한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반면 홀튼 대 해군성 사건(*Horton v. Department of the Navy),* 66 F.3d 279, 283 (Fed. Cir. 1995)에서는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사안을 신고할 경우 신고 목적이 상습성을 보이기 위함이라면 해당 신고에 대한 보호는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

지만 이는 워맥이 메이베리가 WPA에 따른 법률·규칙·규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기 힘든 사소한 위반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위원회(the Board) 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잠재적 부패행위가 사소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사건이 많다. 예를 들어 로리 대 재무부 사건(*Lawley v.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서 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행위 개입을 금하는 연방 규정을 들어 정부기관 훈련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27] 보이치키 대 공군성 사건(*Wojcicki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에서 위원회는 신고대상이 된 상황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특정 규정을 들어 안전에 대한 위험 신고의 경우 해당 신고가 공공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므로 보호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28] 그럽 대 내부무 사건(*Grubb v. Department of the Interior*)에서 위원회는 1982년 제정된 연방석유가스로열티관리법(the Federal Oil and Gas Royalty Management Act of 1982)의 잠재적 위반과 근무시간 및 출근부 위조에 대한 신고는 보호가 성립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29] 드레이크 대 국제개발청 사건(*Drake v.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신고자는 과도한 음주라 생각해 신고했고 국제개발청이 그와 같은 음주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해외업무규정(Department of State's Foreign Affairs Manual)은 WPA에 따른 법률·규칙·규정이라 인정함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신고에 대한 보호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30]

"법률·규칙·규정 위반에 대해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이 WPA가 금하고자 하는 민간인의 의한 사기, 낭비, 혹은 남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31] 또한 신고 내용이 법률·규칙·규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신고자는 어떤 법률·규칙·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32] 특히, 국유재산

---

27) 로리 대 재무부 사건(*Lawley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84 M.S.P.R. 253, ¶ 18 (1999).
28) 보이치키 대 공군성 사건(*Wojcicki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72 M.S.P.R. 628, 635 (1996).
29) 보이치키 대 공군성 사건(*Wojcicki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72 M.S.P.R. 628, 635 (1996).
30) 드레이크 대 국제개발청 사건(*Drake v.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543 F.3d 1377, 1380-81 (Fed. Cir. 2008).
31) 모그요로시 대 공군성 사건(*Mogyorossy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96 M.S.P.R. 652, ¶ 11 (2004). 또한 갠스키 대 내무부 사건(*Ganski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86 M.S.P.R. 32, 11 (2000). 참고
32) 다니엘 대 재향 군인회 사건(*Daniels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05 M.S.P.R. 248, ¶ 12 (2007) (항소자가 주장하는 부패행위는 법률·규칙·규정의 위반이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해당 항소자는 법률·규칙·규정의 위반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 칼릴 대 농림부 사건(*Kalil v. Department of Agriculture),* 96 M.S.P.R. 77, ¶ 16 (2004) (항소자는 특정 법률·규칙·규정을 언급하진

절도(theft of government property)나 사기성 지불 청구(fraudulent claims for pay)와 같은 부패행위는 법률·규칙·규정 위반이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항소자는 법률·규칙·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33]

권한남용

'권한남용'이란 용어 역시 '중대한(gross)'과 같은 수식어구를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한 권한남용이 아니라하더라도 부패신고자 보호가 성립될 수 있다.[34] '권한남용'의 의미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회는 CSRA 입법연혁에서도 권한남용의 의미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규정상의 의미를 채택했다.[35] '연방공직자가 권력을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게 행사함으로써 특정인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가하거나 자기 자신이나 아끼는 사람들에게 사적인 이득이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행위'가 취해졌을 때 권한남용이 성립된다.[36]

위원회가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공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행위[37], 불만사항을 야기한 당사자로 지명된 관리담당자에게 해당 불만처리 업무를 배정하는 행위[38], 상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39], 정부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않았지만 해당 신고는 사법법규 위반을 입증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결), 아이비 대 재무부 사건(*Ivey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94 M.S.P.R. 224, ¶ 13 (2003) (항소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규칙, 규정 위반을 신고하는 것인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세금환급변경 관련 신고는 법조항은 아니더라도 규제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

33) 디 조르지오 대 해군성 사건(*DiGiorgio v. Department of the Navy*), 84 M.S.P.R. 6, ¶ 14 (1999).

34) "권한남용은 최소한의 기준(*de minimis* standard)을 포함하지 않는다." 앰브리 대 재무부 사건(*Embree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70 M.S.P.R. 79, 85 (1996).

35) 동 정의는 1989년 WPA가 제정되기 이전에 특별조사청(the Office of the Special Counsel)이 마련했다. 더 이상 규정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WPA 제정당시에는 있었고 1989년 의회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는 권한남용에 대한 동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디 엘리아 대 재무부 사건(*D'Elia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60 M.S.P.R. 226, 232 (1993). 또한 엘카서 대 연방조달청 사건(*Elkassir v.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57 Fed. Appx. 326, 329 (Fed. Cir. 2007) (Table); 도일 대 재향 군인회 사건(*Doyle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73 Fed. Appx. 961 (Fed. Cir. 2008) (Table); 길버트 대 상무부 사건(*Gilbert v. Department of Commerce),* 194 F.3d 1332 (Fed. Cir. 1999) (Table). 참조

36) 디 엘리아 대 재무부 사건(*D'Elia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60 M.S.P.R. 226, 232 (1993).

37) 특별검사 대 코스텔로 사건(*Special Counsel v. Costello*), 75 M.S.P.R. 562, 580-81 (1997) rev'd on other grounds, 182 F.3d 1372 (Fed. Cir. 1999); 머피 대 재무부 사건(*Murphy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86 M.S.P.R. 131, ¶ 7 (2000).

38) 로이드 대 재무부 사건(*Loyd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69 M.S.P.R. 684, 688 (1996).

39) 시르고 대 법무부 사건(*Sirgo v. Department of Justice),* 66 M.S.P.R. 261, 267 (1995). 또한 특별검사 대 스피어스 사건(*Special Counsel v. Spears)*, 75 M.S.P.R. 639. 655 (1997).참조 (업무 배정에 있어 금지된 목적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배정 결정과정에서 편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정 공직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데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다고 판결)

공직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행위[40]. 반면, 위원회는 일부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정 상황에서는 징계조치 시행 지연[41], 직무수행평가계획 변경[42], 공직자의 승진에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특정 사무소를 폐쇄[43]하는 행위를 합리적으로 관리상의 권한남용으로 간주하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중대한 관리부실 혹은 중대한 예산낭비

법률 위반 혹은 권한 남용에 대한 조항과는 달리 동 법에서는 관리부실 혹은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언급할 땐 '중대한(gross)'이란 수식어구를 함께 사용한다.[44] '중대한'이란 수식어구에 부합하려면 정부기관의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관리부실 혹은 예산낭비로 인해 해당 기관의 임무 달성 능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이 드러나야 한다.[45] 관리상의 결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해당 기관에 야기되는 위험이 미미할 경우 잠재 신고자가 관리부실 혹은 예산낭비를 신고한다면 보호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46]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위원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리상의 결정은 중대한 관리부실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단순한 부주의 혹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단순한 부주의 혹은 부패행위라 볼 수 있는 방관적 태도를 취함의 의미

---

40) 휠러 대 재향군인회 사건(*Wheeler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88 M.S.P.R. 236, ¶ 13 (2001).
41) 풀치니 대 사회보장국 사건*(Pulcini v.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83 M.S.P.R. 685, ¶ 13 (1999).
42) 맥컬럼 대 재향군인회 사건 (*McCollum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75 M.S.P.R. 449, 458-59 (1997) (공직자는 새로운 직무수행평가계획이나 성과평과 실시로 자신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거나 이러한 조치로 다른 이가 혜택이나 사적인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43) 다우닝 대 노동부 사건*(Downing v. Department of Labor),* 98 M.S.P.R. 64, ¶ 12 (2004) (특정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사무소를 폐쇄했다는 혐의가 없다고 판결)
44) 슈나이더 대 국토안보부 사건(*Schneider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98 M.S.P.R. 377, ¶ 13 (2005). 또한 5 U.S.C. § 2302(b)(8). 참조
45) 맥코클 대 농림부 사건(*McCorcle v. Department of Agriculture),* 98 M.S.P.R. 363, ¶ 22 (2005); 로페즈 대 주택도시개발부 사건(*Lopez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98 F.3d 1358 (Fed. Cir. 1996) (Table); *White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391 F.3d 1377, 1382 (Fed. Cir. 2004); 크자르코스키 대 해군성 사건(*Czarkowski v. Department of the Navy),* 87 M.S.P.R. 107, ¶ 12 (2000) (중대한 관리부실은 "해당기관의 임무수행 능력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위험을 제기하는 결정"이라 판결)
46) 새진스키 대 주택도시개발부 사건(*Sazinski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73 M.S.P.R. 682, 686-87 (1997); 맥코클 대 농림부 사건(*McCorcle v. Department of Agriculture),* 98 M.S.P.R. 363, ¶ 22 (2005); 화이트 대 공군성 사건(*White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391 F.3d 1377, 1384 (Fed. Cir. 2004) ("신고자(White)가 알고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핵심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동종 분야의 전문가(disinterested observer)가 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프로그램의 장점이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는 중대한 관리부실을 신고했다는 합리적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

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중대한 관리부실이란 정부기관의 임무 달성 능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가할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는 관리상의 행동 혹은 방관적 태도를 의미한다.[47] 해당 기관의 행위가 너무도 심각해 해당 기관이 잘못을 범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48] 예를 들어, 매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절도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9만 달러치 쿠폰을 보상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중대한 관리부실로 간주됐다.[49]

관리부실은 종종 인력관리 및 활용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 인력 활용에 관한 관리상의 일부 결정은 중대한 관리부실로 간주되는 반면 다른 경우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왔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관의 임무에 가해지는 타격이다. 일례로, 스완 대 연방조달청 사건(Swanson v.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위원회는 관리자가 "대폭 감원을 단행함으로써 해당 사무소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저해"한 경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중대한 관리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50] 반면,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포함해 일부 직위가 없어져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을 때 위원회는 소속 기관의 임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중대한 관리부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51]

중대한 예산낭비는 "정부에 발생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크게 넘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는 지출 수준 그 이상을 의미한다."[52] 예를 들어, 잠재 신고자가 생각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을 하청업체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정부기관의 결정은 신고자가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것이 어떤 식으로 해당 기관의 임무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중대한 자금낭비에 해당되지 않았다.[53]

---

47) 로페즈 대 주택도시개발부 사건(*Lopez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98 F.3d 1358 (Fed. Cir. 1996) (Table) 내퍼스 대 육군 사건(*Nafus v. Department of the Army)*, 57 M.S.P.R. 386, 395 (1993)인용.)

48) 화이트 대 공군 사건(*White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391 F.3d 1377, 1382 (Fed. Cir. 2004).

49) 우드 대 국방부 사건(*Wood v. Department of Defense),* 100 M.S.P.R. 133, ¶ 12 (2005).

50) 스완 대 연장조달청 사건 *(Swanson v.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10 M.S.P.R. 278, ¶ 11 (2008).

51) 새진스키 대 주택도시개발부 사건(*Sazinski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73 M.S.P.R. 682, 687 (1997) ("80명의 엔지니어링 직원 중 일부를 해직한 것이 해당 기관의 임무수행능력에 실질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항소자가 합리적으로 믿기 힘들다고 판결") 또한 맥코클 대 농림부 사건 (*McCorcle v. Department of Agriculture),*, 98 M.S.P.R. 363, ¶ 22 (2005) 참조. (자신의 능력 이하의 업무를 배정받았다는 신고는 신고자에 대한 업무 배정 결정이 소속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실질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신고자가 합리적으로 믿고 있음을 보일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결)

52) 젠센 대 농림부 사건 (*Jensen v. Department of Agriculture),* 104 M.S.P.R. 379, ¶ 10 (2007) (밴에 대 환경보호청 사건(*Van Ee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64 M.S.P.R. 693, 698 (1994) 인용).

53) 젠센 대 농림부 사건 (*Jensen v. Department of Agriculture),* 104 M.S.P.R. 379, ¶ 9 (2007).

반면 신고자가 소속기관이 15,000달러를 들여 연료관리시스템을 구입해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을 교체했다고 감사관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가 중대한 예산낭비를 신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54] 정부기관이 특정 시설의 "업무량을 현저하게 줄인" 이후에도 해당시설의 "전 공직자"에게 임금을 지불했고 해당 공직자들을 "업무량이 많은 다른 시설로 보내 일하게 했더라면 해당기관은 직원을 부적절하게 추가 채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주장은 사소하다고 취급될 수 없는 중대한 예산낭비 혐의에 해당됐다.[55]

공공의 보건·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공공보건・안전에 대한 위험 역시 수식어구를 수반한다. 신고 내용이 부패신고자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위험은 반드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신고 대상이 된 위험이 WPA에 따른 보호가 성립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를 파악하는 다양한 요건이 있다. 그중 하나가 위험에 따른 결과로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다. 신고 대상이 된 위험이 추측에 의한 혹은 있을 법 하지 않은 조건에서만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보일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다른 중요한 요건은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다. 즉각적으로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나타나는 피해는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보다 보호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크다. 두 요건은 모두 위험의 구체성에, 피해의 성격 즉, 잠재적 결과는 위험의 실질성에 영향을 준다. [56]

챔버스 대 내무부 사건(Chambers v. Department of the interior)에 대한 2010년 결정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립공원경찰국장 테레사 챔버스(Teresa Chambers)는 인력부족으로 벌티모어 워싱턴 (the Baltimore-Washington, 'BW') 공원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는 정보를 언론에 공개했을 때 해당 신고는 공공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신고는 문제의 발단에 대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었다. (권고 인원이 4명임에도 2명의 경찰관이 순찰업무 담당) (2) 인력부족에 따른 구체적 결과를 제시했다. (교통사고) (3) 자동차 사고는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위험이다. (4) 추측에 근거하거나 모호한 결과가 아니었다. 즉, 인력부족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

54) 스미스 대 육군 사건(*Smith v. Department of the Army)*, 80 M.S.P.R. 311, ¶ 6, 10 (1998).
55) 패리크 대 재향 군인회 사건(*Parikh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10 M.S.P.R. 295, ¶ 18 (2008).
56) 챔버스 대 내무부 사건*(Chambers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515 F.3d 1362, 1369 (Fed. Cir. 2008). 챔버스 사건 판결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2010년 7월 현재로 두 차례의 위원회 판결, 두 차례의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이 있었다. 동 보고서가 작성되던 시점엔 챔버스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두 차례 판결이후 위원회 심판을 받고 있었다.

미 발생했다. "WPA에 따른 보호가 성립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성을 갖추었다."[57]

유사한 사례가 밀러 대 국토안보부 사건(Miller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이다. 동 사건에서 신고자가 자신의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수화물 내 폭발물 감지기의 실패율이 10%라고 신고했을 때 위원회는 잠재적 결과 즉, 민간 항공기에 폭발 장치가 설치되는 상황은 명백한 재앙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고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신고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폭탄물 설치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광범위한 보안검사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는 것도 위협이 얼마나 실현가능하며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58]

반면, 신고자가 감사관실에 "소속기관이 탄약 부족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무기에 탄약을 충분히 장전하지 말고" 신고자의 주장대로라면 25개 산탄총 탄약을 소지해야 했지만 여섯 개만 소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신고한 사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성립하지 않았다. 신고자는 "보안 요원들이 공격을 받았더라면 탄약을 충분히 장전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안 요원들의 생명과 그들이 보호해야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신고는 향후 어느 시점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측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런 위험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해당 신고에 대한 보호는 성립되지 않았다.[59]

신고에 대한 보호가 성립되기 위해 위험이 어느 정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많은 요건이 있지만 공공 보건·안전에 대한 위험 신고가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 전체 대중이 해당 신고에 따른 영향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60] 일례로 보이치키 대 공군성 (Wojcicki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사건에서 신고자는 상사와 다른 관리자들에게 모래분사방지기에 결함이 있어 자신과 동료들이 독소 먼지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신고자는 이 때문에 자신이 각혈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위원회는 "해당 위험은 항소자와 모래 분사를 담당

57) 챔버스 대 내무부 사건*(Chambers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602 F.3d 1370, 1379 (Fed. Cir. 2010).
58) 밀러 대 국토안보부 사건(*Miller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11 M.S.P.R. 312, ¶¶ 16-19 (2009).
59) 모그요로시 대 공군성 사건(*Mogyorossy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96 M.S.P.R. 652, ¶¶ 16-17 (2004).
60) 브라가 대 육군성 사건(*Braga v. Department of the Army),* 54 M.S.P.R. 392, 398 (1992), aff 'd, 6 F.3d 787 (Fed. Cir. 1993) 참조 (군인용 방탄복 디자이너가 전달받은 요구사항대로 디자인한 방탄복을 착용할 경우 군인들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신고한 사안은 보호가 성립하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이라 판결함), 개디 대 해군성 사건(*Gady v. Department of the Navy),* 38 M.S.P.R. 118, 121 (1988) (화재 위험이나 소속 기관 직원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신고할 경우 보호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함)

하는 일부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실질적이며 항소자가 이미 자신에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각혈)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보아 정상이라 할 수 없고, 심각하며 중대하다." 따라서 "모래분사 작업에 관한 신고는 몇몇 한정된 동료직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사안이자 신고자 자신의 개인적인 사안에 관한 것일 수 있지만 보호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61]

부패행위 기준 요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부패행위의 경우는 상당히 경미한 수준이라 해도 보호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패행위의 경우는 잠재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성립되려면 해당 행위는 보다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규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누군가의 신체적 안전에 위험을 전혀 가하지 않는다 해도 보호가 성립될 수 있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신체적 위험은 즉각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단순히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잠재 신고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구분이 불만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동 법이 이러한 구분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잠재 신고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위원회와 법원은 이 같은 구분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법적 보호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2절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는 어디였는가

상위 질의에 대한 답이 잠재 신고자에 대한 보호 성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부적절한' 신고접수처(an incorrect party)에 부패행위를 신고했다면 해당 잠재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신고접수처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다른 보호 성립 요건이 충족되느냐에 따라 해당 잠재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성립될 수도 혹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적절한 개인 혹은 조직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신고함에 따라 보호가 성립되지 못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61) 보이치키 대 공군성 사건(*Wojcicki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72 M.S.P.R. 628, 634-35 (1996). 또한 브라가 대 육군성 사건(*Braga v. Department of the Army),* 54 M.S.P.R. 392, 398 (1992), aff 'd, 6 F.3d 787 (Fed. Cir. 1993). 참조

부패행위자에게 신고하는 경우

부패행위자에게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가 성립되지 않는다. MSPB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부패행위자를 상대로 신고할 경우는 보통 부패신고로 간주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62] 잠재 신고자가 자신의 상사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하더라도 해당 상사가 부패행위자인 경우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63]

부패행위자에게 신고할 경우 보호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신고(disclosure)' 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이다.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신고(disclosure)는 "감춰져 알려지지 않은 사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64] 결과적으로 "신고자가 부정행위자에게 부패행위를 신고 혹은 진술할 경우 해당 신고자는 부패행위를 '신고(disclosure)' 하는 것이 아니다. 부패행위가 발생했다면 부패행위자는 그 자신이 부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이므로 필연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미리 알게 되어 있다."[65] 즉, 신고자는 누군가를 상대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상대가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안을 신고해야 한다.[6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의회가 WPA 문구로 '보고(report)' 혹은 '진술(state)'이 아닌 '신고(disclosure)'라는 단어를 선정한 것은 '긴요'했다고 판단했다.[67] 본 법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 단어 선정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전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신고'와 '보고'의 차이는 문제가 되는 사안을 부패행위자에게 신고한 신고자가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여부의 차이를 가져온다. 의회는 WPA 초안 작성 시 '신고'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그에 따라 부패행위자를 상대로 신고할 경우 보호는 성립하지 않는다.

---

62) 홀튼 대 해군성 사건(*Horton v. Department of the Navy),* 66 F.3d 279, 282 (Fed. Cir. 1995).
63)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50 (Fed. Cir. 2001).
64)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49-50 (Fed. Cir. 2001).
65)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50 (Fed. Cir. 2001).
66) 뮤위센 대 내부무 사건(*Meuwissen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234 F.3d 9, 13 (Fed. Cir. 2000)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를 신고할 경우 WPA에 따른 보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WPA의 목적은 감춰져있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대부분을 대중이 알고 있다 해도 신고자가 문제의 성질이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일반 대중이 알지 못할 경우 보호가 성립될 수 있다. 와드화 대 재향군인회 사건(*Wadhwa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10 M.S.P.R. 615, ¶ 9 (2009).
67)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50 (Fed. Cir. 200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부차적으로 부패행위자인 상사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다루었다.[68] 법원은 상사가 해당 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면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해 상사에게 알릴 경우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69] 따라서 행위의 부적절성을 알지 못하는 상사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상사를 돕고자하는 신고자가 감춰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부패행위자에게 신고하는 것이라 해도 보복이 가해질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와 보고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행위를 신고하는 것과 행위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부패행위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라도 잠재 신고자는 부패행위자에게 문제를 알림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파악해야한다. 이에 따라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가 결정될 수 있다.

법률 혹은 대통령 명령(Executive Order)에 따른 금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나 외교행위에 관한 공익상 법률 또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비밀 유지가 확연히 요구되는 사안을 잠재 신고자가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며 소속기관의 감사관, 기관장이 신고 접수처로 임명한 공직자 혹은 특별조사청을 상대로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70] 법률 또는 대통령 명령이 금지하는 신고가 아닌 경우 신고접수처가 소속기관의 감사관, 기관장이 신고 접수처로 임명한 공직자 혹은 특별조사청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언론 등 다른 대상을 상대로 신고할 경우 보호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한 금지'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하다.

1993년 켄트 대 연방조달청 사건(Kent v.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사건에서 위원회는 5 U.S.C. § 2302(b)(8)조항에 사용된 '법률'이란 용어는 "규칙과 규정을 아우르는 의미는 아니다" 고 판결했다.[71] 맥린 대 국토안보부 사건(Maclean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위원회가 켄트사건에 대한 판결을 수정하기 이전엔 켄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신고가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규정이나 규제로만 금지

68) 부차적 의견(Dictum, dicta)은 판결에 불필요한 법원의 언명을 말한다. 따라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통해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해당 문제를 고려할지 독자들은 알 수 있다.

69)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50 n. 2 (Fed. Cir. 2001). ("물론 신고자가 부패행위자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패행위자에게 신고하고 부패행위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그 행위가 불법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해당 신고에 대한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 5 U.S.C. § 2302(b)(8)(A)에서는 WPA에 따른 보호가 성립하려면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부적절성보다는 근본적인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70) 5 U.S.C. § 2302(b)(8).

71) *켄트 대 연방조달청 사건(Kent v.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56 M.S.P.R. 536, 542 (1993).

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72] 2009년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신고와 규제에 의해 금지는 신고 간 명확한 구분을 없앰으로써 1993년 내린 켄트 판결을 수정했다.

맥린 사건에서 위원회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2302(b)(8)조항에 따라 규정에 의해 신고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 해당 규정은 실질적인 규칙이어야 한다. (2) 의회가 소속 기관에 이 같은 규정 마련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어야한다. (3) 해당규정은 의회가 정한 절차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공포되어야 한다.[73] '실질적인 규칙'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74]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상위 세 가지 조건을 부합할 경우 해당 사건에서 신고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것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75]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맥린 사건에서만 켄트 판결을 수정한 것일 뿐 기각한 것이 아니다.[76] 일부 규정엔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반면 다른 일부 규정은 그렇지 못하다.

맥린 사건에 대한 판결은 경우에 따라선 소속기관의 감사관, 기관장이 신고 접수처로 임명한 공직자 혹은 특별조사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만 보호가 성립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언론 등 다른 대상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보호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신고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상위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되며 보호가 성립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잠재 신고자가 국가보안기밀과 관련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어디에 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맥린사건에 대한 판결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맥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디에 신고하느냐 따라 보호가 성립되지 않는 심각한 결과가 수반 될 수 있다.

---

72) *켄트 대 연방조달청 사건(Kent v.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56 M.S.P.R. 536, 542 (1993).

73) 맥린 대 국토안보부 사건(*MacLean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12 M.S.P.R. 4, ¶ 25 (2009) (크라이슬러 사 대 브라운 사건(*Chrysler Corp. v. Brown),* 441 U.S. 281, 301-03 (1979) 인용)

74) 맥린 대 국토안보부 사건(*MacLean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12 M.S.P.R. 4, ¶ 26 (2009) (크라이슬러 사 대 브라운 사건(*Chrysler Corp. v. Brown),* 441 U.S. 281, 302 (1979) 인용) 크라이슬러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은 대통령 명령에 따라 취득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권리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므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명백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됐다. (크라이슬러 사 대 브라운 사건(*Chrysler Corp. v. Brown),* 441 U.S. 281, 303 (1979).

75) 맥린 대 국토안보부 사건(*MacLean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12 M.S.P.R. 4, ¶ 26 (2009) (크라이슬러 사 대 브라운 사건(*Chrysler Corp. v. Brown),* 441 U.S. 281, 302 (1979) 인용)

76) 위원회가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은 "*켄트 대 연방조달청 사건(Kent v.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5 U.S.C. § 2302(b)(8)(A)조항의 의미 내에서는 규정은 신고를 금지하는 법률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린 대 국토안보부 사건(*MacLean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12 M.S.P.R. 4, ¶ 33 n. 2 (2009) (내부 인용구문 삭제)

제3절 일상 업무과정과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

모든 신고가 보호를 받진 않는다. 보호가 성립되는 신고는 다음 두 개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된다. (1)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 밖에서* 신고하는 경우. (2)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경우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77]

일상 업무와 고용주가 할당한 기타 의무사항

일상 업무와 관련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일상 업무에 관한 법률 원칙이 항상 명확하지 않았고 일상 업무 문제에 대한 모순된 부차적 진술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78] 후프만 사건에서 상황에 명확성을 부여하고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서로 다른 세 개 상황을 제시하고 차례로 각각의 상황을 평가했다.

1. 신고자가 일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조사, 제보하는 업무를 배정받았고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 해당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2. 신고자가 부패행위 조사 업무를 배정받았으나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이 아닌 신고 접수처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이 같은 경우는 보호대상이다.)

3. 신고자는 부패행위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 같은 신고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경우 (이 같은 경우는 보호대상이다.)[79]

부패행위 신고 업무를 배정받은 사례인 첫 번째 상황은 법률 집행이나 감사관이 관련되는 상황에서 종종 발생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신고자가 단지 소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자신의 직업안정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재차 판결했

---

77) 필즈 대 법무부 사건(*Fields v. Department of Justice),* 452 F.3d 1297, 1305 (Fed. Cir. 2006)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54 (Fed. Cir. 2001)인용).

78)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51-52 (Fed. Cir. 2001).

79)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E.3d 1341, 1352-54 (Fed Cir. 2001). ("고용인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신고는 본 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

다.[80] 신고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 부패행위를 고발했다면 보호가 성립되지 않는다.[81]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이라고 형식적이거나 오랜 시간이 요구될 필요는 없다. 정부기관이 특정 상황을 다루기 위해 마련한 임시 채널도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로 간주될 것이다.[82] 이와 같이 업무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배정될 필요는 없다.[83] 필즈 대 법무부 사건(Fields v. Department of Justice)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부하직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사건의 일정표 작성을 요청받은 범죄감독수사관이 항소자였다. 항소자는 일정표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과는 별개라고 생각해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던 '후속' 보고서 내용을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84]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필요시 내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항소자의 일상적 업무의 일환이고 내부 감사 기간 동안 마련된 임시 업무보고 채널은 그러한 목적에서 필즈의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이다. 키프(상사)가 필즈에게 후속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고용인이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대개 잘못된 부분 시정, 기록보충, 모호한 부분에 대한 명확성 부여 및 기타 유사 작업을 위한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후속 업무 수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인이 명백히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후속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 해당 후속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통한 일상 업무'로 간주하고 후속업무와 관련한 신고는 WPA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다. [85]

후프만 사건에서 제시된 두 번째 상황은 첫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부패행위 신고 업무를 배정받았으나 신고 채널이 다르다. 첫 번째 상황과 달리 두 번째 상황은

---

80) 윌리스 대 농림부 사건(*Willis v. Department of Agriculture)*, 141 E.3d 1139, 1144 (Fed Cir. 1998). 또한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263 F.3d 1341, 1351-52 (Fed Cir. 2001). 참고

81) 윌리스 대 농림부 사건(*Willis v. Department of Agriculture)*, 141 E.3d 1139, 1144 (Fed Cir. 1998). 또한 래버지 대 해군성 사건(*Laberge v. Department of the Navy),* 91 M.S.P.R. 585, ‖8 (2002). (환경관련 법률과 규정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 항소자의 신고는 자신의 일상 업무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업무채널을 통해 부패행위를 조사, 제보했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82) 필즈 대 법무부 사건(*Fields v. Department of Justice)*, 452, E.3d 1297, 1305 (Fed Cir. 2006).

83) 필즈 대 법무부 사건(*Fields v. Department of Justice)*, 452, E.3d 1297, 1305 (Fed Cir. 2006). 또한 레이튼 대 육군성 사건(*Layton v. Department of the Army),* 112 M.S.P.R. 549, ‖15 (2009).참조 (항소자의 일상 업무의 일환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항소자의 업무상 확대된 부분이 항소자가 신고한 내용인 제품을 감독하는 담당자들의 고속 승인과 관련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신고는 보호가 성립하지 않았다.)

84) 필즈 대 법무부 사건(*Fields v. Department of Justice)*, 452, E.3d 1297, 1305 (Fed Cir. 2006).

85) 필즈 대 법무부 사건(*Fields v. Department of Justice)*,452, E.3d 1297, 1305 (Fed Cir. 2006).

WPA에 따른 "명백한 보호대상이다."[86]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이 아닌 신고접수처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WPA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87]

존슨 대 보건인적서비스부 사건(Johnson v.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은 후프만 사건에서 제시된 두 번째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존슨 사건에서 항소자는 배정된 업무에 따라 계약상의 부정행위 혐의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존슨은 부패행위 혐의에 대해 "상사에게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감사관에게 해당 혐의를 알렸다.[88] 위원회는 후프만 사건에서 제시한 두 번째 상황에 따른 신고형태이고 따라서 보호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89]

대법원은 통상적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신고에 대한 보호는 성립되지 않지만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 밖에서 이루어진 신고는 보호 대상이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했다. 법원은 "고용인들에게 소속기관 내부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접수처를 마련해주면 고용인들은 가장 안전한 신고 방법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부차적으로 권고했다.[90]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 내에서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없는 고용인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 밖에서 신고하는 것이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단일 것이다. 고용인의 일상 업무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고용인이 보호대상이 될

---

86)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54 (Fed Cir. 2001).

87) 신고자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이 아닌 신고접수처에 신고 할 수도 있다. 이 중 한 채널을 통해 신고한 경우 WPA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추가 채널을 활용했다고 보호가 무효화되진 않는다. 각기 다른 신고접수처에 신고 된 사안이 동일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항소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관할권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엘리슨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호 사건(*Ellison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7 E.3d 1031, 1035 (Fed Cir. 1993). 또한 *마틴 대 공군성 사건(Martin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73 M.S.P.R. 574, 578-79 (1997) 참조. (항소자는 다른 신고접수처에 재차 신고했다 해서 그와는 다른 접수처에 신고한 내용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판결)

88) 존슨 사건에서 위원회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휴프만 사건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 밖에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언급,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패행위를 의심하는데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 밖에서 신고하기로 한 결정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기준(reasonable person standard)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존슨 대 보건인적서비스부 사건(*Johnson v.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93 M.S.P.R. 38, ¶ 13-14 (2002).

89) 존슨 대 보건인적서비스부 사건(*Johnson v.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93 M.S.P.R. 38, ¶ 14 (2002).

90) 가르세티 대 세바로스 사건 (*Garcetti v. Ceballos),* 547 U.S. 410, 424 (2006).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서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이 보장될 때다.

세 번째 상황은 신고해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배정받은 업무가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기관이 자체 정책에 따라 고용인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마약단속국(DEA)은 정책에 따라 "요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DEA의 임무 혹은 소속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DEA 직원이 저지른 행위를 신고하도록 한다."[91] DEA 요원인 마라노(Marano)는 자신의 현장 사무소에 있는 두 명의 상사에게 그 같은 행위를 신고했다. 이에 따른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결국 마라노는 다른 업무를 배정받게 됐다. 법원은 마라노가 보호대상이라고 판결했다.[92]

마라노 사건에서는 보호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주 미세한 구분을 둔다. 배정된 업무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고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이용했다면 WPA에 따른 보호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 의무가 신고자의 특정 업무가 아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보호가 성립될 수도 있다.[93] 일상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진 신고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WPA에 따른 보호가 통상적인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 신고한 공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려면 아마도 이러한 구분은 필요하다. 결국 규정상 '예산낭비, 민간인에 의한 사기, 권력남용, 부패행위를 적절한 신고접수처에 신고'하는 것은 모든 연방공직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다.[94] 따라서 보편적인 신고 의무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직원도 예산낭비, 민간인에 의한 사기, 권력남용, 부패행위를 '적절한 신고접수처'에 신고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

---

91) 마라노 대 법무부 사건(*Marano v. Department of Justice)*, 2 F.3d 1137, 1142 n.4 (Fed. Cir. 1993). 또한 와슨 대 법무부 사건(*Watson v. Department of Justice),* 64 F.3d 1524, 1530 (Fed. Cir. 1995) 참조 (신고자는 다른 이유에 앞서 업무 교대시간이 끝날 때 까지 동료직원이 행한 부패행위를 적시에 고발하지 못함으로써 소속기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직됨) 휴프만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신고의무는 있지만 신고에 대한 보호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와슨 사건(와슨의 해직은 다른 이유에 근거해 타당하다고 판결됐지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후프만 대 인사관리국 사건(*Hu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54 (Fed. Cir. 2001).

92) 마라노 대 법무부 사건(*Marano v. Department of Justice),* 2 F.3d 1137 (Fed. Cir. 1993).

93) 칸 대 법무부 사건(*Kahn v. Department of Justice*_, 528 F.3d 1336, 1342-43 (Fed. Cir. 2008) 참고 (부패행위 신고는 모든 DEA 요원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신고에 대한 보호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

94) 5 C.F.R. § 2635.101(b)(11).

신고가 전문적인 직업상의 의무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속기관이 업무를 배정하는 반면 특정 직업의 경우 소속기관의 지시와는 별도로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가르세티 대 세바로스 사건(Garetti v. Ceballos)에서 직업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 정부가 아닌 카운티 정부(county government)가 연관된 사건이었지만 해당 사건의 판결은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신고가 전문적인 직업상의 의무인 경우 보호 제공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면 전문적인 직업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공직자은 보복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95]

세바로스는 카운티 정부가 고용한 지방 검사였고 그는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의 일환으로 미결 사건에 대한 서류 작성을 담당했다. 해당 서류는 동 사건에 대한 카운티 경찰 활동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바로스는 이후 해당 서류의 내용이 카운티 경찰 활동을 부정적으로 언급한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직자가 자신의 공식 업무에 따라 발언을 할 경우 해당 발언에 대해 소속기관이 징계조치를 취해도 헌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96]

검사와 같은 일부 직업의 경우 소속기관의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은 발언을 해야하는 (혹은 침묵해야하는) 직업상의 의무가 있다. 브레어 판사가 가르세티 사건 판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언급한 바와 같이 검사의 발언은 "직업규범에 따라 독립적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같은 규범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발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97] 의사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도 상사의 지시사항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야하는 직업상의 의무가 있을 수 있다.[98] 이러한 직종은 발언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연방 공직자의 해직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세바로스와 같은 공직자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 기

95) 가르세티 대 세바로스 사건 (*Garcetti v. Ceballos)* 547 U.S. 410, 424 (2006). 가르세티사건에서 신고자는 자신의 직업상의 의무를 근거로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보호를 요청했다.
96) 가르세티 대 세바로스 사건 (*Garcetti v. Ceballos)* 547 U.S. 410, 421 (2006).
97) 가르세티 대 세바로스 사건 (*Garcetti v. Ceballos)*547 U.S. 410, 446 (2006) (Breyer 판사 반론).
98) 가르세티 대 세바로스 사건 (*Garcetti v. Ceballos)*547 U.S. 410, 447 (2006) (Breyer 판사 반론).

관에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재량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판결했다. 정부기관들은 직업상의 의무에 따라 고용인이 행한 발언을 통제하는데 상당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공무상 이루어진 의사소통은 공적인 결과를 낳는다."[99]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결은 모든 지방, 주, 연방정부 기관의 고용인과 상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에 대한 "사법적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00]

위원회가 가르세티 사건을 다룬 것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2006년 연방공직자인 챔버스(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해 다룬 앞 내용에서 언급)는 재심청구(petition for review)에서 BW 공원 도로에서 이루어진 경찰 활동에 관한 자신의 신고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First Amenment)에 따른 보호대상이라 주장했다. 챔버스가 재심청구를 한 이후 위원회가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가르세티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2006년 챔버스 사건 판결에서 위원회는 가르세티 사건 판결에 따라 챔버스의 "발언은 항소자의 공식 업무에 따른 것" 이므로 챔버스의 신고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101] 위원회는 또한 가르세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기 이전 판례를 따르더라도 "공원경찰청장인 챔버스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공직자가 공원경찰 기능 및 예산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속기관의 최우선 사안이기 때문에" 챔버스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 판결했다.[10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후 위원회의 결정을 기각하고 챔버스의 신고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본 판결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아닌 WPA에 근거한 것이었다.[103] 따라서 잠재 신고자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시행한 부패신고자 법률을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104]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활발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

---

99) 가르세티 대 세바로스 사건 (*Garcetti v. Ceballos)*547 U.S. 410, 422 (2006).

100) 가르세티 대 세바로스 사건 (*Garcetti v. Ceballos)*547 U.S. 410, 423 (2006).

101) 챔버스 대 내무부 사건(*Chambers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103 M.S.P.R. 375, ¶ 35 (2006) 다른 이유로 챔버스 대 내무부 사건(*Chambers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515 F.3d 1362 (Fed. Cir. 2008).에 의해 기각.

102) 챔버스 대 내무부 사건(*Chambers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103 M.S.P.R. 375, ¶ 40 (2006) 다른 이유로 챔버스 대 내무부 사건(*Chambers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515 F.3d 1362 (Fed. Cir. 2008).에 의해 기각.

103) 챔버스 대 내무부 사건(*Chambers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602 F.3d 1370, 1379 (Fed. Cir. 2010).

104) 14일 이상 정직을 당하거나 강등되거나 혹은 해직을 당한 고용인에게 항소권을 부여하는 등 우연찮게 부패행위를 신고하게 된 공직자에게 부패신고를 떠나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이 있다. 또한 마시미노 대 재향군인회 사건(*Massimino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58 M.S.P.R. 318, 322-24 (1993). 참조

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원회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관할권을 부여받은 사안에 국한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105] 위원회는 특히 본 법이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잠재 신고자를 도울 수 없다.

제4절 합리적 믿음

법적 보호를 받기위해 잠재 신고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이 정확(correct)하다는 확신을 가져야할 필요는 없지만 부패행위를 신고했다는 합리적인 믿음(reasonably believe)이 있어야 한다.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안을 신고하는 것은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106] 또한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보호받지 못한다.[107]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고자가 알고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공정하고 객관적인 동종 분야의 전문가(disinterested observer) 입장에서도 정부의 행위는 5. U.S.C. § 2302(b)(8)조항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합리적이어야 한다.[108] "다른 직원들이 신고자의 입장에 동의한다 해도 신고자의 순수한 주관적 관점으론 충분하지 못하다."[109]

"신고자가 법률·규칙·규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에 달려있다."[110] 즉,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인 사람이 신고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당 상황을 고려할지 추측해봐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직원들이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신고자의 판단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을 증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MSPB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객관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를 질문할 것이다. [111]

---

105) 스토야노브 대 해군성 사건(*Stoyanov v. Department of the Navy),* 474 F.3d 1377, 1379 (Fed. Cir. 2007) (*Clark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361 F.3d 647, 650 (Fed. Cir. 2004) 인용).

106) 톰슨 대 재무부 사건*(Thompson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155 F.3d 574 (Fed. Cir. 1998) (Table). 또한 S. Rep. 95-969, 22(1978 U.S.C.C.A.N. 2723, 2744) 참조.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는 내용을 신고할 경우 보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

107) 라챈스 대 화이트 사건(*Lachance v. White),* 174 F.3d 1378, 1381 (Fed. Cir. 1999), *cert. denied,* 528 U.S. 1153, 120 (2000).

108) 라챈스 대 화이트 사건(*Lachance v. White)*, 174 F.3d 1378, 1381 (Fed. Cir. 1999), *cert. denied,* 528 U.S. 1153, 120 (2000).

109) 라챈스 대 화이트 사건(*Lachance v. White),* 174 F.3d 1378, 1381 (Fed. Cir. 1999), *cert. denied,* 528 U.S. 1153, 120 (2000).

110) 헤르만 대 법무부 사건 (*Herman v. Department of Justice),* 193 F.3d 1375, 1382 (Fed. Cir. 1999).

합리적인 믿음이 있음을 판단하려면 그러한 믿음이 근거로 한 사실을 "뒷받침할 실체적 증거가 있어야"한다.[112] 실체적 증거는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타당성 있는 증거'로 정의된다.[113] 따라서 본 법은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a reasonable person standard)을 다시 한 번 고려하게 한다. 판사는 또한 모든 모순되는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증거의 실체성'은 사건기록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114]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신고자가 알고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할 것이다. 신고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신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예로, 특별검사 대 스피어스 사건(Special Counsel v. Spears)에서 신고자는 감사관에게 2주 후에 미주리주(Missouri)에서 동일한 교육 과정이 제공될 예정임에도 직원 두 명이 버지니아주(Virginia)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신고했다.[115] 감사관은 이후 해당 교육은 수료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원을 버지니아로 보내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에 대한 보호에 있어선 " 보호 성립여부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했느냐가 아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해당 신고가 이 같은 부패행위를 입증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 위원회는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원정 교육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당 교육은 수료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이 부적절하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보호 성립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신고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교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충분했다.[116]

---

111) 라챈스 대 화이트 사건(*Lachance v. White),* 174 F.3d 1378, 1381 (Fed. Cir. 1999), *cert. denied,* 528 U.S. 1153, 120 (2000).

112) 프레드릭 대 법무부 사건(*Frederick v. Department of Justice),* 73 F.3d 349, 352 (Fed. Cir. 1996).

113) 프레드릭 대 법무부 사건(*Frederick v. Department of Justice)e*, 73 F.3d 349, 352 (Fed. Cir. 1996)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 사 대 NLRB 사건 (*Consolidated Edison Co. v. NLRB),* 305 U.S. 197, 229 (1938) 인용)

114) 프레드릭 대 법무부 사건(*Frederick v. Department of Justice)* 73 F.3d 349, 352 (Fed. Cir. 1996) (유니버셜 카메라 사 대 NLRB 사건(*Universal Camera Corp. v. NLRB),* 340 U.S. 474, 488 (1951) 인용)

115) 특별검사 대 스피어스 사건(*Special Counsel v. Spears),* 75 M.S.P.R. 639, 657 (1997).

116) 특별검사 대 스피어스 사건, 75 M.S.P.R. 639, 659 (1997). 볼드윈 대 재향군인회 사건(*Baldwin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13 M.S.P.R. 469, ¶¶ 18-21 (2010) 참조. (신고자는 커터칼로 자신을 위협한 혐의로 동료 직원을 신고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을 적용해 법률 위반에 관한 신고인가를 판단할 때 위원회는 "비전문가적 관점에서 형사법의 개념을 고려할 것"이라 밝힘)

제5절 부패신고로 간주되는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위원회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판단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117] 하지만 동 조건에는 예외가 있다. 위원회는 "*사실상*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찮게 보호대상이 되는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고려되는 고용인을 대상으로 보복적 인사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5 U.S.C. § 2302(b)(8)조항에 따라 보호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118]

예로, 톰슨 대 농업신용청 사건(Thompson v. Farm Credit Administration) 에서 위원회는 "항소자가 예산 낭비, 민간인에 의한 사기 혹은 권한남용을 신고하려는 의도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닐 수 있지만"[119] 그럼에도 농업신용청장은 항소자를 "난처한 상황을 초래하는 즉, 관리부실이나 재량권 남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견해를 지지하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다.[120] 청장은 항소자가 자신의 공식적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린 연구 내용을 다른 관리자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해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121] 농업신용청은 항소자를 부패신고자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보복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항소자는 WPA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122]

제6절 부패신고가 아닌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부터 보호

신고자가 법률·규칙·규정 위반, 중대한 관리부실, 중대한 예산낭비, 권한남용, 공공의 보건・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

---

117) 워렌 대 육군성 사건(*Warren v. Department of the Army)*, 804 F.2d 654, 656 (Fed. Cir. 1986); 드레이크 대 국제개발청 사건(*Drake v.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543 F.3d 1377, 1380 (Fed. Cir. 2008); 라챈스 대 화이트 사건(*Lachance v. White)*, 174 F.3d 1378, 1380 (Fed. Cir. 1999); 에이드만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Eidmann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976 F.2d 1400, 1407 (Fed. Cir. 1992); 월싱턴 대 국방부 사건(*Worthington v. Department of Defense)*, 81 M.S.P.R. 532, ¶ 10 (1999).

118) 특별검사 대 해군성 사건(*Special Counsel v. Department of the Navy)*, 46 M.S.P.R. 274, 280 (1990) (추가적 강조 사항). 또한 서리고 대 법무부 사건(*Sirgo v. Department of Justice)*, 66 M.S.P.R. 261, 266 (1995); 톰슨 대 농업신용청 사건*(Thompson v. Farm Credit Administration)*, 51 M.S.P.R. 569, 580-81 (1991); 저퍼 대 미국 정보청 사건(*Juffer v. U.S. Information Agency)*, 80 M.S.P.R. 81, ¶ 12 (1998); 지머맨 대 주택도시개발부 사건(*Zimmerman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61 M.S.P.R. 75, 83 (1994). 참조

119) 톰슨 대 농업신용청 사건*(Thompson v. Farm Credit Administration).* 51 M.S.P.R. 569, 581 (1991).

120) 톰슨 대 농업신용청 사건*(Thompson v. Farm Credit Administration).* 51 M.S.P.R. 569, 582 (1991).

121) 톰슨 대 농업신용청 사건*(Thompson v. Farm Credit Administration).* 51 M.S.P.R. 569, 581 (1991).

122) 본 사건에서 증거는 "보복에 대한 상당한 정황 증거"를 포함하고 있었다." 톰슨 대 농업신용청 사건 *(Thompson v. Farm Credit Administration),* 51 M.S.P.R. 569, 583 (1991).

자의 행동을 근거로 취해진 보복 조치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 법률·규칙·규정 위반, 중대한 관리부실, 중대한 예산낭비, 권한남용, 공공의 보건·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은 5 U.S.C. § 2302(b)(8)조항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WPA 따른 부패신고에 해당하는 유일한 기준이다.[123]

예를 들자면, 2302(b)(9)조항은 아래 제시된 이유로 공직자 혹은 지원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할 것처럼 위협하는 금지된 인사조치를 규정하는 본 법의 조항이다.

(A) 법률·규칙·규정에서 부여한 항소, 이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행사
(B) (A)항목에서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자를 증언을 하거나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돕는 경우
(C) 관련 법률조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 혹은 특별검사(Special Counsel)와 협력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D) 법률 위반을 요구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위 네 가지 유형의 행위는 부패신고가 *아니므로* WPA에 따른 보복조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신 고용인이 2302(b)(9)조항에서 규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가해진 보복조치는 별개 유형의 금지된 인사조치다.[124] 이는 차별적인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가 보복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미국법령집 제7편에서 다루는 위법행위와 특히 관련있다.

123) 연방 공직자가 어떤 사안을 신고할 경우 WPA 이외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기구개편법(Energy Reorganization Act)에서는 특정 법률 위반을 신고한 당사자들을 보호하며 본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를 고용주로 본다. 42 U.S.C. § 5851(a)(2)(G). 하지만 일부 연방 부패신고자 보호 법률은 연방공무원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은 부패신고자를 보호하지만 '고용인'이란 용어의 정의에 "연방정부 혹은 주 혹은 주의 하부 정치 행정구역 등의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9 U.S.C. § 652(5). 또한 보호 대상자로 연방정부 혹은 주 혹은 주의 하부 정치 행정구역 소속 공직자가 아닌 자로 규정하는 육상교통지원법(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참조. 49 U.S.C. § 31105(j)(2).

124) 스프루일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Spruill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978 F.2d 679, 690-92 (Fed. Cir. 1992). 이와 같은 보복은 5 U.S.C. § 2302(b)(9)조항에 따른 금지된 인사조치이므로 WPA 이외 수단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협약(자격이 될 경우) 따른 이의제기,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행정절차(자격이 될 경우)에 따른 불만제기 혹은 특별조사청에 고소할 수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차별 철폐 투쟁”은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의 “주도적인 역할”로 진행되고 있으며 차별에 관한 신고는 부패신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125] 이는 본 법상에서 차별 관련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는 부패신고자 보호 체계 밖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본 법은 복잡한 측면이 있어 잠재 신고자에게 부담된다. 이 경우에는, 잠재 신고자는 어디에 보복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청해야 하는 가를 알아야하는 부담이 있다.

제5장 보복조치 성립요건

부패신고를 이유로 연방공직자가 당한 불쾌한 처사가 모두 불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방공직신고자보호 법률에 따라 모두 시정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보복조치는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부패신고를 이유로 공직자나 지원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할 것처럼 위협”할 경우 발생한다.[126]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부패신고에 따른 보복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성립하려면 고용인은 5 U.S.C. § 2302(b)(8)조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를 함으로써 부패신고 행위에 관여했고 부패신고가 인사조치를 취하게 한 기여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127] 그러지 못할 경우 부패신고에 따른 보복조치가 취해졌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잠재 신고자는 앞 장에서 다룬 신고에 대한 정의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속기관이 부패신고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취했거나 취하지 않았음(혹은 그렇게 할 것처럼 위협했음)을 입증해야 한다.[128]

---

125) 스프루일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Spruill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978 F.2d 679, 692 (Fed. Cir. 1992).

126) 5 U.S.C. § 2302(b).

127) 브릴리 대 국립문서보관소 사건(*Briley v.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236 F.3d 1373, 1378 (Fed. Cir. 2001). 또한 5 U.S.C. § 1221(e)(1); 유너스 대 재향군인회 사건 (*Yunus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42 F.3d 1367, 1371 (Fed. Cir. 2001); 뮤위센 대 내부무 사건 (*Meuwissen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234 F.3d 9, 12 (Fed. Cir. 2000). 참조

128)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소속기관이 부패신고에 대해 알게 된 시점과 인사조취가 시행된 시점 간 시간차이는 인사조치를 취함에 있어 해당 신고가 기여요인으로 작용했느냐를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제1절 인사조치

'인사조치'는 2302(a)(2)(A)조항에 따라 규정된다. 본 법률에 따라 아래 항목은 인사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1. 임명
2. 승진
3. 미국법령집 제5편 75장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의 징계 또는 교정 조치
4. 파견, 전근, 재위임
5. 복권
6. 복직
7. 재고용
8. 미국법령집 제5편 43장에 따른 직무수행평가
9. 금전지급, 편익 또는 포상에 관한 결정 또는 교육과 훈련이 임명, 승진, 직무수행평가, 또는 이 항에서 기술된 다른 조치를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경우 그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결정
10. 심리실험 및 검사를 지시하는 결정[129]
11. 업무, 책임사항, 혹은 근무조건에 있어 그 밖의 중대한 변화

세 번째 항목에서 기술한 징계 또는 교정조치는 정직 또는 해직과 같은 공직자 인사파일(Official Personnel File, OPF)에 기록된 인사조치 그 이상에 적용된다. 일례로 존슨 대 보건인적서비스부 사건(Johnson v.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항소자(존슨)는 감사관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고서한을 받았다. 해당 서안은 항소자의 인사기록에 포함되지는 않았기 징계조치에 해당되진 않았다. 하지만 해당 서안이 향후 (감사관을 다시 접촉하지 않도록) 항소자의 행동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교정조치이며 따라서 WPA에 따른 인사조치에 해당됐다.[130]

---

129) 다른 항목과 비교해 심리실험을 인사조치에 포함하는 것은 이상해보일 수 있지만 이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의 역사를 반영한다. 역사상 잠재 신고자의 주장에 관심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한 가지 방법이 잠재 신고자의 신뢰성을 공격하고 상황을 신고대상이 된 부패행위가 아니라 잠재 부신고자의 신고행위에 관심이 쏠리도록 몰아가는 것 이었다(지금도 사용되는 방법임). 따라서 잠재 신고자에게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특히나 수상쩍은 행동이다.

130) 존슨 대 보건인적서비스부 사건(*Johnson v.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93 M.S.P.R. 38, ¶ 15-16 (2002) (경고서한이 항소자의 인사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본 법에서 규정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문제와는 무관하다.)

아홉 번째 항목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관리상의 결정을 포함한다. 무급휴가(LWOP) 혹은 무단결근(AWOL)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전지급 혹은 편익에 관련된 결정임으로 인사조치에 해당된다.[131] 연간휴가를 주지 않는 조치도 2302(a)(2)(A)조항에 따라 편익과 관련된 결정이다.[132] "다른 상황이었다면 수령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금전 지급과 관련된 결정"이기에 인사조치에 해당된다.[133]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때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라도 WPA에 따른 '인사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 항목에서 기술한 "업무, 책임사항, 혹은 근무조건에 있어 그 밖의 중대한 변화"는 보복성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관리상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 조사가 인사조치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해당조사가 보복조치를 취하고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구실로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기관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가 없었더라도 증거를 수집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항소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자신의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에 근거해 승소할 것이다. 조사자체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조사과정에서 특정 부정행위가 발견된다 해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인사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해당기관의 의무를 덜어주진 못한다. 이와는 다른 판결은 전적으로 보복에 목적을 둔 선별적인 조사 시행을 허용하는 것이다.[134]

그 밖의 보복성 인사조치에는 미연방특별부보안관(Special Deputy U.S. Marshal)에 대한 법집행권한정지와 공직자의 해외출장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포함된다.[135]

하지만 법원이 정부기관의 조치가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인사조치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중요한 분야가 있다. 바로 기밀정보취급 허가 취소(revocation of a security clearance)다.[136]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기밀정보취급 허가가 필수 고용

---

131) 맥코클 대 농림부 사건(*McCorcle v. Department of Agriculture),* 98 M.S.P.R. 363, ¶16 (2005).
132) 마렌 *대 법무부 사건(Marren v. Department of Justice)*, 50 M.S.P.R. 369, 373 (1991).
133) 디 조르지오 대 해군성 사건(*DiGiorgio v. Department of the Navy*), 84 M.S.P.R. 6, ¶ 18 (1999).
134) 러셀 *대 법무부 사건(Russell v. Department of Justice),* 76 M.S.P.R. 317, 324-25 (1997).
135) 존슨 대 재향군인회 사건(*Johns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95 M.S.P.R. 106, ¶¶ 11-13 (2003); 우드워스 대 해군성 사건(*Woodworth v. Department of the Navy),* 105 M.S.P.R. 456, ¶ 18 (2007).
136) 위원회는 "관할권이 있는 부당한 조치이지만 정부 기관의 기밀정보취급 허가 취소 혹은 거부에 상당부

조건인 경우라 해도 정부기관이 기밀정보취급 허가를 취소하기 한 결정이 OSC의 조사 혹은 MSPB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구체적으로 판결했다.[137]

대법원은 (다른 상황을 다룬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MSPB와 같은 기관이 기밀정보취급 허가 결정의 본질을 심리하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 수용 가능한 오차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결했다.[13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에 따라 "연방 공직자는 부패신고에 따른 보복조치로 기밀정보취급 허가를 거부당했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나 특별심사국에 의지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139]

제2절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경우 (혹은 그렇게 할 것처럼 협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이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인사조치를 취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면 임명은 본 법률에 따른 인사조치 목록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다.[140] 부패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석에 지원을 했으나 기관이 공석 공고를 취소하고 해당 직책을 비워둔다면, 해당 기관은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부패신고 성립요건이 부합될 경우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에 해당될 수 있다.[141]

분 근거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시한 기밀정보취급 허가 취소 혹은 거부 결정 이유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건 대 해군성 사건(*Egan v. Department of the Navy),* 28 M.S.P.R. 509, 519 (1985). (이건 대 해군성 사건(*Egan v. Department of the Navy),* 802 F.2d 1563, 1575 (Fed. Cir. 1986) 사건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위원회의 이런 판결을 뒤엎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또한 위원회의 법률해석을 지지한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해군성 대 이건 사건(*Department of the Navy v. Egan),* 484 U.S. 518, 526-32 (1988)).

137) 이건(*Egan*)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부패신고자 문제에 적용할 경우 위원회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은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기밀정보취급 허가 관련 결정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법은 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각각 판결, 인정했다. 헤세 대 국무부 사건(*Hesse v. Department of State),* 217 F.3d 1372, 1380 (Fed. Cir. 2000). 기밀정보취급 허가 취소와 관련한 미국 헌법 수정 제5조 정당한 법 절차 조항(Fifth Amendment Due Process Clause)에 따른 권한 역시 없다. *Robinson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498 F.3d 1361, 1364-65 (Fed. Cir. 2007).

138) 해군성 대 이건 사건(*Department of the Navy v. Egan),* 484 U.S. 518, 529 (1988).

139) 헤세 대 국무부 사건(*Hesse v. Department of State),* 217 F.3d 1372, 1380 (Fed. Cir. 2000).

140) 5 U.S.C. § 2302(a)(2)(A)(i).

141) 루기에리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Ruggieri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454 F.3d 1323, 1326 (Fed. Cir. 2006).

마찬가지로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취하지 않는 행위가 실현되지 못 한다 해도 이는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이라 위협을 주기위한 보복행위이기 때문에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가 성과 개선활동(Performance Improvement Plan, PIP)이다. 표면상으론 PIP는 공직자의 성과 개선을 돕기 위한 제도 같지만 5 U.S.C. § 4301 *et seq.*에 따른 강등 혹은 해직과 같이 성과에 근거한 인사조치를 취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이다.[142] 또한 "PIP에는 의미상 위협성 인사조치가 포함되며" 부패신고와 보복이 성립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부합될 경우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143] 하지만 정부기관은 잠재 신고자를 포함한 모든 소속 공직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정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신고가 기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의무에는 소속 공직자의 성과 및 행동과 관련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3절 기여요인

정부기관이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가 보복으로 간주되려면 해당 기관이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부패신고가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어야 한다.[144] "기여요인이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요인과 연관되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정의 결과에 쉽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145] 특정인이 마음속으

142) 미국법령집 제5편 43장에 따른 성과에 기반 한 인사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SMP 웹사이트(www.msmp.gov/studies)에 최근 게재된 「Addressing Poor Performers and the Law」 제하의 보고서 참조.

143) 곤잘레스 대 주택도시개발부 사건(*Gonzales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64 M.S.P.R. 314, 319 (1994). 또한 크자코스키 대 해군성 사건(*Czarkowski v. Department of the Navy),* 87 M.S.P.R. 107, ¶ 18 (2000); 허드슨 대 재향군인회 사건(*Hudson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04 M.S.P.R. 283, ¶ 15 (2006). 참고

144) 5 U.S.C. § 1214(b)(4)(B)(i); 5 U.S.C. § 1221(e)(1). 1993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가 이루어진 직후 취해진 인사조치에 대한 정황 증거는 보복에 관한 표면적으론 증거가 확실한 사건(a prima facie case)이 성립되기엔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클라크 대 육군성 사건(*Clark v. Department of the Army),* 997 F.2d 1466 (Fed. Cir. 1993), *cert. denied,* 510 U.S. 1091 (1994). 이러한 판결은 미국 의회법(an Act of Congress)에 의해 기각됐다. Public Law No. 103-424, codified at 5 U.S.C. § 1221(e)(1)(A) and (B); S. Rep. 103-358, 7 (1994 U.S.C.C.A.N. 3549, 3555) ("해당 조항은 1993년 7월 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크라크 대 육군성 사건(*Clark v. Department of Army*) 판결을 뒤집는다"고 명시함) 또한 홀튼 대 해군성 사건(*Horton v. Department of the Navy),* 66 F.3d 279, 284 (Fed. Cir. 1995). 참조

145) 마라노 대 법무부 사건(*Marano v. Department of Justice),* 2 F.3d 1137, 1140 (Fed. Cir. 1993) (내부 문장부호 삭제). 해당 테스트는 인사조치를 원상회복 하기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이 행한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가 인사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실체적이며 동기를 부여하는 지배적인 요소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던 기존의 선례를 무효화하는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 *Id.*

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기란 매우 힘들고 보복을 가하는 이들은 보복적 동기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기록으로 거의 남기지 않지만 정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통해 신고가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데 대한 기여요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잠재 신고자가 신고가 기여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규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지식/타이밍 테스트 활용한 방법 혹은 (2) 신고가 기여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 밖의 증거를 활용하는 방법. 해당 두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지식/타이밍 테스트

지식/타이밍 테스트를 통해 신고가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에 기여요인이었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선 부패신고자는 인사조치를 결정하는 공직자가 해당 신고에 대해 전해들은 바 있고 신고가 이루어진 합당한 기간(reasonable time) 내에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146]

법률이나 규정상으로 정해진 '합당한 시간'에 대한 정의는 없다. 하지만 MSPB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인사조치가 취해진 시점 간 기간차이가 1년 이상인 경우 신고와 인사조치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147]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활용하는 테스트는 신고와 보복성 인사조치 간 인과관계의 추론을 정당화하기엔 두 행위가 발생한 시점 간 기간 차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148]

---

146) 레이드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Reid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508 F.3d 674, 678-79 (Fed. Cir. 2007) (내부문장부호 삭제). 또한 케윌리 대 보건인적서비스부 사건(*Kewley v.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153 F.3d 1357, 1361 (Fed. Cir. 1998).참고

147) 인멘 데 재향군인회 사건(*Inman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12 M.S.P.R. 280, ¶ 12 (2009) 참고. (지식/타이밍 테스트를 통해 신고와 인사조치 간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기간 격차는 대략 15개월), 레드슈래그 대 육군성 사건(*Redschlag v. Department of the Army),* 89 M.S.P.R. 589, ¶ 87 (2001) (지식/타이밍 테스트를 통해 신고와 인사조치 간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기간 격차는 한 차례 신고가 있고 나서 18개월 그리고 또 다른 신고가 있고 나서 1년 이상), 러셀 대 법무부 사건*(Russell v. Department of Justice),* 76 M.S.P.R. 317, 323 (1997) (지식/타이밍 테스트를 통해 신고와 인사조치 간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기간 격차는 7개월); 이스터브룩 대 법무부 사건(*Easterbrook v. Department of Justice),* 85 M.S.P.R. 60, ¶ 10 (2000) (지식/타이밍 테스트를 통해 신고와 인사조치 간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기간 격차는 7개월). 코스테로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Costello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182 F.3d 1372, 1377 (Fed. Cir. 1999) (신고가 이루어지고 2년이 넘어서 인사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지식/타이밍 테스트를 통해 신고와 인사조치 간 연관성를 규명할 수 없다.)

지식/타이밍 테스트를 통해 신고와 인사조치 간 연관성이 규명될 경우 "부패신고자는 신고가 인사조치를 결정하는데 기여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금지된 인사조치를 취한 담당 공직자가 보복적 동기를 품고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149] 사실, "모든 증거에 대한 분석을 끝낸 이후 합리적으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자가 항소자의 신고가 인사조치 결정에 기여요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해도 분석지식/타이밍 테스트를 통해 신고와 인사조치 간 연관성이 규명되기만 하면 행정 판사(administrative judge)는 항소자가 자신의 신고행위가 인사조치에 대한 기여요인이었음을 입증했다"고 판결해야한다.[150]

하지만 본 장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부패신고가 기여요인이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은 신고자가 원하는 구제를 받을 것이란 점은 보장하지는 못한다.

기여 요인에 대한 그 밖의 증거

지식/타이밍 테스트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지만 신고가 기여요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아니다.[151] 항소자가 지식/타이밍 테스트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판사는 "해당 기관이 제시하는 인사조치를 취한 이유가 충분한 지 약한 지, 부패신고를 통해 신고하려는 대상이 인사조치를 제안 혹은 결정권이 있는 공직자들이었는지에 대한 여부, 이들 공직자들이 항소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바람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그 밖의 증거를 고려할 것이다.[152] 각기 다른 다양한 요인들의 중요성을 결합해 기여요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가능하다.[153]

---

148) 코스테로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Costello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182 F.3d 1372, 1377 (Fed. Cir. 1999).

149) 케윌리 대 보건인적서비스부 사건(*Kewley v.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153 F.3d 1357, 1362 (Fed. Cir. 1998) (마라노 대 법무부 사건(*Marano v. Department of Justice),* 2 F.3d 1137, 1141 (Fed. Cir. 1993)인용).

150) 슈넬 대 육군성 사건*(Schnell v. Department of the Army),* 114 M.S.P.R. 83, ¶21 (2010) (추가적 강조 사항). 또한 칼리 대 재향군인위원회 사건(*Carey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93 M.S.P.R. 676, ¶ 13 (2003). 참조

151) 지식/타이밍 테스트는 "부패신고자가" 인사조치를 취함에 있어 부패신고가 기여요인을 작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S. Rep. 103-358, 8 (1994 U.S.C.C.A.N. 3549, 3556).

152) 파워스 대 해군성 사건(*Powers v. Department of the Navy),* 69 M.S.P.R. 150, 156 (1995) (internal citations deleted).

153) 마라노 대 법무부 사건(*Marano v. Department of Justice),* 2 F.3d 1137, 1140 (Fed. Cir. 1993)*; Mausser v. Department of the Army,* 63 M.S.P.R. 41, 45 (1994)*;* 파워스 대 해군성 사건(*Powers v. Department of the Navy),* 69 M.S.P.R. 150, 156 (1995). 참조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본 법은 정부기관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들어 부패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인사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154]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는 재판에서 규명이 필요한 주장(혐의)를 판단하는 자(the trier of fact)의 내심에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입증의 정도(measure or degree of proof)이다. 이는 증거 우위에 의한 입증(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보다 높은 입증 기준이다."[155] 정부기관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들어 부패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인사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할 때 MSPB는 다음 세 가지 요건를 고려한다. (1) 해당 기관은 인사조치를 취한 합법적 이유가 있었는가. (2) 인사조치를 결정하는데 관여한 공직자들은 보복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동기가 있었는가. 있다면 해당 동기는 인사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했는가. (3) 해당 기관이 부패신고자는 아니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고용인에 대해 비슷한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증거가 있는가.[156] 동 세 가지 요건을 칼(Carr) 요건이라 부른다.

칼 요건이 적용된 사례가 필립스 대 교통부 사건(Phillips 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다. 동 사건에서 위원회는 교통부가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인사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판결했다. 필립스 사건에서 항소자의 부하직원 다섯 명은 감사관실(OIG)과 접촉해 항소자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OIG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항소자는 다른 주에 위치한 사무소로 임시 파견됐다. 이후 항소자는 WPA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를 했다. 몇 달 후 조사가 마무리됐고 OIG는 항소자가 사적인 사업 이득을 취하고자 공직을 이용했으며 소속기관의 규제 적용 대상인 항공사 사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윤리행동준칙(Standards of Ethical Conduct)을

154) 5 U.S.C. § 1221(e)(2) (추가적 강조사항).

155) 5 C.F.R. § 1209.4 (d). 또한 홀튼 대 해군성 사건*(Horton v. Department of the Navy),* 66 F.3d 279, 284 (Fed. Cir. 1995). 참조

156) 슈넬 대 육군성 사건*(Schnell v. Department of the Army),* 114 M.S.P.R. 83, ¶23 (2010) (칼 대 사회안보청 사건 (*Carr v.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85 F.3d 1318, 1323 (Fed. Cir. 1999) 인용) 슈넬 대 육군성 사건*(Schnell v. Department of the Army)*사건에서 항소자는 소속기관이 임시 승진에서 자신을 탈락시킴으로써 보복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항소자의 상사인 캘버트와 네이첼 [the first and second level supervisors]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는 항소자를 상대로 보복적 인사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진술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캘버트나 네이첼 누구도 항소자의 현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직책에 항소자가 아닌 다른 지원자를 선정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해당 기관도 해당 직책의 채용 절차 혹은 항소자가 가장 적합한 지원자로 고려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부패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인사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란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Id.* ¶ 24.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고 몇 달 뒤 항소자는 몬타나 사무소에서 맡았던 감독직에서 동일한 직급인 일리노이주 사무소의 비감독직으로 재배치됐다.[157]

첫 번째 요건(인사조치에 대한 합법적 이유)을 평가함에 있어 위원회는 항소자의 행동이 부하직원의 우려를 샀고 이에 부하직원들은 OIG에 해당 행동을 신고했으며 "다섯 명의 신고자는 몬타나 사무소의 전 직원이다"고 지적했다.[158]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선 항소자가 기존의 업무를 다시 맡게 되면 해당 신고자들을 매일 감독, 관리해야 한다는 소속기관의 우려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159] 게다가 해당 기관은 항소자가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를 하기 전부터 조사기간 동안 항소자의 임시발령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우려는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단순한 구실이라 할 수 없다.[160]

두 번째 요인(보복에 대한 동기)을 평가할 때 위원회는 항소자의 업무 재배치 결정에 관여한 담당자 중 한 명은 항소자의 주요 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강한 보복 동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명의 담당자는 어떤 동기를 갖고 인사조치를 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인사조치 결정에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한 두 명의 경우는 강한 보복적 동기는 없었다.[161]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유사한 상황에 있는 고용인에 대한 인사조치)의 경우 항소자는 과거 비슷한 위법행위를 범했던 직원들에 대해선 유사한 인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해당 직원들은 자신들의 단속대상인 항공사와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자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항소자의 경우에서처럼 이들이 같은 사무실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다고 할 만한 점도 없었다고 판결했다.[162] 따라서 위원회는 칼 요건에 따라 해당 기관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부패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인사조치를 취했을 것이란 점을 입증했다고 판결했다. [163]

---

157) 필립스 대 교통부 사건(*Phillips 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13 M.S.P.R. 73, ¶¶ 2-6, 19 (2010).
158) 필립스 대 교통부 사건(*Phillips 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13 M.S.P.R. 73, ¶ 19 (2010).
159) 필립스 대 교통부 사건(*Phillips 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13 M.S.P.R. 73, ¶¶ 12-18 (2010).
160) 필립스 대 교통부 사건(*Phillips 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13 M.S.P.R. 73, ¶¶ 20-21 (2010).
161) 필립스 대 교통부 사건(*Phillips 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13 M.S.P.R. 73, ¶¶ 26-29 (2010).
162) 필립스 대 교통부 사건(*Phillips 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13 M.S.P.R. 73, ¶ 30 (2010).
163) 필립스 대 교통부 사건(*Phillips 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13 M.S.P.R. 73, ¶ 31 (2010).

제6장 시정조치 요청 수단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실적제도보호위원회가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가 있다. (1) 위원회의 원심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에 따라 OSC가 고소하는 경우. (2)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개인소권(individual right of action)으로 항소하는 경우. (3) 당사자가 직접심판을 청구(otherwise appealable action)하는 경우. 이 같은 관할권이 없을 경우 MSPB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원심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

특별조사청(Office of Special Council)이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정부기관이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가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때 원심 관할권이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사건을 MSPB에 제소할 수 있다.[164] 하지만 MSPB에 제소하기 전에 OSC는 반드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금지된 보복성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해당 기관에 알려야한다. '합당한 시간(a reasonable period of time)'이 지나도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만 OSC는 MSPB에 징계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165] 또한 본 법에 따라 OSC는 그 밖의 금지된 인사조치가 취해졌음을 근거로 MSPB에 사건을 제소할 수 있다. OSC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OSC는 고소인과 해당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166] 따라서 금지된 인사 조치에 대한 원심 관할권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MSPB에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1995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OSC는 금지된 인사조치와 관련된 불과 32건의 시정조치 사건을 제소했고 이 가운데 MSPB에 제소 이후 해결된 사건은 16건이다. OSC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와 같은) 금지된 인사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조정 합의를 추진하는 동안 해당 기관에 대한 MSPB의 인사조치 중단 명령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167]

---

164) 5 U.S.C. § 1214(b)(2)(C). 또한 OSC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가한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U.S.C. § 1215.

165) 5 U.S.C. § 1214(b)(2)(B) and (C).

166) 특별조사청(U.S. Office of Special Counsel), 2008년 회계연도 의회제출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 to Congress for FY 2008」 p. 11, www.osc.gov에서 확인가능. 5 U.S.C. § 1218에 따라 OSC 조사 및 조정관련 데이터는 OSC 연례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함.

167) 인사조치 중단 및 제소사건 데이터 출처는 MSPB 법률사건관리시스템(MSPB's Law Manager case

OSC가 원심 관할권이 있는 시정조치 사건을 MSPB에 제소하는 경우 제소장과 근거가 되는 사실을 고소인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168] 해당 기관, OSC, 인사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은 구술 및 서면 진술을 할 수 있다.[169] OSC 시정조치관련 법률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MSPB 규정은 판사가 시정조치 사건 심리하도록 명시한다.[170]

OSC가 MSPB에 사건을 제소하면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가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한다. ALJ는 사건을 심리하고 증거를 고려해 최초판결(initial decision)을 내린다.[171] 세 명의 위원회 위원이 ALJ의 판결을 검토한다. 또한 ALJ 판결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 원심 관할권 대상인 사건의 경우 인사조치를 당한 신고자가 MSPB에 사건을 직접 제소할 수 없지만 MSPB의 최종 명령이나 판결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MSPB의 판결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172]

제2절 개인소권(IRA)에 따른 심판청구 (OSC에 인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했으나 OSC가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989년 의회는 "OSC가 1979년 이래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사건을 기소한 건수가 전무하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173]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은 OSC에 의존하기 보다는 잠재 신고자가 직접 MSPB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개인소권(Individual Right of Action)을 부여했다.[174] IRA는 MSPB 항소 관할권(appellate jurisdiction)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IRA는 기존 항소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관할권을 규명해야하는 중요한 조건을 수반한다.

---

docketing system)임

168) 5 C.F.R. §§ 1201.128, 1201.129.

169) 5 U.S.C. § 1214(b)(3). OPM은 MSPB에 제소된 사건에 개입하고 인사관리와 관련한 행정 서비스 법률·규칙·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해당 법률·규칙·규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MSPB의 최종 명령이나 판결에 대한 사법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다. 5 U.S.C. § 7701(d); 5 U.S.C. § 7703(d).

170) 5 U.S.C. § 1214(b)(3); 5 C.F.R. § 1201.131.

171) 징계조치와는 달리 시정 조치는 ALJ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5 C.F.R. §§ 1201.125, 1201.131. 하지만 관행적으로 위원회는 원심 관할권에 따라 제소된 징계, 시정 조치사건을 ALJ에게 배당한다.

172) 5 U.S.C. § 7703(a)(1).

173) S. Rep. 103-358, 2 (1994 U.S.C.C.A.N. 3549, 3550).

174) S. Rep. 103-358, 2 (1994 U.S.C.C.A.N. 3549, 3550).

IRA에 따른 항소에서는 항소자는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합당한 주장을 통해 MSPB가 관할권이 있음을 먼저 규명해야한다.

(1) 항소자는 5 U.S.C. § 2302(b)(8)조항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를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에 관여함. (2)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소속 기관이 인시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음. (혹은 그렇게 할 것이라 위협함) (3) 항소자는 OSC에 시정조치를 요청함. (4) 항소자는 OSC를 통한 구제요청 절차를 모두 활용함.[175] 모든 부패행위 신고 사건에서는 보호대상인 신고와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와 인사조치 간 연관성에 관한 (1), (2)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3), (4)항목은 IRA에 따른 항소에서만 요구되는 조건이며 IRA 항소자는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176]

MSPB가 IRA에 따른 항소사건을 심판하려면 항소자는 먼저 OSC에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MSPB는 관할권을 부여받기 전에는 어떠한 소청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177] IRA에 따른 항소사건의 경우 MSPB는 "OSC가 고소자에게 조사 종결 혹은 120일 이내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통보한 이후에야" 관할권을 가진다.[178] OSC에 사건을 고소하지 않을 경우 MSPB는 IRA따른 항소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179]

---

175) 슈미트링 대 육군성 사건(*Schmittling v. Department of the Army),* 219 F.3d 1332, 1336 (Fed. Cir. 2000). 또한 세라오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Serrao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95 F.3d 1569, 1574 (Fed. Cir. 1996); 루신 대 재무부 사건(*Rusin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92 M.S.P.R. 298, ¶8 (2002).

176) 항소자는 "OSC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OSC에서 구제요청 절차를 모두 활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브릴리 대 국가문서보관소 사건(*Briley v.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236 F.3d 1373, 1377 (Fed. Cir. 2001).

177)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판결에서 MSPB와 관련해 종종 언급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관할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률·규칙·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부여된 사안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스토야노 대 해군성 사건(*Stoyanov v. Department of the Navy),* 474 F.3d 1377, 1379 (Fed. Cir. 2007) (클라크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Clark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361 F.3d 647, 650 (Fed. Cir. 2004) 인용).

178) 세라오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Serrao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95 F.3d 1569, 1574 (Fed. Cir. 1996).

179) OSC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IRA에 따른 항소는 성립될 수 없지만 항소가 빨리 진행된 경우(premature filing)는 해결 가능한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다. 항소자가 OSC로부터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서신을 받지 않고 IRA 항소를 하거나 항소를 하기 전에 OSC에 사건을 고소한 시점으로부터 12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관할권 불 충족을 이유로 항소 첫 단계(지역 사무소 행정 판사)에서 IRA에 따른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이 경우 항소자의 직접제소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120일이 경과(혹은 조사가 종결)한 이후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또한 항소자가 항소신청이 기각된 사유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거나 위원회가 해당 항소 사건을 미결상태로 두고 있는 동안에 120일 경과한 경우 위원회가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관행상 해당 항소사건을 지역 사무소로 다시 전달해 심판하도록 한다. 베커 대 재향군인위원회 사건(*Becker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12 M.S.P.R. 516, ¶ 7 (2009).

고소인이 MSPB에 IRA에 따른 항소를 할 경우 IRA 항소사건에서 다루는 문제는 앞서 OSC에 고소한 사건 내용과 동일해야한다. “위원회에 항소하기 전에 신고자는 OSC를 통한 모든 구제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목적은 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개입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OSC에 주기 위함이다.”[180] 즉, 고소인은 시정 조치를 이끌어 냈을 법한 조사를 실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상세정보를 OSC에 충분히 제공해야한다.[181] “고소인이 OSC에 제공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주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기준은 OSC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이며 해당 진술에 대한 고소인의 사후 설명이 아니다.[182] 항소자가 OSC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필요한 “명확성과 정확성”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해당 항소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183] 즉, 기존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IRA을 통한 판결 대상이 되지 못한다.[184]

이러한 이유로 보복적 인사조치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잠재 신고자는 OSC 고소 절차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서가 아닌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OSC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MSPB에 거의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MSPB에 시정조치를 요

---

180) 워드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Ward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981 F.2d 521, 526 (Fed. Cir. 1992).

181) 워드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Ward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981 F.2d 521, 526 (Fed. Cir. 1992).

182) 랜거 대 재무부 사건(*Langer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265 F.3d 1259, 1268 (Fed. Cir. 2001) (내부 문장부호 삭제).

183) 엘리슨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Ellison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7 F.3d 1031, 1037 (Fed. Cir. 1993). 하지만 OSC에 제출할 고소장에 모든 세부내용이 담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브릴리 대 국가문서보관소 사건(*Briley v.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236 F.3d 1373, 1378 (Fed. Cir. 2001)에서 항소자는 사건 심리를 담당한 판사에게 OSC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보다 더 많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브릴리(항소자)가 OSC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항소자가 주장하는 보복조치에 대한 핵심내용”이 담겨있었고 OSC가 수사를 진행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 따라서 따라서 브릴리는 OSC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OSC를 통한 구제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했다.“

184) 항소자는 부패행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MSPB는 “관할권에 기반해 IRA에 따른 항소사건에서 항소자가 주장하는 부패행위가 2302(b)(8)조항에서 규정한 부패행위 범주 중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진 않는다.” 루즈시드로 대 육군성 사건(*Rzucidlo v. Department of the Army),* 101 M.S.P.R. 616, ¶ 13 (2006).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부패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이지 어떤 형태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소자가 권력남용인 행위를 법률·규칙·규정 위반이라고 잘못 명명했다고 하여 항소자가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자에게 부패행위 범주를 올바르게 명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위적인 구분 혹은 절차를 두는 것으로 이런 이유로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이 제정됐다.”토마스 대 재무주 사건(*Thomas v. Department of the Treasury),* 77 M.S.P.R. 224, 236 (1998)(다른 이유에 근거해 갠스키 대 내무부 사건(*Ganski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86 M.S.P.R. 32 (2000).사건에서 기각됨)

청할 것 인가에 관한 OSC의 결정을 떠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신중하게 다루고 고소장에 중요한 내용을 확실히 담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IRA에 따른 항소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못할 수 있다.

항소자가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면 MSPB에 IRA에 따른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항소 사건은 MSPB 지역 사무소 중 한 곳에 제소되어 행정판사(AJ)에게 배당된다. AJ가 MSPB가 관할권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AJ는 사건을 심리를 하고 증거를 고려하여 최초 판결(initial decision)을 내릴 것이다.[185] 이러한 AJ의 관할권 유무 판결에 대해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MSPB 위원회에 재심청구(petition for review)를 할 수 있다. 항소자는 또한 최초 판결 혹은 재심청구 판결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3절 직접 심판 청구(Otherwise Appealable Actions Jurisdiction)

대부분의 연방공직자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과는 별개로 특정 인사조치에 대해 MSPB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186]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기존 항소사건에서는 항소자는 증거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따른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187]

---

185) "항소자가 관할권에 대한 제대로 된 합당한 주장하면 위원회는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라(on the merits) 심리를 진행한다." 칸 대 법무부 사건(*Kahn v. Department of Justice)*, 528 F.3d 1336, 1341 (Fed. Cir. 2008) (유누스 대 재향군인회사건(*Yunus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42 F.3d 1367, 1371 (Fed. Cir. 2001 인용); 스프루일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Spruill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978 F.2d 679, 687-88 (Fed. Cir. 1992) 인용). "관할권 있느냐에 관한 심리는 불필요하다." Id. (프란시스코 대 인사관리국 사건(*Francisco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95 F.3d 1310, 1313 (Fed. Cir. 2002) 인용).

186) 연방정부가 채용한 모든 사람이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소권을 가진 고용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패신고를 이유로 해고당한 임시 직원은 IRA에 따른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직원은 MSPB에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로페즈 대 주택도시개발부 사건(*Lopez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98 F.3d 1358 (Fed. Cir. 1996) (Table) 참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소권을 가진 대상에 대한 정의는 5 U.S.C. § 7511(a) 참조.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한 항소권을 갖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SPB 웹사이트 (www.mspb.gov/studies)에 게재된 「Navigating the Probationary Period After Van Wersch and McCormick」 제하의 보고서 참조.

187) 5 C.F.R. § 1201.56(a)(2)(iii).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는 "전체 사건 기록을 고려해 합리적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거짓이기 보다는 사실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 충분한 입증의 정도"를 의미한다. 5 C.F.R. § 1201.56(c)(2).

MSPB의 부당한 조치에 관한 항소 관할권에 따라 심판 청구된 인사조치는 해고, 강등, 임금 삭감, 14일 이상의 정직, 30일 이하의 일시해고를 포함하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188]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직접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신고자가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할 경우 신고자는 MSPB의 기존 항소 관할권을 이용해 적극적 항변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신고자가 MSPB에 직접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인사조치를 당했다면 OSC에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고자가 모든 항소 절차를 따르고 MSPB는 OSC에 고소한 내용을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라 심판하지 않았다면 OSC에 고소를 했어도 신고자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189]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금지된 인사조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항소자가 기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당 인사조치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이 부패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인사조치를 취했을 것이란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MSPB는 해당 기관의 인사조치를 무효화 할 수 있다.[190] 항소자는 이전 상태(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귀 될 것이다.[191]

제4절 부패신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보복 조치 사건에 대한 MSPB 관할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302(b)(9)조항은 정부기관 관계자가 이의, 불만 혹은 항소

---

188) 5 U.S.C. §§ 7512, 7513. 14일 이하의 정직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간주되지만 또 다른 재판권이 없으면 MSPB는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없다.

189) 사베르스키 대 법무부 사건(*Sabersky v. Department of Justice),* 91 M.S.P.R. 210, ¶¶ 6-8 (2002), aff 'd, 61 Fed.Appx. 676 (Fed. Cir. 2003); 마시미노 대 재향군인회 사건(*Massimino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58 M.S.P.R. 318, 324 (1993).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직접 해고 조치에 대한 심판을 위원회에 청구하는 신고자는 기결사건에 따라 OSC 절차를 거친 뒤 동일한 해고 조치에 관한 부패신고자 항소사건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캘베티 대 공군성 사건(*Calvetti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07 M.S.P.R. 480, ¶ 9 n. 2 (2007).
직접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신고자가 OSC에 시정조치 요청을 먼저 하고 MSPB에 심판청구를 한다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상 제약은 IRA따른 항소와 동일하다. 마시미노 대 재향군인회 사건(*Massimino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58 M.S.P.R. 318, 323 (1993). See also 5 C.F.R. § 1209.5(b).

190) 5 U.S.C. § 7701(c)(2)(B); 5 U.S.C. § 1221(e)(2).

191) "위원회가 부당한 인사조치라 판단하면 해당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과 가능한 동일한 상태로 신고자가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드리스콜 대 우체국 사건(*Driscoll v. U.S. Postal Service)*, 112 M.S.P.R. 498, ¶13 (2009). See also 케르 대 국립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Kerr v.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726 F.2d 730, 733 (Fed. Cir. 1984)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부당한 인사조취가 취해지 이전과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원상 복귀돼야 한다"고 판결)

제기,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증언, 조사협조, 혹은 법률 위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때 적용된다. 해당기관이 취한 이러한 보복이 자동적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이는 금지된 인사조치이다. OSC는 모든 금지된 인사조치에 대해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OSC는 2302(b)(9)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MSPB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SPB는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OSC가 2302(b)(8)조항에 명시된 금지된 인사조치 이외에 인사조치가 발생했거나 존재하거나 혹은 취해질 예정이란 점을 입증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92] 따라서 2302(b)(9) 조항에 규정된 금지된 인사조치는 원심 관할권의 일환으로 MSPB가 심판할 수 있다.

정부기관 관계자가 항소권 행사, 조사 협조, 혹은 법률 위반 거부를 이유로 직원을 처벌하길 원하는 마음을 먹은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한 합당한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심판청구 사건에서는 신고자의 적극적 항변의 일환으로 MSPB에 제소할 수 있다.[193]

하지만 IRA에 따른 항소 형태로 MSPB에 제소할 경우 MSPB는 2303(b)(9)조항에 규정된 인사조치 자체에 대한 관할권은 갖지 않는다. 이에 대한 근거는 IRA에 따른 항소는 부패신고자를 위한 항소 수단이라는 사실이며 2303(b)(9)조항에 따른 보복행위를 당한 사람은 부패신고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금지된 인사조치(non-whistleblower PPP)를 당한 것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RA를 통한 시정 수단을 분명히 하기위해 의회는 "신고에 근거한 징계와 제소 권한 행사에 근거한 징계 간 구분을 두었다고 밝혔다.[194] "2303(b)(9) 조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근거는 WPA가 적용되는 사기, 낭비, 남용을 입증할 경우에만 2303(b)(8) 조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근거가 될 수 있다."[195] 부패신고와의 연관성이 없을 경우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심판권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196] 이는 신고자가 특별조사청(Office of the

192) 5 U.S.C. §1214.
193) 고소인이 정부 기관의 결정이 미국법령집 제5편 2302(b)조항에서 규정한 금지된 인사조치에 근거한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해당 결정을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 5 U.S.C. § 7701(c)(2)(B).
194) 세라노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Serrao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95 F.3d 1569, 1575 (Fed. Cir. 1996) (내부 문장부호 삭제).
195) 엘리슨 대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사건(*Ellison v.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7 F.3d 1031, 1035 (Fed. Cir. 1993).

Special Counsel)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다. OSC는 2303(b)(9)조항에 명시된 인사조치를 포함한 모든 금지된 인사조치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MSPB에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이 단독으로 행동할 경우 항소권 없이는 재판 관할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제7장 결론

부패신고자 보호는 연방 인사 법률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분야다. 동 보고서에서 다룬 바와 같이 MSPB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WPA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당했다고 믿는 공직자나 지원자를 구제하지 못한다.

(1) 신고자는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 범주에 부합하는 행위를 신고해야함
(2) 신고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접수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바른 신고접수처(the right type of party)에 신고해야함.
(3) 신고자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혹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 채널이 아닌 신고접수처에 신고해야함
(4) 신고자는 부패행위자가 아닌 신고접수처에 신고해야 함
(5) 신고자는 부패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resonable belief)이 있어야 함
(6) 신고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보복행위(보복적인 인사조치를 당하거나 승진 등의 우호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위의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겠다는 위협)을 당해야 함
(7) 신고자는 신고와 보복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8) 적절한 채널을 통해 원상회복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해야함

하지만 신고자가 상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법률은 정부기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부패행위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인사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신고자가 요청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 5 U.S.C. § 2302(b)(9)조항 위반은 금지된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직접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나 OSC가 제소한 금지된 인사조치 사건에서는 부패행위 신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규명할 필요없이 적극적 항변으로 2302(b)(9)조항에 따른 사건을 MSPB에 제소할 수 있다.

즉, 정부기관이 취한 부적절한 조치가 모두 부패행위는 아니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모두 부패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신고가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이 모두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금지된 인사 조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졌다면 구제를 받기위해선 신고자는 종종 특정 절차를 따라야한다.

신고자의 상황이 본 법률에 적용 되지 않는 경우 MSPB는 잠재 신고자가 제기한 항소 사건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이해하고 의회는 이 법을 다룰 때 잠재 신고자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의회가 부패행위 신고자법에 대한 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몇 년간 다시 개정 추진을 고려해 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경영권과 부패 신고를 보호하는 국민의 이익 사이 균형점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일련의 규정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경영권과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사이 완벽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공무원개혁법(CSRA)을 시행하고 연방 공직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법률로 제정할 당시 상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위법, 낭비,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제8장 <발췌문> 미국법령집 제5편

이 보고서 전반에서 다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의 발췌문을 제공한다. 이 법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법령의 전체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사조치의 정의

2302(a)(2) 동 조항의 목적은.....

(A) '인사조치'의 의미는.....

(i) 임용

(ii) 승진

(iii) 미국 법령집 제5편 75장에 근거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징계 또는 교정조치

(iv) 파견, 전근, 또는 재위임

(v) 복권

(vi) 복직

(vii) 재고용

(viii) 미국 법령집 제5편 43장에 따른 직무수행평가

(ix) 금전지급, 편익, 또는 포상에 관한 결정, 또는 교육과 훈련이 임명, 승진, 직무수행평가, 또는 이 항에서 기술된 다른 조치를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된다면 그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결정

(x) 심리실험 또는 검사를 명령하는 결정

(xi) 의무, 책임, 또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그 밖의 중대한 변화

본 법률에 적용되는 정부기관 직책을 맡은 공직자 혹은 해당 직책에 지원한 지원자와 관련, 세부 항목 (b)(8)에서 규정한 금지된 인사 조치의 경우, 미국 법령집 제31편 9101조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공직자 혹은 지원자는.....

부패신고자 보복 조항

§ 2302 (b)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은 누구든 그와 같은 권리와 관련하여~하지 아니한다.

(8) ~를 이유로 공직자 혹은 지원자와 관련해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할 것이라 협박

(A) ~를 입증한다는 합리적인 믿는 정보를 공직자 혹은 지원자가 신고

(i) 법률·규칙·규정의 위반

(ii) 중대한 관리부실, 중대한 예산낭비, 권한남용, 공공의 보건·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이 같은 신고가 법률에 따라 금지되지 않고 해당 정보가 대통령 명령에 따라 국가보안 혹은 외교 활동을 이유로 기밀로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경우

(B) 특별검사 혹은 소속 기관의 감사관, 혹은 기관장이 신고접수처로 지정한 공직자에게 ~를 입증한다는 합리적인 믿는 정보를 신고
(ⅰ) 법률・규칙・규정의 위반
(ⅱ) 중대한 관리부실, 중대한 예산낭비, 권한남용, 공공의 보건・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금지된 인사조치이지만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아닌 경우

§ 2302 (b)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은 누구든 그와 같은 권리와 관련하여~하지 아니한다.
(9) ~를 이유로 공직자 혹은 지원자와 관련해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할 것이라 협박

(A) 법률·규칙·규정에 의해 부여된 항소, 이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행사
(B) (A)항목에서 언급한 권한을 행사한 당사자를 위한 증언 혹은 다른 합법적인 방식으로 지원
(C) 적용 법률 조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감사관이나 특별조사청에 협조 혹은 신고
(D) 법률위반을 요구하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

개인소권(IRA)

§ 1214 (a)(3) … 공직자, 전직 공직자, 지원자가 2302(b)(8)조항에서 규정한 금지된 인사조치에 대한 시정조치를 특별검사에게 요청할 경우 1221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
(ⅰ) 특별조사청이 공직자, 전직 공직자, 지원자에게 그들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통보
(ⅱ) 해당 공직자, 전직 공직자, 지원자에게 조사 종결을 통보한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B) 특별조사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공직자, 전직 공직자, 지원자가 특별조사청이 그들의 대신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1221(e)(1) (2)문단의 조항에 따라 2303(b)(8)조항에서 규정하는 금지된 인사 조치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서든 공직자, 전직 공직자, 지원자가 2303(b)(8)조항에서 규정하는 신고가 그들을 상대로 취해졌거나 취해질 예정인 인사조치에 기여요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해야한다. 신고자는 ~에 대한 증거와 같은 정황증거를 통해 신고가 인사조치의 기여요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A) 인사조치를 취한 정부 기관 관계자가 신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

(B) 인사조치가 합리적인 사람이 신고가 인사조치의 기여요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 내 취해진 경우

(2) 행정기관이 부패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인사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경우 문단(1)에서 명시하는 시정조치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 국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5. 공무원 행동강령(Civil service code)

① 인사부 장관(Minister for Civil Service)은 공무원(외교관 제외, excluding the diplomatic service) 행동강령을 공포(publish)해야 한다.

② 이 목적을 위하여, 인사부 장관은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 Executive) 또는 웨일즈 의회 정부(Welsh Assembly Government)에 복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covering) 독립된 행동강령을 공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을 공포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인사부 장관은 스코틀랜드의 여당대표(First Minister) 또는 웨일즈의 여당대표와 (경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한다.

④ 이 장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이 조에 따라 공포된 행동강령이 일단 시행된 것을 말한다.

⑤ 인사부 장관은 의회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출해야 한다.

⑥ 스코틀랜드 여당대표는 스코틀랜드 행정부에 복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2항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을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웨일즈 여당대표는 웨일즈 의회 정부에 복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2항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을 웨일즈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 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근무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을 구성한다.

6. 외교관 행동강령(Diplomatic service code)

① 국무상(Secretary of State)은 외교관을 위한 행동강령을 공포해야 한다.

② 이 장에서 "외교관 행동강령"이란 이 조에 따라 공포된 행동강령이 일단 시행된 것을 말한다.

③ 외교관 행동강령은 그 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근무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을 구성한다.

7. 공무원 및 외교관 행동강령의 최소 조건(Minimum requirements for civil service and diplomatic service code)

① 이 조는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외교관 행동강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을 제시한다.
(행동강령은 다른 규정도 포함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은 제3항에 따른 행정부에 복무하는 공무원이 그 행정부의 정치적 양상(political complexion)이 어떠하든지 일단 적법절차에 따라 출범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③ 행정부는 다음과 같다.

1. 영국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2. 스코틀랜드 행정부(the Scottish Executive)
3. 웨일즈 의회 정부(the Welsh Assembly Government)

④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다음의 사항을 가지고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청렴성과 정직성(with integrity and honesty, and)
2. 객관성과 불편부당성(with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⑤ 그러나 행동강령은 특별보좌관(special advisers, 제15조 참조)이 객관성과 불편부당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8. 특별보좌관 행동강령(Special advisers code)

① 인사부 장관은 특별보좌관의 행동강령을 공포해야 한다(제15조 참조).

② 이 목적을 위해, 인사부 장관은 스코틀랜드 행정부 또는 웨일즈 의회 정부에 복무하는 특별보좌관에 적용되는 독립된 행동강령을 공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을 공포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인사부 장관은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즈의 여당대표와 (경우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

④ 이 장에서, 특별보좌관 행동강령은 이 조에 따라 공포된 행동강령이 일단 시행된 것을 말한다.

⑤ 제6항의 조건으로(subject to subsection ⑥), 특별보좌관 행동강령은 특별보좌관이 다음을 사항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1. 공공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authorize the expenditure of public funds)
2. 국가 공무원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권한 행사(exercise any power o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any part of the civil service of the State)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 또는 특권에 따른 권한을 제외한 권한 행사(otherwise exercise any power conferred by o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r any power under Her Majesty's prerogative)

⑥ 특별보좌관 행동강령은 특별보좌관이 다른 특별보좌관과 관련하여 제5항제2호 범위 안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⑦ 제5항제3호에서 "법률"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스코틀랜드 의회 제정 법률(Act of the Scottish Parliament)
2. 웨일즈 의회 제정 법률 또는 조례(Act or Measur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Wales)
3. 북아일랜드 법률(Northern Ireland legislation)

⑧ 인사부 장관은 특별보좌관 행동강령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⑨ 스코틀랜드 여당대표는 스코틀랜드 행정부에 복무하는 특별보좌관에 적용

되는 제2항에 따른 특별보좌관 행동강령을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⑩ 웨일즈 여당대표는 웨일즈 의회 정부에 복무하는 특별보좌관에 적용되는 제2항에 따른 특별보좌관 행동강령을 웨일즈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⑪ 특별보좌관 행동강령은 그 행동강령에 적용되는 특별보좌관의 근무조건을 구성한다.

9. 행동강령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 : 공무원에 의한 신고(Conduct that conflicts with a code of conduct : complaints by civil servants)

① 이 조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외교관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강령"은 적절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

② 제3항은 만약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P")이 다음 사항을 믿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 P(행동강령 적용대상자)가 행동강령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중이거나 요구 받아온 경우
2.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다른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해온 경우

③ P는 그 문제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신고하기 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그리고 P는 적절하게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

1. 신고, 조사(investigation) 및 심리(consideration)를 위한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2. 신고사항을 심리한 후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

⑥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관리 당국(civil service management authorities)
2. 신고자(complainant)
3. 신고를 당한 공무원(any civil servant whose conduct is covered by the complaint)

⑦ 강령의 개정은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조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영국의 공무원 행동강령
(Civil Service Code)

〈 "공무원 행동강령" 은 "정부조직개혁 및 거버넌스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제5조제5항에 따라 2010.11.11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공무원 조직의 가치(Civil Service Values)

1. 공무원 조직(civil service)을 관리·운용하는 법률적 근거(statutory basis)는 "정부조직개혁 및 거버넌스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의 제1장에 규정되어 있다.

2. 공무원 조직은 영국의 정부[197]를 구성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공무원 조직은 정부의 정책(policies) 개발 및 시행 그리고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를 전달하는 현재의 정부(Government of the day)를 보조한다. 공무원들(civil servants)은 장관(Ministers)[198]에게 책임을 지며, 장관은 의회(Parliament)[199]에 책임을 진다.

3. 공무원 여러분은 공정하고 열린 경쟁(fair and open competition)에 기초한 성적에 따라 임명이 되고, 공무원 조직 및 그 조직의 핵심 가치(core values) : 청렴성, 정직성, 객관성, 중립성(integrity, honesty,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197)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 Executive)와 웨일즈 의회정부(Welsh Assembly Government) 및 그 소속 기관(Agencies)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체 행동강령을 가질 수 있다. 북아일랜드 공무원 조직(Northern Ireland Civil Service)과 외교관 직렬(Diplomatic Service)에는 이 행동강령과 유사한 행동강령(Similar Codes)이 적용된다. 잉글랜드의 비 장관부처, 스코틀랜드와 웨일즈(Non Ministerial Departments in England, Scotland and Wales)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198) 어느 공무원은 그들의 기관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office holder)에게 책임을 가진다. 이것은 근로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에 명시되어 있다.

199) 장관을 보좌하는 공무원(Civil servants advising Ministers)은 의회의 헌법적 의미(constitutional significance)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의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례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역할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행동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청렴성(integrity)'이란 공무원 자신의 사적인 이익(personal interests)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의무(obligation of public service)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
- ○ '정직성(honesty)'이란 진실 되고 열린 상태를 의미(truthful and open)
- ○ '객관성(objectivity)'이란 엄격한 증거 분석(rigorous analysis of the evidence)을 진단(advice)과 결정(decisions)에 기초로 삼는 것을 의미
- ○ '중립성(impartiality)'이란 전적으로 시비곡직(merits of the case)에 따라 행동하고, 여러분과 다른 정치적 신념(political persuasions)을 가진 정부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복무하는 것을 의미

4. 위의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훌륭한 정부의 기반이 되며, 공무원 조직이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성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이는 결과적으로(in turn) 공무원 조직이 장관, 의회, 시민 그리고 고객들의 존중을 획득하고 유지시키도록 도움을 준다.

5. 이 행동강령[200]은 여러분과 다른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 기준들은 법률에서 규정된 핵심 가치에 기초한다. 개별 부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와 관계를 맺는 경우 여러분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포함하여, 핵심 가치에 기초한 각 부처 자체의 독립된 강령(mission and values statements)을 가질 수 있다.

행위 기준(Standards of behavior)

청렴성(Integrity)

6.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

200) 공무원 조직과 관련하여 장관과 특별보좌관(Ministers and special advisers)들이 부담하여 할 각각의 책임(responsibilities)은 그들의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다: www.cabinetoffice.gov.uk/property and ethics. 특별보좌관들은 그들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중에서 객관성(objectivity)과 중립성(impartiality)의 내용을 제외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다.

○ 여러분의 직무(duties)와 의무(obligations)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

○ 항상 전문성(professional)[201]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관계(dealings)[202]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뢰(confidence)를 받고 유지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 공정하고(fairly), 효율적이고(efficiently), 신속하고(promptly), 효과적이고(effectively), 세심한(sensitively)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반 시민(the public)을 대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정확한 공식기록(accurate official record)을 보관하고, 합법적인 범주(legal framework) 내에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다루어야 된다.

○ 법규를 준수하고 법 집행(administration of justice)을 유지해야 한다.

7.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여러분의 공무상 직위(official position)를 오·남용(misuse)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무(official duties)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여러분 또는 다른 사람의 사익(private interests)을 증진(further)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여러분의 개인적 판단(personal judgement) 또는 청렴성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선물(gifts) 또는 향응(hospitality) 그밖에 혜택(benefits)을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 승인 없이 공식 정보(official information)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비밀준수의무는 공무원 조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정직성(Honesty)

8.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 사실(facts)과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정직하게 정리해야 하며, 오류(errors)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

201) 특정 전문 직종(particular professions)을 관리하고 있는 윤리기준을 감안하는 것을 포함

202) 영국의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위임된 행정 직원(devolved administrations) 사이의 협력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는 것을 포함

○ 공식적으로 허가된 용도(authorized public purposes)에만 자원(resources)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장관, 의회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을 속이거나 고의적으로(knowingly) 잘못 인도해서는(mislead) 아니 된다.

○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부당한 압력(improper pressures from others) 또는 사익추구(prospect of personal gain)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객관성(Objectivity)

10.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 장관에게 보고하는 조언을 포함하여, 증거에 기초한 정보와 조언(on the basis of the evidence)을 제공해야 하고, 선택사항과 사실(options and facts)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 사안의 是非曲直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전문가의 숙련된 조언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11.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조언을 제공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불편한 사실(inconvenient facts) 또는 적절한 고려(relevant considerations)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 일단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그 정책의 집행(implementation of policies)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중립성(Impartiality)

12.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자세로 여러분의 책임을 다 해야 되며, 공무원 조직에 헌신적으로 공평성과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reflects the Civil Service commitment to equality and diversity).

13.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개인 또는 집단(particular individuals or interests)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게 호의를 보이거나 차별하는(unjustifiably favours or discriminates)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Impartiality)

14.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 정부의 정치적 신념에 상관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부(Government)[203]에 봉사해야 한다. 여러분의 정치적 믿음(political briefs)에 무관하게 이 행동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장관의 신뢰(confidence of Ministers)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미래에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정부(future Government)에게도 동일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 여러분의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ies)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5.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정당의 이익(party political considerations)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적 자원(official resources)을 특정 정당을 위해(party political purposes)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여러분이 제공하는 조언이나 행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personal political views)가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ibilities)

16. 여러분이 근무하는 부처 또는 기관(department or agency)은 이 행동강령 또는 부처 또는 기관의 가치를 숙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여러분

203) 어느 공무원들은 그들의 소속 기관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office holder)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근로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 이 행동강령과 충돌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믿는 다면, 여러분의 부처 또는 기관은 이러한 우려(concern)를 고려해야 하고, 그 우려를 제기(raise)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아니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17.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의 직근 상급자(line manager)에게 상의를 하거나 지휘체계상(line management chain)에 있는 상급자에게 논의를 해야 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은 소속 부처에 선임된 행동강령 책임관(advice staff on the Code)에게 이러한 문제를 신고(raise)해야 된다.

18. 만약 여러분이 이 행동강령에 반하는 다른 공무원의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의 직근 상급자 또는 지휘체계상의 상급자에게 신고(report)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소속 부처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형사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증거(evidence of criminal or unlawful activity)를 경찰 또는 관련 규제당국(appropriate regulatory authorities)에 신고해야 한다. 이 행동강령은 인사관리문제(HR management issue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만약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된 사안을 관련 절차(relevant procedures)[204]에 따라 신고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조사결과(reasonable response)를 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사안을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205]에 신고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신고사안을 직접 처리(take a complaint direct)할 수도 있다. 인사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3rd Floor, 35 Great Smith Street, London SW1P 3BQ.

Tel: 020 7276 2613

Email: info@civilservicecommission.org.uk

204) 신고 법령(공익신고법률 1998,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무원 조직 안내 책자(Directory of Civil Service Guidance)와 공무원 조직 관리 강령(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에 있다: www.cabinetoffice.gov.uk/conduct-ethics/civil-service.aspx.

205) 자세한 정보는 인사위원회의 고충제기 안내(Civil Service Commission's Guide to Bringing a Complaint)에 있다: www.civilservicecommission.org.uk.

만약 위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instructions)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직을 사임(resign from the Civil Service)해야 된다.

20. 이 행동강령은 여러분과 사용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일부이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공적인 삶의 위치(position in public and national life as a civil servant)에서 나오는 높은 수준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가치들을 준수함에 있어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2010년 11월

영국의 장관 행동강령
(Ministerial Code)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2010년 5월

장관 행동강령(Ministerial Code)

영국 총리(The Prime Minister)가 작성한 서문(Foreword)

우리의 새로운 정부는 우리 정치 시스템의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특별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비리행위(scandal)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체제와 정치인에 대하여 불신을 해 왔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차별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자유, 공정 그리고 책임이라는 주요 원칙 아래 통일된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를 약속하였다. 현 정부가 집권하는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가 제시한 주요 원칙들을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 - 즉, 우리가 개발한 정책과 시행, 우리가 한 연설들, 우리가 주최한 회의들 - 우리가 주인(master)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servant)임을 잊어서 아니 된다. 비록 영국의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많이 실망해왔지만, 여전히 정치인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행위기준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것과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공금(public money)을 꼭 써야 할 때에만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투명해야 한다. 우리는 부적절한 영향력(improper influence)에 굴복하기 보다는 국익(national interest)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David Cameron
장관 행동강령

1. 장관(Ministers of the Crown)

일반원칙(General principal)

1.1 장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사회적인 적절성(propriety, 예의범절)을 유지하는 자세로 행동해야 한다.

1.2 장관 행동강령은 국제법과 조약 의무를 포함한 법규를 준수하고, 법 집행(administration of justice)을 옹호하며 공직 생활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관의 중요한 직무에 관한 배경과 연립정부협정(Coalition Agreement)과 더불어 해석되어져야 한다. 또한 장관들은 부록 A에 규정된 "공직 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과 다음의 장관 행동강령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a.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Government Minister)은 내각의 연대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b. 장관들은 그들이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의 정책(policies), 결정(decisions) 그리고 조치(actions)에 관하여 의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c. 장관들은 의회에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고의가 아닌 부주의하여 오류(inadvertent error)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회가 있는 대로 수정해야 한다. 고의로 의회를 오인하도록 한 장관은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

d. 장관들은 의회와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적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되는 성문법률(relevant statutes)과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따라 공익을 이유로 공개를 금지한 경우를 제외한다.

e. 장관들은 장관을 대신하여 의회 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에서 증언하는(give evidence)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 행동강령(Civil Service Code)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에 따라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정보(accurate, truthful and full information)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f. 장관들은 자신의 직무와 사익 사이(between public duties and private interests)에 어떠한 충돌도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충돌이 외견상 발생(appear to arise)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g. 장관들은 자신의 판단력(judgement)을 실제로 손상시키거나 외견상 손상시킬지도 모르는 어떠한 금품 또는 향응(gift or hospitality)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자신에게 부적절한 의무(improper obligation)를 실제로 부담시키거나 외견상 부담시킬지도 모르는 그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h. 하원(House of Commons) 출신 장관들은 장관과 선거구의 의원(constituency Member)로서의 역할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i. 장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 자원(government resources)을 정당의 정치적 목적(Party political purposes)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j. 장관들은 공무원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impartiality of the civil service)을 유지해야 하고, 공무원에게 정부조직 개혁 및 거버넌스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에 규정된 공무원행동강령(Civil Service Code)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3 국무조정실장(Cabinet Secretary)이나 그밖에 공무원들이 장관 행동강령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장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그 혐의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총리(Prime Minister)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경우, 총리는 "장관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독립 보좌관"(independent adviser on Ministers' interest)에게 그 사안을 이송한다.

1.4 장관 행동강령은 장관들이 행위기준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guidance)을 규정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은 특정 상황(particular situations)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은 정부의 모든 장관(all members of Government, 정권이 바뀌면 교체대상이 되는 정부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고, 제3.6조부터 제3.12조까지는 의회 의원 보좌관(Parliamentary Private Secretaries)에도 적용된다.

1.5 장관들은 행동강령에 비추어 어떠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처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회와 국민에게 그들의 행동과 처신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입증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장관들은 총리의 신임이 존재하는 동안만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총리는 장관의 행위기준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사람이다.

1.6 장관들은 의회가 제정한 장관의 책무(accountability) 및 의무(responsibility)에 관한 모든 규정(requirements)들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하원 출신의 장관들의 경우, 1997년 3월 19일 통과된 결의문(Official Report columns 1,046-47)에 장관의 책무와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b부터 e까지 나타나 있다. 상원 출신의 장관들의 경우, 1997년 3월 20일 통과된 공식보고서(Official Report)의 1,057 단락에 결의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관들은 자신이 속한 각각의 상하양원(Houses)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및 독립적인 의회 행동기준 당국(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에 의해 제정된 규정들을 준수해야 된다.

2. 장관들과 정부 (Ministers and the Government)

일반원칙(General principal)

2.1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대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원칙은, 일단 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공동 전선(united front)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석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여 장관들이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내각과 각료회의(Cabinet and Ministerial Committees)에 제시된 의견 또는 서신 왕래에 관한 비밀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내각과 각료회의 소관(Cabinet and Ministerial Committee Business)

2.2 내각과 각료회의 소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주요한 정책적 쟁점을 발생시키거나 국민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연대책임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
b. 부처 사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안(questions on which there is an unresolved argument between departments)

연대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2.3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내부 과정(internal process)이나 그 결정을 채택한 위원회의 수준(level of Committee)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내각 또는 각료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정부의 모든 장관을 구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된 사안은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발표되고 설명된다. 때로는 장관의 명의가 아닌 정부 전체의 결정(the decision of Her Majesty's Government)인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해당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이다.

2.4 오로지 단 한 명의 장관에게 책임이 귀속되거나 연대책임과는 상당히 관련이 없는 사안(matters)들은 해당 장관이 동료 장관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조언을 요청하지 않는 한 내각 또는 각료회의에 상정될 필요가 없다. 어느 선까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국무조정실(Cabinet Secretariats)은 부처들이 확신하지 못하는(departments are unsure) 경우에 조언을 할 수 있다. 만약 부처 간에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의 수단이 있는 한 내각에 상정해서는 아니 된다. 발의 부처(initiating department)는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부처(interested departments)와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가 내각이나 각료회의(Cabinet Committee)에 제출되는 제안서(memorandum)나 공문(letter)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책무를 가진다.

내각 및 각료회의 출석(Attendance at Cabinet and Cabinet Committees)

2.5 비록 장관들이 의회 업무(Parliamentary business) 때문에 내각 및 각료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내각 및 각료회의는 추밀원(Privy Council)을 제외하고 모든 장관의 업무(ministerial business)에 우선한다. 또한 사정상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장관은 차관(junior Ministerial colleague)을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지만(특정 회의에 경우 의장의 재량으로 예외를 둘 수 있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이 장관을 대리하여 각료회의에 참석해서는 아니 된다. 소속 공무원의 참석과 관련하여 제약이 있지만, 만약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전에 국무조정실장(Cabinet secretary)과 협의를 해야만 한다.

정책백서 및 정책제안서의 발간 (Publication of Policy Statement and Consultation Papers)

2.6 정책백서(policy statement, White Paper, 정부의 공식 보고서) 또는 정책제안서(consultation paper, Green Paper, 의회 심의용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이전에, 부처들은 관련된 각료회의를 통해 장관들 모두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제기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백서나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전에 장관들이 단체 협약(collective agreement)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정부정책의 주요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간행물(Command Paper)의 경우, 발간되기 전에 미리 내각에 배포되어야 된다. 비록 단체 협약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주요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보고서에 적용된다.

내각의 문서(Cabinet Document)

2.7 퇴임하는 장관들(ministers relinquishing office)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각 문서나 부처 문서를 해당 부처에 반납해야 한다.

2.8 정권의 교체기에, 퇴임하는 총리를 대신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물러가는 행정부의 내각 문서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지침(special instructions)을 발령한다.

전직 장관들의 공식문서 접근권한 (Access by Former Ministers to Official Paper)

2.9 관례와 정부의 재량으로, 전직 장관은 자신의 재직 시절에 생산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전직 총리를 제외하고, 이러한 접근 권한은 전직 장관 개인에게만 한정된다. Radcliffe Rule(전직 각료들의 회고록 발간 전에 기밀 유출여부 심사, 제8.10조)에 의거하여 전직 장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재임 시절 발표된 내각이나 각료회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당시 처리했던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도 해당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관람할 수 있다.

법무관(Law Officers)

2.10 정부가 법률적 고려(legal considerations)가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무관은 사전에 자문을 해 주어야 한다.

2.11 관례에 따라, 법무관의 서면 의견은 다른 장관의 문서와는 달리 후임 정부(succeeding Administrations)에 폭넓게 공개될 수 있다.

2.12 법무관으로부터 받은 조언이 장관들 사이의 서신 또는 내각이나 각료회의의 문서에 포함된 경우, 필요하다면 법무관의 조언을 요약해도 되지만, 그 조언의 전문(complete text)은 반드시 해당 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

2.13 법무관의 조언 여부와 조언 내용은 해당 법무관의 승인 없이 정부 외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장관 및 채용(Ministers and Appointments)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3.1 장관들은 공무원 조직과 공직 임용(civil service and public appointments)에 대한 영향력이 당파적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 임용(civil service appointments)은 정부구조 개혁 및 거버넌스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및 인사위원회의 채용 원칙(Civil Service Commissioners' Recruitment Principles)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공직 채용(public appointments)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공직 채용에 대한 인사위원장이 발간한 행동규범(Code of Practice)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보좌관(Special Advisers)

3.2 총리와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를 제외하고, 내각 장관들(Cabinet Ministers)은 최대한 2명까지 특별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다(보수 또는 무보수). 총리는 내각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는 장관이 한 명의 특별보좌관을 더 임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만약 장관에게 일반적인 장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additional responsibility)가 부여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예외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채용은 우선 총리와 사전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전 서면합의 없이는 임명에 관한 그 어떠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임명된 특별보좌관의 고용조건은 특별보좌관 계약법(Model Contract for Special Advisers) 및 특별보좌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Special Adviser)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3.3 모든 특별보좌관들은 자신을 임명한 장관이 아니라 정부 전체(Government as a whole)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 특별보좌관들의 징계(discipline)를 포함해서 관리와 처리(management and conduct)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을 임명한 장관에게 있다. 개개의 장관들은 자신들의 특별보좌관에

관한 조치와 결정에 대하여 총리, 의회 및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물론, 총리는 장관들이 임명한 특별보좌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3.4 정부는 특별보좌관의 숫자, 이름, 보수(paybands), 임명한 장관과 모든 급여명세(overall pay-bill)를 기재한 연차 보고서(annual statement)를 의회에 보고할 것이다.

부처 위원회(Departmental Boards)

3.5 부처 장관들(Secretaries of State)은 해당 부처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부처 위원회는 다른 장관들, 고위관료 및 비공직자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비공직자 위원은 기업 부문(commercial private sector)이나 국무조정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해당 부처의 실적과 전달(performance and delivery)이고, 전략적 리더쉽(strategic leadership)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원보좌관(Parliamentary Private Secretaries)

3.6 내각 장관(Cabinet Ministers)과 부처 장관(Ministers of State)은 의원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다. 모든 의원보좌관의 임명은 총리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여당의 원내총무(Chief Whip)와도 임명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럼으로 이러한 합의를 얻기 전에 의원보좌관의 임명을 보장하는 그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7 의원보좌관들은 정부의 구성원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보좌관은 의원보좌관으로서 역할과 사인으로서의 사익 사이에 충돌이 생기거나 생기는 것처럼 보여서는 아니 된다.

3.8 의원보좌관들에게 전달되는 공식 정보(official information)는 자신들의 대 의회 및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의원보좌관이 관련되는 부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참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보좌관을 임명한 장관이 승인을 해야만 한다. 의원보좌관은 "비밀"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의원보좌관은 정부의 보안시설(secure government establishments)에 대한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3.9 의원보좌관은 의회의 중요부처에 활동하면서 정부를 보조해야 된다. 만약 의원보좌관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에는 의원보좌관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3.10 의원보좌관은 의회에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안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 의원보좌관은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s)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임명한 장관의 부처에 대한 조사(inquiries)에 관계(withdraw from any involvement)해서는 아니 되며,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제안(recommendation)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의원보좌관은 의회 밖에서 어떠한 연설이나 방송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3.11 의원보좌관이 해외 공식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원보좌관의 공식적인 해외여행은 극히 제한적(exceptional)이어야 한다.

3.12 의원보좌관들, 특히 기획 업무(planning responsibility)를 수반하는 부처의 의원보좌관들은, 기획 문제(planning issues)에 관하여 장관에게 건의할 때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의원보좌관들은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와 기획 사안(planning cases)에 대해 협의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의원보좌관들이 기획 결정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도 아니 된다. 의원보좌관들은 자신의 지역선거구(지지자)의 이해관계(이익)를 대변(in representing their constituency interests)하는 경우, 이 행동강령의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사무차관들(Permanent Secretaries)은 그러한 이해관계(이익)에 대해서 보고받아야 한다.

4. 장관과 소관 부처(Ministers and their Departments)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4.1 총리는 행정부의 전체적인 조직(overall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과 각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들 사이의 기능을 조정(allocation of functions between Ministers in charge of departments)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승인 기준(Approval Standards)

4.2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하여(for the discharge of ministerial function) 현재의 기능 배분과 책무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예의 기능(functions in question)이 법규 또는 왕의 특권(Royal Prerogative)에서 나온 것이든 일반적인 행정적 책무(general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이든 적용된다.

4.3 다음과 같이 기능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총리의 서면승인이 있어야 한다.

a.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 사이에 기능 조정이 사소(de minimis)한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처리되면 족하고, 공표(public announcement)까지 할 필요는 없다.

b. 장관의 책무 범주 내에서 변화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책 및 조직에 상당 영향을 미칠 경우

c. 한 부처 내의 차관들 사이에 호칭에 변화가 관련이 있는 경우

4.4 추가적으로, 장관에게 새로운 기능이 부여될 경우, 이러한 변경이 한 사람의 장관에게 전부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관의 관할권에 속하거나 또는 새로 부여되는 기능이 어떤 장관의 소관으로 해야 하는지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총리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다.

4.5. 합의되지 않는 기능의 분배와 관련해서 총리에게 제출되기 이전에 국무조정실장에게 우선 이송해야 된다.

내각 외부의 장관들(Ministers outside the Cabinet)

4.6 한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은 해당 부처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러한 장관의 기능은 필요시 국무성 장관(Minister of State, 담당 부처가 없는 내각 각료, 정무 장관),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 혹은 공무원(official)에게 위임될 수 있다. 담당 장관들(Ministers in charge)은 해당 부처의 업무를, 특히 의회와 관련된 업무는, 해당부처 차관(junior Minister)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이 차관에게 자신의 권한과 "예우상 경칭(courtesy title)"을 함께 위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리의 서면승인이 필요하며, 이의 사본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송부되어야 된다.

4.7 국무성 장관과 정무차관은 일정한 범위 내의 일상적인 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업무 조정으로 인해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의 조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와 부처의 규율 또는 정책에 대한 조언의 의무가 소홀히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무차관은 차관(junior ministers)들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차관들은 사무차관의 지시를 또한 받지 아니한다. 사무차관과 차관 사이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처담당 장관에게 의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부처담당 장관이 해결).

장관의 런던 부재시 조정(Arrangements during absence from London)

4.8 부처들은 장관들이 런던에 없을 경우 장관을 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4.9 장관 부재시 부처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총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상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으로 장관들은 의심스러울 경우에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정부자문위원회 및 공개조사(Royal Commissions and Public Inquiry)

4.10 다음과 같은 사안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총리와 협의를 해야 된다.

a. 정부자문위원회: 내각의 승인과 총리가 여왕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b. 조사법(Inquiries Act 2005)에 따른 주요한 공개 조사

4.11 위와(4.10) 관련하여 판사 또는 법무담당관(judge or legal officer)을 임명하기 위한 제안이 있는 경우 대법관(Lord Chancellor)과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에게 협의해야 한다.

5. 장관과 공무원 (Ministers and Civil Servants)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5.1 장관들은 공무원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공무원에게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행동강령과 정부조직 개혁 및 거버넌스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반하여 처신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5.2 장관들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의 고려와 조언은 물론, 공무원의 정확하고 중립적인 조언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정부에 과학적인 조언을 주는 원칙(Principles of Scientific Advice to Government)을 존중해야만 한다.

회계공무원의 역할(The Role of the Accounting Officer)

5.3 부처의 장과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회계담당자(Accounting Officers)로 임명된다. 이것은 회계담당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재정의 적절성과 규칙성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기록, 낭비와 사치의 방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의 사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책임자는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소관 부처의 정책, 조치와 행위의 의회에 대한 장관의 책임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공공회계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에 답변을 해야 한다.

5.4 회계책임자는 장관에게 재정의 적합성 및 규칙성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는 더 나아가 신중하고 경제적인 행정, 효율성, 효과성 및 경제성(value for money)에 대해 조언을 장관에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회계담당자가 보기에,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적절성과 규칙성의 요건을 위반하는 거래를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를 고려중이라면, 회계담당자는 그 불법적인 계획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 근거와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원(Comptroller and Audit General)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계속 집행하기로 결정한다면, 회계담당자는 예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서면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담당자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들을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성에 관하여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통지 절차(notification process)는 우려되는 조치에 대하여 회계담당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공공회계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장관의 선거구 및 정당의 이해관계(Ministers' Constituency and Party Interests)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6.1 정부의 비용으로 장관에게 제공한 시설들은 장관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 정당 또는 선거구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재산 및 자원의 사용(Use of Government Property and Resources)

6.2 정부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선거구나 정당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저의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로 인정받는다. 만약 장관들이 관저에서 정당 활동이나 개인적인 행사를 주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정부재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는 정당의 자금으로 처리되어야 된다.(제7.10조 참조)

6.3 정당 정치에 필수적인 자료(material)의 배포를 위해서 정부 시설이나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통신망(Government Communication Network)의 업무를 관할하는 규약은 정부통신망에 관한 적절성 지침(Government Communication Network's Propriety Guidance-Guidance on Government Communication)에 규정되어 있다.

선거구 이익(Constituency Interest)

6.4 장관들이 자신의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소관 부처에서 내려야 할 경우, 장관들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된다. 부처 내에서, 어떠한 이해충돌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이해관계와 책무를 장관들은 사무차관에게, 차관은 국무상과 협의를 해야 한다.

6.5 장관은 관계 장관에게 선거구 사안에 대하여 서신, 대표단 또는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자유롭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장관은 장관으로서가 아닌 선거구 주민의 대표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6.6 장관들은 자신의 선거구 개발계획(planning application)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우리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장관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대표로서 선거구의 여론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과 더불어 정부 정책을 비난해서는 아니 되고, 장관이 아닌 합리적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의 주장을 펼쳐야 된다. 일단 결정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의문 또는 비난을 하지 말고 확정된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6.7 장관 개인의 직접적인 이익 또는 연관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우려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사안들이 장관의 가족, 친구 및 직원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매우 예외적으로 장관이 그러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의문 제기를 원한다면, 우선 사무차관에게 자문을 구하고, 사안과 관련된 장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 서신에는 개인의 이해관계 또는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러한 서신을 수령한 장관은 특별한 우대없이 관련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복권기금 분배(Lottery Bids)

6.8 장관은 복권기금의 분배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복권기금을 신청하는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아니 된다. 만약 장관이 자신의 선거구에 특정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면, 장관은 선거구민의 자격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의회행정감찰관(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 case)

6.9 의회행정감찰관(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에 사안을 제출하도록 일반국민에 의하여 요청받은 하원에 속한 장관들은 개별 사안의 시비곡직에 관한 이의를 의회행정감찰관에게 송부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의원들과 다르지 않게 처리해만 한다.

6.10 만약 선거구민의 이의(complaint)가 장관이 속한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장관은 주변 선거구의 의원(neighbouring MP)에게 선거구민의 이의를 처리하도록 요청해야만 된다.

7. 장관의 사익(Ministers' Private Interest)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7.1 장관들은 반드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와 사익, 금전적 이익 또는 기타의 이익과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충돌로 인식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for Avoiding Conflict)

7.2 이해충돌 또는 이해충돌의 외관(perception of a conflict)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각 장관의 직접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장관의 이러한 이해충돌에 관하여 사무차관 장관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과 독립 보좌관(independent adviser)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절차(Procedure)

7.3 새로운 부처에 임명되자마자, 장관들은 해당 부처의 사무차관에게 이해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목록에는 장관의 배우자, 파트너 그리고 직계 가족

(close family)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4 필요시, 장관들은 사무차관과 독립 보좌관과의 면담을 통해 장관의 이해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한 것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이를 사무차관과 독립 보좌관에게 한 부씩 제출해야 된다.

7.5 장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조언을 해준 사무차관과 독립 보좌관에게 공개한 개인적인 정보는 비밀로 처리된다. 하지만, 장관의 이해관계를 포함한 내역서가 매년 두 번씩 발간될 것이다.

7.6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는 경우, 동료 장관들이 해당 이해관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공무(public business)를 논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장관은 동료 장관들에게 해당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되며, 그 장관은 그 공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완전하게 격리된 채로 있어야 한다. 장관의 과거의 이해관계(previous interests)를 다룰 때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정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7.7 장관은 양심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재정 이해관계와 장관의 직위간의 이해충돌 또는 이해충돌로 보여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장관들은 항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처분해야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장관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사무차관과 독립 보좌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 장관들의 결정은 장래의 특정 회사 또는 단체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재정적 이해관계가 유지될 경우 조치(Steps to be taken where financial interests are retained)

7.8 만약 극히 예외적으로, 장관이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장관과 부처는 해당 이해관계와 관련된 특정 서류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어떠한 결정과 토론과정에도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9 어떤 경우에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예의 장관직을 사임할 필요가 있다.

관저(Official Residence)

7.10 만약 장관에게 관저가 배정되었다면, 지방세와 같은 사적으로 부담하는 모든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관저에 거주하고 있는 장관들은 독립의회표준당국(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에 주거비용(Accommodation Expenses)을 청구할 수 없다(제6.2조 참조).

공직 임명(Public Appointments)

7.11 장관으로 임명된 후, 장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적 직위로부터 사임해야 된다. 만약 매우 예외적으로 이러한 공적 직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장관은 사무차관과 독립 보좌관에게 장관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조언을 받아야 한다.

비정부 기구(Non-Public Bodies)

7.12 장관은 정부 정책과 얼마든지 상반될 수 있고, 그래서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정부 기구와 연계를 맺어서는 아니 된다.

7.13 그럼으로, 장관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조직운영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압력단체나 단체의 “후원자” 또는 “지지자”로서 활동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초대에 응하면 아니 된다. 물론, 위와 같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자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러한 단체의 후원활동에 참여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단체에 장관의 신분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보이게 행동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가지고 개인 또는 참여단체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장관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사무차관과 독립 보좌관의 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및 상하양원 합동그룹의 구성원 (Membership of Select Committee/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7.14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관직에 임명된 장관들은 특별위원회 또는 상하양원의 합동그룹의 회원 또는 의장 직위에서 사직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장관이 의회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관들은 특정 정책 또는 자금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의 구성원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노동조합(Trade Union)

7.15 물론, 장관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의도 없지만, 이 경우 또한 실제상 또는 외견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관들은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이 그 어떠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관의 일을 정리해야 한다. 즉, 장관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아니 되고, 노동조합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사임해야 되며,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어떠한 보수라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관의 퇴직 연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소액의 지불금은 허용된다.

소송 절차(Legal Proceedings)

7.16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절차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장관의 공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절차는

당연히 장관의 개인적인 지위는 물론 공인으로서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 장관은 우선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무관과 논의하여 예상되는 영향과 절차의 처리방안에 관한 지침을 요청하여야 한다.

7.17 이와 유사하게, 만약 장관이 소송에서 피고 또는 증인이 되는 경우, 가능하면 빨리 법무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것은 장관의 개인 변호사에게 사실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상 지명(Nomination for prizes and awards)

7.18 때로,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인 수상의 지명과 관련하여 장관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장관들은 이러한 지명을 후원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는 정부가 후원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장한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 훈장(Foreign Decoration)

7.19 일반적으로 장관들은 재직 중에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금품 및 향응 수령(Acceptance of Gifts and Hospitality)

7.20 장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에게 부당한 의무관계를 지우거나 지울 수 있는 금품, 향응 또는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원칙은 장관뿐만이 아니라 장관의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7.21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만약 장관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그 어떠한 의심이나 곤란함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장관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사무차관과 독립 보좌관에게 조언을 요청해야 한다.

7.22 장관 자격으로 장관이 받은 금품은 정부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이는 의원 및 동료의 이해관계 등록처(Register of Members or Peers' Interest)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4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의 금품을 수령한 장관이 보유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은 처분을 위하여 즉시 부처에 이관되어야 한다. 만약, 장관이 금품의 원가에서 140파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금품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받은 공식 금품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인사위원회(HMRC)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만약 장관이 수령한 금품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각 부처는 최소한 분기마다 소속 장관이 수수한 140파운드 이상의 금품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7.23 장관이 지역선거구의 의원이나 특정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수령한 금품은 의원과 상원의 이해관계 등록처(Registers of Members and Lords Interest)의 관련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7.24 만약 장관이 장관의 자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사무차관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는 적어도 분기마다 장관이 받은 향응 내역을 공표할 것이다. 또한 의원 또는 귀족의 신분으로 받은 향응에 관한 내용들은 의원과 상원의 이해관계 등록처에 공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향응의 비용은 하원의 경우 650파운드이고, 상원의 경우 500파운드이다.[206]

장관 퇴임 후 임명수락
(Acceptance of appointments after leaving ministerial office)

7.25 퇴임하는 장관들은 퇴임부터 2년 동안 정부대상 로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퇴임 후 2년 내에 새로운 직장 또는 직위의 임명을 수락하기 이전에 반드시 독립 자문위원회(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206) 해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의회가 증액시킨다.

on Business Appointments)에 이러한 사실을 의뢰하여 자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퇴임하는 장관은 본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8. 장관과 정책 발표(Ministers and the presentation of policy)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8.1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정부시설들은 정부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의 정치 혹은 활동을 선전하는 자료를 유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정부 통신 네트워크(Government Communication Network)의 업무를 관리하는 관례는 정부 통신 네트워크의 적절성 안내서(Government Communication Network's Propriety Guidance – Guidance on Government Communication)에 규정되어 있다.

매체 인터뷰, 연설 등(Media Interviews, Speeches etc.)

8.2 내각의 효율적인 업무 조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정책내용을 발표하는 모든 공식발표회, 연설, 보도자료 및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는 모든 행위와 그 시기는 가능한 공식발표 24시간 전에 대변인실(No 10 Press and Private Offices)에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으로 이뤄지는 모든 주요 인터뷰 및 매체 출연은 반드시 대변인실(No 10 Press Offic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제6.6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연대책임 원칙(Principle of Collective Responsibilities)이 적용된다(제2.1조 참조). 장관들은 자신의 성명이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장관들은 다른 장관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는 특별히 더 큰 주의를 가져야 한다.

8.4 장관들은 정부 업무와 관련된 연설 문서를 배포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정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만 배포되어야 된다.

8.5 정치인 또는 개인 신분으로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온라인 방송에 초청된 장관은 우선 이러한 출현이나 전달되는 내용이 다른 부처의 업무에 관한 것인지를 사전에 판단하여야 되며, 만약 다른 부처의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야 된다면, 출연 확정 이전에 담당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그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언론기사(Press Articles)

8.6 장관들은 의회에 대한 장관의 의무 또는 연대책임의 원칙 (principle of collective Ministerial responsibility)에 반하지 않는 범주에서 서적, 저널, 신문 또는 자신의 지역선거구의 지역 신문에 기고를 해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고에 대하여 그 어떠한 수수료(payment)라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7 정규적인 언론 활동을 희망하는 장관들은 사전에 대변인실(No 10 Press Office)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연설, 매체 기고 등에 관한 수수료(Payment for speeches, media articles etc.)

8.8 장관들은 자신의 공식적인 직위, 장관으로서의 경험 또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설 또는 매체 기고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목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예의 단체가 수수료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단체가 선정한 자선단체에 기부되어야 된다. 이러한 이유는 장관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자선활동을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다.

책(Books)

8.9 장관들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자신이 장관으로서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집필하여 출판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관들은 퇴직 후에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

8.10 자신의 회고록을 발간하기 원하는 퇴직 장관들은 회고록을 발간하기

전에 회고록 초안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래드클리프 보고서(Radcliffe Report of 1976)에 규정된 내용에 준수해야 된다

설문조사(Surveys)

8.11 장관들은 때로 학술연구나 시장조사 또는 설문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뷰를 요청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이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한 내용 또는 의견들이 정부기관의 일원으로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재임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거절하는 것이 관행이다.

백서 및 협의서 출판(Publication of White and Consultation Papers)

8.12 백서 및 유사한 성격의 보고서의 발표를 앞두고 항상 발표되는 내용이 의회의 특권(Parliamentary privilege)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필요할 경우 비밀 최종 수정(Confidential Final Revise) 교정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출판 이전에 해당 내용을 매체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백서 및 유사한 성격의 보고서의 출판과 공개되는 내용의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Complaint)

8.13 만약 언론인이나 언론고충위원회(Press Complaint Commission) 및 방송고충위원회(Broadcasting Complaint Commission)과 같이 특정 미디어를 대상으로 고충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대변인(No 10 Chief Press Secretary)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한, 제7.6조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내용이다.

외부단체와 면담(Meetings with External Organizations)

8.14 장관들은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장관이 참석한 외부 미팅의 내역을 적어도 분기마다 공표할 것이다.

통계(Statistics)

8.15 장관들은 항상 공식 통계와 관련하여 모범사례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통계청(UK Statistics Authority's Code of Practice)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는 의무는 국가통계를 발표하는 모든 기관에게 통계 및 규제 법률(Statistics and Regulations Service Act 2007년)에 따라 적용된다.

8.16 또한, 장관들은 최종 공식 통계자료의 접근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공식 통계 접근 권한 규정(Pre Release Access to Official Statistics Order)을 준수해야 된다. 이 규정은 다양한 접근 제한 및 방법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판 이전에 해당 정보를 제한하는 규정과 통계결과의 발표 이전에 그 어떠한 진술 또는 의견을 매체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9. 장관과 의회(Ministers and Parliament)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9.1 의회가 회기 중에 있을 때에는, 중요한 정부 정책은 가장 먼저 의회에서 발표되어야 한다.

발표의 시점과 방식(Timing and Form of Announcement)

9.2 정부가 중요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이러한 발표의 시기는

기타 정부의 출판, 성명 및 발표 그리고 예정된 의회의 활동과 충돌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그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 또한 주요한 정책을 발표함에 앞서 정부는 하원 의장, 원내총무, 부총리와 총리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배포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9.3 정부는 휴회 하루 전에 주요한 정책이 발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구두 연설(Oral Statements)

9.4 장관들은 총리, 부총리, 하원의장, 원내총무의 의원보좌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 내에서 또는 밖에서 구두 연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면 안 된다. 또한 장관들이 상원에서 연설을 하기 전에는 상원의장(Head of House of Lords) 및 원내총무와 이를 먼저 협의해야 된다.

9.5 일반적으로 구두 연설문을 야당에 복사본을 송부해야 된다. 또한 연설을 하기 45분 전에 연설문 및 연설문과 관련된 서류 15부를 원내총무의 사무실로 송부해야 된다. 동시에 최종 연설문은 미리 의회 의장(Speaker)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9.6 만약 연설문에서 전직 장관, 동료 장관, 의원/귀족을 언급하게 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최대한 빠른 시기에 통보해야 된다.

특별위원회 보고서(Select Committee Reports)

9.7 비밀 최종 수정 단계에서 부처에 보낸 사본을 제외하고 발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장관 또는 의원보좌관은 그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 위원회의 서기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별보좌관에게도 적용된다.

10. 장관의 출장 (Travel by Ministers)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10.1 장관들은 항상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적(efficient and cost-effective)인 출장 준비(travel arrangements)를 해야 한다. 공적인 운송수단(official transport)은 일반적으로 정당 활동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지만, 안전을 이유(security grounds)로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용이 허용된다.

해외 출장(Overseas Visits)

10.2 장관들은 해당 부처 대표단의 구성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대표단은 소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장관들은 자신의 해외 출장 준비가 국민에게 용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3 부처들은 매년 최소 분기별로 장관들이 다녀온 모든 해외 출장의 내역을 공표한다.

10.4 장관들이 공무로 출장을 한 경우, 그 출장 비용은 부처 비용(departmental vote)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무료 출장의 요청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칙의 유일한 예외는 해외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여행 일정이 장관들에게 그 어떠한 부적절한 의무(no undue obligation)를 형성하지 않으면 허용된다.

부정기 비행(Non-Scheduled Flights)

10.5 내각의 각료(members of the Cabinet)들과 부처 담당 장관들(Ministers in charge of Departments)만이 자신 또는 자신의 부처 내에 근무하는 다른 장관들의 특별 비행을 승인하는 재량을 가진다. 부정기 비행은 정기 비행(scheduled service)이 불가능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이 필요하지만 정기 비행을 이용한 출장이 어려운 공무 또는 의회 업무의 특성과 안전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에 한한다. 또한 정무차관들(Parliamentary

Secretaries)의 부정기 비행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된다.

10.6 부정기 비행을 사용할 경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 활동이나 지역선거구 순방을 위한 것으로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직항 노선(direct route)의 변경은, 추가적인 이착륙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행시간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장관의 주거지 근처의 비행장에서 집합시키거나 운송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10.7 추가적으로, 국방 부처들의 업무로 출장가거나 국방 기관 또는 국방 시설을 방문할 경우, 장관들은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국방부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복귀 명령에 의한 귀국(Ministers Recalled from Abroad)

10.8 만약 장관이 허가를 받고 해외에 체류 중에 부처 업무 또는 투표를 포함한 이유로 의회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입출국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국내 방문(UK Visits)

10.9 국내를 순방하려고 하는 장관들은 순방 일정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의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10.10 이러한 예우는 영국의 장관들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순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0.11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를 공식적으로 순방할 계획을 세운 장관들은 소관 국무상 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도 알려야 한다.

관용 차량의 사용(Use of Official Cars)

10.12 장관들은 항상 기밀 서류(classified papers)를 가지고 다닌다는 인식에서 관용 차량을 공식 업무에 사용할 수 있고, 런던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와 사무실 사이의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

면 장관들은 대중교통(public transport)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0.13 안전과 그밖에 사유를 고려하여 관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은 장관의 수효는 최소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밖의 장관들은 관용차량운영기관(Government Car Service Pool)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당의 행사(Party Political Occasions)

10.14 만약 방문(visit)이 정치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다가지고 있다면, 부처와 정당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적절한 비율에 따라 각각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10.15 총리와 안전 당국(security authorities)이 예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른 장관들은 개인적이든 정당 목적의 여행이든 모든 도로 여행(all journeys by road)에서 공식 차량(official cars)을 이용할 수 있다.

항공마일리지(Air Miles)

10.16 단골고객(membership of regular flier clubs)으로서 가지는 특별 출국라운지 사용(access to special departure lounges) 또는 예약 처리(booking arrangements) 등 사소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부 재정에서 나온 여행을 통하여 얻은 항공마일리지와 그밖에 이득(air miles and other benefits)은 공식 목적(official purposes)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 여행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항공사가 선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장관은 이러한 이득을 그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배우자/파트너의 여행경비(Travelling Expenses of Spouses/Partners)

10.17 장관의 공식 임무(official duties)에 장관과 동반하는 배우자/파트너의 여행경비는, 만약 배우자/파트너의 동행이 공익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 재정(public funds)에서 지불될 수 있다. 다만, 동반 여행을 하기 전에 그때마다 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별보좌관의 여행경비(Travelling expenses of Special Advisers)

10.18 특별보좌관이 장관의 해외방문을 수행할 경우, 사무차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직 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The Seven Principles of Public Life)

공익 전념 의무(Selflessness)

공직자(holders of public office)는 오로지 공익(public interest)의 관점에서 행동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자신, 가족 및 지인(friends)들의 금전적 또는 그밖에 물질적 이득(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s)을 취득하기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 의무(Integrity)

공직자는 공직 수행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청탁)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outsid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와 금전적 또는 그 밖에 채무관계(other obligation)를 맺어서는 아니 된다.

객관 의무(Objectivity)

공직자의 채용, 계약체결 또는 보상과 이득(rewards and benefits)을 위한 개인 추천을 포함하는 공무(public business)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는 시비곡직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make choices on merit)해야 한다.

책임 의무(Accountability)

공직자는 자신의 정책결정 및 조치에 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그 직무와 관계되는 어떠한 감사(scrutiny)도 받아야 한다.

공개 의무(Openness)

공직자는 자신의 모든 정책결정 및 조치에 관하여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이 행한 정책결정의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더 큰 공익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정직 의무(Honesty)

공직자는 공무 수행 중에 사익(private interests)이 관련되는 경우 그 사익을 공개(declare)하여야 하며, 공익과 사익이 양립하기 어려운 이해충돌(conflicts)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더십(Leadership)

공직자는 리더십과 모범(example)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촉진하고 옹호해야 한다(promote and support).